

제5부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전체 목록

※ 제5부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 · 처리한 언론조정 · 중재사건의 전체 목록을 게재합니다. 전체목록은 언론조정 · 중재사건이 접수된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공인이나 국가기관(공공단체 포함)을 제외하고 익명으로(○○표시)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처리결과 내 '이행방법' 은 방송이나 인터넷매체 대상사건 중 조정조서(조정성립의 경우)나 결정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중재결정의 경우)에 적시된 이행방법을 의미합니다. 편집자 주

제1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2012부산조정1~2	(정정·손배청구) 홍○○ 對 한국기독신문
조 정 대 상	『목회자 사례비 안준다고 시회법에 호소한 H목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5일자 26면)
신청인주장	교회 담임목사인 신청인이 장로 6명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당회에 사임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손배청구 : 조정불성립결정
이 행 결 과	『검찰에 정식 고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4일자 10면)
2012서울조정1	(정정청구) ○○제약 주식회사 對 컨슈머타임스
조 정 대 상	『○○제약 '○○○' 1년에 12cm 안 크면 책임보상 '뽕'』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성장보조식품의 효능을 과장 광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제약 '○○○' 1년에 12cm 안 크면 책임보상 '뽕」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9일자)
2012서울조정2~3	(매체별 정정청구) 금융위원회 對 The Korea Herald, 인터넷 The Korea Herald
조 정 대 상	『FSC staff opposed chief on Lone Star ruling』 제하의 기사 (The Korea Herald 2011년 11월 30일자 1면, 인터넷 The Korea Herald 11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을 한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주식처분 명령이 아닌 단순매각 명령을 내린 데 대해, 금융위원회 내부직원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Correction of the article 'FSC staff opposed chief on Lone Star ruling'』 제하의 기사 (The Korea Herald 2012년 2월 3일자 6면, 인터넷 The Korea Herald 2월 3일자)
2012서울조정4~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최시중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최시중 방통위원장측 역대 수뢰』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1월 3일자 A1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3일자)
신청인주장	방송통신위원장인 신청인이 EBS 이사 선임과정에 개입했고, 그 대가로 측근을 통해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6~7		(정정·손배청구) 이○○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인권위 조사관이 성희롱』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30일자 21:00)	
신청인주장	국가인권위원회 간부인 신청인이 모 방송사 여기자를 성희롱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TV조선 기사삭제, 후속보도 금지, 부제소)	
2012서울조정8		(정정청구) (주)○○ 외 5인 對 인터넷 한국섬유신문
조 정 대 상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였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신청인주장	지식경제부 지원을 받아 신청인 회사들이 연구하고 있는 '메탈사를 이용한 자동차용 발열 시트 및 내장재 개발'에 대해, 직물에 신축성 부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섬유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48시간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메탈사 이용 자동차용 발열시트 개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6일자)	
2012광주조정1		(손배청구) 1. 이○○, 2. 현○○ 對 인터넷 광남일보
조 정 대 상	『가정불화 겪던 70대 노인의 '쓸쓸한 죽음'』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의 가족이 자살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유족인 신청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9		(정정청구) 의료법인 ○○병원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다른 장례식장 못 가" ... 운구차 가로막기 '추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다른 장례식장을 이용하려 하자, 신청인 병원의 직원이 시신운구를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사건에 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다툼이 있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은 후속 보도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2012경남조정1~3		(매체별 정정청구) 박완수 對 경남도민일보⁽¹⁾, 인터넷 경남도민일보⁽²⁾, 다음⁽³⁾
조 정 대 상	『'박완수 창원시장 마음 속엔 '리모델링'?』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2년 1월 3일자 1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다음 1월 3일자)	
신청인주장	창원시장인 신청인이 기자회견회에서 통합청사 문제와 관련해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1) 『박완수 시장 ‘리모델링’ 발언 “현 임시청사 생각한 것 아냐”』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2년 1월 4일자 2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다음 1월 4일자) (2) 『[사설] 청사위치 선정 후 리모델링 고민해야』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2년 1월 5일자 11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다음 1월 5일자)
------	---

2012서울조정10~16	(매체별 반론청구) 사단법인 대한배구협회 對 경향신문 ⁽¹⁰⁾ , 인터넷 경향신문 ^(11, 10과 병합) , 네이버 ⁽¹²⁾ , 네이트 ⁽¹³⁾ , 다음 ⁽¹⁴⁾ , 드림위즈 ⁽¹⁵⁾ , 야후 ⁽¹⁶⁾
조정대상	『무리한 회관 매입, 배구협회 파산 위기』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1년 12월 30일자 27면, 인터넷 경향신문·네이버·네이트·다음·드림위즈·야후 12월 29일자)
신청인주장	대한배구협회가 문화부나 대한체육회의 승인절차도 없이 무리하게 배구회관을 매입,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 경향신문·인터넷 경향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네이트·다음·드림위즈·야후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9~13 참조)] ※ 이행방법 • 인터넷 경향신문 : 홈페이지 스포츠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48시간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일자 스포츠면) • 인터넷 경향신문 : 『“무리한 회관, 배구협회 파산 위기” 보도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1일자)

2012서울조정17	(정정청구) 방송통신위원회 對 TV조선
조정대상	(1)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최시중 측근 ○○서 3억 수수』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3일자 21:00) (2) 마감뉴스 프로그램 『최시중 측근, 이통사서 역대 수수』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3일자 24:00) (3) 모닝뉴스쇼 ‘깨’ 프로그램 『“최시중 측근, 이통사서 역대 수수”』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4일자 06:00)
신청인주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진 과정에서 위원장의 정책보좌관이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처럼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TV조선 <9시뉴스 ‘날’>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되,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며, 낭독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 자료화면으로 함
이행결과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방통위 “주파수 경매 공정했다” 알려와』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20일자 21:00)

2012경기조정1~2	(매체별 정정청구) ○○○○○ 주식회사 對 인천일보,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 인천일보 : 『인지세 미납 과태료 징수 '뒷짐'』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7일자 19면) • 경기신문 : 『현수막 게시대 위 · 수탁 해지 촉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1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시에서 과태료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 인천일보 : 조정불성립결정 • 경기신문 : 조정성립 (내용:반론보도, 인터넷 경기신문에 반론보도) ※ 이행방법 • 경기신문 : 인터넷 경기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하되,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경기신문 : 『‘현수막 게시대 위 · 수탁 해지 촉구’』에 대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2년 1월 18일자 8면, 인터넷 경기신문 1월 18일자)

2012서울조정18	(정정청구) 김○○ 對 한국경제
조 정 대 상	『새터민은 感이 달라 ... 김정일 사망도 예측했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33면)
신청인주장	탈북지식인 모임의 대표인 신청인이 “국가 정보기관에 전문성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9~20	(매체별 반론청구) 이낙연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신호등제’ 로비에 밀렸나 ... 의원-기업 同주 장』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4일자 21:00) • iMBC : 『‘신호등제’ 로비에 밀렸나 ... 의원-기업 同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제과업체의 로비를 받아 ‘어린이 식품 신호등제’를 ‘영양성분 전면 표시제’로 바꾸는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2~3	(정정 · 손해청구) 이○○ 對 나주뉴스
조 정 대 상	『[여성칼럼] 세상에 이런 일이』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8일자 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21~24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노○○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동 개발지구 조합장마다 횡령 ... 조합원 '울상'』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5일자 21:00) • iMBC : 『[다시보기] ○○○동 개발지구 조합장마다 횡령 ... 조합원 '울상'』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신청인주장	지역주택조합장인 신청인이 무허가 주택 철거민들과 공모하여, 보상비를 과다 지급함으로써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25~26	(매체별 정정청구) 최시중 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김○○ 매입 ‘EBS 사옥 후보지’ 방통위 연루 의혹』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1월 4일자 14면, 인터넷 경향신문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청인이 EBS 신사옥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경향신문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EBS 사옥 후보지 방통위 연루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1월 27일자 A2면, 인터넷 경향신문 1월 26일자)

2012서울조정27	(정정청구) 박원순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현역에서 ‘공익’으로』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5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회피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TV조선에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조정성립 후 최초로 방송되는 <9시뉴스 ‘날’>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앵커로 하여금 다른 기사들과 같은 형식으로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되 “박 시장 아들 병역 회피한 적 없어”로 하여 계속하여 자막을 표시함. 인터넷 TV조선의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며,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박 시장 아들 병역 회피한 적 없어』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27일자 21:00)

2012서울조정28~37	(매체별 반론 · 손해청구) (주)코리아○○○ 對 조선일보 ⁽²⁸⁻²⁹⁾ , 조선닷컴 ⁽³⁰⁻³¹⁾ , 네이버 ⁽³²⁻³³⁾ , 네이트 ⁽³⁴⁻³⁵⁾ , 다음 ⁽³⁶⁻³⁷⁾
조 정 대 상	『대학까지 점령한 불법 SAT학원』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월 6일자 14면, 조선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1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대학에 고액의 돈을 주고 불법적인 SAT 캠프를 운영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 · 조선닷컴 : 각 조정불성립결정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	--

2012경남조정4~5	(정정 · 손해청구) 박○○ 對 더함안신문
조 정 대 상	『○○리 자이아파트 ○리 이장선거 '잡음'』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1면)
신청인주장	이장인 신청인의 유임의결 과정이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손해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리 자이아파트 ○리 이장선거 '잡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1일자 1면)

2012서울조정38~41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한국교육방송공사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EBS 교재값 내리기는커녕 올랐다』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7일자 21:00), (2)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EBS교재 가격 거품 ... "지적했지만 오히려 올라"』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8일자 06:00) • iMBC : (1) 『[다시보기] EBS 교재값 내리기는커녕 올랐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2) 『[다시보기] EBS교재 가격 거품 ... "지적했지만 오히려 올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신청인주장	EBS가 감사원으로부터 수능 교재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오히려 교재 가격을 더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부산조정3~4	(매체별 정정청구) 주식회사 ○○○텔레콤 對 울산신문, 인터넷 울산신문
조 정 대 상	(1) 『택시 블랙박스 설치 업체 유착 의혹』 제하의 기사 (울산신문 2011년 12월 26일자 5면, 인터넷 울산신문 12월 25일자) (2) 『'택시 블랙박스' 갈수록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울산신문 2011년 12월 27일자 5면, 인터넷 울산신문 12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와 울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의 택시 블랙박스 납품 입찰 과정에 유착 의혹이 있으며, 신청인 회사 제품의 질과 가격 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울산신문에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택시 블랙박스 설치 업체 유착 의혹'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울산신문 2012년 1월 31일자 6면)

2012서울조정42~43	(정정·손배청구) 이○○ 對 jbc
조 정 대 상	뉴스10 프로그램 『[탐사추적] 주유소협회 국회의원 불법후원금 줬다』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6일자 22: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주유소협회의 국회의원 불법후원 관련 내부고발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와 신청인간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신청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2서울조정44	(손배청구) 전○○ 對 jbc
조 정 대 상	뉴스10 프로그램 『[탐사추적] 주유소협회 국회의원 불법후원금 줬다』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6일자 22: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주유소협회의 국회의원 불법후원 관련 내부고발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와 피해자가 신청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2서울조정45	(정정청구) 주식회사 ○○테크 對 한국취업신문
조 정 대 상	『[르포] 돈없고 친구없는 루저들의 모임 ○○테크』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불법 피라미드 업체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테크 르포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7일자)

2012서울조정46~49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아시아경제닷컴 ⁽⁴⁶⁾ , 네이버 ⁽⁴⁷⁾ , 모네타뉴스 ⁽⁴⁸⁾ , 동아닷컴 ⁽⁴⁹⁾
조 정 대 상	『[포토] '전세 구해야 하는데 ...'』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신청인주장	대학생 전세자금대출에 관련된 보도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아시아경제닷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50만 원, 유감표명 메일발송) • 네이버 · 모네타뉴스 · 동아닷컴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50~51, 61~64	(매체별 반론청구) 사단법인 ○○○○○○ 對 중앙일보 ⁽⁵⁰⁾ , 온라인 중앙일보 ⁽⁵¹⁾ , 네이버 ⁽⁶¹⁾ , 네이트 ⁽⁶²⁾ , 다음 ⁽⁶³⁾ , 야후 ⁽⁶⁴⁾
조 정 대 상	『소화제 먹고 1년2개월 총 한 방 못 쏘는 강○○』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12월 23일자 28면, 온라인 중앙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모 사격선수가 반하사심탕을 복용한 후 도핑 테스트에 걸려 자격정지를 당한 사건은 반하사심탕에 도핑 금지약물을 인위적으로 혼합한 약사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처방인 반하사심탕 자체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중앙일보 · 온라인 중앙일보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2~5 참조)] ※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 : 홈페이지 스포츠면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1일 동안 게재, 제목을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한약 처방 ‘반하사심탕’, 도핑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1월 26일자 24면, 온라인 중앙일보 1월 27일자)

2012서울조정52	(반론청구) 박○○ 對 양주 · 동두천닷컴
조 정 대 상	『J어린이집 불법 천지, 보육교사들 폭로』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이 아동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1일 동안 표시하고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J어린이집 불법 천지, 보육교사들 폭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9일자)

2012서울조정53~56	(매체별 정정청구) 주식회사 ○○○리얼에스테이트코리아○○ 對 오마이뉴스 ⁽⁵³⁾ , 네이버 ⁽⁵⁴⁾ , 네이트 ⁽⁵⁵⁾ , 다음 ⁽⁵⁶⁾
조 정 대 상	『○○○도 도시개발 가능, 특혜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신청인주장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신청인 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오마이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6~8 참조)] ※ 이행방법 • 오마이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 전체 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특혜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7일자)

처 리 결 과	※ 이행방법 • 동아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前 부장판사 전 부인 보석사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2월 6일자 A14면, 동아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2월 6일자)

2012서울조정75~84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유○○ 對 서울신문 ^(75~76) , 인터넷 서울신문 ^(77~78, 75~76과 병합) , 네이버 ^(79~80) , 네이트 ^(81~82) , 다음 ^(83~84)
조 정 대 상	『판사출신 변호사의 부인 ‘보석王’ 자칭 16억 사기』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2년 1월 11일자 9면, 인터넷 서울신문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서울신문 · 인터넷 서울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인터넷 서울신문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前 부장판사 전 부인 보석사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2년 2월 7일자 11면, 인터넷 서울신문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2월 7일자)

2012서울조정85~94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유○○ 對 조선일보 ^(85~86) , 조선닷컴 ^(87~88, 85~86과 병합) , 네이버 ^(89~90) , 네이트 ^(91~92) , 다음 ^(93~94)
조 정 대 상	『“남편이 前官... 서초동 돈 끌어모은다”던 사모님이...』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월 12일자 A12면, 조선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 · 조선닷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조선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前 부장판사 부인 보석사기 사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2월 3일자 사회면, 조선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2월 3일자)

2012서울조정95~104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유○○ 對 중앙일보 ^(95~96) , 온라인 중앙일보 ^(97~98) , 네이버 ^(99~100) , 네이트 ^(101~102) , 다음 ^(103~104)
조 정 대 상	『“내 남편이 부장판사였는데...” 다이아로 16억 사기』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1월 12일자 18면, 온라인 중앙일보·네이버·네이트·다음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05~112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유○○ 對 매경닷컴 ^(105~106) , 네이버 ^(107~108) , 네이트 ^(109~110) , 다음 ^(111~112)
조 정 대 상	『판사출신 변호사 부인이 보석 사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13~120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유○○ 對 e머니투데이 ^(113~114) , 네이버 ^(115~116) , 네이트 ^(117~118) , 다음 ^(119~120)
조 정 대 상	(1) 『판사출신 변호사 남편 내세워 10억대 보석 사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2)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前부인, 10억대 보석사기 혐의 재판 중』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21~124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유○○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6시 뉴스매거진 프로그램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전 부인 사기 피소』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1일자 18:00) • IMBC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부인 사기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25~134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유○○ 對 YTN ^(125~126) , 인터넷 YTN ^(127~128, 125~126과 병합) , 네이버 ^(129~130) , 네이트 ^(131~132) , 다음 ^(133~134)
조 정 대 상	• YTN : (1) 뉴스&이슈 프로그램 『부장판사 남편 내세워 희대의 보석 사기』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1일자 12:58, 13:58) (2) YTN 이브닝뉴스 프로그램 『“내 남편이 부장판사”...

조 정 대 상	대담한 보석 사기』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1일자 17:58) • 인터넷 YTN : (1) 『[스크립트] 부장판사 남편 내세워 희대의 보석 사기』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2) 『[스크립트] “내 남편이 부장판사”...대담한 보석 사기』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부장판사 남편 내세워 희대의 보석 사기』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YTN · 인터넷 YTN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YTN : 인터넷 YTN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든 조정대상보도 동영상 및 스크립트 삭제

2012서울조정135~136	(정정 · 손해청구) (주)○○○닥터 對 MBC-TV
조 정 대 상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밀착취재>화장품은 먹고 세정제는잇몸에? 할머니 울리는 수상한 다단계』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7일자 08:3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회사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37~138	(정정 · 손해청구) 김○○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박희태 돈봉투 출처는 청와대? 대선자금 가능성도』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신청인주장	박희태 국회의장 돈봉투 사건을 보도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인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139~142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원○○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범종 제작 ‘제2 민○○ 사태’ 일어나나』 (세계일보 2011년 10월 27일자 8면, 세계닷컴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국세 사기사건의 민○○ 사태와 비교하면서 무형문화재인 신청인의 범종 복원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세계닷컴의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세계닷컴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대체목(“범종 제작 ‘제2 민○○ 사태’ 일어나나”)을 삭제하고 부제목(“전통 범종 제작기법 싸고 논란 확산”)을 대체목으로 대체, 각 포털사에 제공한 각 기사의 제목도 수정되도록 조치
이 행 결 과	『전통 범종 제작기법 싸고 논란 확산』제하의 기사 (세계닷컴 2012년 2월 10일자)

2012서울조정143	(정정청구) ○○○○○○○ 주식회사 對 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내부 고발자 해고한 버스회사 … “정당 vs 보복”』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8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임직원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들을 해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44~14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 ○○○ 對 더벨,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 더벨 : 『종로 ‘○○○’ 다시 팔리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5일자) • e머니투데이 : 『[○○] 最古영화관 ‘○○○’ 다시 팔리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소유의 영화관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1서울조정148~15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재)사랑의장기기중운동본부 對 청년의사, 인터넷 청년의사
조 정 대 상	• 청년의사 : (1) 『혈액투석 과열경쟁, 한계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1일자 1면), (2) 『[무법지대 혈액투석병원] 정부도 의료계도 관리감독 포기?』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1일자 14~15면) • 인터넷 청년의사 : 『[커버스토리] 혈액투석 과열경쟁, 한계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제주도 L요양병원이 수용소에 가까운 비인간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청년의사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인터넷 청년의사의 모바일 웹에도 게재
이 행 결 과	• 청년의사 : (1)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2일자 1면), (2) 『제주 ○○의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2일자 11면) • 인터넷 청년의사 : 『제주 ○○의 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2일자)

2012서울조정152~153	(매체별 정정청구) 세계기독교○○○○협회 對 주간동아, 인터넷 주간동아
조 정 대 상	『‘○○교 왕자’ 는 또 다툰다?』 제하의 기사 (주간동아 2012년 1월 20일자 44~47면, 인터넷 주간동아 1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종교단체가 총재 가족간의 갈등으로 교단이 분열되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처 리 결 과	※ 이행방법 • 인터넷 주간동아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1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교 갈등’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주간동아 2012년 3월 6일자 46면, 인터넷 주간동아 2월 27일자)

2012서울조정154~157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전○○ 對 KBS-2TV, KBSi	
조 정 대 상	• KBS-2TV : 해피 선데이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 남자, 그리고 중년의 사춘기』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8일자 17:10) • KBSi : 『[다시보기] 368회 (1) 남자의 자격 - 남자, 그리고 중년의 사춘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8일자)
신청인주장	과거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으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KBSi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KBS-2TV : 해피 선데이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 남자, 그리고 가족여행』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5일자 17:10) • KBSi : 『[다시보기] 372회 (1) 남자의 자격 - 남자, 그리고 가족여행 ②』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5일자)

2012경남조정6~9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주식회사 경남도민신문 對 경남일보, 인터넷 경남일보	
조 정 대 상	• 경남일보 : 『진주지역 선거 여론조사 예비후보자들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1면) • 인터넷 경남일보 : 『무분별한 여론조사 예비후보자도 반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신문사의 여론조사 보도로 진주지역 예비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모 예비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인용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5 (정정청구) 영광군 對 전남희망신문	
조 정 대 상	『기득권만의 특권 - 동원을 고발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7면)
신청인주장	현직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영광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동원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득권만의 특권 - 동원을 고발한다’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0일자 7면)

2012서울조정158	(정정청구) 박근혜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단독] 2007년 박근혜 캠프관계자 수억원대 불법모금』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7일자)
신청인주장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홍모씨 등이 신청인 캠프의 자금담당이었으며, 홍모씨가 불법 모금한 돈이 캠프 경비로 사용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2012서울조정159~161	(매체별 정정청구) 위○○ 외 3인 對 CBS-TV ⁽¹⁵⁹⁾ , CBS ⁽¹⁶⁰⁾ , 노컷뉴스 ⁽¹⁶¹⁾
조 정 대 상	• CBS-TV : CBS교계뉴스 프로그램 『‘노회장 협박’ 파문』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3일자 21:40) • CBS·노컷뉴스 : 『○○교회 갈등 계속...노회장 협박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일자)
신청인주장	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신청인들이 노회장을 감금, 협박하여 소속교회의 당회장을 특정하는 확인서를 받아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62	(정정청구) 강○○ 對 주간한국
조 정 대 상	『총선 예비후보들 관계에선 누가 뛰나 - 일부 후보들 비리의혹으로 제동』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8면)
신청인주장	국무총리실 기획관인 신청인에 대하여 근무시간 무단결근·횡령 등의 비리 정황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3일자 6면)

2012서울조정163	(정정청구) 지식경제부 對 서울경제
조 정 대 상	(1) 『해외 자원개발 뿌리가 흔들린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1일자 A01면) (2) 『개발역량 걸음마...사업진출 10년 “실속은 없고 소리만 요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1일자 A03면)
신청인주장	정부(지식경제부)가 민간기업이 자원탐사권만 확보해도 즉시 가채매장량을 발표하는 등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1일자 A09면)

2012서울조정164~165	(매체별 정정청구) (주)○○○ 對 SBS-TV, SBS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현장추적> ‘○○○ 설치 후엔 나 몰라라’』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6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생산, 시공한 태양열 시설에 성애가 발생해 난방이 안되며,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SBS에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SBS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일자)

2012광주조정6	(정정청구) 담양군 對 담양신문
조 정 대 상	(1) 『담양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공고 파장』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일자 1면) (2) 『담양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에 대한 토지소유자 이의서』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일자 4면) (3) 『학동리 주민들 연판장 제출하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9일자 1면) (4) 『강력 반발한 마을은 빼주겠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6일자 1면)
신청인주장	담양군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결 청구공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잇따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담양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4일자 7면)

2012서울조정166~16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안○○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취업 스펙 쌓기 ‘필수과목’ 돼버린 해외 봉사』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월 26일자 A11면, 조선닷컴 1월 26일자)
신청인주장	고교생·대학생들의 해외 자원봉사가 진학,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용이 돼버렸다는 보도와 함께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손해배상 1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취업 스펙 쌓기 해외 봉사’ 사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2월 25일자 A2면)

2012서울조정170~175	(매체별 반론청구) 주식회사 ○○○○○○○○ 對 KBS-1·2TV ⁽¹⁷⁰⁾ , MBC-TV ⁽¹⁷¹⁾ , SBS-TV ⁽¹⁷²⁾ , YTN ⁽¹⁷³⁾ , 인터넷 경향신문 ⁽¹⁷⁴⁾ , 연합뉴스 ⁽¹⁷⁵⁾
조 정 대 상	• KBS-1·2TV : (1) KBS 뉴스12 프로그램 『‘가짜 원적외선 방출기’ 다단계 사기 적발』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12:00), (2) KBS 뉴스7 프로그램 『‘원적외선 제품 사기’ 55억 행간 다단계 적발』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19:00), (3) KBS 뉴스9 프로그램 『‘만병통치 전기제품?’ 원가 3만 원 99만 원 판매』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21:00), (4) KBS 뉴스9(경인) 프로그램 『‘가짜 원적외선 방출기’ 55억 사기 판매』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21:00), (5)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만병통치 전기제품’ 속여 55억 사기』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9일자 08:00) • MBC-TV : (1) MBC 정오 뉴스 프로그램 『3만 원짜리 99만 원에 ... 다단계 사기 일당 검거』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12:00),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신종플루 막는 첨단제품? 뜯어보니 ‘석회반죽’』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21:00) • SBS-TV : (1) SBS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99만 원짜리 신종플루 예방제품, 원가 ‘기막

조 정 대 상	혀'』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17:00), (2) SBS 8 뉴스 프로그램 『황당한 '만병통치' 제품...거짓말로 33배 폭리』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20:00), (3)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황당한 만병통치 전자제품...수천대 판매 '폭리'』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9일자 06:00) • YTN : YTN이브닝뉴스 프로그램 『싸구려 전자제품, 원적외선 방출 장치로 둔갑』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17:53) • 인터넷 경향신문 : 『건강웰빙제품 3만 원짜리 99만 원에 팔아』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 연합뉴스 : 『싸구려 전기제품 효능있다 속여 다단계사기』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가짜 원적외선 제품을 고급 건강제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KBS-1 · 2TV · MBC-TV · SBS-TV · YTN · 연합뉴스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인터넷 경향신문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후속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후속보도문의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 이행방법 • 인터넷 경향신문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후속보도문 게재

2012전북조정1~2		(정정 · 손해청구) 김○○ 對 군산신문
조 정 대 상	『○○중 · 고 폐교사태 전말은?』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7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군산 모 중 · 고등학교 경영권을 특정대학에 넘기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군산 ○○중 · 고 폐교사태...' 관련 정정보도문』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7일자 8면)	

2012광주조정7~8		(정정 · 손해청구) 유○○ 對 데일리안광주전라
조 정 대 상	(1) 『광양시 산림자원과, ○○○지키기 단체에 편법 지원 '의혹'』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2) 『광양시 "백운산 지키기가 요구해 편법 예산편성"』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신청인주장	광양시 산림자원과 공무원인 신청인이 예산 편법 지원과 관련해 특정 시민단체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76~177 (정정·손배청구) 1. 최○○, 2. 홍○○ 對 뉴스타운	
조 정 대 상	『조현우 경찰청장님! 한 번 들어보실래요?』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사건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대구 수성署’ 관련 기사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7일자)

2012서울조정178~179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주)○○교육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1500일의 눈물 보이지 않나요』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1월 28일자 9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학습지 교사들의 해고·사망 등을 보도하면서 마치 그 책임이 신청인 회사에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국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3일자 10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알려왔습니다] 1월 26일자 9면 ‘1500일의 눈물 보이지 않나요’ 제하 기사』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3일자)

2012서울조정180~181 (정정·손배청구)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2. 농업회사법인 순천○○○ 제과(주) 對 KB방수	
조 정 대 상	(1) 『순천○○○제과 공장 폐쇄?...○○○생협에 ‘음모?’』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8일자) (2) 『순천○○○제과 경영? ○○○생협 진정성 ‘의문’ ②』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9일자) (3) 『순천시, ○○○생협 ‘특혜 의혹’ ③』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필요없게 된 순천공장을 폐쇄하려고 고의로 영업정지 사건을 만들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82~183 (매체별 정정청구) ○○○코리아(주)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1) 『KTX 2구간(동대구~부산) 레일 ‘위험 징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8일자 1면), (2) 『탄성패드 대부분 불량... 설계기준 안지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8일자 10면) • 조선닷컴 : 『KTX 2구간(동대구~부산) 레일 ‘위험 징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납품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체결장치 속 탄성패드가 대부분 불량이며 설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84	(정정청구) 강운태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8시뉴스 '날' 프로그램 『검찰, 강운태 시장 수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6일자 20:02)
신청인주장	광주시장인 신청인의 아내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발견되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됐으나, 이 자금은 신청인의 부인이 상속받은 재산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8시뉴스 '날' 프로그램 『검찰, “강운태 내사 종결…일부 위법 확인”』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8일자 20:00)

2012경기조정3	(정정청구) 김○○ 對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1) 『광명 공무원 길들이기나 특정인 보복성 칼날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8일자 5면) (2) 『시의원 신분 감추고 불법 녹취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9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시의원인 신청인이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견인 요청을 거절당하자 담당 부서에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85~186	(정정·손배청구) 김○○ 對 뉴스앤조이
조 정 대 상	『○○대 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학대 교수인 신청인이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전북조정3	(정정청구) 군산경찰서 對 전북일보
조 정 대 상	『학교폭력이 아들 범죄자로 몰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6면)
신청인주장	군산경찰서가 절도 혐의 피의자 부모의 재조사 요청에 조사 불가 방침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부산조정5	(정정청구) 부산북부경찰서 對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교사에 압수 스마트폰 훔쳤다-고교생 무리한 수사에 입건』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스마트폰을 훔친 고교생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87	(정정청구) 1. (사)한국○○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2. (사)대한○○중고등학교장회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6000만 원 내면 강북, 1억 내면 강남 교사』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A10면)
신청인주장	돈 받고 사립학교 교직을 매매하는 불법 알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선닷컴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조선닷컴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며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6000만 원 내면 강북, 1억 내면 강남 교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3월 2일자 2면, 조선닷컴 3월 2일자)

2012서울조정188	(손배청구) 이○○ 對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배달’의 기사들 이젠 천천히 오세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9일자 22면)
신청인주장	배달원들의 난폭 운전 등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전북조정4~5	(정정·손배청구) 유한회사 ○○○○건설 對 서해타임즈
조 정 대 상	『정상시공? 계속되는 ‘부실시공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8일자 2~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공사한 건물이 부실 시공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89~19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김○○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호주 가면 용접으로 연봉 1억” 학원 말 믿었다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A10면) • 조선닷컴 : 『연봉 5000만 원 대기업 용접공, “호주선 1억 준다”는 말에 혹해서 결국』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용접학원이 “호주에 용접공으로 갈 경우 1억 원을 보장한다”고 광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호주서 용접사로 제2인생” 30·40대 늘어』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30·40대들, “연봉 1억 준다”는 말에 매일 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2012서울조정193~20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193~194), 네이트(195~196), 조인스엠에스엔(197~198), MBC(199~200), 동아닷컴(201~202), 매경닷컴(203~204)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네이트·조인스엠에스엔·매경닷컴 : (1) 『교원노조 단협 적용 앞둔 교장들

처 리 결 과	중앙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120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함
이 행 결 과	• CNBNEWS 광주전남본부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선정 ‘논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9일자) • 뉴스웨이 호남본부 : 『[정정보도] 전남대병원 상임감사에 병원장 친구 추천 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8일자) • 브레이크뉴스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병원장 측근 내정 ‘논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일자)

2012광주조정15~16 (정정·손배청구) 김 ○ 對 프리임경제	
조 정 대 상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후보 학연, 경력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전남대병원 홍보업무를 담당했던 신청인이 병원 상임감사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120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이 행 결 과	『전남대병원 상임감사에 병원장 친구 추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9일자)

2012서울조정205~219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신○○○對 조선일보(205~207), 조선닷컴(208~210), 네이버(211~213), 데일리안(214~216), 쿠키뉴스(217~219)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조선닷컴·네이버 : 『“통일후 처단” 살생부 만든 종북카페』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2월 15일자 10면, 조선닷컴·네이버 2월 15일자) • 데일리안 : 『‘언론인 살생부 작성’ 종북카페 운영자 검거』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 쿠키뉴스 : 『[사설] ‘살생부’ 만든 종북세력 보안법으로 엄단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종북(從北)’ 카페를 운영해 검찰에 검거됐다고 보도됐으나, ‘애북(愛北)’ 카페를 운영한 것이며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에 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조선닷컴·네이버 : 각 취하 • 데일리안·쿠키뉴스 :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반론보도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기타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2012서울조정220~22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김 ○ 對 빅뉴스(220~221), 아시아투데이닷컴(222~223), MBN(224~225), 인터넷 MBN(226~227)	
조 정 대 상	• 빅뉴스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에 병원장 친구 추천 맞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

조 정 대 상	일자) • 아시아투데이닷컴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후보 2명 병원장 동창』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 MBN : MBN 뉴스 10 프로그램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선출 ... ‘측근인사 의혹’』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9일자 22:00) • 인터넷 MBN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선출 ... ‘측근인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전남대병원 홍보업무를 담당했던 신청인이 병원 상임감사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빅뉴스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에 병원장 친구 추천 맞나’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3일자) • 아시아투데이닷컴 : 『[정정 보도]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후보 2명 병원장 동창』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일자) • 인터넷 MBN : 『[정정보도]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측근인사 의혹’...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3일자)

2012대구조정3	(정정청구) 배○○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1) 『평화롭던 산골 소송 회오리 “쑥대밭”』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일자 사회/교육면) (2) 『기자 노트』 편중보도 일삼는 어리석은 언론』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9일자 경북북부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광산업체가 중장비를 동원해 농로로 진입을 하는 등의 횡포로 평화롭던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민심이 흉흉해졌으며, 광산업체 측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광주조정17~19	(정정·반론·손배청구) 이낙연 對 장성군민신문
조 정 대 상	(1) 『이낙연 의원 공약이행 ‘거짓과 부풀리기’』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3일자 2면) (2) 『이낙연 의원 공약이행사항 홈페이지서 삭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0일자 2면)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공약 이행을 거짓으로 부풀리기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이낙연 의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5일자 2면)

2012대구조정4	(정정청구) 배○○ 對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취재수첩] 실종된 관광개발업체의 도덕성』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관광개발업체가 주민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으며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갖 편법과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등 최소한의 도덕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광산업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7일자 10면)

2012부산조정7~8	(매체별 정정청구) ○○초등학교 對 KNN, iKNN
조 정 대 상	• KNN : (1)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초등 ‘짱’ 폭력, 학교는 모른척』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4일자 20:25), (2) KNN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초등 ‘짱’ 폭력, 학교는 모른척』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5일자 07:40) • iKNN : 『[다시보기] 초등 짱의 폭행, 학교도 외면』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학교폭력을 방관하고, 상부기관에 축소 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유감표명 공문발송)

2012서울조정228~229	(매체별 손해청구) 김○○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유아 스마트폰 중독 심각…뇌균형 깨뜨린다』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8일자 20:00) • SBSi : 『[다시보기] 유아 스마트폰 중독 심각…뇌균형 깨뜨린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아기에게 스마트폰 동영상을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을 무단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며,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이행(모자이크처리 · 음성변조 등)하였다)

2012서울조정230~233	(매체별 반론 · 손해청구) 이○○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조폭 · 주폭(酒暴 · 술먹고 행패)보다 무섭다…官街 울리는 ‘블랙민원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월 21일자 B03면, 조선닷컴 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일삼는 ‘블랙 민원인’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부산조정9~10	(매체별 반론청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對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 부산일보 : (1)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1면) (2) 『총선 · 대선 앞두고 “언론 공정성 확립 필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2면) (3)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 운동』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1면) (4) 『경영진 “노조 주장 게재 안 된다” 발행 중단』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2면) (5) 『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2면) (6) 『박근혜 의원, 정수재단 이사장 직접 지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1면) (7)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범시민운동’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1면) (8) 『부산일보 노조, 사태 해결 ‘비대위’ 제안』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1면)

조 정 대 상	(9) 『독자와 약속 내팽개친 사측 뚫고 사원들이 윤전기 돌렸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3면) (10)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①] 김지태 씨 ‘박정희 혁명자금’ 거부하다 결국…』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3면) (11) 『88년 뜨거웠던 ‘6일간 전면파업’ 한국 언론사 ‘큰 획’』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5면) (12)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②] 군사정권, 김지태 씨 개인재산 강탈』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5면) (13) 『당시 파업, 6월 항쟁 · 언론자유 정신 계승』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5면) (14) 『편집권 위협 소유주 압력 맞서 자사 치부까지 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3일자 4면) (15)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④] ‘부정축재’ 유산, 박근혜 의원 승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3일자 4면) (16) 『때론 본지 논조 비판…진정한 언론자유 실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3일자 4면) (17) 『[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31면) (18) 『[데스크 칼럼] 애독자의 항의에 대하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23면) (19) 『“박근혜 의원 의혹 해소하라”,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재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5일자 1면) (20) 『부산 의원 절반 이상 “박근혜 정수장학회 손떼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2면) (21) 『박근혜 의원, 상식 이행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1면) (22) 『사유재산 강탈 비난 피하고 군부정권 치부 숨기려는 의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일자 6면) (23) 『잘못된 것 없다며 자진 사퇴 ‘이율배반적 행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일자 6면) (24) 『불투명한 이사장 · 이사 선임 구조, 공익재단 역할 못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6면) (25) 『‘박정희 사람들’ 두루 돌아가며 부산일보 · MBC 등 ‘요직’ 역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6면) (26) 『재단-부산일보 소유관계 개선이 진정한 편집권 독립』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8면) (27) 『‘공정보도 사수’ 권력과 싸움, MBC · YTN 등 ‘현재 진행형’』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8면) (28) 『장학금 수혜자 모임 청오회 · 상청회는 박근혜 지지세력』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6면) (29) 『매년 박 위원장에 후원금 내지만 그냥 친목단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6면) (30) 『정수재단 사회 환원 박근혜 적극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2면) (31) 『이사장 연봉이 1억 7천여만 원이라니, 공익재단 맞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6면) (32) 『정수재단 반환 시민연대 발족』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2면) (33) 『박근혜 또 ‘앵무새 발언’ 시민단체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2면) (34) 『정수재단 일방적 사장 임명 강행, 부산일보 노조 “출근 저지 투쟁”』 제하의 기사
---------	---

조 정 대 상	(2012년 1월 20일자 2면) (35) 『친박, 정수장학회 노골적 편들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5면) (36) 『‘제대로 뉴스데스크’ 네티즌 호응 폭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2면) • 인터넷 부산일보 : (1)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회원 촉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8일자) (2) 『총선 · 대선 앞두고 “언론 공정성 확립 필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3)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 운동』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4) 『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5) 『박근혜 의원, 정수재단 이사장 직접 지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6)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범시민운동’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7) 『[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 운동] 1. 기자들, 운전실로 가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8) 『[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 운동] 2. 88년 파업은 현재진행형』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9)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④ ‘부정축재’ 유산, 박근혜 의원 승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3일자) (10) 『[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11) 『[데스크 칼럼] 애독자의 항의에 답하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12) 『“박근혜 의원 의혹 해소하라”,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재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5일자) (13) 『부산 의원 절반 이상 “박근혜 정수장학회 손떼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14) 『부산일보 노조원 ‘정수장학회 사회회원’ 상경 투쟁, “박근혜 의원, 상식 이행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15) 『박근혜, 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 ‘정치 꿈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일자) (16)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3. 정수장학회, 누가 지배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17) 『정수장학회 역대 이사장 · 이사 면면 살펴보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18)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4. 겉으로 소유뿐, 속으로 편집 영향』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19)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5. 정수장학회는 거대한 집단』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20) 『정수재단 사회 회원 박근혜 적극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21)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6. 장학재단은 공공의 자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22) 『정수재단 반환 시민연대 발족』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23) 『박근혜 또 ‘앵무새 발언’ 시민단체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24) 『박근혜 의원, 정수장학회 노골적 편들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25) 『‘제대로 뉴스데스크’ 네티즌 호응 폭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단의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234	(반론청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對 네이버
조 정 대 상	(1)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8일자) (2) 『총선 · 대선 앞두고 “언론 공정성 확립 필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3)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 운동』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4) 『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5) 『박근혜 의원, 정수재단 이사장 직접 지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6)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범시민운동’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7) 『[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 운동] 1. 기자들, 운전실로 가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8) 『[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 운동] 2. 88년 파업은 현재진행형』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9)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④ ‘부정축재’ 유산, 박근혜 의원 승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3일자) (10) 『[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11) 『[데스크 칼럼] 애독자의 항의에 답하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12) 『“박근혜 의원 의혹 해소하라”,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재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5일자) (13) 『부산 의원 절반 이상 “박근혜 정수장학회 손떼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14) 『부산일보 노조원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상경 투쟁, “박근혜 의원, 상식 이행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15) 『박근혜, 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 ‘정치 꿈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일자) (16)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3. 정수장학회, 누가 지배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17) 『정수장학회 역대 이사장 · 이사 면면 살펴보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18)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4. 겉으로 소유뿐, 속으로 편집 영향』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19)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5. 정수장학회는 거대한 집단』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20) 『정수재단 사회 환원 박근혜 적극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21)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6. 장학재단은 공공의 자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22) 『정수재단 반환 시민연대 발족』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23) 『박근혜 또 ‘앵무새 발언’ 시민단체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24) 『박근혜 의원, 정수장학회 노골적 편들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25) 『‘제대로 뉴스데스크’ 네티즌 호응 폭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단의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기사제공언론사(부산일보)로부터 반론보도문을 전송받은 즉시,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인링크)되도록 함, 반론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처 리 결 과	에 네이버 뉴스홈의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하고, 조정대상기사(1)~(25)의 각 하단에 <이 기사에 대한 정수장학회의 반론보도문이 네이버 뉴스홈의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 있습니다. 클릭> 문구를 표시하고, 해당 문구를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링크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수장학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4일자)

2012서울조정235~238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한국○○연합회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밀착취재] 사라진 상조업체! 고객들의 돈은?』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4일자 08:30) • iMBC : 『[다시보기] [밀착취재] 사라진 상조업체! 고객들의 돈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4일자)
신청인주장	2012년 3월 상조업체가 무더기로 부도 및 파산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부산조정11~12	(매체별 반론청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對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 부산일보 : (1)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1면) (2) 『총선·대선 앞두고 “언론 공정성 확립 필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2면) (3)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 운동』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1면) (4) 『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2면) (5) 『박근혜 의원, 정수재단 이사장 직접 지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1면) (6)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범시민운동’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1면) (7) 『독자와 약속 내팽개친 사측 뚫고 사원들이 윤전기 돌렸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3면) (8) 『88년 뜨거웠던 ‘6일간 전면파업’ 한국 언론사 ‘큰 획’』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5면) (9)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②] 군사정권, 김지태 씨 개인재산 강탈』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5면) (10) 『[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31면) (11) 『[데스크 칼럼] 애독자의 항의에 답하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23면) (12) 『“박근혜 의원 의혹 해소하라”,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재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5일자 1면) (13) 『부산 의원 절반 이상 “박근혜 정수장학회 손떼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2면) (14) 『박근혜 의원, 상식 이행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1면) (15) 『잘못된 것 없다며 자진 사퇴 ‘이율배반적 행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일자 6면) (16) 『불투명한 이사장·이사 선임 구조, 공익재단 역할 못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6면) (17) 『‘박정희 사람들’ 두루 돌아가며 부산일보·MBC 등 ‘요직’ 역임』 제하의 기사 (2012

조 정 대 상	년 1월 11일자 6면) (18) 『재단-부산일보 소유관계 개선이 진정한 편집권 독립』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8면) (19) 『장학금 수혜자 모임 청오회·상청회는 박근혜 지지세력』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6면) (20) 『정수재단 사회 환원 박근혜 적극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2면) (21) 『이사장 연봉이 1억 7천여만 원이라니, 공익재단 맞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6면) (22) 『정수재단 반환 시민연대 발족』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2면) (23) 『박근혜 또 ‘앵무새 발언’ 시민단체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2면) (24) 『친박, 정수장학회 노골적 편들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5면) (25) 『‘제대로 뉴스데스크’ 네티즌 호응 폭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2면) • 인터넷 부산일보 : (1)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8일자) (2) 『총선·대선 앞두고 “언론 공정성 확립 필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3)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 운동』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4) 『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5) 『박근혜 의원, 정수재단 이사장 직접 지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6)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범시민운동’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7) 『[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 운동] 1. 기자들, 윤전실로 가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8) 『[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 운동] 2. 88년 파업은 현재진행형』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9)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④ ‘부정축재’ 유산, 박근혜 의원 승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3일자) (10) 『[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11) 『[데스크 칼럼] 애독자의 항의에 답하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12) 『“박근혜 의원 의혹 해소하라”,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재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5일자) (13) 『부산 의원 절반 이상 “박근혜 정수장학회 손떼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14) 『부산일보 노조원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상경 투쟁, “박근혜 의원, 상식 이행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15) 『박근혜, 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 ‘정치 꼼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일자) (16)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3. 정수장학회, 누가 지배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17) 『정수장학회 역대 이사장·이사면면 살펴보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18)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4. 겉으론 소유뿐, 속으론 편집 영향』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19)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5. 정수장학회는 거대한 집단』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20) 『정수재단 사회 환원 박근혜 적극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21)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6. 장학재단은 공공의 자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	---

조 정 대 상	(22) 『정수재단 반환 시민연대 발족』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23) 『박근혜 또 ‘앵무새 발언’ 시민단체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24) 『박근혜 의원, 정수장학회 노골적 편들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25) 『‘제대로 뉴스데스크’ 네티즌 호응 폭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단의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부산일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가장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수장학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2년 5월 4일자 2면, 인터넷 부산일보 5월 4일자)

2012부산조정13~15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여○○ 외 3인 對 부산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부산 프로그램 『악덕 사채, ‘피해 속출’』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4일자 21:30)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연루된 채권채무관계를 왜곡하여 신청인들이 악덕 사채업자인 것으로 보도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반론 · 손해청구 – 각 취하 ※ 이행방법 : MBC 뉴스데스크 부산 프로그램 말미에 2012년 3월 15일까지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 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
이 행 결 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악덕사채, ‘피해 속출’』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5일자 21:30)

2012서울조정239	(정정청구) ○○○○ 중앙도민회 對 이북도민연합신문
조 정 대 상	『중국정부는 탈북자 강제복송을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1면)
신청인주장	탈북자 복송을 반대하는 성명서에 신청인 단체 회장의 이름이 누락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성명서이자 광고에 해당하므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

2012서울조정240	(정정청구) 서귀포경찰서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설 자리 잃은 ‘제주해군기지’, 경찰력 남용 도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서귀포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관련 주민들에 대한 불법 체포와 연행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2012년 3월 12일(월) 9시부터 24시간 동안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강정마을 섹션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제주해군기지 경찰력 남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2일자)

2012서울조정241~242	(정정·반론청구) 주식회사○○○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1) 『○○, 수상한 부동산 매각 ‘흑자 꿈수’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1면) (2) 『[○○ ‘수상한 부동산 매각’ 왜?] 내달 회장연임 승인 주총 예정, 고배당 통한 ‘주가관리’에 신경』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전국의 지사와 전화국 등 부동산을 자신이 최대주주인 부동산개발 회사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빌려쓰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인터넷 한겨레에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동일기간 안에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1)~(2)의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4월 10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4월 9일자)

2012대구조정5	(정정청구) 배○○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잡음 많은 ○○광산 진입로, 새부지 물색』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7일자 사회/경제면 (경북))
신청인주장	광산 개발업체 대표인 신청인이 광산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에 실패해 우회도로 개설을 포기하고 제3의 진입로를 물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광주조정21~22	이낙연 對 전남희망신문 ^(21 손배청구) , 인터넷 전남희망신문(호남뉴스일번지) ^(21~22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전남희망신문 : 『기득권만의 특권-동원을 고발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7면) • 인터넷 전남희망신문(호남뉴스일번지) : 『<기고> 기득권만의 특권』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출판기념회에 영광군청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전남희망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비보도 사과표시) • 인터넷 전남희망신문(호남뉴스 일번지)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243~248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동아일보 ^(243~244) , 조선일보 ^(245~246) , 중앙일보 ^(247~248)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1) 『온라인선 ‘붉은 마우스’로 從北』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1면), (2) 『대한항공 기장, “직장은 北찬양 위한 돈벌이 수단”』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3면) • 조선일보 : 『연봉 1억4000 좌파경력 없는 그, 김정일을 찬미하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A03면) • 중앙일보 : 『종북 조종사 “직장은 주체사상 실현 위한 재정 지원자”』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과학사이트를 위장한 종북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동아일보 · 중앙일보 : 각 각하결정 (사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법하다) • 조선일보 :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경찰청 보안국 등 수사기관의 공식 브리핑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2012서울조정249	(정정청구)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 對 뉴스웨이
조 정 대 상	(1) 『[진단 1보] 총선 · 대선 앞둔 ‘국민생활체육회장’ 선거… “눈치 보이네”』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8일자) (2) 『[진단 2보]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뛰어들면 “박근혜가 웃을까?”』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0일자) (3) 『[단독 3보]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추천서’… “왜, 지○○가 도왔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1일자) (4) 『[단독 4보] 유정복-지○○, 국민생활체육회장 ‘선거 답합’… “부정선거 딱 걸렸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일자) (5) 『[단독 7보]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떠받든 “정신나간 종목회장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일자) (6) 『[단독 9보]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사실상 후보 등록’… “박탈시켜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4일자) (7) 『[기자수첩] 유정복이 “국민생활체육회장 포기 해야 하는 사유 6가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6일자) (8) 『[13보] 문광부,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대필문서면… “무효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6일자)

조 정 대 상	(9) 『[단독 14보]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등록… “누가 대행 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7일자) (10) 『[단독 15보] 규정도 모른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자격 미달 확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8일자) (11) 『[집중분석] 뒤끝이 짙었던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당선’』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12) 『[특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위임장, 문제있으면 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0일자) (13) 『[종합특집] 짜여진 각본에 놀아난 ‘국민생활체육회장 선거’』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1일자)
신청인주장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장 선거와 관련, 신청인 단체를 정치적으로 오염된 ‘구태 체육회’로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선출’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2012충북조정1~4	(매체별 정정청구) 진보신당충북도당 對 중부매일 ⁽¹⁾ , 인터넷 중부매일 ⁽²⁾ , 충청타임즈 ⁽³⁾ , 인터넷 충청타임즈 ⁽⁴⁾
조 정 대 상	• 중부매일 : 『연대 파열음… “제 갈 길 가자”』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7일자 1면) • 인터넷 중부매일 : (1) 『진보당 지분 흥덕갑? 충주?…아권연대 속앓이』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3일자), (2) 『총선연대 파열음… “제 갈 길 가자”』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6일자) • 충청타임즈 · 인터넷 충청타임즈 : 『여야, 선거연대 가능성 ‘희박’』 제하의 기사 (충청타임즈 2012년 2월 27일자 1면, 인터넷 충청타임즈 2월 26일자)
신청인주장	통합진보당을 진보당이라는 약칭으로 보도함으로써 정당 명칭이 유사한 신청인 정당이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중부매일 · 인터넷 중부매일 : 『‘통합진보당’ 약칭 ‘진보당’ 사용에 따른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부매일 2012년 3월 2일자 2면, 인터넷 중부매일 3월 1일자) • 충청타임즈 : 『<바로잡습니다> ‘통합진보당’ 약칭 ‘진보당’ 사용에 따른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일자 2면) • 인터넷 충청타임즈 : 『NG 바로잡습니다 - ‘통합진보당’ 약칭 ‘진보당’ 사용에 따른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일자)

2012서울조정250~251 (정정·손배청구) 유○○對 인터넷 아시아일보	
조 정 대 상	『○○, 남교사 여고생 체벌 문제 확산』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6일자)
신청인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여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252 (손배청구) 김○○對 TN	
조 정 대 상	화성인 X-파일 프로그램 『64화 - 이중생활녀 VS 얼음킬러녀』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9일자 24: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과거 모 클럽 댄스팀원으로 활동했을 때의 사진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253~254 (매체별 정정청구) 김○○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1) 『진단서 발급한 의사 “그 체형에서 나오기 힘든 MRI”, 병무청 징병 전담의 “본인 재검 장면 CCTV로 확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2일자 A01면), (2) 『차시장 아들, 치료기록 없어… 디스크 처음 안 것처럼 행동』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A03면) • 동아닷컴 :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진단서를 발급한 신청인이, “공개된 MRI 사진을 다시 보니 박 시장 아들의 체형에서는 나오기 힘든 사진”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4일자 A03면) • 동아닷컴 : 『[반론보도문] 2월 22일자 A1·3면』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4일자)

2012서울조정255~258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이성현對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비대위 親朴 면저 내치기?』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1년 12월 28일자 3면, 인터넷 문화일보 12월 28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새누리당 공천 개혁을 위한 탈당 권유 대상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259~260	(반론 · 손해청구) (병합) 이성현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1) 『朴, 이성현 의원 사법처리 수위 검토』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5일자) (2) 『이화영 · 정형근 등 4명 이르면 금주 기소할 듯』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검찰이 국회의원인 신청인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261	(반론청구) 이성현 對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박근혜 최대 외곽 조직 ‘국민희망포럼’의 사본오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검찰이 국회의원인 신청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중에 있고, 친박계에서 신청인의 총선 불출마를 종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262~267	(매체별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권○○ 對 KBS-1TV, KBSi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현직 경찰총경, ‘비리수사’ 무마 압력?』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22일자 21:00) • KBSi : 『[단독] 현직 경찰 총경, ‘비리수사’ 무마 압력?』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철거업체 대표인 고향 후배의 청탁을 받고 뉴타운 관련 비리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KBS-1TV : 경찰 수사 결과 신청인이 내사종결 또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이 7일 이내에 요청하면 7일 이내에 KBS 뉴스9 프로그램에 후속보도함 • KBSi : 경찰 수사 결과 신청인이 내사종결 또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이 7일 이내에 요청하면 7일 이내에 KBSi 홈페이지에 후속보도함

2012서울조정268~270	(병합) 장병완 對 노컷뉴스 (268 정정청구, 269~270 정정 ·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1) 『민주, 호남에서 ‘자동 물갈이’ 추진... 역풍 맞나?』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8일자) (2) 『‘광주 남구’ 장병완, 고교후배 회사 주식 투자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9일자)
신청인주장	민주통합당의 호남지역 공천개혁 관련 기사에서 신청인이 출마한 광주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달리 보도해 피해를 입었으며, 신청인이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획득한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장병완 의원, 부적절한 주식 투자한 사실 없어』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3일자)

2012서울조정271~274	(매체별 정정청구) (주)경기방송 對 일요서울 ⁽²⁷¹⁾ , 인터넷 일요서울 ⁽²⁷²⁾ , 네이버 ⁽²⁷³⁾ , 다음 ⁽²⁷⁴⁾
조 정 대 상	• 일요서울 : 『심○○ 회장의 경기방송, 코바코 직원에 성접대 제공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7일자 20~21면) • 인터넷 일요서울 · 네이버 · 다음 : 『경기방송, 코바코 직원에 성접대 제공 의혹』 제하의 기사 (인터넷 일요서울 2012년 2월 28일자, 네이버 · 다음 2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광고 수주를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직원에게 향응 및 성접대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일요서울 · 인터넷 일요서울 : 각 조정불성립결정 • 네이버 · 다음 : 각 취하

2012전북조정6~7	(정정 · 반론청구) 전북지방경찰청 對 전북일보
조 정 대 상	(1) 『여행사 대표 'X파일' 삭제 충격』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1일자 6면) (2) 『경찰, 총선 예비후보 출석 통보』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일자 1면) (3) 『총선에 휘둘린 여행사 비리 수사』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4일자 6면)
신청인주장	전북경찰청이 정관계 로비를 한 혐의자를 수사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전북경찰 여행사 수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5일자 2면)

2012부산조정16	(정정청구) 동아대학교 對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병원 수입 5년간 빼돌린 동아대재단 감사원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6일자 1면)
신청인주장	동아대의료원 시설 사용료를 교비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가중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275~277	(매체별 정정청구) 이종걸 對 동아일보 ⁽²⁷⁵⁾ , 동아닷컴 ⁽²⁷⁶⁾ , 채널A ⁽²⁷⁷⁾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민주, 안양서도 “불법모집” 충돌』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3월 2일자 A03면, 동아닷컴 3월 2일자) • 채널A : 뉴스A 프로그램 『3선 중진의원까지...민주 선거인단 대리등록 장면 포착』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일자 22:00)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동아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처 리 결 과	• 채널A : 뉴스A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이종걸 후보 “불법 없었다” 반박)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반론보도문의 본문은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반론보도문: 이종걸 후보 “불법 없었다” 반박』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3월 19일자 A03면, 동아닷컴 3월 19일자) • 채널A : 뉴스A 프로그램 『이종걸 후보 “불법없었다” 반박』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7일자 20:00)

2012경기조정6	(정정청구) 의료법인 ○○의료재단 對 인천신문
조 정 대 상	『○○병원 비리의혹 · 추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재단 운영비리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과 분쟁 중인 전 병원장의 고발장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대전조정1	(정정청구) 대전둔산경찰서 對 대전시티저널
조 정 대 상	『대전 일부 경찰,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 의혹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사전에 업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2012년 3월 19일 09:00부터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게재, 이로부터 3일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별도의 배너형태로 반론보도문의 제목이 계속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단 배너 위치와 크기 등은 피신청인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이 행 결 과	『둔산경찰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2012서울조정278~279	(정정 · 손해청구) 정○○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93만 원 유산 때문에...』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일자 A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어머니가 남긴 유산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 흥기로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내용 : 반론보도, 조선닷컴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조선닷컴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고, 조선닷컴 홈페이지 및 조정대상기사가 매개된 모든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함
이 행 결 과	『‘93만 원 유산 때문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A12면)

2012서울조정280~28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어버이들, 2. 신○○對 조선일보 ^(280~281) , 조선닷컴 ^(282~283) , 네이버 ^(284~285)
조 정 대 상	『“구속영장 발부하면 또 때리겠다” 反FTA 시위대, 종로쪽 2시간 소란』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12월 17일자 1면, 조선닷컴·네이버 1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286	(정정청구) 진안경찰서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전북 진안경찰서, 봐주기 수사 비난 일어』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진안군수의 도박사건과 관련, 도박자금 등을 축소하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 전북 진안경찰서, 도박 수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2012서울조정287~288	(정정·반론청구) 이○○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전북 진안경찰서, 봐주기 수사 비난 일어』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4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진안군수 도박사건과 관련, 단정적인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전북 진안경찰서, 도박 수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2012광주조정23	(정정청구) 담양군對 담양신문
조 정 대 상	『“베꼈다” “전혀 참조하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일자 1면)
신청인주장	담양군이 군민이 제출한 제안서를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24~25	(정정·손배청구) 전○○對 전광일보
조 정 대 상	『농지 오염 폐기물 천지된 함평천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7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지령이 양식 농장에서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농지 오염 폐기물 천지된 함평천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6일자 5면)
2012서울조정289~298	(매체별 조정·손배청구 전) ○○對TV조선(289~290), 인터넷일요시사(291~292), 인터넷TV조선(293~294), 조선일보(295~296), 조선닷컴(297~298)
조정대상	• TV조선 : 8시뉴스 '날' 프로그램 『[단독] 대통령 조카사위, 먹튀?』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일자 20:00) • 인터넷 일요시사 : 『MB조카사위 전○○의 꿈수』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6일자) • 인터넷 TV조선 : (1) 『3월 1일 8시뉴스 '날' 헤드라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일자), (2) 『[단독] 대통령 조카사위 공장 애물단지』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일자), (3) 『전○○, 주식 팔아 70억 차익』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일자) • 조선일보·조선닷컴 : 『180억 투자받은李大통령 조카사위, 주식 시세차익 70억 올리고 사업 접어』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3월 2일자 A10면, 조선닷컴 3월 2일자)
신청인주장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신청인이 회사를 차린 후 주식 매도 등으로 70억의 시세차익을 얻고 소위 '먹튀'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 TV조선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500만 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진실하며, 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인터넷 일요시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TV조선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진실하므로 정정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조선일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조선닷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정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TV조선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8시 뉴스 '날' 프로그램에서 시작 후 20분 내에 정정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낭독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으로 함 • 인터넷 일요시사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TV조선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특별취재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1)~(3)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조선닷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처 리 결 과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일요시사 : 『‘MB조카사위 전○○ 주식매각’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3일자)

2012서울조정299~306, 366~367	(매체별 조정 · 손배청구) (주)조선방송 對 한겨레(299~300), 인터넷 한겨레(301~302, 299~300과 병합), 전기신문(303~304), 인터넷 전기신문(305~306, 303~304와 병합), 뉴스엔뉴스(366~367)
조 정 대 상	• 한겨레 : (1) 『여당의원이 TV조선 ‘한반도’ 협찬 압력』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8일자 9면), (2) 『이제 여당 의원까지 종편 영업맨으로 나서나』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8일자 23면) • 인터넷 한겨레 : (1) 『[사설] 이제 여당 의원까지 종편 영업맨으로 나서나』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7일자), (2) 『새누리당 의원 “조선종편 협찬해라” 압박』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7일자) • 전기신문 · 인터넷 전기신문 : (1) 『발전6사 종편드라마에 거액 협찬』 제하의 기사 (전기신문 2012년 2월 13일자 2면, 인터넷 전기신문 2월 9일자), (2) 『현장 취재』 드라마 협찬과 권언유착』 제하의 기사 (전기신문 2012년 2월 13일자 19면, 인터넷 전기신문 2월 9일자) • 뉴스엔뉴스 : (1) 『정치인, 공기업들에 조선종편 <한반도> 협찬강요』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2) 『협찬 강요 의원은 권○○』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의 창사특집 드라마에 한전 및 발전사들이 협찬한 것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압력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전기신문 · 인터넷 전기신문 : 각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각 신청인 이익신청 (사유 :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으나 반론보도 결정만이 내려졌고, 신청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한다) • 뉴스엔뉴스 :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터넷 한겨레 경제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1)~(2)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전기신문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터넷 전기신문 홈페이지 초기 화면 중앙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1)~(2)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2012서울조정307~311	(매체별 조정청구) 한국수자원공사 對 오마이뉴스(307), 네이버(308), 네이트(309), 다음(310), 야후(311)
조 정 대 상	『물고기도 녹이는 ‘독극물’, 식수에 풀었다. 낙동강 8개보에 들어붓는 시멘트의 ‘진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사가 진행한 4대강 사업과 관련, 낙동강 8개보에 사용한 시멘트가 독극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오마이뉴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오마이뉴스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36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낙동강 8개보에 들어붓는 시멘트의 진실’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2012서울조정312~317 (매체별 조정 · 반론 · 손해청구) (병합) 김○○ 對 한겨레21, 인터넷 한겨레21	
조 정 대 상	『물 만난 인터넷 안전위대』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2년 1월 30일자 48~49면, 인터넷 한겨레21 1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언론사 대표인 신청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분단의 원흉이다” 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21 : 홈페이지 하단 「알립니다」 코너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하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인터넷 ○○신문’ 김○○ 대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2년 4월 16일자 목차, 10면, 인터넷 한겨레21 4월 13일자)

2012부산조정17~18 (정정 · 손해청구) 노○○ 對 부산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부산 프로그램 『악덕 사채, ‘피해 속출’』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4일자 21:30)
신청인주장	악덕사채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318 (정정청구)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對 로컬세계닷컴	
조 정 대 상	『인천시 LPG판매점 가격 담합, 탈세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인천시 LPG가스판매점들이 가격담합과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319~320	
(매체별 정정청구) 홍○○對 연합뉴스, 인터넷 The Korea Herald	
조 정 대 상	『○○○ Group head sentenced to 3-year prison term over slush funds』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그룹의 비자금 은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Gallery ○○ and its head Hong acquitted of stashing slush funds』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4일자) • 인터넷 The Korea Herald : 『Gallery ○○ head Hong acquitted of stashing slush funds』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2012서울조정321~324	
(매체별 정정청구) (사단)국○○○○○협회對 노컷뉴스 ⁽³²¹⁾ , 네이버 ⁽³²²⁾ , 네이트 ⁽³²³⁾ , 다음 ⁽³²⁴⁾	
조 정 대 상	(1) 『내신 1등급 정범이가 '전과 7범' 된 사연』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3일자) (2) 『○○○ ○○ 뛰쳐나온 15살 소녀 … 로데오거리 '무법자' 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의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가 청소년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노컷뉴스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노컷뉴스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청소년쉼터 운영 실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7일자)
2012대전조정2~3	
(기사별 정정청구) (병합)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對 대전시티저널	
조 정 대 상	(1)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상상초월'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4일자) (2)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없다면 '거짓말'』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7일자)
신청인주장	대전 지역 일부 경찰과 지역 내 불법 오락실이 유착 관계에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게재, 3일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별도의 배너형태로 반론보도문의 제목이 계속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1)~(2)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배너 위치와 크기 등은 피신청인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이 행 결 과	『대전지방경찰청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2012서울조정325	
(반론청구) 관악경찰서對 채널A	
조 정 대 상	뉴스A 프로그램 『보복 두려워한 거짓 진술에…경찰, 쿨하게 '훈방'』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0일자 22:00)

신청인주장	관악경찰서가 학교 폭력수사를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도 하지 않고 조사했고, 간단한 진술만으로 가해학생을 훈방조치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사실 보도로써 신청인의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A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반론보도문의 본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함

2012서울조정326~327	(정정·손배청구) 황○○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강제北送으로 만신창이…그때 날 도운건 한국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8일자 A10면)
신청인주장	탈북자인 신청인이 한국에 오기 전 조선족 남자에게 몸을 팔면서 노예처럼 살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300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탈북동포 황○○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1일자 A10면)

2012서울조정328~33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의)○○○의료재단 ○○○○병원對 내외일보, 인터넷 내외일보
조 정 대 상	『수술 도중 황급히 외부반출한 물건이 무엇인가』 제하의 기사 (내외일보 2012년 2월 29일자 7면, 인터넷 내외일보 2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병원이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수술기구를 대여했다가 반납한 것이 불법인 것처럼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내외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내외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내외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중간 이상)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즉시 계약 관계 포털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게재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전문병원, 수술기구 불법 반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일자)

2012서울조정332~334	(매체별 정정청구) ○○○○교육(주)對 KBS-1TV ⁽³³²⁾ , KBS ⁽³³³⁾ , 네이버 ⁽³³⁴⁾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무등록·부실 영어캠프』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25일자 21:30) • KBSI·네이버 : 『무등록 사설 영어캠프…애꿎은 학생만 골탕』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어캠프가 원어민 강사도 없이 광고한 것과 다르게 운영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KBS-1TV·KBSI : 각 조정불성립결정 • 네이버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335~336	(매체별 반론청구)(병합)(주)○○○하우징 對 도시재생신문, 인터넷 도시재생신문
조 정 대 상	『상계5구역 정비업체 ‘비리’ 따로 ‘정비사업’ 따로?』 제하의 기사 (도시재생신문 2012년 2월 29일자 8면, 인터넷 도시재생신문 2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상계5구역 재개발 정비업체인 신청인 회사의 대표와 임직원 대부분이 구속되어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도시재생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이 행 결 과	『‘상계5구역 정비업체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도시재생신문 2012년 4월 30일자 8면, 인터넷 도시재생신문 4월 16일자)

2012서울조정337	(정정청구) 1. ○○생명보험 주식회사, 2.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檢, 골드만삭스 ‘CDO 사기판매’ 의혹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들이 부채담보부증권(CDO) 사기판매 혐의로 골드만삭스 직원 9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골드만삭스 CDO사기판매 의혹 무혐의’ 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30일자)

2012서울조정338	(손배청구) 이성헌 對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조 정 대 상	『격전지 출마의원, 입법 활동 들여다봤더니』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8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면서 수정가결된 건수 등은 반영하지 않고, 대표발의건(98건) 중 4건만 통과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339~344	(매체별 손배청구) 하○○ 對 중앙일보 ⁽³³⁹⁾ , 온라인 중앙일보 ⁽³⁴⁰⁾ , 네이버 ⁽³⁴¹⁾ , 네이트 ⁽³⁴²⁾ , 다음 ⁽³⁴³⁾ , 인터넷 jbc ⁽³⁴⁴⁾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학원 없어 토요일·방학에서 수준별 수업, 선생님마다 학생 7~9명씩 맡아 멘토링, 올해 103명 중 96명 대학 진학』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9일자 2면) • 온라인 중앙일보·네이버·네이트·다음·인터넷 jbc : 『폐교 위기서 지역 명문고로 거듭난 경남 ○○○고』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9일자)
신청인주장	폐교위기였던 고교가 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지역명문고로 거듭났다고 소개하면서,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신청인이 재학시절 자폐증세가 있었고, 입학 때 최하위권이었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대구조정6~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손흥섭 對 서울일보, 인터넷 서울일보
조 정 대 상	• 서울일보 : 『구미시의원 운영 주유소 ‘말썽’』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9일자 13면) • 인터넷 서울일보 : 『“구미 ○○주유소 중장비에 경유 대신 등유 주입, 엔진고장 말썽”』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9일자)
신청인주장	구미시 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직원이 대형 크레인에 등유를 주입해 장비고장을 일으키고 난 후, “나 몰라라” 식의 안하무인식 대처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서울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인터넷 서울일보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구미시의원 주유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일보 2012년 3월 28일자 10면)

2012서울조정345~346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KBS 라디오의 ‘어이없는’ 실상, 부끄럽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3일자)
신청인주장	KBS 현 사장 부임 이후, 불공정 방송과 ‘막장 인사’로 인해 KBS 라디오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347~349	(정정·반론·손배청구) 서울○○○○연구소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1억2천만 원이면 돼요” 교사직 매매 현장 가보니』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국책사업기관임을 표방하면서 교사 채용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전북조정8~9	(정정·손배청구) 나병문 對 전북매일신문
조 정 대 상	『미성년자 고용 최규성 공천배제 위기』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3면)
신청인주장	김제시 시의원인 신청인의 딸과 부인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고용해 일당을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전북매일신문에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전북매일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 삭제,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이 행 결 과	『미성년자 고용 최규성 공천배제 위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전북매일신문 2012년 4월 5일자 2면, 인터넷 전북매일신문 4월 4일자)

2012서울조정350~35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 對 헤럴드경제,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 헤럴드경제 : 『이○○ 부친이 고소·고발당한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6일자 13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새누리 이○○ 비대위원 父親, 사기혐의 피소…왜?』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재생에너지업체의 법정관리인인 신청인이 ‘대주주 협박 및 주가조작 등을 통해 수백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소액주주 대표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헤럴드경제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헤럴드경제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중간이상)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즉시 계약 관계 포털사에 이 내용을 통보하여 게재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이○○ 부친 수백억 포탈 소액주주 주장’ 관련 정정 보도』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2년 4월 13일자 19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4월 13일자)

2012서울조정354~357	김○○ 對 YTN ^(354~356 정정·반론·손배청구) , 다음 ^(357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YTN : (1) 뉴스오늘 (1부) 프로그램 『청와대 근무 공무원 술값 시비 끝에 체포』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7일자 08:09), (2) 뉴스&이슈 (1부) 프로그램 『청와대 근무 공무원 술값 시비 끝에 체포』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7일자 13:52) • 다음 : 『청와대 근무 공무원 술값 시비 끝에 체포』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7일자)
신청인주장	청와대 파견공무원인 신청인이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YTN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00만 원,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 다음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2서울중재14 참조)] ※ 이행방법 • YTN : 뉴스7 프로그램에서 1회 정정보도, 뉴스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정정보도문의 본문을 낭독하고,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처리
이 행 결 과	• YTN : 뉴스7 프로그램 『‘청와대 행정관 사칭 소방공무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4일자 07:00)

2012제주조정1	(정정청구) 서귀포경찰서 對 제주의회소리
조 정 대 상	『망치로 내려치고, 기자내쫓고, 변호사 막고...』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구럼비 폭파 저지를 위해 시위를 하던 활동가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취재기자를 쫓아내고 변호사 접근을 막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358~359	(매체별 정정청구) ○○○ 미술회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1) 『봉화군 주민 눈치보기 행정 “도 넘었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1월 13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13일자) (2) 『봉화군 ‘눈치보기 행정’에 주민만 피해』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1월 30일자 14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30일자) (3) 『[취재파일] 봉화군 ‘눈치행정’ ... 들어온 기업도 내쫓는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1월 31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31일자)

조 정 대 상	(4) 『봉화군 운모광산개발 제동 명분없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2월 14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2월 14일자) (5) 『봉화군 ‘복지부동’ 지역갈등 부추긴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2월 24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광산개발사업자인 K사가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7일자 12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1월 13일자 ‘봉화군 주민 눈치보기 행정 “도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7일자)

2012서울조정360~361	(매체별 반론청구) 권○○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1) 『아이들이 읽을까 겁나는 다문화 ‘인식 개선’ 동화』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일자 A01면), (2) 『동화저자 “표현 순화 애썼지만 미처 다 못 살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일자 A02면) • 동아닷컴 : 『아이들이 읽을까 겁나는 다문화 ‘인식 개선’ 동화』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쓴 동화(‘까만 한국인’)의 곳곳에 아프리카 비하내용이 담겨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362~363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MB 낙하산 김인규, 청와대 청탁받고 함○○ 임명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3일자)
신청인주장	KBS 김인규 사장이 청와대의 청탁을 받고 KBS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임명했고, KBS의 교향악단 관련 부서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임원이나 직원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364~365	(반론·손배청구) 장○○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사람잡는 층간소음』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4일자 20:00)
신청인주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웃의 해결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충북조정5~8	(매체별 조정·손배청구) 정우택 對 충청리뷰, 충북인뉴스
조 정 대 상	『파경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 제하의 기사 (충청리뷰 2012년 3월 23일자 A06면, 충북인뉴스 3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충북도지사 재임시절 충북청년경제포럼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368~369	(매체별 정정청구) 강용석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 한국일보 : 『[이○○ 칼럼] BBK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A34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이○○ 칼럼/12월 29일] BBK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2008년 18대 총선에서 상대후보가 초등학교 교장에게 폭언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 :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6일자 2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12월29일자 34면 'BBK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칼럼』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5일자)

2012서울조정370~371	(조정·손배청구) (주)○○플랜 對 주간한국
조 정 대 상	『검찰 정권실세 A씨 조사 - 4~6개 기업 뒤통스 댄 정황 파악』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업이 정권 실세에게 뒤통스를 대주고 4대강 관련 공사 수주를 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검찰 정권실세 A씨 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4면)

2012서울조정372~377, 481~483, 535~540, 544~549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對 조선일보(372~374), 조선닷컴(375~377, 372~374과 병합), 연합뉴스(481~483), 한겨레(535~537), 인터넷 한겨레(538~540, 535~537과 병합), 머니투데이(544~546), e머니투데이(547~549)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소주 ‘○○○○’이 근육통 유발” 루머에 ○○주류 법적대응』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A10면) • 조선닷컴 : 『○○주류, 소주 ‘○○○○’ 관련 악의적 루머에 법적대응』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A10면)

조 정 대 상	년 3월 19일자) • 연합뉴스 : 『〇〇주류, “〇〇〇〇 음해 행위 못 참겠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 한겨레 : 『소주 〇〇〇〇 ‘물’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20면) • 인터넷 한겨레 : 『‘알칼리 환원수’ 소주 인체유해?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 머니투데이 : 『‘〇〇〇〇’ 악의적 루머 법적대응』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13면) • e머니투데이 : 『〇〇주류, ‘〇〇〇〇’ 악의적 루머..강력 대응』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특정 소주가 근육통을 유발한다는 루머를 퍼트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 · 조선닷컴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머니투데이 · e머니투데이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연합뉴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연합뉴스 : 홈페이지 경제면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〇〇주류 ‘〇〇〇〇’ 루머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2012서울조정378~380, 383~384, 392, 398~404	(매체별 조정청구) 서〇〇 對 뉴시스 ⁽³⁷⁸⁾ , 이뉴스투데이 ⁽³⁷⁹⁾ , 인터넷 중앙Sunday ⁽³⁸⁰⁾ , 중앙Sunday ⁽³⁸³⁾ , e머니투데이 ⁽³⁸⁴⁾ , YTN ⁽³⁹²⁾ , 동아닷컴 ⁽³⁹⁸⁾ , 인터넷 서울신문 ⁽³⁹⁹⁾ , 세계일보 ⁽⁴⁰⁰⁾ , 세계닷컴 ⁽⁴⁰¹⁾ , 한국일보 ⁽⁴⁰²⁾ , 인터넷 한국일보 ⁽⁴⁰³⁾ , 뉴스핌 ⁽⁴⁰⁴⁾
조 정 대 상	• 뉴시스 : 『[4·11총선] 비례대표 후보 183명…3.4대 1 경쟁률』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4일자) • 이뉴스투데이 : 『재산 박근혜 21억8천만 원, 한명숙 6천만 원』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 인터넷 중앙Sunday · 중앙Sunday : 『비례대표 후보 188명 42%인 79명이 여성』 제하의 기사 (인터넷 중앙Sunday 2012년 3월 25일자, 중앙Sunday 3월 25일자 1면) • e머니투데이 : 『[후보 분석] 비례대표 후보 20개 정당 188명…경쟁률 3.48대1』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4일자) • YTN :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D-16 비례대표 후보 점검』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26일자 15:41) • 동아닷컴 : 『[4·11총선 D-16] 20개정당 비례대표 후보 188명 확정… 23%가 병역 미필 稅체납 경력 26명』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 인터넷 서울신문 : 『[선택 2012 총선 D-16 비례대표 후보 분석] 총 20개 정당 188명 확정… 경쟁률 3.48대 1』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5일자) • 세계일보 : 『5명중 1명꼴 軍미필 · 전과자』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5면) • 세계닷컴 : 『비례대표 후보자 5명중 1명꼴 軍미필 · 전과자』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 한국일보 : 『비례대표 후보 188명 병역 · 전과 · 납세 · 재산 분석 - 22%가 군 면제 · 9명은 5년간 세금 0원』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A08면)

조 정 대 상	• 인터넷 한국일보 : 『[총선] 22%가 군 면제 · 9명은 5년간 세금 0원』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 뉴스핌 : 『19대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쟁률 3.48대 1』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인 신청인의 재산 신고액이 부채만 5억 원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실제 재산 신고액은 1억9천만 원이었다.
처 리 결 과	• 뉴시스 · 이뉴스투데이 · 인터넷 중앙Sunday · 중앙Sunday · e머니투데이 · YTN · 동아닷컴 · 인터넷 서울신문 · 세계일보 · 세계닷컴 · 한국일보 · 인터넷 한국일보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뉴스핌 :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뉴시스 : 『“[4 · 11총선]비례대표 후보 183명…3.4대 1 경쟁률”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30일자) • 이뉴스투데이 : 『[정정보도] 새누리당 서○○ 후보 재산신고액 정정 알림』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30일자) • 인터넷 중앙Sunday : 『“비례대표 후보 188명42%인 79명이 여성”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9일자) • 중앙Sunday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일자 정치면) • e머니투데이 : 『서○○ 새누리당 비례대표후보 재산 관련 보도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0일자) • YTN : 뉴스Q (1~2부) 프로그램 『선관위, 새누리당 서○○ 후보 재산 정정』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4일자 16:00) • 동아닷컴 : 『바로잡습니다』 3월 26일자 A10면』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6일자) • 인터넷 서울신문 : 『알림』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6일자) • 세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8일자 5면) • 세계닷컴 : 『[정정보도문] 선관위, 새누리 서○○ 비례대표 후보 재산 정정』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6일자) •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8일자 6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5일자)
2012서울조정381~382 (매체별 정정청구) 노○○ 對 KBS-1TV, KBS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수상한 영업 허가』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23일자 21:00) • KBS : 『강남 불법학원 영업 허가… ‘봐주기 행정’ 시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적법한 허가없이 학원을 운영한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385~386 (매체별 반론청구) (주)○○○○○ 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뒤편’ 중 · 고 참고서값… ‘타는’ 학부모 속』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3월 26일자 13면, 인터넷 경향신문 3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국사 참고서가 타 출판사에 비해 비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387~39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주)○○○○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채널A’ 취재차 운전노동자 ‘묻지마 해고’』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12월 29일자 12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채널A 취재차량 하청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운전기사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4시간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채널A 취재차 운전자 해고’ 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4월 17일자 12면, 인터넷 한겨레 4월 17일자)

2012서울조정391	(정정청구) 부천시 對 함께걸음
조 정 대 상	『일률적인 복지가 위기 가정 방치하고 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호 20~21면)
신청인주장	부천시가 운영하는 무한돌봄센터의 관계자가 정신질환 어머니 밑에서 감금·방치되고 있는 장애우 사례를 ‘함께걸음’에 제보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함께걸음에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에 넣어 함께 걸음 2012년 5월 호 목차란에 정정보도문 게재 지면과 함께 표시, 인터넷 함께걸음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호 목차, 29면)

2012광주조정26	(정정청구) 담양군 對 담양신문
조 정 대 상	『예산 없으면서 민가 사들여 주택집 짓겠다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4일자 1면)
신청인주장	담양군이 죽녹원 내에 주택집을 건축하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원주민의 사유재산인 민가를 매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담양군, 죽녹원 주택 구입 주택집 건축 추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일자 2면)

2012경기조정7~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안산도시공사 對 안산타임스, 인터넷 안산타임스
조 정 대 상	『도시공사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제하의 기사 (안산타임스 2012년 3월 2일자 2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3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사가 뚜렷한 성과없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특정 임원이 인사의 전횡을 휘두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안산타임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안산도시공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안산타임스 2012년 4월 26일자 2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4월 26일자)

2012서울조정393~39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 주식회사 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1) 『기상청 ‘특정업체 납품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10면), (2) 『2차례나 ‘부적격’ 판정 업체가 최종 낙찰』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12면), (3) 『기상진흥원, 납품 심사위원 평가 직전 교체』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8일자 14면) • 인터넷 경향신문 : (1) 『기상청 ‘특정업체 납품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2) 『기상청 ‘장비납품 특혜 의혹’ 갈수록 커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3) 『기상진흥원, 납품 심사위원 평가 직전 교체』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8일자)
신청인주장	기상청의 라이더(LIDAR) 장비 도입과 관련, 신청인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기상장비 도입’ 관련, ○○○○ 측 “특혜 없었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4월 19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4월 19일자)

2012경남조정10	(손배청구) 김○○ 對 통영인터넷뉴스
조 정 대 상	(1) 『○○사 대첩 ... ‘물러나라’에 ‘버티겠다’ - 이사장이 경남서 음란사진 보관 ‘폭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7일자) (2) 『○○사 감사진 “제대로 밝혀 달라” - 사법 당국에 고발, 경남도 감사 청구』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2일자) (3) 『끝 없이 불거지는 ○○사 이사장 횡포 - 부당해고, 월급 삭감에 ‘1인 천하’ 세상』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4일자) (4) 『도둑잡은 경찰을 제명?..이상한 ○○사 - 직인 강탈해간 이사장 횡포 ‘漸入佳境’, “추종세력 떠나라” 이○○이사 ‘단식’』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5일자) (5) 『○○사 평의회, 박○○ 이사장 사임 승인 - 버티다 버티다 만신창이로 퇴장』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임진왜란 순국선열 제향소의 이사장인 신청인의 비리 의혹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사건의 핵심과 관련이 없는 신청인의 나체사진을 수차례 언급하여 사생활을 침해당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기사삭제)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구체적 피해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 결정을 받아들이 수 없다)

2012전북조정10~11		(정정·손배청구) 함○○對 군산신문
조 정 대 상	(1) 『괴 유인물 유포 배후 ‘드러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0일자 1면) (2) 『[사설] 흑색선전 등 구태정치는 끝장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0일자 2면) (3) 『국회의원 선거 혼탁 양상』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7일자 3면)	
신청인주장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신청인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괴 유인물 유포의 배후세력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괴 유인물 유포 배후 ‘드러나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3일자 2면)	
2012서울조정395		(정정청구) 1. ○○캐피탈(주), 2. 박○○對 뉴스핌
조 정 대 상	『[기자수첩] ○○그룹에 ○○손보 매각? 업계는 ‘물음표’』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매물로 나온 손해보험사를 인수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 회사의 회장이 상가 사기분양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그룹, ○○손보 인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9일자)	
2012광주조정27		(정정청구) 토지영농조합법인對 전광일보
조 정 대 상	『함평군, 국고 보조금 눈먼 돈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5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영농조합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건설한 자원화시설센터 시설물에서 악취가 발생해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396~397		(정정·손배청구) 권○○對 시사IN
조 정 대 상	『수사 책임자가 조○○로부터 9억 원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4일자 14~18면)	
신청인주장	경찰 수사 책임자인 신청인이 단단계 사기 피의자로부터 9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후, 소극적인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남조정11		(정정청구) 주식회사 ○○주택건설對 거제타임즈
조 정 대 상	『사람 목숨 달렸는데 이거 정말 괜찮은거 맞나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 보강토 옹벽에서 물과 함께 흙이나 다른 입자까지 새어 나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속보] “물만 나왔지 흙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6일자)	

2012대전조정4~5, 16~1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이○○對 인터넷 놀외신문, 논산투데이
조 정 대 상	『논산경찰서 ‘계룡 모 신문사 대표 검거’』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일자)
신청인주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언론사 대표가 구속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계룡 모 신문사 대표’라고 표현하여 계룡신문사 대표인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놀외신문 및 논산투데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7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 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2012서울조정405~411	이○○對 국민일보(405~406 추후·손배청구), 쿠키뉴스(407~408 추후·손배청구), 네이버(409 추후청구), 네이트(410 추후청구), 다음(411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 국민일보 : 『초상권 사용료 횡령 의혹 가수노조 지부장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10면) • 쿠키뉴스·네이버·네이트·다음 : 『경찰, 초상권 사용료 횡령 의혹 가수지부장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前가수노조 지부장 횡령 의혹 ‘무혐의’』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2년 4월 11일자 8면, 쿠키뉴스·네이버·네이트·다음 4월 10일자)

2012서울조정412~415	이○○對 조선닷컴(412~413 추후·손배청구), 네이버(414 추후청구), 다음(415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가수노조 전 지부장 초상권 사용료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檢, 횡령혐의 전직 가수노조위원장 이○○씨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0일자)

2012대구조정8	(손배청구) 김○○對 경북일보
조 정 대 상	『‘농협캐피탈’ 사칭 사기대출 극성』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4면)
신청인주장	농협캐피탈 사칭 사기대출 관련 기사에 농협캐피탈 직원인 신청인의 광고 전단지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만 원, 부제소)

2012대구조정9~10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 마을회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1) 『봉화군 주민 눈치보기 행정 “도 넘었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1월 13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13일자) (2) 『봉화군 ‘눈치보기 행정’에 주민만 피해』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1월 30일자 14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30일자) (3) 『[취재파일] 봉화군 ‘눈치행정’ ... 들어온 기업도 내쫓는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1월 31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31일자) (4) 『봉화군 운모광산개발 제동 명분없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2월 14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2월 14일자) (5) 『봉화군 ‘복지부동’ 지역갈등 부추긴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2월 24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광산개발사업자 K사가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 홈페이지 사회면 지역소식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7일자 12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1월13일자 ‘봉화군 주민 눈치보기 행정 “도 넘었다”’, 제하기사』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7일자)
2012서울조정416~428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이○○ 對 KBS-1TV ^(416~417 추후·손배청구) , KBS ^(418~419 추후·손배청구) , MBC ^(420~421 추후·손배청구) , SBS ^(422~423 추후·손배청구) , 인터넷 MBN ^(424~425 추후·손배청구) , 네이버 ^(426 추후청구) , 네이트 ^(427 추후청구) , 다음 ^(428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 KBS-1TV : (1) KBS 뉴스9 프로그램 『억대 합의금 어디로?』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12일자 21:00), (2)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억대 합의금 ‘꿀꺽?’』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13일자 06:00), (3) KBS 뉴스 프로그램 『억대 합의금 ‘꿀꺽?’』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13일자 09:30) • KBSi : (1) 『경찰, 가수노조 ‘억대 초상권 합의금’ 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2) 『가수노조 ‘노래방 초상권료’ 횡령 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 iMBC : (1) 『‘노래방 초상권료’ 횡령 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2) 『노래방 반주기 초상권료 횡령 혐의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 SBSi : 『‘노래방 초상권료’ 횡령 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 인터넷 MBN·네이버·네이트·다음 : 『경찰, 노래방 초상권료 횡령 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KBS-1TV :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가수노조 위원장 횡령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2년

이 행 결 과	4월 18일자 06:00) • KBS1 : 『가수 노조위원장 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7일자) • iMBC : 『※ 알립니다 - '가수노조 위원장 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3일자) • SBS1 : 『[추후 보도문] '가수노조 위원장 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3일자) • 인터넷 MBN·네이버·네이트·다음 : 『검찰, 전 가수노조 위원장 횡령 '무혐의' 결정』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0일자)
---------	--

2012서울조정429~433	이○○對 인터넷YTN(429~430 추후·손배청구), 네이버(431 추후청구), 네이트(432 추후청구), 다음(433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노래방 초상권료’ 횡령 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전 가수노조 지부장 횡령 무혐의 결론』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2012서울조정434~438	이○○對 뉴시스(434~435 추후·손배청구), 네이버(436 추후청구), 네이트(437 추후청구), 다음(438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경찰, 노래방 초상권 사용료 횡령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前가수노조 지부장 횡령의혹 무혐의 결론』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0일자)

2012서울조정439~443	이○○對 연합뉴스(439~440 추후·손배청구), 네이버(441 추후청구), 네이트(442 추후청구), 다음(443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노래방 초상권료’ 횡령 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前 가수노조 지부장 횡령 무혐의 결론』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2012서울조정444~449	이○○對 데일리인(444~445 추후·손배청구), 네이트(446 추후청구), 다음(447 추후청구), 야후(448 추후청구), 파란(449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가수노조위원장, 가수 초상권 합의금 꿀꺽? 경찰소환』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검찰, 전 가수노조위원장 사기 횡령 ‘무혐의 판결’』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0일자)

2012서울조정450~454	이○○ 對 마이데일리(450~451 추후 · 손배청구), 네이버(452 추후청구), 네이트(453 추후청구), 다음(454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가수노조 前지부장, 초상권 사용료 1억8천만 원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가수노조 前지부장, 가수 초상권 사용료 횡령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2012서울조정455~459	이○○ 對 e머니투데이(455~456 추후 · 손배청구), 네이버(457 추후청구), 네이트(458 추후청구), 다음(459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예술인노조 가수지부장 초상권료 횡령 혐의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전 가수노조 위원장 횡령,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2012서울조정460~463	이○○ 對 인터넷 스포츠경향(460~461 추후 · 손배청구), 네이버(462 추후청구), 다음(463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가수노조위원장 이모씨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 중』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전 가수노조 위원장 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0일자)

2012서울조정464~468	이○○ 對 인터넷 스포츠조선(464~465 추후 · 손배청구), 네이버(466 추후청구), 네이트(467 추후청구), 다음(468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가수노조위원장, 가수 초상권 합의금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가수노조위원장 횡령혐의,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1일자)

2012서울조정469~474	이○○對 오마이뉴스 ^(469~470 추후 · 손배청구) , 네이버 ^(471 추후청구) , 네이트 ^(472 추후청구) , 다음 ^(473 추후청구) , 야후 ^(474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가수 노조 전 위원장, 초상권 사용료 횡령 혐의』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전 가수노조 위원장 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2012서울조정475~476	(매체별 정정청구) 김영환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2003년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집권당 김영환 의원 사찰』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4월 2일자 4면, 온라인 중앙일보 4월 2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2003년 주유소 업자의 세무청탁과 관련해 정부의 사찰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대전조정6~15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중도일보사對 중앙매일 ^(6~7) , 충민일보 ^(8~9) , 충청신문 ^(10~11) , 대전투데이 ^(12~13) , 충남일보 ^(14~15)
조 정 대 상	• 중앙매일 : 『예산벚꽃마라톤대회 비리얼록, 수년간 감사한번 않고 눈감아줘, 전형적인 공직 간의 토착비리, 검찰조사의뢰 귀추주목...』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2면) • 충민일보 : 『예산군, 벚꽃축제 공동주최社 수년간 감사 ‘無’ ...뒤 봐주기(?)』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1면) • 충청신문 : 『예산벚꽃 마라톤대회 비리 얼록』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14면) • 대전투데이 : 『예산 벚꽃마라톤대회 특정업체 봐주기 행사 ‘눈총’』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3면) • 충남일보 : 『예산 벚꽃마라톤대회, 비리로 얼룩』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예산 벚꽃 전국마라톤대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투자는 하지 않은 채 광고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챙겨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중앙매일 · 충민일보 · 대전투데이 · 충남일보 : 각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고발 취하 노력) – 각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원한다)

처 리 결 과	• 충청신문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고발 취하 노력) – 양 당사자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정정보도 외에 손해배상을 원하며, 피신청인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정정보도문의 일부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광주조정28~29	(정정·반론청구) 정○○ 對 CNN21
조 정 대 상	『강진군 수협, 금융실거래법 나몰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수협에 근무하는 신청인이 예금주 허락없이 예금을 인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477~480	(매체별 손해청구) 김○○ 對 이데일리 ⁽⁴⁷⁷⁾ , 인터넷 이데일리 ^(478, 477과 병합) , 네이버 ⁽⁴⁷⁹⁾ , 모네타뉴스 ⁽⁴⁸⁰⁾
조 정 대 상	• 이데일리 : 『“경륜 보고 뽑아야제” vs “새누리 안 좋아해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일자 2면) • 인터넷 이데일리·네이버·모네타뉴스 : 『4·11 총선 승부처(12) 김해 을 김태호 대 김경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일자)
신청인주장	새누리당 김태호 국회의원 후보와 인사를 나누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이데일리·인터넷 이데일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200만 원,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중재부의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네이버·모네타뉴스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충북조정9~1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충도일보사 對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조 정 대 상	• 충청일보 : 『예산군 특검업체 봐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2면) • 충청타임즈 : 『예산벚꽃전국마라톤대회 후원금 말썽』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1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예산 벚꽃 전국마라톤대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투자는 하지 않은 채 광고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챙겨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484	(반론청구) (주)○○ 對 KBS-2TV
조 정 대 상	추적 60분 프로그램 『기적의 ‘암 치료제’ 인가 ‘○○’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21일자 23:05)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건강보조식품에 항암효과가 없고, 이 제품을 신뢰한 난소암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추적 60분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진행자의 멘트로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을 이용
이 행 결 과	추적 60분 프로그램 『“기적의 암 치료제인가? ○○의 진실(2012.3.21.)”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7일자 23:15)

2012서울조정485~50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 對 중앙일보(485~486), 온라인 중앙일보(487~488, 485~486과 병합), 네이버(489~490), 네이트(491~492), 줌닷컴(493~494), 인터넷 jbc(495~496, 485~486과 병합), 매경닷컴(497~498), 다음(499~500), 야후(501~502)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인터넷 jbc : 『여교수와 바람피우다 전역도 못하는 중령』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4월 2일자 17면, 인터넷 jbc 4월 2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줌닷컴 : 『女교수와 바람피우다 걸린 50대 중령, 전역하려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일자) • 매경닷컴 · 다음 · 야후 : 『50대 중령, 불륜 女교수 이메일 훔쳐보다 ‘그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일자)
신청인주장	장교인 신청인의 전역 신청이 거부된 것은 모 여 교수의 음해성 고소 때문이었는데, 여 교수와의 외도가 원인이었다고 잘못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 중앙일보 · 온라인 중앙일보 · 인터넷 jbc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네이버 · 네이트 · 줌닷컴 · 매경닷컴 · 다음 · 야후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 · 인터넷 jbc : 온라인 중앙일보와 인터넷 jbc 홈페이지 사회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 줌닷컴 : 기사제공언론사(온라인 중앙일보)가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한 후 2일 이내로 조정대상기사를 기사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검색되지 않도록 함 • 매경닷컴 · 다음 · 야후 : 조정대상기사를 기사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검색되지 않도록 함
이 행 결 과	• 중앙일보 · 온라인 중앙일보 · 인터넷 jbc : 『‘전역도 못하는 중령’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4월 24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 인터넷 jbc 4월 24일자)

2012서울조정503~504, 507~50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1. 환경부, 2. 국토해양부 對 경향신문(503, 507), 인터넷 경향신문(504, 508)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흙탕물 된 남한강』 제하의 사진 (2012년 4월 6일자 13면) • 인터넷 경향신문 : 『[포토뉴스] 흙탕물 된 남한강』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6일자)
신청인주장	한강 일대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전북조정12	(추후청구) 박○○ 對 전주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마약에 리베이트 ‘비리종합병원’』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2일자 21:00)
신청인주장	병원장인 신청인이 항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복용하고, 제약회사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505~506, 509~510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1. 환경부, 2. 국토해양부 對 한겨레(505, 509), 인터넷 한겨레(506, 510)
--------------------------	---

조 정 대 상	• 한겨레 : 『4대강 공사 뒤 '흙탕물 남한강'』 제하의 사진 (2012년 4월 6일자 12면) • 인터넷 한겨레 : 『4대강 공사 뒤 '흙탕물 남한강'』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6일자)
신청인주장	남한강 일대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2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4월 26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4월 26일자)

2012서울조정511~514, 552~553	1. ○○○시장노점연합회, 2. 김○○ 對 KBS-1TV ^(511~514) 기사별 조정·손배청구, 중앙일보 ^(552~553) 조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KBS-1TV : (1) KBS 뉴스9 프로그램 『○○○시장 노점상 손수레 강매·폭리 '비리'』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8일자 21:00), (2) 취재파일 4321 프로그램 『○○○시장의 '마피아'』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8일자 22:30) • 중앙일보 : 『자릿세 150만·통행세 8만 원 왕 노릇한 ○○○상가회』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2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시장 노점상들에게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신행 손수레를 강매하여 폭리를 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515~520, 554~555	(매체별 조정·손배청구) ○○○시장노점연합회 외 2인 對 뉴스1 코리아 ^(515~516) , 뉴시스 ^(517~518) , 온라인 중앙일보 ^(519~520) , e머니투데이 ^(554~555)
조 정 대 상	• 뉴스1 코리아·온라인 중앙일보·e머니투데이 : 『○○○시장 노점상 등친 91명 무더기 검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 뉴시스·온라인 중앙일보 : 『보호비·자릿세뜯고... 손수레 팔고... ○○○시장 노점갈취 백태』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시장 노점상들에게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신행 손수레를 강매하여 폭리를 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부산조정19	(정정청구) 주식회사○○테크 對 부산KBS-1TV
조 정 대 상	(1) KBS 뉴스9 프로그램 『대학생, 취업준비생 노린다』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3일자 21:00) (2) KBS 뉴스9 프로그램 『조직적으로 결탁해 대출 유도』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4일자 21:00)
신청인주장	서울시 송파구 지역에서 성행하던 불법 피라미드업체들이 부산에서 세를 늘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 부산지점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KBS 뉴스9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 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 함
이 행 결 과	KBS 뉴스9 프로그램 『○○테크, ‘거마 대학생’ 과 무관』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21:00)

2012서울조정521	(손배청구) 민○○ 對 TVN
조 정 대 상	TVN 화성인 X-파일 프로그램 『64화 - 이중생활녀 VS 얼음킬러녀』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9일자 24:00)
신청인주장	‘낮과 밤이 다른 이중생활 여자’ 라는 타이틀로 모 클럽 댄스팀을 소개하면서 이와 상관없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522	(정정청구) 1. 대구○○초등학교, 2. 황○ 對 KBS-2TV
조 정 대 상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초등교사 엽기체벌 논란』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일자 08: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 소속 교사가 점심 배식 후 남은 음식을 비빔밥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강제로 먹이고, 학생들에게 발마시지를 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 멘트 중 배경화면은 진행자의 낭독 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초등교사 엽기 체벌 논란’ 반론 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30일자 08:00)

2012서울조정523~524	(정정 · 반론청구) 심○○ 對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방송 심의 하는 사람이 방송국 자문위원?』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7일자 4면)
신청인주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특별위원인 신청인이 KBS총선방송 자문단장을 맡은 것에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위원회 규정 상 겸직에 문제가 없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525~528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정진후 對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無자격자를 비례대표 명부에 올린 통합진보당』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2년 4월 3일자 33면, 인터넷 문화일보 4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공립학교 교사직에 대한사직원이 반려되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자격(통합민주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직원이 접수된 이상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529~530, 587 박○○ 對 뉴스앤조이(529~530 정정 · 반론청구, 587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유명 목사 이름 내걸고 사기 행각?』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유명 목사의 명의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531~534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주)○○○ 對 KBS-1TV, KBSI	
조 정 대 상	(1) KBS 뉴스9 프로그램 『○○○시장 노점상 손수레 강매 · 폭리 ‘비리’』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8일자 21:00) (2) 취재파일 4321 프로그램 『○○○ 시장의 ‘마피아’』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8일자 22:3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시장 상인에게 공급한 손수레가 다른 제품에 비해 비싸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회사의 제품과 기성제품은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541, 550 (매체별 정정청구) ○○노동조합연맹 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사찰 변호사비 4,000만 원 임태희 “제3노총이 준 돈”』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2일자 21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사찰 변호사비 4,000만 원, 임태희 “제3노총 인사 돈”』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연맹(제3노총)에 참여한 인사들이 민간인 사찰의 피의자들을 위해 변호사비를 지원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향신문 : 경향신문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함,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제3노총 인사 사찰 변호사비 지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4월 30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4월 29일자)

2012서울조정542, 551, 610	(매체별 정정청구) ○○노동조합연맹 對 한겨레 ⁽⁵⁴²⁾ , 인터넷 한겨레 ⁽⁵⁵¹⁾ , 노컷뉴스 ⁽⁶¹⁰⁾
조 정 대 상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1) 『제3노총 출범, 이○○ 전 비서관 관여 ‘쫓불시위’ 잡고자 지원관실 만들어』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4월 11일자 1면, 인터넷 한겨레 4월 11일자), (2) 『제3노총 출범에 ‘정부 개입’…한국노총 대신 파트너로』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4월 11일자 11면, 인터넷 한겨레 4월 11일자) • 노컷뉴스 : 『고용노동부, 낯뜨거운 ‘일감몰아주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연맹(제3노총) 설립에 정부측 인사가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각 조정불성립결정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노컷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노컷뉴스 : 『‘○○노총 설립 법적효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4일자)

2012경기조정9	(정정청구) 김현문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1) 『자유선진당 김현문(청주상당) 출당조치』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5일자) (2) 『자유선진당 김현문 출당조치…정우택 ‘환호’ 홍재형 ‘당혹’』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자유선진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충북조정13, 16~17	(매체별 정정청구) 김현문 對 뉴시스 ⁽¹³⁾ , 청주MBC-TV ⁽¹⁶⁾ , CJB-TV ⁽¹⁷⁾
조 정 대 상	• 뉴시스 : (1) 『선진당, 공천장 반납 김현문 ‘출당 조치’』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5일자), (2) 『선진당, 청주 상당 김○○ · 김○○ 공천』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7일자) • 청주MBC-TV :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시끄러운 정치1번지』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5일자 21:20), (2)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시끄러운 정치1번지』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6일자 07:30) • CJB-TV : (1) 프로그램 CJB 8 뉴스 프로그램 『정우택 후보 고발』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5일자 20:25), (2) 출발 모닝와이드 (2부) 프로그램 『정우택 후보 고발』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6일자 07: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자유선진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뉴시스 : 조정불성립결정 • 청주MBC-TV · CJB-TV : 각 취하

2012충북조정14~15	(정정·손배청구) 김현문 對 동양일보
조 정 대 상	『[오늘의 주장] 퇴출과 은퇴를 구분 못하는 정치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자유선진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되었고, 직지찾기운동본부장 재임시절 직지상 표권을 몰래 등록해 사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543	(정정청구) 김현문 對 네이트
조 정 대 상	(1) 『선진당, 공천장 반납 김현문 '출당 조치'』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5일자) (2) 『선진당, 청주 상당 김○○·김○○ 공천』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자유선진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제주조정2	(정정청구) 이○○ 對 제주의소리
조 정 대 상	『시행사가 3.3㎡당 750만 원 평가 요구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아파트 건설부지 ○○○○에 시행사의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한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보도하여 평가사인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위 기사에 대해 ○○○○감정의 이 모 평가사 측이 수정정보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 평가사 측의 주장 내용을 아래와 같이 씁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2012대전조정18~19	(반론·손배청구) 남○○ 對 중도일보
조 정 대 상	『교수 학위에 의문제기 졸업생 제보편지 '곤혹'』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6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재직 중인 학과 졸업생이 신청인의 학위취득 의혹에 대해 제보했는데, 신청인이 이와 관련한 언론사의 취재 요구를 거부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인터넷 중도일보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인터넷 중도일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교수 학위에 의문 제기 졸업생 제보편지 '곤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도일보 2012년 4월 26일자 6면, 인터넷 중도일보 4월 26일자)

2012서울조정556~55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1) 『가입자 4200만 ○○○○이 뚫렸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1면), (2) 『악성코드 심은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면 원격 해킹에 당할 가능성』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18면) • 온라인 중앙일보 : (1) 『“○○○○ 뚫렸다” 600만 원 보낸 후 전화기 보니』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2) 『악성코드 심은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면 원격 해킹에 당할 가능성』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의 보안이 ‘메신저피싱’에 뚫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600만 원 송금 사기 친구사칭 사건으로 수사』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5월 25일 자 사회면, 온라인 중앙일보 5월 25일자)

2012서울조정558~562	(매체별 손배청구) 정○○ 對 한국일보 ⁽⁵⁵⁸⁾ , 인터넷 한국일보 ⁽⁵⁵⁹⁾ , 네이버 ⁽⁵⁶⁰⁾ , 네이트 ⁽⁵⁶¹⁾ , 다음 ⁽⁵⁶²⁾
조 정 대 상	• 한국일보 : 『카드사기 정보 유출… 모든 걸 잃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2일자 24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카드사의 정보 유출 때문에 다 잃었다… 어느 여직원의 절규』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2일자)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과거’ 때문에… 총애받던 직장인의 몰락』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용카드사의 개인신용정보 무단공개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제보를 한 신청인의 파산 사실을 함께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한국일보 · 인터넷 한국일보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유감표명)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563~564	(매체별 정정청구) 전주완산경찰서 외 2인 對 시사저널,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국제 사기 앞에서 경찰은 ‘우왕좌왕’』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2년 4월 11일자 32~34면, 인터넷 시사저널 4월 12일자)
신청인주장	‘베트남 카지노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등 수사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시사저널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시사저널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9일자 7면) • 인터넷 시사저널 : 『‘베트남 호텔 카지노 사기사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0일자)
---------	---

2012충북조정18~23	(매체별 정정청구) ○○빌리지입주자대표회의의 對 동양일보 ⁽¹⁸⁾ , 인터넷 동양일보 ^(19, 18과 병합) , 충청일보 ⁽²⁰⁾ , 인터넷 충청일보 ^(21, 20과 병합) , 충청투데이 ⁽²²⁾ , 인터넷 충청투데이 ^(23, 22와 병합)
조 정 대 상	• 동양일보 · 인터넷 동양일보 : 『“특정업체 염두 자격 제한” 충북건설업체 반발』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2면) • 인터넷 동양일보 : 『충북 전문건설업계, ○○○○빌리지 보수공사 입찰자격을 반발』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5일자) • 충청일보 · 인터넷 충청일보 : 『‘이상한 입찰제한’ 지역업체 반발』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2년 3월 26일자 12면, 인터넷 충청일보 3월 25일자) • 충청투데이 · 인터넷 충청투데이 : 『청주 ○○○○빌리지 재도장 입찰자격 논란』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2년 3월 26일자 9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3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동양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충청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충청투데이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동양일보 · 인터넷 동양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2년 4월 30일자 4면, 인터넷 동양일보 4월 30일자) • 충청일보 : 『청주 ○○○○빌리지 보수공사 입찰자격에 관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0일자 12면) • 인터넷 충청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9일자) • 충청투데이 · 인터넷 충청투데이 : 『청주 ○○○○빌리지 보수공사 입찰자격에 관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2년 5월 21일자 7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5월 21일자)

2012경남조정12~15	(매체별 추후·손배청구)(병합)이○○對 경남매일, 인터넷 경남매일
조 정 대 상	(1) 『“우리 이장님 왜 이러세요”』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7월 26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7월 25일자) (2) 『의령 ○○ 마을이장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8월 5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8월 4일자) (3) 『이장 아들, 타지 단감 불법거래』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8월 8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8월 7일자) (4) 『녹차단감 둔갑 시킨 마을 이장 검거』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11월 24일자 6면, 인터넷 경남매일 11월 23일자) (5) 『[현장에서] 뽀뽀한 국고 보조금 착복자들』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12월 12일자 15면, 인터넷 경남매일 12월 11일자)
신청인주장	마을 이장인 신청인이 국고보조금 사업인 녹색 농촌마을 체험장을 설치하면서 시공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남매일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통상의 제목크기로 게재,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의령 ○○마을 A이장』 추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2년 4월 27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4월 26일자)

2012서울조정565	(정정청구) 한국○○중개사협회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부동산중개 공제금 유명무실... 운영비로 '탕진'』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23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중개업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공제금을 운영비 등으로 탕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566	(손배청구) 임○○對 MBN
조 정 대 상	MBN 뉴스8 프로그램 『시흥 여성 살해사건... “평소 부부싸움 잦아”』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17일자 20:00)
신청인주장	토막살인사건이 일어난 동네 주민인 신청인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약속과 달리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을 변조 없이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를 이미 삭제하였고,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하였으며 심리중에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손해배상 할 수 없다)

2012서울조정567~568	(매체별 정정청구) 1. 환경부, 2. 국립환경과학원 對 경향신문, 한겨레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1) 『방사성물질 유입 보고서, 국정원 외압으로 폐기』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8일자 10면), (2) 『환경과학원의 ‘거짓 해명’』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9일자 14면) • 한겨레 : (1) 『국정원 ‘후쿠시마 방사능 유입 경고’ 막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8일자 1면), (2) 『MB 원전세일즈 탈날까봐? 국정원 ‘일 방사능 경고등’ 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8일자 4면), (3) 『국정원, 방사능 위험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8일자 31면)
신청인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방사성물질 유입보고서가 국정원의 외압으로 폐기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환경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569~570	(반론·손배청구) 최○○ 對 CTS기독교TV
조 정 대 상	CTS 뉴스 프로그램 『CTS음해, 지난 3년』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6일자 21:50)
신청인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CTS(기독교TV)와 CTS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571~572	(정정·반론청구) 1. ○○○ 어촌계, 2. 정○○ 對 MBN
조 정 대 상	현장르포 특종세상 프로그램 『18억 미스터리, 어촌마을의 불편한 진실』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30일자 22:00)
신청인주장	어촌계와 비대위의 갈등과 관련, 어촌계장이 마을주민을 감금했다는 등 비대위측의 사실 아닌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현장르포 특종세상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 보다 빠르지 않게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고,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 프로그램의 자료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현장르포 특종세상 프로그램 『‘바지락 어촌 마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4일자 22:00)

2012경기조정10	(정정청구) 1. ○○○○ 주식회사, 2. 주식회사○○○○ 對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1) 『‘인천 폐석회 피해 담보’ 수천억 타지에 투자』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7일자 1면) (2) 『3천억 출자한 ○○○ “세금 낼 돈은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9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2.회사의 모기업인 신청인1.회사가 부동산 가치를 올려 대출받을 목적으로 기업분할을 실행하였고, 신청인2.회사는 세금징수예고 통지를 받고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모기업의 추가 출자를 받은 후에야 징수유예신청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9일자 3면)

2012광주조정30~31	(매체별 정정청구) 이○○ 외 5인 對 남도일보, 인터넷 남도일보
조 정 대 상	『○구 세무2과 직원, 구청장 행동 본받나』 제하의 기사 (남도일보 2012년 4월 20일자 8면, 인터넷 남도일보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구청 세무담당 공무원인 신청인들이 취재 기자의 취재를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573	(정정청구) (주)○○○○○○○ 對 티브로드 서울뉴스
조 정 대 상	티브로드 서울뉴스 프로그램 『대형 학원 교재 강매... 공정위 조사』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28일자 17:47)
신청인주장	프렌차이즈 학원을 운영하는 신청인 회사가 가맹 학원에게 수업 진도와 관계없이 매달 교재를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인터넷 티브로드 서울뉴스에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인터넷 티브로드 서울뉴스 : 『‘대형학원 교재 강매’ 관련 후속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7일자)

2012서울조정574~579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한국철도공사 對 서울경제, 인터넷 서울경제
조 정 대 상	『코레일 사장님, 이거 아십니까』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2년 4월 16일자 39면, 인터넷 서울경제 4월 15일자)
신청인주장	한국철도공사가 구미복합역사 인근에 지하주차장을 짓겠다고 약속한 후,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미준공 구미복합역사 조만간 정상화』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2년 5월 4일자 27면, 인터넷 서울경제 5월 3일자)

2012서울조정580	(정정청구) 성무용 對 티브로드 중부방송
조 정 대 상	(1) 천안뉴스 심층취재 프로그램 『충남 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3파전’』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18일자 18:00) (2) 천안뉴스 심층취재 프로그램 『충남 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3파전’』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19일자 07:00)
신청인주장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서 천안시장인 신청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천안뉴스 심층취재 프로그램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7일자 07:00)

2012서울조정581~582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무주군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평생 모은 자료 6,000여 점 기증 … 이○○ 씨, 공예정보센터 설립』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4일자 27면, 온라인 중앙일보 4월 4일자)
신청인주장	무주군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공예정보센터를 민간 주도로 설립한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온라인 중앙일보에 알림기사, 부제소) ※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 홈페이지 뉴스 문화면 기사 중앙 목록에 알림기사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 클릭 시 알림기사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알림기사문은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무주군 공예정보센터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온라인 중앙일보 2012년 5월 7일자)

2012서울조정583~58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이○○ 對 헤럴드경제,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1) 『무상보육 어린이집만 배불렀다』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2년 4월 18일자 1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4월 18일자) (2) 『이중장부 쓰고 현금만 받고…원장 손에서 놀아난 정부』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2년 4월 18일자 3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4월 18일자) (3) 『양질의 교육위한 최소한의 편법』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2년 4월 18일자 3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이 정부보조금 지원 이후, 교육비를 올려 받고 이중장부를 관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헤럴드경제 홈페이지 경제면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1)~(3)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서울 방배동 Y유치원 교육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2년 5월 23일자 2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5월 23일자)

2012경기조정11	(정정청구) 1. ○○○○ 주식회사, 2. 주식회사 ○○○○ 對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1) 『납부연기 허용때 ‘매월 수십억’ 또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1면) (2) 『유전무세 무전유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3일자 1면) (3) 『소송패배때 가산금 안내려는 ‘꼼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3일자 3면) (4) 『연수구도 2억 원 지방세 과세 고지』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3일자 3면) (5) 『결국 ○○○ 뜻대로 되려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1.의 회사가 받은 세금 감면과 신청인 2.의 회사가 받은 지방세 ‘징수유예’ 결정과 관련해 특혜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9일자 3면)

2012서울조정587	(정정청구) 박○○對 뉴스앤조이
조 정 대 상	『유명 목사 이름 내걸고 사기 행각?』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유명 목사의 명의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588~59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1. 심○○, 2. 이○○對 YTN,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 YTN : (1) 뉴스출발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04:50) (2) 뉴스7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06:58) (3) 뉴스오늘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07:58) (4) 뉴스현장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09:58) (5) 뉴스12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11:58) (6) 뉴스&이슈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12:58) (7)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14:58) (8) 뉴스Q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15:58) (9) YTN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17:58) (10)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19:58) • 인터넷 YTN :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안전 인증을 거친 완구류만을 판매하는 신청인들을 위험한 모의총기 판매업자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조정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신청인의 사업장 화면을 방송하면서, 반론보도문의 본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함, YTN의 반론보도 후 2일 이내에 이행한 보도내용을 인터넷 뉴스에 게재하고,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YTN :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모의총기’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16일 14:58) • 인터넷 YTN : 『‘모의총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6일자)

2012서울조정592	(정정청구) 국가정보원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북한인권운동’에 ‘국내 탈북자 인권’은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4일자 4면)
신청인주장	국가정보원의 탈북자 합동신문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6일자 2면)

2012서울조정593	(정정청구) 담양군 對 KBS-1TV
조 정 대 상	(1)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프로그램 『방송 그 후1 - 행정대집행은 군청 마음대로?』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26일자 18:55) (2)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프로그램 『방송 그 후2 - 터무니없는 행정대집행비?』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27일자 18:55)
신청인주장	담양군이 야생화 농원과 공예품 전시판매장의 철거가 시급하다며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후 방치하고, 대집행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594~595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이○○ 對 jbc, 인터넷 jbc
조 정 대 상	• jbc : 미각스캔들 프로그램 『9회 - 대창 사르르 녹는 미각편』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2일자 23:00) • 인터넷 jbc : 『대창 사르르 녹는 미각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양 · 대창납품업자인 신청인의 창업 상담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596~597	(매체별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비리 군납업체들, 올해도 낙찰... 건빵 먹는 장병들 목이 멘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4월 21일자 B3면, 조선닷컴 4월 21일자)
신청인주장	군납비리로 입찰 참여가 제한된 업체들이 법원 가처분 신청을 이용해 편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위사업청이 이를 방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기조정12~13	(정정 · 손배청구) 고○○ 외 9인 對 OBS경인TV
조 정 대 상	OBS 뉴스 M 프로그램 『실종 마사지 女 수사...업주 · 경찰 유착?』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19일자 20:20)
신청인주장	출장마사지 업소 여종업원 실종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해당 업소 주인과 유착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OBS 뉴스 M 프로그램 『전방위 단속』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11일자 19:45)

2012경기조정14~15	(매체별 정정청구) 이○○ 외 4인 對 경인일보, 인터넷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경경경찰청 ‘학교폭력 소탕’ 대대적 홍보하더니… ‘묵은 사건’ 무리한 수사 물의』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2년 4월 23일자 23면, 인터넷 경인일보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고교생 피의자의 과거 혐의까지 추가하는 등 무리한 수사로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고)

2012서울조정598, 709, 719~724	(매체별 추후청구) 남○○ 對 중앙일보 ⁽⁵⁹⁸⁾ , 연합뉴스 ⁽⁷⁰⁹⁾ , 노컷뉴스 ⁽⁷¹⁹⁾ , 네이트 ^(720, 724) , YTN ⁽⁷²¹⁾ , 인터넷 YTN ⁽⁷²²⁾ , 네이버 ⁽⁷²³⁾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안티사이트 운영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4일자 8면) • 연합뉴스 : 『안티사이트 폐쇄 조건으로 돈 요구』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3일자) • 노컷뉴스·네이트 : 『‘안티사이트 폐쇄’ 기업체에 댓가 요구했다 구속』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4일자) • YTN : YTN24 프로그램 『안티사이트 폐쇄조건으로 돈 요구』 제하의 보도 (2004년 2월 4일자 07:00, 08:00) • 인터넷 YTN·네이버·네이트 : 『안티사이트 폐쇄조건으로 돈 요구』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모 출판사의 안티사이트를 개설해 이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았다.
처 리 결 과	• 중앙일보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 연합뉴스·노컷뉴스·네이트·YTN·인터넷 YTN·네이버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2서울중재15~21 참조)]
이 행 결 과	• 중앙일보 : 『안티사이트 운영자 남모씨 무죄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0일자 22면)

2012대전조정20~21	(매체별 반론청구) 당진경찰서 對 금강일보, 인터넷 금강일보
조 정 대 상	『당진경찰 가해자 편들기 수사 ‘시끌’』 제하의 기사 (금강일보 2012년 3월 26일자 7면, 인터넷 금강일보 3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교통사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에 대해 음주사실을 빼고 조사하는 등 가해자 편들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당진경찰 가해자 편들기 수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금강일보 2012년 5월 4일자 7면, 인터넷 금강일보 5월 4일자)

2012서울조정599~600	(정정·반론청구) 김○○ 對 인터넷 청년의사
조 정 대 상	『노○○ 지지자들, 박 윤리위원장·부인·직원까지 협박』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의 지지자들이 윤리위원회 징계에 반발, 윤리위원장을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신청인을 직접 언급한 바 없고, 신청인을 유추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 또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2서울조정601~606		(매체별 조정 · 반론 · 손해청구) (병합) (주)씨비에스노컷뉴스 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기자들 잇따라 사직서...데일리노컷뉴스에서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2년 4월 25일자 4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발행하는 무가지 데일리노컷뉴스가 효율성, 수익성 중심으로 경영 방침이 바뀌면서 이에 반발한 편집국 기자 10명이 회사를 떠났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미디어오늘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중상단에 조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조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데일리노컷뉴스에서 무슨 일이?” 기사 관련 조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2년 5월 30일자 4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5월 28일자)	
2012서울조정607		(정정청구) (주)○○○○컨트리클럽 對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조 정 대 상	『회원제골프장 입회금반환 ‘발등의 불’ 됐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골프장의 연매출을 상회하는 입회금 반환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608~609		(정정 · 손해청구) 최재천 對 주간동아
조 정 대 상	『용산 김○○ 경찰청장 내정자 도덕성 검증, 서장 때 최재천 의원 집 찾아가 양주 마시며 인사청탁』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0일자 12~15면)	
신청인주장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인 신청인이 경찰청장 내정자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전북조정13~14		(정정 · 손해청구) 전북개발공사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단독)전북개발공사 직원 E-메일 불법 검열 의혹 - 해임 직원, 사장 지시로 전직원 개인메일 불법 열람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사가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 검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남조정16~19		(매체별 조정 · 손해청구) (병합) 노○○ 對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
조 정 대 상	『“일 잘 처리되게 해주겠다” 돈 받은 일간지 기자 구속』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2년 2월 2일자 6면, 인터넷 경남신문 2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모 일간지 기자의 범행 현장에 동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전북조정15~16	(정정·손배청구)이○○對 전북타임즈
조 정 대 상	『주민반발 예상 속 군 고발 조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산 소유주인 신청인이 산림을 훼손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땅주인 '산림훼손' 주민 반발예상 속 군 고발조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1면)

2012경남조정20~23	(정정·손배청구)(병합) 하○○對 경남매일, 인터넷 경남매일
조 정 대 상	『[신호 위반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 의령군 ○○○ 여직원 내맘대로 행정』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2년 4월 16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4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교통사고의 가해자인데도 피해자로 주장하여 직장과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남매일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통상의 제목크기로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 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의령군 보건소 여직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2년 5월 11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5월 10일자)

2012서울조정611~666, 669~672, 683~68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윤○○對 중앙일보(611~612), 온라인 중앙일보(613~614, 611~612와병합), 한국일보(615~616), 한국경제(617~618), 한경닷컴(619~620), 데일리노컷뉴스(621~622), 노컷뉴스(623~624, 621~622와병합), 뉴스엔(625~626), 뉴스웨이(627~628), 뉴스포스트(629~630), 데일리인(631~632), 동아닷컴(633~634), 매경닷컴(635~636), 민주일보(637~638), 민중의 소리(639~640), 세계닷컴(641~642), 시티데일리(Citydaily)(643~644), 아시아투데이닷컴(645~646), 이데일리(647~648), 인터넷 일요시사(649~650), 인터넷 헤럴드경제(651~652), CBC뉴스(653~654), CNBNEWS(655~656), 컨슈머타임즈(657~658), 쿠키뉴스(659~660), 프로슈머(661~662), 인터넷 엠티엔(MTN)(663~664), 채널A(665~666), 아이(이)-이투데이(669~670), 조선닷컴(671~672), 인터넷 기독교일보(683~684)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푸틴 막내딸, 한국인과 5월 결혼?』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1일자 3면) • 온라인 중앙일보 : 『푸틴 막내딸, 한국인과 5월 결혼? 2년 전부터...』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1일자) • 한국일보 : 『푸틴 딸·한국인 또 결혼설 - 남성·부친 "사실 무근"』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1일자 9면) • 한국경제 : 『'푸틴 한국인 사위' 해프닝』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1일자 17면) • 한경닷컴 : 『푸틴, 한국인 사위 맞는다... 취임 직후 결혼 예정』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데일리 노컷뉴스 : 『푸틴, 5월에 한국인 사위 맞는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1면) • 노컷뉴스 : 『푸틴 곧 한국인 사위 맞아...윤○○ 전 해군 제독 아들』 제하의 기사

조정 대상

- (2012년 4월 20일자)
- **뉴스엔** : 『푸틴 한국인사위, 예카테리나 푸티나 ‘13년 사랑’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0일자)
 - **뉴스웨이** : 『윤○○ 전 제독 아들, 러시아 푸틴 막내 사위 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뉴스포스트** : 『푸틴 러시아 총리, 한국인 사위 맞는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데일리안** : 『푸틴 막내 딸과 결혼 임박설 윤○○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동아닷컴** : 『윤○○父 “푸틴 내 사돈 된다고? 사실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1일자)
 - **매경닷컴** : 『윤○○父, 푸틴 딸과 아들 결혼? “사실 무근”』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민주일보** : 『푸틴 막내딸, 윤○○씨와 내달 결혼』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민중의 소리** : (1) 『푸틴 한국인사위, 대선승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2) 『푸틴 한국인 사위 맞는다? 예카테리나 푸티나 블로그 살펴보니...』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3) 『푸틴 사위, 정치·경제적 의미 만만치 않아』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4) 『‘푸틴 곧 한국인사위 맞아’ 최초 보도 기사삭제, 이번에도 오보?』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5) 『푸틴 한국인사위, 러시아언론 조용한 이유 “푸틴 사생활은 국가기밀”』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세계닷컴** : 『‘푸틴 딸과 결혼설’ 윤○○ “지금은 가끔 연락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시티데일리(Citydaily)** : 『푸틴, 한국인 사위 맞이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아시아투데이닷컴** : 『푸틴 딸, 한국인과 13년 열애 ‘웨딩마치’ ... “윤○○씨는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이데일리** : 『푸틴,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인 윤○○ 사위 맞는다 ... ‘결혼설’ 제기』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인터넷 일요시사** : 『푸틴, 윤○○ 전 제독 차남 사위로 맞이할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푸틴 막내딸, 윤○○씨와 내달 결혼』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CBC뉴스** : 『푸틴 한국인사위 드디어 허락, 예카테리나 푸티나-윤○○ 열애설 이후 2년만 결혼골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CNBNEWS** : 『푸틴 한국인 사위 맞을 전망 “윤○○ 전 해군 제독 차...”』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컨슈머타임즈** : 『푸틴 한국인 사위 맞아...윤○○씨와 사돈 맺는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쿠키뉴스** : 『한국인 윤○○씨, 푸틴 대통령 막내 사위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프로슈머** : 『푸틴,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인 사위’ 윤○○씨 들이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1일자)
 - **인터넷 엠티엔(MTN)** : 『푸틴, 막내딸 예카테리나 푸티나 결혼 ‘한국인 사위 맞는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조 정 대 상	• 채널A : 채널A 종합뉴스 프로그램 『전 해군제독 “아들과 푸틴 딸 결혼설 사실 아니다.”』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0일자 21:50) • 아이(i)-이투뉴스 : 『푸틴 예비사위 한국인 윤○○씨는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조선닷컴 : 『푸틴, 한국인 사위 맞나…윤○○씨父는 ‘부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인터넷 기독교일보 : 『푸틴 한국인사위, 결혼 날짜까지 제기된 것은 처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중앙일보 · 온라인 중앙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명, 기사삭제, 조건부 후속보도 금지, 부제소, 이행강제금) • 한국일보 · 한국경제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한경닷컴 · 뉴스엔 · 뉴스웨이 · 뉴스포스트 · 데일리안 · 동아닷컴 · 매경닷컴 · 민주일보 · 민중의소리 · 세계닷컴 · 시티데일리(Citydaily) · 아시아투데이닷컴 · 이데일리 · 인터넷 일요시사 · 인터넷 헤럴드경제 · CBC뉴스 · CNBNEWS · 컨슈머타임즈 · 쿠키뉴스 · 프로슈머 · 인터넷 엠티엔(MTN) · 아이(i)-이투뉴스 · 조선닷컴 · 인터넷 기독교일보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데일리 노컷뉴스 · 노컷뉴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000만원, 부제소) • 채널A : ▷ 정정청구 : 취하 ▷ 손해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0만원, 피신청인 사과,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데일리 노컷뉴스 · 노컷뉴스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컷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국일보 : 『알려왔습니다 - 결혼설 사실무근 거듭 밝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5일자 2면) • 한국경제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A33면) • 데일리 노컷뉴스 · 노컷뉴스 : 『“푸틴 딸 한국인과 결혼”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데일리 노컷뉴스 2012년 6월 12일자 1면, 노컷뉴스 6월 12일자)

2012서울조정667~668 (정정 · 손해청구) 윤○○對 채널A	
조 정 대 상	채널A 종합뉴스 프로그램 『전 해군제독 “아들과 푸틴 딸 결혼설 사실 아니다.”』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0일자 21:50)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들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취하 ▷ 손해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0만원, 피신청인 사과,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673~68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강○○, 2. 장○○ 對 MBN ^(673~674) , 인터넷 MBN ^(675~676, 673~674와 병합) , 네이버 ^(677~678) , 네이트 ^(679~680) , 다음 ^(681~682)
조 정 대 상	• MBN : MBN 뉴스 8 프로그램 『이상한 경력 경쟁』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20:00) • 인터넷 MBN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단독] '경력 없는' 경력 시험... 이상한 공무원 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교정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MBN · 인터넷 MBN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신청인별 손해배상 각 100만 원,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인터넷 MBN : 인터넷 MBN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 ·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MBN)가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 후 2일 이내로 조정대상 기사를 기사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검색되지 않도록 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MBN : 『'경력 없는 경력시험... 이상한 공무원 선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7일자)

2012서울조정685	(반론청구) 1. 윤○○, 2. 임○○ 對 브레이크뉴스
조 정 대 상	『경찰 아저씨 현장 떠나면 살인사건 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신청인주장	경찰서 순찰요원인 신청인들이 초기대응을 잘못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경찰 아저씨 현장 떠나면 살인사건 난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6일자)

2012서울조정686~688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채널A ⁽⁶⁸⁶⁾ , 인터넷 채널A ⁽⁶⁸⁷⁾ , 동아닷컴 ⁽⁶⁸⁸⁾
조 정 대 상	• 채널A : 뉴스A 프로그램 『접대연예인 기획사 강요로 립살롱에 나가』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7일자 22:00) • 인터넷 채널A · 동아닷컴 : 『[뉴스A] 단독/접대 연예인 "기획사 강요로 립살롱에 나가"』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7일자)
신청인주장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인 신청인이 소속 연예인으로 하여금 립살롱 접대를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각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 보도는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채널A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널A 뉴스A 프로그램 말미 정정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처 리 결 과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 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 프로그램의 자료화면으로 함 • 인터넷 채널A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의 기사목 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동아닷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 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 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 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

2012경기조정16	(반론청구) 사단법인 세계○○○협회 對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1) 『세계○○○협회, ‘친족 운영’』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9일자 1면) (2) 『세계○○○ 협회가 어쩌다가...』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일자 1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경영난과 예산부족으로 활동이 전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회장 아들을 사무총장에 임명하고, 사무국을 회장 사업체로 옮기는 등 ‘친족 운영’ 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경기조정17~19	(정정·반론·손배청구) 1. 용인동부경찰서, 2. 박○○ 對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경찰 끼워맞추기 수사에 ‘주동자’ 누명”』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4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와 소속 경찰관이 폭행사건을 수사하면서 회유와 유도심문을 하는 등 ‘끼워맞추기 수사’ 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1일자 2면)

2012대구조정11	(정정청구) 이○○ 對 고흥신문
조 정 대 상	『○○군의회 여행 보고서 안 올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1면)
신청인주장	군의회 부의장인 신청인이 지난 해 해외연수보고서를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군의회 연수보고서 관련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2면)

2012서울조정689~690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이○○ 對 jbc, 인터넷 jbc
조 정 대 상	• jbc : JTBC NEWS 9 프로그램 『“90도 인사 안했다”...무용과 여대생, 후배들 ‘집단폭 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0일자 22:10) • 인터넷 jbc : 『“90도 인사 안했다”...무용과 여대생, 후배들 ‘집단폭행’』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서울 모 대학 무용과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 인터뷰를 거절한 신청인을 몰래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2012서울조정691~69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어○○對jbc, 인터넷 jbc
조 정 대 상	• jbc : 미각스캔들 프로그램 『9회 - 중국 관광객 전용 최악의 식당』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9일자 23:10) • 인터넷 jbc : 『[다시보기] 9회 - 중국 관광객 전용 최악의 식당』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한 음식을 중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사과공문 발송,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제주조정3	(정정청구) 송○○對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대응매뉴얼 무용지물』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0일자 21:00)
신청인주장	학교폭력사태를 보도하면서 동급생간 상호 주먹다짐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KBS 뉴스9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 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KBS 뉴스9 프로그램 『말다툼 끝에 서로 주먹다짐한 것』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29일자 21:00)

2012서울조정695~698, 707~708	(병합) 농림수산식품부對 경향신문(695 정정청구, 697 반론청구, 707 정정청구), 인터넷 경향신문(696 정정청구, 698 반론청구, 708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미국 파견 검역관, 4년 실적 전무』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4월 28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4월 28일자) (2) 『육골분 수입량의 97%가 미국산... 광우병 발생 후도 유입』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5월 1일자 7면, 인터넷 경향신문 5월 1일자)
신청인주장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현지에서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파견검역관제도가 유명무실해 4년간 실적이 전무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박기고, 부제소)
이 행 결 과	(1) 『[경향마당] 파견 수의검역관 논쟁 이제 그만』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6월 19일자 오피니언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19일자) (2) 『[경향마당] BES에 대한 오해와 바로 알기』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6월 25일자 오피니언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25일자)

2012서울조정699~700	(정정·손배청구) 이○○ 對 로이십사(LAW24)
조 정 대 상	『여교수와 바람난 50대 중령, 전역 못해 찢찢매 …』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4일자)
신청인주장	육군 중령인 신청인이 불륜을 저지르고 불륜 상대방의 이메일을 몰래 훑쳐봤으며, 이로 인해 전역지원서가 반려됐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경남조정24~32	(매체별 정정청구) 1. 창원시, 2. 박완수 對 일간뉴스경남 ⁽²⁴⁾ ,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²⁵⁾ , 뉴시스 ⁽²⁶⁾ , 내외일보 ⁽²⁷⁾ , 인터넷 내외일보 ^(28, 27과 병합) , 아시아뉴스통신(경남) ⁽²⁹⁾ , 다음 ^(30~32) (병합)
조 정 대 상	• 일간뉴스경남·인터넷 일간뉴스경남 : 『창원시장 부인 ‘공무원 동원’』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2년 5월 7일자 5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5월 6일자) • 뉴시스·다음 : 『창원시장 부인, 공무원 동원해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6일자) • 내외일보·인터넷 내외일보·다음 : 『창원시장 부인, 국회의원 당선자 부인 초청자리에 공무원 대동 ‘빈축’』 제하의 기사 (내외일보 2012년 5월 7일자 13면, 인터넷 내외일보·다음 5월 6일자) • 아시아뉴스통신(경남)·다음 : 『퇴근 후 창원시장, 국회의원 당선자 부인모임에 ‘웬 공무원’』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6일자)
신청인주장	창원시장 부인이 국회의원 당선자 부인들을 초청하는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했으며, 이 행사가 박완수 창원시장의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 공천을 위한 자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일간뉴스경남·인터넷 일간뉴스경남·다음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뉴시스·내외일보·인터넷 내외일보·아시아뉴스통신(경남)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시스·인터넷 내외일보·아시아뉴스통신(경남)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통상의 제목크기로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여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이를 다음에도 송고함
이 행 결 과	• 일간뉴스경남·인터넷 일간뉴스경남 : 『정정보도문 – ‘창원시장 부인 공무원 동원’ 관련』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2년 5월 17일자 5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5월 16일자) • 뉴시스·다음 : 『[‘창원시장 부인, 공무원 동원해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1일자) • 내외일보·인터넷 내외일보·다음 : 『[‘창원시장 부인, 공무원 대동 ‘빈축’]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내외일보 2012년 5월 21일자 13면, 인터넷 내외일보·다음 5월 21일자) • 아시아뉴스통신(경남)·다음 : 『‘퇴근 후 창원시장, 국회의원 당선자 부인모임에 ‘웬 공무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1일자)

2012서울조정701~702	(정정·반론청구) (주)한국○○○○○협회 對 아이(이)–이투데이
조 정 대 상	『‘태양광주택 1만호 보급사업?’ …협회 사칭 자부담업자 ‘활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중앙부처나 관련기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아님에도 정부사업과 유사한 업무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종합뉴스 이슈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태양광주택 1만호 보급 캠페인』 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2012전북조정17~18	(정정·손배청구) ○○순창(주) 對 순창신문
조정대상	(1) 『강천산 탐방로 조성 놓고 ‘잡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4일자 1면) (2) 『[기자수첩] 지역발전사업에 지역언론이 힘을 보태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4일자 11면)
신청인주장	강천산 탐방로 조성과 관련하여 신청인 언론사가 근거없는 선동적인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강천산 탐방로 조성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0일자 2면)

2012서울조정703~70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축산업협동조합 對 한국농정, 인터넷 한국농정
조정대상	『조합장 입맛 따라 이사회 임원 구성』 제하의 기사 (한국농정 2012년 4월 9일자 6면, 인터넷 한국농정 4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특별감사를 피하기 위해 조합 감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감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사적 보복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전북조정19~2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지역주택조합 對 새전북신문, 인터넷 새전북신문
조정대상	• 새전북신문 : 『[기자의 눈] ○○ 지역조합 조합원 신뢰부터 회복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8일자 11면) • 인터넷 새전북신문 : (1) 『○○주택조합 아파트 좌초위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일자), (2) 『사업 중도포기 확률 높아 피해 우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4일자), (3) 『‘젓밥에만 관심’ 조합운영 분쟁 잇따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4일자), (4) 『○○ 주택조합 복마전 속 운영』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5) 『[기자의 눈] ○○ 지역조합 조합원 신뢰부터 회복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주택조합 집행부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기조정20~21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화성서부경찰서 對 경기일보, 인터넷 경기일보
조정대상	• 경기일보 : 『“허위진술 강요… 손발 묶고 안정제 투여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조 정 대 상	9일자 6면) • 인터넷 경기일보 : 『가족들은 미친놈 취급, 병원은 짐승대접』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폭력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광주조정32~33	(정정·손배청구) 윤○○ 對 더한국타임즈
조 정 대 상	『푸틴 막내 사위 한국인 청년?』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경기조정22~23	(정정·손배청구) 윤○○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푸틴 러시아 총리 여식 광주 머느리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710~711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박○○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저축銀 계열사 예금인출 줄었다』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7일자 21:00) • iMBC : 『저축銀 계열사 예금인출 줄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7일자)
신청인주장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직원인 신청인이 은행고객을 안심시키는 장면을 동의 없이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의 주된 내용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신청인의 초상이 노출된 해당 화면은 저축은행 영업장을 단순 촬영한 것일 뿐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012부산조정20	(정정청구) ○○대학교 對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1) 『등록금 내린 대학들 꿈수 썼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1면) (2) 『학과 수석해도 전액 장학금 안줘』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교가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교 장학금 1억 8천만 원을 축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대학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4일자 2면)

2012서울조정712~71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국토해양부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항공기 비행안전구역내 4대강 대형 구조물 논란』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2년 5월

조 정 대 상	14일자 1면, 세계닷컴 5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원주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인근에 설치한 옹벽 구조물은 공군부대가 소하천 역류 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인데, 4대강 사업과 관련돼 건설된 것으로 잘못 보도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세계닷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항공기 비행안전구역내 구조물 ‘4대강’ 과 무관』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2년 6월 5일자 2면, 세계닷컴 6월 4일자)

2012경기조정24~25	(정정 · 손배청구) 광명시 생활체육회 對 아이컬처뉴스
조 정 대 상	(1) 『[취재수첩] 광명시생활체육회 꼬라지가 이래서야...』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3일자) (2) 『[1보] 광명시생활체육회, 정보 부재 폐쇄적 단체?』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4일자) (3) 『[2보] 광명시생활체육회 사무국은 뭐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0일자) (4) 『[3보, 속보] 광명시 생활체육회, 공인 폭력 단체?』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일자) (5) 『[말말뉴스1] 광명시생활체육회 무서워요... 같아 마신대요』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홀대하고 언론사에 취재협조요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정보 없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경기조정26	(정정청구) 평택시 對 평택시사신문
조 정 대 상	『평택시, ‘예산 낭비 사업 빈번’』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8일자 1면)
신청인주장	평택시가 남부문화회관 및 안중현화공원에 대한 불필요한 공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평택시사신문에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평택시사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7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평택시 예산낭비사업 빈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평택시사신문 2012년 6월 6일자 2면, 인터넷 평택시사신문 5월 24일자)

2012경기조정27	(정정청구) 평택시 對 평택시사신문
조 정 대 상	『포승 석정6리, 시민 무시 행정에 ‘뿔났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8일자 1면)
신청인주장	평택시가 중증장애인수용시설 건축 허가 시 선행돼야 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	---------

2012서울조정714~715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농림수산식품부 對 내일신문, 인터넷 내일신문
조 정 대 상	『광우병 현지조사단, 혈세 쓰고 ‘빈손 귀국’』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2년 5월 11일자 1면, 인터넷 내일신문 5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정부가 광우병 현지조사단이 미국 농장주를 만났다고 발표한 적이 없으며, 가축방역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수의대 교수 등 국내 광우병 전문가들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내일신문 홈페이지 산업면 최신기사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 기사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가축방역협의회’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2년 5월 29일자 2면, 인터넷 내일신문 5월 29일자)

2012전북조정23~24	(정정·손배청구) ○○○○지역주택조합 對 새전북신문
조 정 대 상	『○○○○ 지역주택조합 폭로기사 청탁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
신청인주장	신청인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제3자에게 권한 위임장을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716	(정정청구)(재)○○산업진흥재단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이○○ 성남시장 前선대본부장 아들 낙하산?』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성남시장 전 선대본부장의 아들이 신청인 재단에 낙하산 입사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채용은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717~718	(매체별 정정청구) 한국수력원자력(주)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비리 얼룩 ○○○, 뽀뽀한 ‘상근고문직 추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5월 15일자 A6면, 동아닷컴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고리원전 사건으로 사임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퇴임 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신청인 회사가 상근고문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경기조정28~29	(정정·반론청구) 용인동부경찰서 對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민원 났다 개인정보 줄줄 샀 판』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서류를 소각하거나 파쇄하지 않은 채 쓰레기장에 무단기로 버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725	(정정청구) 주식회사○○○○○투자증권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사무금융노조, ○○○○○금융 이○○회장 ‘5대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노조로부터 고발될 경우, 상장폐지 실질검사 대상에 오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證 ‘상장폐지 실질실사’ 보도,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2012서울조정726~727	(매체별 정정청구) 21세기○○○○○연합 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이○○ 기획사 · ○○○ 학생회장 ‘수상한 거래’』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5월 16일자 10면, 인터넷 경향신문 5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건국대 문과대가 신청인 단체 소속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대전조정22~25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읍번영회 對 놀외신문, e논산신문
조 정 대 상	『특정보지 지지 의혹 경찰 수사』 제하의 기사 (놀외신문 2012년 2월 20일자 1면, e논산신문 2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특정 국회의원 후보를 초청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놀외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놀외신문에 반론보도, 부제소) • e논산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e논산신문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3일간 게시,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뜨도록 하며,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배치 함
이 행 결 과	『“특정보지 지지 의혹 경찰 수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놀외신문 2012년 6월 4일자 1면, 인터넷 놀외신문 · e논산신문 6월 4일자)

2012서울조정728~731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농림수산물부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어제 먹은 대창이 미국산?...대기업, SRM 의심부위 들여왔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10면, 인터넷 한겨레 5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유럽연합 과학위원회가 미국산 소의 내장과 족을 기타특정위험물질로 추가 지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한겨레에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6월 4일자 2면)

2012대구조정12	(정정청구) 1. 대한불교조계종 ○○사, 2. 김○○ 對 올인코리아
조 정 대 상	『○○사, 빗더미에, 불상까지 압류당해?』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사찰의 주지가 사찰 소유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건설업체에 서준 보증으로 인해 법당의 불상까지 압류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732~733	(매체별 정정청구) 이○○ 對 노컷뉴스, 인터넷 내일신문
조 정 대 상	• 노컷뉴스 : (1) 『경찰 왜 이러나...칼 들고 위협해도 '무사통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8일자), (2) 『누구를 위한 '압수수색' 인가...피해자 두 번 올린 경찰』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 인터넷 내일신문 : 『청장이 "위기" 외쳐도... 경찰 '한심작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1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피해자를 흥기로 위협한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불성립결정 • 인터넷 내일신문 : 취하

2012서울조정734~735	(정정 · 반론청구) 1. (주)○엔터테인먼트, 2. 김○○ 對 KBS-2TV
조 정 대 상	(1) 김승우의 승승장구 프로그램 『승승장구 100회 특집! : ○○○편』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21일자 23:00) (2) 연예가 중계 프로그램 『연예인 노예계약 여전』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24일자 21:15)
신청인주장	신청인 연예기획사 대표가 모 연예인과 노예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해제하려는 해당 연예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신청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두 예능프로그램의 보도로써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들이 수 없다)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방영되는 김승우의 승승장구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진행자로 하여금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되, 프로그램의 성격을 고려하여 반론보도의 제목은 별도의 자막으로 표시하지 아니함, 한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예가 중계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자료화면을 배경으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되,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며,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아래 자막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함

2012서울조정736~737, 742~743, 746~747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1. 대한불교조계종 ○○사, 2. 김○○ 對 jbc ^(736~737) , 인터넷 jbc ^(742~743) , 온라인 중앙일보 ^(746~747)
조 정 대 상	• jbc : 정오의 현장 프로그램 『○○사가 어찌다가… 불상까지 압류』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16일자 12:00) • 인터넷 jbc : 『○○사, 100억대 빚더미에… 불상까지 압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6일자), (2) 『○○사 어찌다! 100억대 빚더미에 불상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7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사 어찌다! 100억대 빚더미에 불상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사찰의 주지가 사찰 소유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건설업체에 서준 보증으로 인해 법당의 불상까지 압류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738~741, 744~745, 748~75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투어주식회사 對 연합뉴스 ^(738~739) , 온라인 중앙일보 ^(740~741) , 인터넷 메트로 ^(744~745) , 인터넷 헤럴드경제 ^(748~749) , 한경닷컴 ^(750~751)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온라인 중앙일보 : 『주유소·영화관 경품응모권 문제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 인터넷 메트로 : 『237만명 당첨된 '제주 여행권'』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5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공짜 응모권 주의보 발령, "무료 여행 밋지 마세요"』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5일자) • 한경닷컴 : 『공정위, 여행사 경품이벤트 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주도 무료여행 당첨권을 허위로 발행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온라인 중앙일보 : 『○○투어(주) 당첨권 뺑뺑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 인터넷 메트로 : 『○○투어(주)는 당첨권 '뺑뺑기'와 관련 없어』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투어(주) 뺑뺑기 경품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 한경닷컴 : 『○○투어(주) 뺑뺑기 경품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2012서울조정752~76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강○○ 對 조선일보 ^(752~753) , 조선닷컴 ^(754~755) , 네이버 ^(756~757) , 네이트 ^(758~759) , 다음 ^(760~761)
조 정 대 상	『다섯살짜리도 진보당 진성당원』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5월 12일자 A5면, 조선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 5월 12일자)
신청인주장	통합진보당원인 신청인이, 5살 때부터 당원이었던 딸을 대신해 10년 동안 대리투표를 했을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조선닷컴 : 각 조정불성립결정 • 네이버·네이트·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762	(정정청구) KBS교향악단 비상대책위원회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1) 『KBS 교향악단, 31년 만에 정기공연 취소 사태』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8일자 23면) (2) 『KBS 교향악단 서로 “네 탓”... 그럴수록 국민은 등 돌린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9일자 8면) (3) 『폭언 악단』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6일자 25면)
신청인주장	KBS교향악단의 단원들과 지휘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정기공연 취소가 단원들의 엘리트 주의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763	(정정청구) KBS교향악단 비상대책위원회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1) 『KBS교향악단 불협화음 바로잡아라』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34면) (2) 『정기연주회 또 취소하나, KBS교향악단 끝없는 파행, 정명훈에게 부탁하면 어떨까』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3일자 39면) (3) 『[노○○ 칼럼] TV 시청료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1일자 43면)
신청인주장	KBS교향악단 단원들이 공적 책임감이 결여돼 있고, 상임 지휘자에게 반발해 정기연주회가 취소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764	(정정청구) KBS교향악단 비상대책위원회 對 중앙Sunday
조 정 대 상	『“오디션 제대로 하면 단원 중 20명도 못 살아남을 것”』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8일자 4면)
신청인주장	KBS 객원 연주자들이 KBS 교향악단 단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악단에서 연습을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대전조정26	(정정청구) 한국자유총연맹○○광역시지부 對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국유지를 병원 주차장으로... 주민들 성토』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지부가 관리하는 주차장 용도의 국유지가 인근 대형병원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충청투데이에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충청투데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3일 동안 게시,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뜨도록 하며,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배치함
이 행 결 과	처리결과 미이행

2012서울조정765	(정정청구) 주식회사문화방송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김○○ ‘특혜 의혹’ ㄸ무용가 출연료 한류스타보다 더 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0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일본 공연에 참여한 모 무용단에게 출연료로 8,18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항공, 숙박료를 포함한 것으로서 순수 출연료는 3,400만 원에 불과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한겨레에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6월 1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6월 2일자)

2012서울조정766~787, 921~92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 對 동아일보(766~767), 중앙일보(768~769), 한겨레(770~771), 한국경제(772~773), 한경닷컴(774~775), KBS-1TV(776~777), 뉴스앤뉴스(778~779), 오마이뉴스(780~781), 인터넷 한국일보(782~783), 조선닷컴(784~785), 프레시안(786~787), 한국일보(921~922)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쌀직불금-업무추진비 의혹' 못넘어...이○○ 공천 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6면) • 중앙일보 : (1) 『새누리 비례대표 논란...국민배심원단 '이○○ 부적격'』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2면) (2) 『비례후보 취소된 이○○.. “청와대 뒤편으로 배려한 인물”』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5면) • 한겨레 : 『새누리 비례대표 15번 이○○ 직원들한테 돈받은 혐의 수사』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1면) • 한국경제 : 『새누리, 이○○ 비례대표 공천 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6면) • 한경닷컴 : 『이○○ 직원들에게서 2,000만 원 받은 혐의』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 KBS-1TV : KBS뉴스 7 프로그램 『새누리, 선대위 발족...이○○ 후보 공천 취소』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21일자 19:00) • 뉴스앤뉴스 : 『새누리 비례 이○○, 쌀 직불금 파동 주역』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 오마이뉴스 : 『새누리당 비례15번 이○○, 결국 공천 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새누리, 이○○ 비례대표 공천 취소 당·청책임싸고 공방』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 조선닷컴 : 『이○○ 직원들에게서 업무추진비 2,000만 원 걷은 혐의』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 프레시안 : 『새누리당 이○○ 후보, 소속기관서 '접대비모금' 의혹 제기돼』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 한국일보 : 『새누리, 이○○ 비례대표 공천 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A0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고,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동아일보 : 기각결정 (사유 :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고 모자이크처리 · 음성변조 등 주 의의무를 이행하였다) • 중앙일보 · 오마이뉴스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 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한겨레 · 프레시안 : 각 조정불성립결정 • 한국경제 · 한경닷컴 · 인터넷 한국일보 · 조선닷컴 · 한국일보 : 각 취하 (정정 및 반론보 도 게재) • KBS-1TV : 조정성립 (반론 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뉴스앤뉴스 : 조정성립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KBS-1TV : KBS뉴스 7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 보도,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된 자료화면을 배경으로 반론 보도문을 보도하되,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 지 않도록 하며,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아래 자막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함 • 뉴스앤뉴스 : 홈페이지 경제면 초기화면에 반론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2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오마이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2시 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 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중앙일보 : 『‘이○○ 공천’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2일자 2면) • 한국경제 : 『‘이○○ 공천’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5일자 5면) • 한경닷컴 : 『‘이○○ 공천’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4일자 뉴스면) • KBS-1TV : KBS뉴스 7 프로그램 『‘이○○ 공천’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15일자 7시뉴스) • 뉴스앤뉴스 : 『[‘이○○ 공천’ 관련 정정보도] - “이○○ 원장 남편 실제 농사 지은 것으로 확인”』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5일자 경제면) • 오마이뉴스 : 『‘이○○ 공천’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4일자 정 치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후보’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8일자 정치면) • 조선닷컴 :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후보’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8일자 뉴스면) • 한국일보 : 『‘이○○ 공천’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9일자 2면)

2012서울조정788~799	(매체별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병합) 김○○ 對 동아일보(788~790, 794~796), 동아닷컴(791~793, 797~799)
조 정 대 상	(1) 『SNS 루머에 기업들 피멍 든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3월 21일자 A31면, 동아닷컴 3월 21일자) (2) 『먹거리 괴담, 블랙컨슈머 황포 뿌리 뽑아야』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3월 22일자 B6면, 동아닷컴 3월 22일자)

신청인주장	특정 소주의 제조방법 승인에 불법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신청인을 ‘블랙컨슈머’로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동아닷컴 홈페이지 뉴스 경제면 최신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1)~(2)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소주 ○○○○ 악성루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6월 15일자 2면, 동아닷컴 6월 15일자)

2012서울조정800~820	(매체별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김○○ 對 파이낸셜뉴스(800~802), 인터넷 파이낸셜뉴스(803~805, 800~802와 병합), 인터넷 소비자TV(806~808), 뉴시스(815~817), 와우넷(818~820)
조 정 대 상	• 파이낸셜뉴스 : 『“○○○○ 안전성 이미 입증, 악의적 루머 법적대응할 것”』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19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주류 “○○○○ 안전.. 악의적 루머 법적대응할 것”』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 인터넷 소비자TV : 『“○○주류, 소주 ‘○○○○’ 관련 악의적 루머에 법적대응』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3일자) • 뉴시스 : 『“○○주류 “○○○○ 악성루머, 법적대응 할 것”』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 와우넷 : 『“○○주류 ‘○○○○’ 유해 루머 법적대응』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신청인주장	특정 소주의 제조방법 승인에 불법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신청인을 ‘블랙컨슈머’로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파이낸셜뉴스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조정성립 (사유 : 후속보도, 부제소) • 인터넷 소비자TV :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 뉴시스 · 와우넷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파이낸셜뉴스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 생활경제면 기사 목록 상단에 후속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후속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후속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소비자TV : 소비자TV 정직한 목격자 ‘시선’ 프로그램의 조정대상보도에 이와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을 담아 후속보도, 인터넷 소비자TV 홈페이지 VOD서비스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조치함 • 뉴시스 : 홈페이지 경제면 최근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와우넷 : 와우넷 홈페이지 뉴스란 기사목록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파이낸셜뉴스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 김○○ 대표, ○○주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제하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2012년 6월 5일자 19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6월 4일자) • 인터넷 소비자TV : 『[방송다시보기 VOD] 정직한 목격자 '시선' - 충격! ○○○○ 불법제조 술인가 독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3일자) • 뉴스스 : 『'○○○○ 루머 법적대응'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3일자) • 와우넷 : 『'소주 ○○○○ 논란' 끝나지 않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2일자)
---------	---

2012경기조정30~31	(정정 · 손배청구) 1. 주식회사○○○제과, 2. ○○제과식품 주식회사 對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 ○○, 부동산 '가로채기' 구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들이 기존 계약자가 지으려 한 추모관의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려 계약해지를 유발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09~810, 821~822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주) 한국○○○카드 對 노컷뉴스, 데일리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서울 택시카드 단말기 '특혜시비' 논란 예상』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2년 5월 22일자, 데일리노컷뉴스 5월 22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서울시의 특혜로 택시 카드사업을 독점하고, 결제 수수료 등 부담을 택시사업자들에게 전가시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택시카드 단말기 특혜 논란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2년 6월 1일자, 데일리노컷뉴스 6월 1일자 10면)

2012서울조정811	(정정청구) 김○○ 對 뉴스스
조 정 대 상	『이○○ 성남시장 前 선대본부장 아들 낙하산?』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성남시장의 전 선대본부장)의 아들이 마치 낙하산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임용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용되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12	(정정청구) 사단법인 한국○○○총연합회 ○○○교육협의회 對 프레스안
조 정 대 상	『영어유치원 10곳 생기면 소아정신과 1곳 생긴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영어유치원 10곳 생기면 소아정신과 1곳 생긴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게재해 마치 영어유치부에 다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과 조정대상 보도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2012서울조정813	(정정청구) 사외단체 포항○○회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이○○, ○○○ 회장처럼 행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7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일부 회원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한 대기업의 각종 외주사업을 독점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1일자 2면)

2012서울조정814	(정정청구)사회단체○○○○회對시사저널
조 정 대 상	『또 다른 포항권력 ‘○○회’는 어떤 단체인가』 (2012년 5월 8일자 24~2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정권 실세와 지역 토호세력 및 한 대기업과 연계하여 이권을 챙기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회, ○○○ 이권 개입한 적 없는 순수 애향봉사단체』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7일자 7면)

2012경기조정32~33	(정정·손배청구)이○○對인터넷부천신문
조 정 대 상	(1)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자살소동 왜?』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6일자) (2) 『“부사모 실체도 없고, 인사도 문제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소동을 벌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부천신문에 반론보도,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인터넷 부천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자살소동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터넷 부천신문 2012년 6월 27일자, 부천신문 6월 28일자 2면)

2012경기조정34	(손배청구)김○○對한인의힘
조 정 대 상	『우리학교 김모군, 동국대 직원에게 부상입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학과 통·폐합 반대시위 과정에서 동국대 교직원들이 올라 서 있는 의자를 발로차 넘어뜨려 부상을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손해배상 50만 원, 기사삭제, 신청인에 대한 상담 등 심리치료 적극 지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강원조정1~2	(정정·손배청구)(주)강원방송 외2인對G1-TV
조 정 대 상	G1 뉴스820 프로그램 『IPTV, 케이블 TV 위협』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2일자 20:20)
신청인주장	케이블TV는 원하는 시간대에 최신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VOD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G1 뉴스820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보도, 진행자의 멘트로 정정보도하되 멘트

처 리 결 과	가 진행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함
이 행 결 과	G1 뉴스820 프로그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15일자 20:20)

2012서울조정823~824	(정정·손배청구) 변○○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1) 『정치 팟캐스트(나꼼수 등 인터넷 방송) 주장, 86%는 사실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8일자 1면) (2) 『정치 팟캐스트..사실 왜곡·거짓 40%, 근거없는 주장 46%』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8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정치 팟캐스트의 방송 내용중 41개가 부적합한 사실을 근거로 한 주장 혹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825~826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나주시 對 경향매일, 인터넷 경향매일
조 정 대 상	(1) 『실적 위주 혈세 낭비한 기업유치』 제하의 기사 (경향매일 2012년 4월 2일자 15면, 인터넷 경향매일 4월 1일자) (2) 『기업검증 없이 예산 낭비 '지적'』 제하의 기사 (경향매일 2012년 4월 16일자 15면, 인터넷 경향매일 4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지자체가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부적절하게 기업유치의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인터넷 경향매일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 (1)~(2)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각각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나주시 실적위주 기업유치’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향매일 2012년 6월 13일자, 인터넷 경향매일 6월 13일자)

2012경남조정33~3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함안군 對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 뉴시스 : (1) 『함안군, 토석채취 불법 연장허가 의혹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3일자), (2) 『불법 토취장 실제 주인은...경찰 간부등으로 구성?』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 아시아뉴스통신 :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토석채취 허가' 위조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토목설계사무소와 짜고 불법으로 토석채취 기간연장을 허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기조정35~37		1. 화성시사격연맹, 2. 이○○ 對 경인일보 ^(35~36 정정·손배청구) , 중부일보 ^(37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경인일보 : 『무자격자에 총 쥐어준 화성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20면) • 중부일보 : 『화성시사격연맹 선발선수 4명중 3명 총기없는 ‘부적격자’』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2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경기도체육대회 사격종목(클레이)에 무자격자를 출전시키려다 제지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인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경인일보에 반론보도, 부제소) • 중부일보 :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경인일보 : 인터넷 경인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화성시 사격 연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2년 6월 15일자 2면, 인터넷 경인일보 6월 15일자)
2012서울조정827~828		(정정·손배청구) 박○○외 139인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안내』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17일자 21:00)
신청인주장		권재홍 앵커가 MBC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34~35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나주투데이 對 나주투데이, 인터넷 나주투데이
조 정 대 상		『감사원 ‘기업유치 입주지원·보조금’ 감사』 제하의 기사 (나주투데이 2012년 4월 23일자 1면, 인터넷 나주투데이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나주시의 기업 유치와 관련해 부도처리로 인해 회수해야 할 지원금의 규모가 60억 원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나주투데이 홈페이지 자치·행정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20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보조금 60억 원 손실’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나주투데이 2012년 6월 11일 2면, 인터넷 나주투데이 6월 11일자)
2012전북조정25~26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전주완산경찰서 對 새전북신문, 인터넷 새전북신문
조 정 대 상		『불법게임방 배정영업 “노살”』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2년 5월 23일자 6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5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전주완산경찰서가 관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인터넷 새전북신문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위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을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새전북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5일자 2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 『전주완산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4일자)

2012서울조정829~830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YTN,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YTN : YTN24 프로그램 『라면 봉지에 달려 밀반출』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23일자 21:00) •인터넷 YTN : 『‘라면봉지’에 달려 160억 원어치 숨겨 밀반출』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23일자)
신청인주장	라면 봉지에 달려를 숨겨 해외로 밀반출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근무하는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충북조정24~25 (정정·손배청구) 신○○ 對 CJB-TV	
조 정 대 상	CJB 8뉴스 프로그램 『떠도는 ‘학교 밖 청소년’』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13일자 20:25)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학교 자퇴이유가 친구들의 왕따와 가정불화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CJB 8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신청인의 초상(모자이크 처리)을 배경화면(정지화면)으로 하여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함
이 행 결 과	CJB 8뉴스 프로그램 『“떠도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7일자 20:00)

2012서울조정831~83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이○○ 對 매일경제, 매경닷컴	
조 정 대 상	『○○뉴타운 믿었던 3구역 마저...』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2년 5월 22일자 A29면, 매경닷컴 5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위원회의 조합장 등 임원진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정정 및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1) 『고침』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2년 6월 7일자 A29면, 매경닷컴 6월 7일자) (2) 『목 좋은 한남뉴타운은 역시 달라』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2년 6월 11일자 A28면, 매경닷컴 6월 10일자)

2012서울조정833~83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윤○○對 레이디경향 ^(833~834) , 인터넷 레이디경향 ^(835~836, 833~834와 병합) , 네이버 ⁽⁸³⁷⁾ , 다음 ⁽⁸³⁸⁾
조 정 대 상	『푸틴의 막내딸과 결혼설에 휩싸인 한국인 윤○○씨는 누구』 제하의 기사 (레이디경향 2012년 5월 1일자 110면, 인터넷 레이디경향·네이버·다음 5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레이디경향·인터넷 레이디경향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300만 원, 조건부 후속보도 금지,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인터넷 레이디 경향 : 홈페이지 초기화면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레이디경향 : 『[정정]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막내딸과 한국인 결혼설 기사 관련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사죄하며』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5일자 114면) • 인터넷 레이디경향 : 『‘푸틴 딸과 한국인 결혼설’ 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5일자)
2012서울조정847	(반론청구)김○○對 데일리서울파이낸스
조 정 대 상	『‘급등주 탐색기’ 확산…피해사례 속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 중인 ‘급등주 탐색기’로 인해 피해사례가 속출한다거나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급등주탐색기’ 확산… 피해사례 속출』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7일자)
2012서울조정848, 850, 912	(기사별 정정청구)(병합)(주)○○○항공對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조 정 대 상	(1) 『예보, ○○○항공 현 경영진의 ‘정기주총 연기’ 책임 물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1일자) (2) 『○○○항공, ‘지상조업료 체불’ 등 항공기 운항중단 위기』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5일자) (3) 『○○○항공, 우발 채무 46억 발목 잡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항공사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급여인상과 퇴직금의 신설 및 규정개정, 감사의 급여 인상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파산한 전 직원의 고용승계와 미지급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기업 회생 인가를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849	(정정청구)(주)○○○항공對 네이버
조 정 대 상	『예보, ○○○항공 현 경영진의 ‘정기주총 연기’ 책임 물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항공사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급여인상과 퇴직금의 신설 및 규정개정, 감사의 급여 인상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851~852 (매체별 정정청구) (주)○○○항공 對 네이버, 다음	
조 정 대 상	『○○○항공, '지상조업료 체불' 등 항공기 운항중단 위기』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항공사가 재취항을 하면서 20억 원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지상조업 업체와 장기 계약을 맺었고, 지상조업료 체불로 인해 항공운항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853 (정정청구) ○○○○○ 골프앤리조트홀딩스주식회사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부실 한국저축銀 회장 日유명골프장 차명소유』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1일자)
신청인주장	한국저축은행 회장이 신청인 회사 소유의 골프장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 보도문의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골프장' 차명 소유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2일자)

2012서울조정854~859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채널A ^(854~855) , 인터넷 채널A ^(856~857) , 더사이언스 (THE SCIENCE) ^(858~859)	
조 정 대 상	• 채널A : 뉴스A 프로그램 『연구진끼리 공로 다툼』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11일자 22:00) • 인터넷 채널A · 더사이언스 (THE SCIENCE) : 『[뉴스A] '네이처' 표지 장식한 논문 놓고 공로 싸움』 제하의 기사 (인터넷 채널A 2012년 5월 11일자, 더사이언스 (THE SCIENCE) 5월 12일자)
신청인주장	네이처 표지에 실린 논문의 저자와 관련해 신청인이 교신저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로 다툼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860 (정정청구) 연천경찰서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연천署, 전의경 폭행 · 수사과장 뇌물혐의 '곤혹'』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에서 전 · 의경 구타가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이를 자체징계로 전의경들이 불복해 상급 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861~862 (정정 · 반론청구) 분당경찰서 對 뉴시스 코리아	
조 정 대 상	(1) 『[단독] 성남경찰-성매매업자 결탁 단속정보 흘려...경찰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5일자)

조 정 대 상	(2) 『성남경찰-성매매업자 유착의혹 수사 경기경찰청으로 확대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6일자) (3) 『성남경찰-성매매업소 유착의혹... “업주 A씨 휴대폰 4대로 뭐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조정대상기사 (2)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 (1)이 검색되지 않도록 삭제 조치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9일자)

2012경남조정37~38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김○○ 對 경남매일, 인터넷 경남매일	
조 정 대 상	『김해을 선거구 금품제공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2년 3월 20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3월 19일자)
신청인주장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법 위반 및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공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63~864 (정정·손배청구) 방○○ 對 MBC	
조 정 대 상	『무명가수 일본에 접대부로 송출한 가수 방○○씨등 구속』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1일자)
신청인주장	20여년 전 무혐의로 종결된 신청인의 직업안정법 위반 사건을 다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2서울조정865~866 (정정·손배청구) 황○○ 외 2인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30대 남성 모텔서 숨진채 발견』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동생이 여성과의 성관계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30대 남성, 모텔서 사망”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0일자)

2012서울조정867~868 (매체별 반론청구) (주)○○○종합건설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SBS-TV : SBS 12뉴스 프로그램 『공정위, 시정명령 무시한 건설사·대표 고발』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25일자 12:00) •SBSi : 『공정위, 시정명령 무시한 건설사·대표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건설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69~870	(정정·손배청구) 한국○○○○공제조합 對 마케팅경제신문
조 정 대 상	(1) 『“못받은 이익잉여금 달라” 특판조합 상대 또 소송』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8일자 1면) (2) 『실제는 지난해 지출액보다 많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8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예산규모를 늘려놓고도 7% 줄여 예산편성을 했다고 정기총회에서 거짓 보고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71	(정정청구) 1. 한국광물자원공사, 2. 김○○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1) 『빛 갸우라고... 광물公社가 대기업에 1500억 원 빌려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3일자 A01면) (2) 『“광물公社 1500억, 김○○ 사장 뒤에 누군가 있다”』 제하의 기사(2012년 5월 24일자 A01면) (3) 『광물公사장 “결재만 했다” 직원은 “사장이 주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4일자 A0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사가 특정 대기업에 1,500억을 빌려주는 등 특혜성 지원을 하였고, 이를 메우기 위해 해외광산 지분을 싸게 매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72~876	(매체별 손배청구) 유○○ 對 조선일보 ⁽⁸⁷²⁾ , 조선닷컴 ^(873, 872와 병합) , 네이버 ⁽⁸⁷⁴⁾ , 네이트 ⁽⁸⁷⁵⁾ , 다음 ⁽⁸⁷⁶⁾
조 정 대 상	『선생님의 끈질긴 求愛, 짝 단친 일진 마음을 열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5월 21일자 12면, 조선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 5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딸이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해 문제가아 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조선닷컴 : 조정성립 (사과 메일 발송, 기사삭제) • 네이버·네이트·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네이버·네이트·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조선닷컴)이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 날로부터 2일 이내로 기사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삭제된 이후로는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함

2012경기조정38	(정정청구) 주식회사○○산업개발 對 경기방송-R
조 정 대 상	6시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 『평택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 잡음』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23일자 18:00)
신청인주장	생활폐기물처리업체인 신청인 업체가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흙과 뒤섞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경기방송-R에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6시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을 진행자의 멘트로 보도하되,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함, 인터넷 경기방송-R 홈페이지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6시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 『평택시 생활폐기물처리업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14일자 18:00)

2012서울조정877~879		(정정·반론·손배청구)사단법인대한○○○협회對대한급식신문
조 정 대 상	(1) 『‘영양사 취업신고’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1일자 1면) (2) 『제도 신설보다 고용불안, 낮은 임금 등 처우개선이 선행...』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1일자 5면)	
신청인주장	‘영양사 취업신고제’를 도입하는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이 대한○○○협회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인터넷 대한급식신문에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급식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신청인협회 회장의 인터뷰 기사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결과 미이행	

2012충북조정26~2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황○○對 중부매일, 인터넷 중부매일
조 정 대 상	• 중부매일 : (1) 『심사부터 의혹 묵살·상식밖 점수차... ‘짜고 친 공모?’』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8일자 6면), (2) 『표절작품 3개로 늘어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1일자 4면), (3) 『[사설] 청원군 조형물 표절의혹 작품 안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일자 19면) • 인터넷 중부매일 : (1) 『심사부터 의혹 묵살·상식밖 점수차... ‘짜고 친 공모?’』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7일자), (2) 『청원군 조형물공모 당선팀 표절작품 더 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0일자), (3) 『창원군 조형물 표절의혹 작품 안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청원군 조형물 공모사업에 출품한 신청인의 작품이 표절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편향된 심사로 당선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80		(정정청구)(주)○○○○○저축은행對 문화저널21
조 정 대 상	『투감 “○○○○○ 이○○ 회장 업무상 배임혐의 짚어졌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은행의 감사 결정은 회장의 불법 경영이 초래한 결과이며, 부실금융기관임을 자인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기조정39~42	(매체별 정정청구) 반월신문 주식회사 對 인천일보 ⁽³⁹⁾ , 안산신문 ⁽⁴⁰⁾ , 안산미래신문 ⁽⁴¹⁾ , 안산정론신문 ⁽⁴²⁾
조 정 대 상	• 인천일보 : 『안산 B신문 부정행위 철저히 수사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3일자 19면) • 안산신문 :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 모지역신문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촉구』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3일자 3면) • 안산미래신문 :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 B신문, 관련 유착 문제 제기』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3일자 1면) • 안산정론신문 : 『지역신문 불법선거개입 의혹 철저한 수사 통해 진상 밝혀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3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신문사가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81~882	(정정·손배청구) 윤○○ 對 월간중앙
조 정 대 상	『주인 없는 ○○○의 비애 “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0일자 40~44면)
신청인주장	모대기업의 전 사장인 신청인이 이전 회장을 중도 사임시키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83	(정정청구) 용산경찰서 對 채널A
조 정 대 상	뉴스A 프로그램 『보복 단속? 적법 단속?』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18일자 22:00)
신청인주장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의 클럽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보복성 단속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신청인과 조정대상기사 간에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2대구조정13	(반론청구) 대구시○○협회 對 대구일보
조 정 대 상	『대구시, ‘내부분열’ ○○협회 몰아주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3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회원사간의 내부 파행으로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경기조정43~45	(정정·반론·손배청구) 주식회사○○○○ 영농법인 對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1) 『농경지로 임대한 국유지 불법 전용』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4일자 1면) (2) 『▶1면 ‘영농법인’ 서 계속』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1면) (3) 『국유 농경지 훼손 멋대로 승마장·연못·주차장 조성』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9일자 1면) (4) 『임대 국유지, 불법 재임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0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농경지로 임대받은 국유지를 영리목적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경기신문에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기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1)~(4)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국유지 무단전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2년 6월 27일자 2면, 인터넷 경기신문 6월 27일자)

2012서울조정884~886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수도권매립지공사 對 조선일보 ⁽⁸⁸⁴⁾ , 조선닷컴 ⁽⁸⁸⁵⁻⁸⁸⁶⁾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폐기물 4년째 불법매립 … 악취 아시안 게임 될 판』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일자 A08면) • 조선닷컴 : (1) 『폐기물 4년째 불법매립…악취 아시안 게임 될 판』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일자), (2) 『“지반 약화 우려 … 하수폐기물 하루 500t 넘게 묻지 말라” 매립지공사 측에 통보』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일자)
신청인주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09년부터 수십만톤 규모의 하수 침전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87 (반론청구) 관악경찰서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경찰 “더워서 종종 성추행” 황당 발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1일자)
신청인주장	관악 경찰서가 서울대생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수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경찰 “더워서 종종 성추행” 황당 발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5일자)

2012광주조정36~37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광주광역시 교육청 對 광주일보, 인터넷 광주일보	
조 정 대 상	『“정규수업외 학생 가르치면 징계”』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2년 6월 4일자 6면, 인터넷 광주일보 6월 4일자)
신청인주장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시내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방과 후 교과지도를 금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유: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광주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규수업외 학생 가르치면 징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2년 6월 29일자 2면, 인터넷 광주일보 6월 29일자)

2012경남조정39~41	(매체별 정정청구) 양산시對 뉴시스(경남) ⁽³⁹⁾ , 경남도민신문 ⁽⁴⁰⁾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41, 40과 병합)
조 정 대 상	『‘양산시 언론탄압 피소사건’ 재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2년 6월 1일자, 경남도민신문 6월 4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6월 3일자)
신청인주장	모 기자가 신청인 시 소속 공보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을 보도하면서 마치 신청인 시가 부당하게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뉴시스(경남) : 홈페이지 경남면 기사목록 상단에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전체 정정보도문이 나오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 홈페이지 기사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 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 전문을 함께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양산시 언론탄압 피소사건’ 재수사 착수>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권고문』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2년 6월 25일자, 경남도민신문 6월 25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6월 24일자)

2012서울조정888~889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경찰청對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음주운전 일반 공무원은 해임 등 중징계 받는데 ... 경찰은 ‘계급강등’ 보호막』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2년 5월 22일자 9면, 쿠키뉴스 5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음주운전 경찰관 처벌에 대해 “계급강등”이라는 제도 신설로 징계 수위를 완화해 경찰관 음주운전이 더 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쿠키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이 행 결 과	• 국민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2면) • 쿠키뉴스 : 『경찰, “강등제도로 경찰 음주운전 늘어난 것 아니다.” 밝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2012서울조정890~891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MB 라디오 주례 연설 사라진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8일자 1면)
신청인주장	KBS노사가 파업철회 합의를 하면서, ‘대통령 라디오 연설 폐지’를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KBS 파업철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2면)

2012서울조정892~893	(정정·손배청구)한국방송공사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KBS파업 95일만에 종료 ... “제2의 투쟁 시작”』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국방송공사가 노조와 파업철폐 합의를 하면서, 징계최소화, 비판 프로그램 부활 등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894~89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윤○○對 서울파이낸스, 네이버
조 정 대 상	『윤○○父, “푸틴 딸과 아들 결혼설 사실무근”』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898~899	(매체별 정정청구)○○○ 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조합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재개발 총회서 따졌더니 ... 검은 양복 어깨들이 말을 막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7일자 17면) • 온라인 중앙일보 : 『뉴타운 39억 횡령 따지니 검은 양복 어깨들이』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횡령 비리를 저질렀고, 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들을 조합측 경호원들이 제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또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제4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7월 23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7월 13일자)

2012서울조정900~90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윤○○對 소비자만드는신문, 네이버
조 정 대 상	『푸틴 한국인 사위 윤○○ “대통령 취임 직후 결혼식 예정”』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904~90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윤○○對 이투데이, 네이버
조 정 대 상	『윤○○父, “푸틴 딸과의 결혼설 ‘NO!’”』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908~911	(매체별 조정 · 손배청구) 윤○○對 헬스코리아뉴스, 네이버
조 정 대 상	『윤○○ 전 제독 아들 윤○○씨, 푸틴 한국인 사위 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913~914	(매체별 조정청구) (주)○○○항공對 네이버, 다음
조 정 대 상	『○○○항공, 우발 채무 46억 발목 잡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파산한 전 직원의 고용승계와 미지급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기업회생 인가를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충북조정30	(손배청구) 반○○對 현대HCN 충북방송
조 정 대 상	현대HCN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 『“新집행부는 유명단체”』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8일자 19:00)
신청인주장	충북○○○○○○연맹의 신 · 구 집행부간 갈등에 대한 신청인과의 통화 내용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15	(손배청구) 최○○ 외 2인對 채널A
조 정 대 상	이○○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18회 - 당신이 모르는 진실, 당신이 먹는 환경 호르몬』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8일자 23:00)
신청인주장	다른 프로그램에 보도됐던 신청인들의 모습을, 환경호르몬 젓병 관련 보도에 동의 없이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916	(정정청구) 이종화對 뉴스마토
조 정 대 상	『(단독)시의회 부의장이 관내서 단란주점 운영?』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8일자)
신청인주장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인 신청인이 관내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6월8일자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5일자)

2012서울조정917~918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민중언론 참세상	
조 정 대 상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 『수원교구 사제의 ‘해군기지 찬성’ 중학생 폭행에 대한 <조선일보> 등의 보도,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4일자) • 민중언론 참세상 : 『“신부 ‘해군기지 찬성’ 중학생 폭력,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제주도 해군기지를 찬성한 중학생(신청인)이 가톨릭 신부에게 폭행당했다는 보도는 정의 구현사제단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시도라고 허위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 민중언론 참세상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제주 해군기지 찬성’ 중학생 폭행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2년 6월 26일자, 민중언론 참세상 6월 27일자)

2012서울조정919~920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이○○ 對 시사저널,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국제 사기 앞에서 경찰은 ‘우왕좌왕’』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2년 4월 10일자 32~34면, 인터넷 시사저널 4월 11일자)
신청인주장	베트남 카지노 투자 사기사건’과 관련, 신청인이 사업투자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등 피해자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시사저널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베트남 한인 사업가 이모씨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2년 7월 11일자 7면, 인터넷 시사저널 7월 11일자)

2012서울조정923~926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황○○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육의전, 종로2가 빌딩밀 에 깔려 통곡한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5월 25일자 A10면, 조선닷컴 5월 25일자)
신청인주장	건축주의 약속불이행으로 건립이 지체되고 있는 종로 육의전박물관 문제와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신청인이 박물관 건립을 주도한 것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27	(정정청구) 변○○對 대일리팜
조 정 대 상	『문전약국 호객 ‘위험수위’ …발레파킹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약국이 지나친 호객행위로 보건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28	(손배청구) 이○○對 대일리팜
조 정 대 상	『문전약국 호객 ‘위험수위’ …발레파킹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대학병원 앞에 있는 약국들의 호객 행위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29~93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對 조선일보(929~930 정정·손배청구), 조선닷컴(931~932 정정·손배청구, 929~930과 병합), 네이버(933 정정청구), 다음(934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김두관 정무부지사 출신 강병기 진보당 黨대표 후보로 급부상』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6월 13일자 A04면, 조선닷컴·네이버·다음 6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통합진보당 당대표 선거에서 강병기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조선닷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 22~23참조))] ※ 이행방법 • 조선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민주노총 ○○본부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7월 3일자 A02면, 조선닷컴 7월 2일자)

2012서울조정935~936	(매체별 반론청구) 박○○對 jbc, 다음
조 정 대 상	• jbc : JTBC 주말뉴스 프로그램 『공무원 인기 비결은?』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9일자 19:00) • 다음 : 『공무원 ‘무늬만 박봉’ …좀처럼 식지 않는 인기 비결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9일자)
신청인주장	공무원 급여가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박봉으로 볼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937~938	(반론·손배청구) 1. (사)○○○○○○○○협회, 2. 최○○對MBC-TV
조 정 대 상	세상보기 시사각각 프로그램 『천차만별 임플란트 가격의 진실은?』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17일자 21:40)
신청인주장	대부분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가를 부풀려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모 네트워크 치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협회 직원인 신청인 2.와의 전화내용을 동의없이 녹음 발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공감 특별한 세상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을 아나운서 또는 성우의 멘트로 보도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공감 특별한 세상 프로그램 『세상보기 시사각각』 ‘치과 임플란트 가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1일자 18:50)

2012서울조정939	(정정청구) 외국인○○○○○연대對주간경향
조 정 대 상	『온라인 극우파 결집 코드는 ‘혐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3일자 14~1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이주노동자들의 국내 진입과 체류를 반대하는 우파 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1) 『반론보도』 ‘온라인 극우파’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0일자 목차) (2) 『외국인범죄척결연대, ‘온라인 극우파’ 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0일자 18면)

2012서울조정940~95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사단법인○○○○○○○사업회對 국민일보(940~941), 쿠키뉴스(942~943), 동아일보(944~945), 동아닷컴(946~947), 문화일보(948~949), 서울신문(950~951), 조선닷컴(952~953)
조 정 대 상	• 국민일보·쿠키뉴스 : 『대안교육 빙자해 좌편향 주입하는 ‘학교’』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2년 5월 18일자 23면, 쿠키뉴스 5월 17일자) • 동아일보 : (1) 『졸업식장서 北축사 읽고 간첩죄 8년 복역 교사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7일자 1면), (2) 『비인가 대안학교 ‘○○○○○학교’에선...』 진로탐방한다며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석, 평화기행한다며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7일자 4면), (3) 『[광화문에서] 시위하며 진로를 찾는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8일자 30면), (4) 『[사설] “이념의 시대 갔다”던 MB, 지금 사태 보고 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8일자 31면) • 동아닷컴 : (1) 『전남강진 비인가 대안학교 ○○○○○○학교에선...』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7일자), (2) 『[광화문에서/송○○] 시위하며 진로를 찾는다?』 (2012년 5월 18일자), (3) 『[사설] “이념의 시대 갔다”던 MB, 지금 사태 보고 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8일자) • 문화일보 : 『從北씨앗 키우는 ○○○ 학교, 방치해선 안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7일자 31면)

조 정 대 상	• 서울신문 : 『종북좌파의 국회 '진지' 구축 막아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9일자 27면) • 조선닷컴 : 『북한이 보낸 졸업축사 낭독... 좌편향 교육하는 학교』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종북 성향의 교사가 있으며, 좌편향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국민일보 · 쿠키뉴스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문화일보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서울신문 : 기각결정 (사유 : 이 사건 보도는 신청인학교의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표명한 것일 뿐, 사실적 주장이라 볼 수 없다) • 조선닷컴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조선닷컴 : 『○○○○○학교 종북성향 교육'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4일자)

2012서울조정954~957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홍○○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1) 『경찰은 '룸살롱 황제' 돈 받고... 서장은 그 경찰한테 돈 받은 혐의』 (조선일보 2012년 4월 13일자 12면, 조선닷컴 4월 13일자) (2) 『'룸살롱 황제' 돈 받은 경찰들, 다른 업소 80곳서도 상납받아』 (조선일보 2012년 6월 12일자 8면, 조선닷컴 6월 12일자)
신청인주장	경찰서장인 신청인이 룸살롱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들로부터 금품을 상납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58~959 (정정 · 손해청구) (주) 한국○○○카드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MB 시장 시절,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서 물먹은 이유』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신청인 회사가 특별히 교통카드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총선선수금을 편취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대전조정27~28 (매체별 정정청구) 염홍철對 디트뉴스24	
조 정 대 상	(1) 『설마 염시장의 지시는 아니겠죠?』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2) 『염홍철시장의 '자해(自害)인사'』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꿈돌이랜드' 매입 계획안 심의 의결을 위한 대전마케팅공사 이사회 개최과정에 시장인 신청인이 개입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60~961	(정정·손배청구) 김○○ 對 주간짜주신문
조 정 대 상	『파주시, 공장허가 3억쪼터니 OK!』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6일자 1면)
신청인주장	공인중개사인 신청인이 대가성 돈을 받고, 불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하게 해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62~963	(정정·손배청구) 김○○ 對 주간짜주신문
조 정 대 상	『공인중개사 K씨, 불법전매로 5억 차익?』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3일자 1면)
신청인주장	공인중개사인 신청인이 부동산 불법전매를 이용한 투기로 5억5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64~965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 협회 對 오마이건설뉴스,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조 정 대 상	『시설물관리協, 공제조합 설립 난항 '왜?'』 제하의 기사 (오마이건설뉴스 2012년 6월 11일자 1면,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6월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공제조합을 설립하면서, 운영위원 구성과 설립 시기등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시설물관리협회 “공제조합 설립 추진 중”』 제하의 기사 (오마이건설뉴스 2012년 7월 9일자 1면,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7월 9일자)

2012서울조정966	(정정청구) 박근혜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전두환 “오빠” 박근혜에 불법통치자금 수백억 건넸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오빠’라고 호칭하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전북조정27	(정정청구) 익산시 對 익산시민뉴스
조 정 대 상	『익산시 비리, 판도라 상자 (대검중수부 진정서) 열린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익산시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범죄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는 직원을 좌천 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67~969 (정정·반론·손배청구) 주식회사○○○○○對KBS-2TV	
조 정 대 상	스펀지 프로그램 『엄마가 모르는 아이의 비밀 - 전자담배』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1일자 20:50)
신청인주장	흡연억제용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담배보다 해롭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회사명이 찍혀있는 전자담배를 화면에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스펀지프로그램 클로징 멘트 직전에 메인진행자인 김○○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반론보도, 낭독속도는 동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며,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아래 자막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 KBSi 홈페이지에서 반론보도문을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함
이 행 결 과	스펀지 프로그램 『전자담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3일자 20:50)

2012대구조정14 (정정청구)(주)○○○○對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브레인의 신○○ 안경도 우리 제품, 기술력 일취월장·獨 업체와 경쟁”』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협찬을 제공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착용한 안경을 다른 업체가 제공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일자 14면)

2012서울조정971 (정정청구) 남○○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애 낳을 때 무통주사 없다더라 ...과담에 임신부 좌불안석』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8일자)
신청인주장	병원의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전문 알바를 고용하여 인터넷 여론전을 주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신청인과 조정대상기사 간에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2서울조정972 (정정청구) 국가정보원對 주건한국	
조 정 대 상	『현정권 기독교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8일자 8~9면)
신청인주장	국가정보원이 진보성향의 불교 인사들을 불법 사찰하고, 불교계 비자금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불교계 사찰’ 기사와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3일자 10면)

2012서울조정973~974 (정정·손배청구)(주)한국○○○카드對 프레스이안	
조 정 대 상	『‘그’가 손을 대면, 공공정책도 ‘알짜 수익 모델’』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1일자)

신청인주장	교통카드 티머니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교통정보를 독점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75	(손배청구) 1. 이○○, 2. 김○○ 對 인터넷 서울경제
조 정 대 상	『[대한민국은 지금 세일중] 백화점 역대 최장기 세일...마트도 50% · 최저가 할인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백화점 장기 세일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물건을 구경하는 신청인들(예비 신랑신부)의 모습을 몰래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손해배상 각 100만 원 (2012서울중재26 참조)]

2012서울조정976	(정정청구) 안○○ 對 KBS-2TV
조 정 대 상	VJ특공대 프로그램 『622회 - 실태보고! 주폭과의 전쟁』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2일자 21:50)
신청인주장	무분별한 음주문화 실태를 방영하면서, 지하철에서 잠이 든 신청인을 무단으로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 금 100만 원 지급)

2012서울조정977~978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방위사업청 對 주간한국, 인터넷 주간한국
조 정 대 상	『방사청 간부 잇단 교체에 뒷말 무성』 제하의 기사 (주간한국 2012년 6월 22일자 10면, 인터넷 주간한국 6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성능에 의문이 제기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 기종으로 내정 되었으며, 이 과정에 청와대 개입과 커미션 수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주간한국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 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주간한국 : (1)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3일자 목차), (2)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3일자 8면) • 인터넷 주간한국 :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4일자)

2012광주조정38~39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최○○ 對 담양신문, 인터넷 담양신문
조 정 대 상	『[사실] 이낙연 의원이 앞장서야 한다』 제하의 기사 (담양신문 2012년 4월 18일자 5면, 인터넷 담양신문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담양군수인 신청인이 후보자 시절 담양군의 광주편입을 역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 기사는 신청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홍보물(공약집)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중재부의 반론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인터넷 담양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2012서울조정979~980 (정정·손배청구) ○○중앙교회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대형교회 '막장' 싸움...원인은 재정장부』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5일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회돈을 펀드 투자와 자녀 교육비로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81~982 (매체별 정정청구) 천안동남경찰서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살려주세요” 위치추적하고도 1300가구 문 두드린 경찰』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6월 6일자 13A면, 동아닷컴 6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휴대폰으로 구조를 요청한 여성의 위치 확인만 하고, 신원 조회를 하지 않아 구조가 지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 : 『천안동남경찰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1일자 5면) • 동아닷컴 : 『[대전/충남] 천안동남경찰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1일자)

2012경기조정46~47 (정정·손배청구) 김○○ 對 경기방송-R	
조 정 대 상	(1) 12시 낮 종합뉴스 프로그램 『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파업, 정치 이념 갈등이 원인?』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23일자 12:00) (2) 6시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 『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파업, 정치 이념 갈등이 원인?』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23일자 18:00)
신청인주장	공단 노조의 파업이 이사장인 신청인과 진보 성향인 구청장 간의 정치 이념 갈등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83~984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시스템 對 CNBNEWS	
조 정 대 상	『○○시스템 남○○-○○ 형제 부도덕성 점입가경』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기업사냥·횡령 등 부도덕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 24~25참조)]

2012서울조정985	(정정청구) 주식회사○○○○○투자증권 對 이투데이
조 정 대 상	(1) 『사무금융노조, “이○○ 회장 5대의혹 해명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2) 『○○○○○ ‘흑자서 적자’ 재공시…노조원 100여 명 해고 노림수』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노조로부터 고발될 경우, 상장폐지 실질검사 대상에 오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중재부가 제시한 정정보도문은 조정대상기사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간단해 독자들로서는 그 정정보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조정대상기사 별로 정정보도문이 별도로 게재되길 원한다)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뉴스목록 좌측 중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1)~(2)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2012서울조정986~98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사○○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A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인턴사원에서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증권사가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제보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선닷컴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앞 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도 반론보도문 게재함
이 행 결 과	『 ‘○○증권 인턴사원 정규직 채용’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7월 26일자 A2면, 조선닷컴 7월 25일자)

2012서울조정990~991	(정정·손배청구) (병합) 유○○ 對 신아일보, 인터넷 신아일보
조 정 대 상	『경찰 ‘초심찾기’ 교육 무색』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2년 6월 27일자 1면, 인터넷 신아일보 6월 26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수 년간 경마도박을 하고, 구속된 피의자와 금전관계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40~41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송○○ 對 전국매일, 인터넷 전국매일
조 정 대 상	(1) 『순천시 낙안읍성 체험장 운영자 부정선정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전국매일 2012년 4월 2일자 11면, 인터넷 전국매일 4월 2일자) (2) 『노인 노동착취·수천만 원 보조금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전국매일 2012년 4월 11일자 16면, 인터넷 전국매일 4월 11일자)

신청인주장	낙안읍성 보존회장인 신청인이 읍성장과 찌고 체험장 운영자를 특정인으로 부정선정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의 주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2012광주조정42~43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1. 승○○, 2. 승△△ 對 전국매일, 인터넷 전국매일	
조 정 대 상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무허가 식품 판매마을?』 제하의 기사 (전국매일 2012년 4월 9일자 11면, 인터넷 전국매일 4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무허가식품을 판매하고 불법영업 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전국매일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무허가 식품 판매마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전국매일 2012년 7월 20일자 11면, 인터넷 전국매일 7월 20일자)

2012광주조정44~45 (매체별 정정청구) 장성군 對 장성사람들, 인터넷 장성사람들	
조 정 대 상	『[기자의 눈] 뻔한 인사? 알다가도 모를 인사』 제하의 기사 (장성사람들 2012년 5월 24일자 2면, 인터넷 장성사람들 5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장성군이 운영하는 직소민원실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992~998 (매체별 정정청구) 정○○ 對 인터넷 경향신문 ⁽⁹⁹²⁾ , 인터넷 기자협회보 ⁽⁹⁹³⁾ , 노컷뉴스 ⁽⁹⁹⁴⁾ , 미디어스 ⁽⁹⁹⁵⁾ , 인터넷 미디어오늘 ⁽⁹⁹⁶⁾ , 뉴스앤뉴스 ⁽⁹⁹⁷⁾ , 프레시안 ⁽⁹⁹⁸⁾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향신문 : 『MBC 노조 “김재철 사장, 무용수 오빠 ‘사장님’ 만들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 인터넷 기자협회보 : 『김재철 사장, J씨 오빠에게도 특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 노컷뉴스 : 『MBC 노조 “김재철 사장, 무용수 J씨의 오빠까지 특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 미디어스 : 『김재철, 무용가 J씨 오빠에게도 ‘특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 출연시켜줘라’ 지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 뉴스앤뉴스 : 『MBC노조 “김재철, 무용수 오빠까지 특혜 채용”』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 프레시안 :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 오빠에게도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MBC 김재철 사장의 특혜로 MBC 해외지사장에 채용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경향신문 : 취하 • 인터넷 기자협회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노컷뉴스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미디어스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뉴스앤뉴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프레시안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기자협회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미디어오늘 : 홈페이지 뉴스면 사회섹션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뉴스앤뉴스 : 홈페이지 미디어섹션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프레시안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전체 목록 중간 이상)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기자협회보 : 『 '김재철 사장, J씨 오빠에게도 특혜?'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0일자) • 노컷뉴스 : 『 '김재철 사장, 무용수 J씨의 오빠까지 특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 미디어스 : 『 '김재철, 무용가 J씨 오빠에게도 특혜' 관련 반론보도 및 알림』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 출연시켜 줘라' 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9일자) • 뉴스앤뉴스 : 『 '김재철 사장, 무용수 오빠까지 특혜 채용' 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9일자) • 프레시안 : 『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 오빠에게도 특혜 의혹' 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2012서울조정999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가격협상 없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18일자 20:00)

신청인주장	차세대 전투기 기종 결정 과정에 가격 협상이 전혀 없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SBS 8 뉴스 프로그램 『방위사업청, 차세대 전투기 사업 일정』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7일자 20:00)

2012서울조정1000~100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노○○對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총파업특보 ^(1000~1001) , 스타뉴스 ^(1002~1003) , 오마이뉴스 ^(1004~1005) , 프레시안 ^(1006~1007)
조 정 대 상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총파업특보 : 『‘막장 채용’의 인사 스캔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2면) • 스타뉴스 : 『MBC, 성추행 전력 기자 채용했다 번복』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 오마이뉴스 : 『MBC ‘성추행 의혹 인물’ 임시기자 채용 물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8일자) • 프레시안 : 『MBC, ‘성추행 전력자’ 뽑아 리포팅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8일자)
신청인주장	MBC 계약직 기자에 응시했던 신청인이 과거 금품수수 등으로 평판이 나빴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이 행 결 과	• 스타뉴스 : 『‘MBC 성추행 전력 기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0일자)

2012서울조정1008~100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문재인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1) 『문재인, 靑서 대주주 앞에 두고 금감원에 전화』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일자 A01면), (2) 『文 두드린 檢… ‘저축銀’ 대선정국 흔드나』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일자 A06면) • 동아닷컴 : (1) 『“문재인 전화, 청탁 아깝다” 대선판도 어떻게?』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일자), (2) 『“문재인, 靑서 대주주 앞에 두고 금감원에 전화”』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2003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완화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걸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남조정42~4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최○○對 한남일보, 인터넷 한남일보
조 정 대 상	『[현장취재] 지금 구천댐 상류지역에서는 무허가 식당에 불법 건축물까지』 제하의 기사 (한남일보 2012년 4월 4일자 3면, 인터넷 한남일보 4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하고 있고, 불법 건축물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손배청구 : 취하 ※ 이행방법 : 인터넷 한남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전체 정정보도문이 나오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

처 리 결 과	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지금 구천담 상류지역에는 무허가 식당에 불법 건축물까지’ 기사관련 정정보도』제하의 기사 (한남일보 2012년 7월 13일자 3면, 인터넷 한남일보 7월 13일자)

2012전북조정28	(반론청구) 박○○ 對 전주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판매점 요금납부 안돼』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5일자 21:00)
신청인주장	이동통신사 대리점 요금 수납 문제에 대해 인터뷰한 신청인의 발언 내용이 편집되어 일부만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2서울조정1010~1013	(매체별 정정청구) 국토해양부 對 경향신문 ⁽¹⁰¹⁰⁾ , 인터넷 경향신문 ^(1011, 1010과 병합) , 한겨레 ⁽¹⁰¹²⁾ , 인터넷한겨레 ^(1013, 1012와 병합)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인터넷 경향신문 : 『하늘에서 본 ‘4대강의 후폭풍’ ②지천 오염 가속』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6월 25일자 9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25일자)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4대강 사업 후유증 ‘낙동강 녹조’』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6월 25일자 9면, 인터넷 한겨레 6월 25일자)
신청인주장	4대강사업으로 인해 낙동강 지천 하류에 오염물질이 침전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향신문 · 인터넷 경향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취하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2면) • 인터넷 경향신문 : 『‘4대강 사업 후유증 낙동강 녹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7일자)

2012서울조정1014~1015, 1018~101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환경부 對 경향신문 ⁽¹⁰¹⁴⁾ , 인터넷 경향신문 ^(1015, 1014와 병합) , 한겨레 ⁽¹⁰¹⁸⁾ , 인터넷한겨레 ⁽¹⁰¹⁹⁾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인터넷 경향신문 : 『하늘에서 본 ‘4대강의 후폭풍’ ②지천 오염 가속』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6월 25일자 9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25일자)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4대강 사업 후유증 ‘낙동강 녹조’』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6월 25일자 9면, 인터넷 한겨레 6월 25일자)
신청인주장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낙동강 지천 하류에 오염물질이 침전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향신문 · 인터넷 경향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각 취하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2면) • 인터넷 경향신문 : 『‘4대강 사업 후유증 낙동강 녹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7일자)

2012서울조정1016~1017, 1051~1052, 1054, 1074~1075	(매체별 정정청구) 김○○ 외 1인 對 인터넷 BBS불교방송 ⁽¹⁰¹⁶⁾ , 프레시안 ⁽¹⁰¹⁷⁾ , 미디어스 ⁽¹⁰⁵¹⁾ , 인터넷 미디어오늘 ⁽¹⁰⁵²⁾ , 아이피디저널 ⁽¹⁰⁵⁴⁾ , 노컷뉴스 ⁽¹⁰⁷⁴⁾ , 아시아투데이닷컴 ⁽¹⁰⁷⁵⁾
조 정 대 상	• 인터넷 BBS불교방송 : (1) 『YTN 노조, ‘불법사찰’ 회사간부 연루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2) 『YTN 노조, 배○○ 사장 등 6명 고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6일자) • 프레시안 : 『YTN 간부들, ‘불법사찰 증거인멸’ 당시 ‘사찰자 원○○’ 과 집중 통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 미디어스 : (1) 『YTN 노조, “YTN 주요 간부들, 불법 사찰에 연루”』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8일자), (2) 『YTN 노조, ‘불법사찰’ 관련 배○○ 등 간부 4명 고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7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1) 『YTN 간부들, 원○○과 통화…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관여했나』 제하의 기사(2012년 4월 8일자), (2) 『YTN 법무팀장, 총리실 증거인멸 직전 통화한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3) 『불법사찰 수사 직전, YTN과 총리실 무슨 일 있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0일자), (4) 『YTN 노조, 불법사찰 개입정황 간부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6일자) • 아이피디저널 : (1) 『YTN 간부 ‘불법사찰’ 원○○과 직접 통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2) 『YTN 노조, 배○○ 사장 등 간부 4명 고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6일자) • 노컷뉴스 : 『YTN 노조, ‘불법 사찰’ 관련자 고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6일자) • 아시아투데이닷컴 : 『YTN 노조, ‘불법사찰’ 배○○ 대표이사 등 6명 검찰에 고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6일자)
신청인주장	YTN 간부인 신청인들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BBS불교방송 · 미디어스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아이피디저널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프레시안 : 조정불성립결정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 아시아투데이닷컴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인터넷 BBS불교방송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1)~(2)의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각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검색되도록 함,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신청인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청인들은 무혐의 처분 통지서나 무죄를 입증하는 판결문을 인터넷 BBS불교방송에 송부하고, 인터넷 BBS불교방송은 이 통지 또는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추후보도문을 24시간동안 게재하며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각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미디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1)~(2)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각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신청인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 신청인들은 무혐의 처분 통지서나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문을 미디어스에게

처 리 결 과	송부하고, 미디어스는 위 통지 또는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혐의 없음’ 내지 ‘무죄 선고’에 대해서 추후보도문을 24시간동안 게재, 조정대상기사 (1)~(2)의 하단에도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각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인터넷 미디어오늘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1)~(4)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각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신청인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 신청인들은 무혐의 처분 통지서나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문을 인터넷 미디어오늘에게 송부하고, 인터넷 미디어오늘은 위 통지 또는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혐의 없음’ 내지 ‘무죄 선고’에 대해서 추후보도문을 24시간동안 게재, 조정대상기사 (1)~(4)의 하단에도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각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아이피디저널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1)~(2)의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각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신청인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 신청인들은 무혐의 처분 통지서나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문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아이피디저널은 위 통지 또는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혐의 없음’ 내지 ‘무죄선고’에 대해서 추후보도문을 24시간동안 게재, 조정대상기사 (1)~(2)의 하단에도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각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노컷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신청인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청인들은 무혐의 처분 통지서나 무죄를 입증하는 판결문을 노컷뉴스에게 송부하고, 노컷뉴스는 이 통지 또는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추후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BBS불교방송 : 『YTN 간부들 불법사찰 연루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일자) • 미디어스 : 『YTN 간부들, 불법 사찰에 연루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6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YTN 간부들 불법 사찰 연루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6일자) • 아이피디저널 : 『“YTN 간부들, 불법 사찰에 연루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6일자) • 노컷뉴스 : 『“YTN 노조, ‘불법 사찰’ 관련자 고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7일자) • 아시아투데이닷컴 : 『“YTN 노조, ‘불법 사찰’ 관련자 고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0일자)

2012서울조정1020		(정정청구) 박○○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1조원대 ○○그룹 임○○ 사건도 기획·표적 수사였나』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4일자)	
신청인주장	○○그룹 기업비리에 대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정치적인 표적수사로 매도해,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대검중수부 ○○그룹 수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2012서울조정1021~1025, 1053		채○○ 對 MBC-TV^(1021~1022 정정·손배청구), iMBC^(1023~1024 정정·손배청구, 1021~1022와 병합), 네이버^(1025 정정청구), 다음^(1053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소비자 등친 펜션』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8일자 21:00) • iMBC·네이버·다음 : 『소비자 등친 펜션·렌터카 ... '꼼수 할인'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소비자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펜션 사례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펜션 전경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MBC-TV·iMBC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삭제,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026~1027		(매체별 정정청구) 김○○ 외 1인 對 민중의소리,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 민중의소리 : 『YTN 노조, “불법사찰·은폐에 사측 주요간부 3명 연루됐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 오마이뉴스 : 『민간인 사찰 주역과 YTN 간부들의 '수상한 통화내역'』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신청인주장	YTN 간부인 신청인들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기조정48~5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노○○ 對 경도신문, 경인종합일보
조 정 대 상	• 경도신문 : 『영업장 미관 보호한다며 가로수 훼손』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11면) • 경인종합일보 : 『전 시의원 ‘영업장 미관보호’ 가로수 절단 특혜시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처가 운영하는 영업장 주변의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전직 시의원인 신청인에 대한 특혜조치라고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경도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경인종합일보 : 취하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경도신문 : 『‘영업장 미관 보호한다며 가로수 훼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2면) • 경인종합일보 : 『‘전 시의원 영업장 미관보호 가로수 절단 특혜시비’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3일자 2면)	

2012강원조정3~4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산업 외2인 對 강원신문
조 정 대 상	(1) 『폐기물업체 회장, 부도덕한 경영 도마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1일자 1면) (2) 『기업 오너의 부도덕한 사생활 충격』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1일자 2면) (3) 『의혹과 파문으로 성장해온 기업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1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들이 산림훼손, 폐기물 불법매립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기업주인 신청인은 세금포탈 등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028	(정정청구) (사)한국프로골프협회 對 포커스인아시아
조 정 대 상	『‘막가파’ 한국프로골프협회 끝은 어디?』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일자)
신청인주장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협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충북조정31~32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이○○ 對 충청리뷰, 충북인뉴스
조 정 대 상	『꿈과 열정 있는 아이들 모여라』 제하의 기사 (충청리뷰 2012년 5월 4일자 B2면, 충북인뉴스 5월 3일자)
신청인주장	음악적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자녀 선발을 위한 오디션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각 손해배상 50만 원, 부제소)

2012충북조정33~3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송○○ 對 보은신문, 인터넷 보은신문
조 정 대 상	『대형마트 납품 놓고 우유대리점 간 ‘과당경쟁’』 제하의 기사 (보은신문 2012년 6월 28일자 1면, 인터넷 보은신문 6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신규 우유대리점의 대형마트 납품을 저지하기 위해 타 대리점과 담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보은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사과보도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게재,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사과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사과 및 정정보도문』 ‘우유대리점 과당경쟁’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보은신문 2012년 7월 19일자 1면, 인터넷 보은신문 7월 19일자)

2012서울조정1029~103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장○○ 對 서울신문(1029~1030), 인터넷 서울신문(1031~1032), 네이버(1033~1034), 네이트(1035~1036), 다음(1037~1038)
조 정 대 상	• 서울신문 : 『국내 최대 공시족 커뮤니티의 횡포』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25면) • 인터넷 서울신문·네이버·네이트·다음 : 『국내 최대 공시족 커뮤니티의 ‘횡포’』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무원 시험 커뮤니티가 학원과 출판사에 고액의 광고를 강요하여 수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039~1044	(매체별 반론청구) 김○○ 對 jbc ⁽¹⁰³⁹⁾ , 인터넷 jbc ⁽¹⁰⁴⁰⁾ , 온라인 중앙일보 ⁽¹⁰⁴¹⁾ , 네이버 ⁽¹⁰⁴²⁾ , 네이트 ⁽¹⁰⁴³⁾ , 다음 ⁽¹⁰⁴⁴⁾
조 정 대 상	• jbc : jbc 뉴스10 프로그램 『‘뜨쟁이’에게 한 수 배우는 요즘 의사들…문신 아이러니』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6일자 22:00) • 인터넷 jbc · 온라인 중앙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뜨쟁이’에게 한 수 배우는 요즘 의사들…문신 아이러니』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요즘 의사들은 의료기관이 아닌 타투이스트에게 문신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마치 신청인이 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045~1050	(매체별 반론청구) ○○○○(주) 對 뉴시스 ⁽¹⁰⁴⁵⁾ , 네이버 ⁽¹⁰⁴⁶⁾ , 네이트 ⁽¹⁰⁴⁷⁾ , 다음 ⁽¹⁰⁴⁸⁾ , 야후 ⁽¹⁰⁴⁹⁾ , 줌닷컴 ⁽¹⁰⁵⁰⁾
조 정 대 상	『나도 모르게 돈 인출…사칭 전화번호부 업체 횡포』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전화번호부 발행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KT를 사칭하여 돈을 인출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대전조정29~30	(매체별 반론청구) 김○○ 對 금강일보, 인터넷 금강일보
조 정 대 상	(1) 『[포커스]공주시 영 · 유아 보육조례 부결 무엇이 문제였나』 제하의 기사 (금강일보 2012년 6월 14일자 17면, 인터넷 금강일보 6월 13일자) (2) 『<기자수첩> 과유불급이 부른 망신살』 제하의 기사 (금강일보 2012년 6월 19일자 17면, 인터넷 금강일보 6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기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공을 돌리기 위해 새로운 영유아보육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인근 지자체의 조례안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포커스] 공주시 영 · 유아 보육조례 부결 무엇이 문제였나』와 ‘<기자수첩> 과유불급이 부른 망신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금강일보 2012년 7월 27일자 7면, 인터넷 금강일보 7월 27일자)

2012제주조정4~5	(정정 · 손해청구) ○○○○학교(주)○○월드 對 KCTV
조 정 대 상	KCTV 종합뉴스 프로그램 『도내 한 보육시설에서 ‘결핵’ 감염 논란』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0일자 19:00)
신청인주장	신청인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이 결핵에 감염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7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 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을 조정대상보도의 자료 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KCTV 종합뉴스 프로그램 『도내 한 보육시설 결핵 감염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7일자 19:00)

2012광주조정46~47	(매체별 반론청구) ○○지구지역주택조합 對 전남매일, 인터넷 전남매일
조 정 대 상	(1) 『비인가 주택조합 회원가입 '말썽'』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2년 6월 1일자 9면, 인터넷 전남매일 6월 1일자) (2) 『비인가 주택조합 회원가입 문제없나』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2년 6월 4일자 19면, 인터넷 전남매일 6월 4일자) (3) 『광주 비인가 주택조합 난립』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2년 6월 5일자 6면, 인터넷 전남매일 6월 5일자) (4) 『서구청, 비인가 주택조합 봐주기(?)』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2년 6월 8일자 8면, 인터넷 전남매일 6월 8일자) (5)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횡포 두고 볼텐가』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2년 6월 13일자 15면, 인터넷 전남매일 6월 13일자) (6)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위기'』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2년 6월 14일자 7면, 인터넷 전남매일 6월 14일자) (7) 『○○지구 조합아파트 부지 건축권리 논란』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2년 6월 28일자 7면, 인터넷 전남매일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불법으로 모집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불법으로 징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1055	(정정청구) 통합진보당 對 민중의소리
조 정 대 상	『조중동에 전달한건 송○○ … 혁신비대위, 내부 '협조자' 밝혀야』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일자)
신청인주장	통합진보당 선거인 명부 유출과 관련, 혁신비대위의 내부 협조자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056~1057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주)다음세계상조 對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조 정 대 상	• TV조선 : 뉴스와이드 참 프로그램 『상조업체 선정시 유의점은?』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1일자 14:00) • 인터넷 TV조선 : 『상조업체 선정시 유의점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상조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업체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알림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와이드 참 프로그램 『“상조업체 선정시 유의점은?” 보도관련 알림』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10일자 14:00)
2012서울조정1058~1060, 1063	(매체별 반론청구) 광명소하○○○○○단지 입주자대표회의 對 아시아경제닷컴 ⁽¹⁰⁵⁸⁾ , 조선닷컴 ⁽¹⁰⁵⁹⁾ , 연합뉴스 ⁽¹⁰⁶⁰⁾ , 다음 ⁽¹⁰⁶³⁾
조 정 대 상	• 아시아경제닷컴 : 『○○○ 소하리공장 소음 때문에 조업 중단될까?』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일자) • 조선닷컴 : 『○○○ 광명공장 야간조업 중단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 연합뉴스·다음 : 『광명시 “○○○ 소하리공장 소음개선 보고서 제출”』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일자)
신청인주장	거주중인 아파트 인근 공장의 공장의 야간 소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신청인이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 기사를 통해 신청인이 직접 언급된 바 없어 신청인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12충북조정37~3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김○○ 對 충청매일, 인터넷 충청매일
조 정 대 상	『충북경찰, 대전 사이버기차 수사』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2년 4월 9일자 3면, 인터넷 충청매일 4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어린이집 원장 및 공무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061~106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박○○ 사장 취임 5개월, 어수선했던 세종문화회관』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6월 11일자 14면, 인터넷 한국일보 6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의 사장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의 정책자문위원회 문화환경분과 위원장이었으며, 현 사장 취임 이후 각종 현안 사업이 개점휴업 상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2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세종문화회관 박○○ 사장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8월 21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21일자)
2012충북조정39~40	(매체별 정정청구) 박○○ 對 보은신문, 인터넷 보은신문
조 정 대 상	『대형마트 납품 놓고 우유대리점 간 ‘과당경쟁’』 제하의 기사 (보은신문 2012년 6월 28일자 1면, 인터넷 보은신문 6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신규 우유대리점의 대형마트 납품을 저지하기 위해 타 대리점과 담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우유대리점 과당경쟁” 제하 기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보은신문 2012년 7월 19일자 1면, 인터넷 보은신문 7월 19일자)

2012경기조정52	(본론청구) 광명소하○○○○○단지입주자대표회의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 광명 공장 소음 때문에 가동중단 위기』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거주중인 아파트 인근 공장의 야간 소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신청인이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광명시, ○○○ 뵈주기 의혹” 감사청구』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0일자)

2012서울조정1064~1065	(정정·손배청구) 윤○○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1) 『윤○○, 윤○○에 저축銀 퇴출무마 청탁 함께 돈 줬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0일자 1면) (2) 『개국공신 이어 ‘MB맨’ 까지 박지원 소환조사 명분쌓기?』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0일자 3면)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0일자 2면)

2012서울조정1066~106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회노동조합 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복수노조 1년… 기존 노조 교묘한 탄압, 되레 노동 3권 위협”』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7월 2일자 12면, 인터넷 경향신문 7월 1일자)
신청인주장	대학 내 경비원들로 구성된 신청인 노동조합을 사측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어용노조인 것처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070~107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이○○ 對 MBN,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 MBN : 현장르포 특종세상 프로그램 『재앙의 전주곡? 기이한 소리의 정체』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0일자 20:00) • 인터넷 MBN : 『재앙의 전주곡? 기이한 소리의 정체』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역술가인 신청인이 오래된 나무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에 대해 ‘주된 원인은 주민들이 나무를 무시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MBN : 현장르포 특종세상 프로그램 『<기이한 소리의 정체>편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8일자 22:00) • 인터넷 MBN : 『<기이한 소리의 정체>편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7일자)

2012광주조정48	
(정정청구)○○중학교 對 뉴스1코리아(광주전남)	
조 정 대 상	『‘니키킨’ 피해 학생에 책임 물은 ‘황당’ 중학교』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교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피해 학생에게 징계를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니키킨’ 피해 학생에 책임 물은 ‘황당’ 중학교” 관련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0일자)

2012대전조정31	
(정정청구) ○○○○○○주식회사 對 tjb-tv	
조 정 대 상	(1) tjb 아침뉴스 프로그램 『안일한 지자체...독점 의혹』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0일자 07:30) (2) tjb 아침뉴스 프로그램 『공정위, 급식카드 가맹편의점 독점의혹 조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0일자 07:30)
신청인주장	특정 대기업의 급식전자카드 가맹점 독점이 신청인 회사 때문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신청인 회사는 지정된 가맹점의 카드승인망을 구성, 관리하는 업체일 뿐 가맹점 모집 권한이 없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1076~107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석유회사설립준비위원회 對 머니투데이,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안갯속 ‘○○석유회사’ 실체는?』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2년 6월 29일자 9면, e머니투데이 6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신청인 단체가 싼 값에 석유를 공급하겠다고며 투자자들로부터 정유사 설립자금을 모으고 있어 금융사고가 우려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078~1081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정○○ 對 덴탈포커스, 인터넷 덴탈포커스	
조 정 대 상	『77만 원 임플란트가 ‘양심’ 이라고?』 제하의 기사 (덴탈포커스 2012년 6월 25일자 1면, 인터넷 덴탈포커스 6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저렴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겠다는 신청인(치과의사)의 광고를 환자를 속이는 과장된 것으로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지하철 역사의 대중광고를 자료사진으로 활용하였고 신청인의 연락처와 사진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였다. 또한 해당광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견해차가 여전히 크며, 신청인 측을 대상으로 충분한 반론 취재를 거쳤다)

2012서울조정1082~1089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이○○ 외 1인 對 매일경제(1082~1083), 인터넷 매일경제(1084~1085), 네이버(1086~1087), 다음(1088~1089)	
조 정 대 상	• 매일경제 : 『서울시 공무원 공연장 추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0일자 A31면)

조 정 대 상	•인터넷 매일경제·네이버·다음 : 『서울시 공무원 공연장 추태 … 관객들 눈살』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서울시 공무원인 신청인들이 연극공연 관람에 지각해 입장이 불가능해지자 검찰공무원을 사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경기조정53	(손배청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지부 對 경기도민일보
조 정 대 상	『○○구 ○○○○소 파업 2라운드』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9일자 1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조가 정규직의 일반직 전환,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지불 등 과도한 요구를 한 것처럼 허위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090~1091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대전지방국도관리청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가뭄 걱정 안해도 된다더니... 4대강 공사 주변논밭 물 끌어쓰기 더 어렵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6월 14일자 12면, 인터넷 한겨레 6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두 지역이 4대강 공사에도 불구하고 물 끌어쓰기가 어렵다고 보도했으나, 한 곳은 4대강과 관련이 없고, 한 곳은 충분한 수량이 확보되고 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 사회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처 리 결 과	『4대강 공사 주변 농경지 취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7월 31일자 12면, 인터넷 한겨레 7월 30일자)

2012서울조정1092~1093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문화방송 對 KBS-1TV
조 정 대 상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2012 노동자의 삶』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0일자 22:00)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 대표가 낙하산으로 임명되었고, 노조파업에 대해 대화가 아닌 강경 일변도의 태도로 응수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094	(반론청구) 김○○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성남시, 감사 못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성남광고협회 회장인 신청인이 수익금의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095	(정정청구) (재)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다음날 노조사무실에 대못질...MB정부 뿌리깊은 반노(反勞)』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신청인주장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하는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0일자)

2012경남조정46~51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홍어성초 영농조합법인 對 창원일보 ^(46~47) , 인터넷 창원일보 ^(48~49) , 다음 ^(50~51)
조 정 대 상	『홍어성초(약모밀) 화재를 아시나요?』 제하의 기사 (창원일보 2012년 7월 13일자 15면, 인터넷 창원일보 · 다음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영농조합법인이 두 번의 화재로 인해 도산한 것처럼 보도해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096	(정정청구) (주)제이티비씨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도독 인터뷰’ 해야 하는 중앙종편의 굴욕』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jbc방송이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들을 취재하면서, 기자의 소속도 밝히지 않은 채 ‘도독 인터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8시간 동안 게재, 제목을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도독 인터뷰> 해야 하는 중앙종편의 굴욕’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7일자)

2012경기조정54	(정정청구) 최윤길 對 성남도시신문
조 정 대 상	『후반기 의장선거, 민주당 손잡고 (새)최윤길의원 당선』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민주당 출신 시장의 중점추진사업에 협조해준다고 서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남조정52~53	(정정 · 손배청구) ○○홍어성초 영농조합법인 對 서경신문
조 정 대 상	『홍어성초(약모밀) 화재를 아시나요?』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영농조합법인이 두 번의 화재로 인해 도산한 것처럼 보도해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경기조정55	(반론청구) ○○중학교 對 아이컬처뉴스
조 정 대 상	(1) 『학교폭력 속 감춰진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6일자) (2) 『○○중학교, 4개월 동안 학폭회의 7차례 열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3) 『시 관계자 ‘○○중학교 교사가 문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학생들의 사소한 장난과 다툼까지도 학교폭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1)~(3)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중학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6일자)

2012서울조정1097	(반론청구) 김○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항당사건〉 티눈 제거하려다 손가락 절단한 병원』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신청인주장	피부과 의사인 신청인이 티눈 치료 중 실수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후, 환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098	(정정청구) 김○○對 채널A
조 정 대 상	굿모닝! 채널A입니다 프로그램 『단독/저축은행 ‘뒷돈’ 받은 인사 또 있다』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7일자 06:50)
신청인주장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청인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굿모닝! 채널A입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자료화면을 배경으로 정정보도,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며,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자막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함
이 행 결 과	굿모닝! 채널A입니다 프로그램 『K 전 비서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3일자 06:50)

2012강원조정5~6	(정정·손배청구) 최○○ 외 1인對 춘천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보조금 횡령 의혹 연루 노인회 직원 ‘면직’』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4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보조금을 횡령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다고 보도됐으나 요금횡령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복직 판정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7> 및 <뉴스9>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의 멘트로 후속보도, 멘트가 진행

처 리 결 과	되는 동안 후속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도록 하며,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1) KBS 뉴스7 프로그램 『‘보조금 횡령 의혹 노인회 직원’ 일부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16일자 19:00) (2) KBS 뉴스9 프로그램 『‘보조금 횡령 의혹 노인회 직원’ 일부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16일자 21:00)

2012서울조정1099~1104, 1108~1111	전국금속노동조합 對 조선일보(1099~1101 정정·반론·손배청구), 조선닷컴(1102~1104 정정·반론·손배청구, 1099~1101과 병합), 네이버(1108~1109 정정·반론청구), 다음(1110~1101 정정·반론청구)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차 노조, 파업 찬반 ‘공개 투표’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A8면) • 조선닷컴·네이버·다음 : 『○○차 노조, 파업 찬반 ‘공개 투표’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금속노조 모 자동차지부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독립된 기표 공간 없이 투표를 진행해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조선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피신청인 사과,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조선닷컴 :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2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조선닷컴)가 2012서울조정1102·1103·1104 사건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하는 즉시 홈페이지 뉴스면에서 검색이 가능(인링크)하도록 하고, 별도로 뉴스홈에 마련된 ‘e움브즈맨’ 코너 중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모음에 게재함, 기사제공언론사(조선닷컴)가 2012서울조정1102·1103·1104 사건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전송해오는 시점부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에 이를 반영하여 노출(인링크)하도록 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조선닷컴)가 2012서울조정1102·1103·1104 사건에 대한 정정 및 반론의 보도문을 전송하는 즉시 홈페이지 뉴스면에서 검색이 가능(인링크)하도록 하고, 별도로 뉴스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코너에 게재함, 기사제공언론사(조선닷컴)가 2012서울조정1102·1103·1104 사건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전송해오는 시점부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에 이를 반영하여 노출(인링크)함
이 행 결 과	『‘○○차 노조, 파업 찬반 공개 투표 파문’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8월 13일자 A8면, 조선닷컴·네이버·다음 8월 13일자)

2012서울조정1105~1106	(매체별 정정청구) (주)○○○ 對 TV조선, 인터넷TV조선
조 정 대 상	• TV조선 :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 프로그램 『키 크는 값 700만 원?』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8일자 23:00) • 인터넷 TV조선 : 『키 크는 값 700만 원?』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한의원이 성장장애 환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한약을 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107	(정정청구) 박근혜 對 월간중앙
조 정 대 상	『박근혜 대선가도 최대 적은 자신의 그림자』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호 48~56면)
신청인주장	박근혜 의원이 낳은 아이가 일본에서 살고 있고,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가 박 의원 집을 몰래 드나들고 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인터넷 월간중앙에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박근혜 출산설은 근거 없는 음해성 유언비어』 제하의 기사 (인터넷 월간중앙 2012년 7월 18일자)

2012서울조정1112~1114	(정정·반론·손배청구) 홍○○ 對 데일리안
조 정 대 상	『민주당 낙천자 “탈북자 받지말자” 황당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4일자)
신청인주장	민주통합당원인 신청인이 트위터를 통해 ‘탈북자를 받지 말자’ 고 했다는 보도는 ‘탈북자를 가려서 받자’는 신청인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50만 원,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정치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민주당 낙천자 “탈북자 받지말자” 황당 주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7일자)

2012서울조정1115~1116	(정정·손배청구) ○○○자산운용 주식회사 對 시사IN
조 정 대 상	(1) 『○○○의 9호선 민영화의 민낯』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8일자 14~28면) (2) 『○○○는 자본을 ‘통째’ 잠식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6일자 32~36면)
신청인주장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신청인이 대주주 지위를 이용, 민자사업 기업에 고금리대출로 고수익을 챙겼고,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이 적자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고문, 부제소)
이 행 결 과	『민자사업 보도에 대한 ○○○인프라펀드 입장』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8일자 32면)

2012경남조정54~5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남해군 對 경남도민일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조 정 대 상	『정현태 남해군수 거센 사퇴압박』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2년 6월 26일자 2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6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정현태 남해군수가 남해출신 향우회 및 군민들로부터 거센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제주조정6~17	허○○對 한라일보(6~7 반론·손배청구), 인터넷 한라일보(8~9 반론·손배청구, 6~7과병합), 제주의소리(10~11 정정·손배청구), 제주투데이(12~13 정정·손배청구), 이슈제주(14~15 정정·손배청구), 제주인터넷뉴스(16~17 정정·손배청구)
--------------	--

조 정 대 상	• 한라일보·인터넷 한라일보 : 『경마장 기수들이 사라지고 있다』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2년 4월 26일자 4면, 인터넷 한라일보 4월 25일자) • 제주의소리 : 『6명 구속! 도대체 제주경마장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 제주투데이 : 『승부조작 가담 제주 경마본부 기수 등 3명 추가 구속』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 이슈제주 : 『설마하던 경마 승부조작, 실체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 제주인터넷뉴스 : 『승부조작 기수와 조교사 등 줄줄이 구속』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6일자)
---------	---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경마 승부조작으로 구속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한라일보·제주의소리·제주투데이·이슈제주·제주인터넷뉴스 : 홈페이지 사 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목을 [] 안에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

이 행 결 과	• 한라일보·인터넷 한라일보 : 『경마장 기수 관련 기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2년 8월 17일자 4면, 인터넷 한라일보 8월 17일자) • 제주의소리 : 『[정정보도문]경마 승부조작 가담, 기수 허모씨 무관』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6일자) • 제주투데이 : 『[정정보도문]경마 승부조작 가담, 기수 허모씨 무관』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3일자) • 이슈제주 : 『[정정보도]경마장 승부조작, 허모 기수는 무관』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3일자) • 제주인터넷뉴스 : 『[정정보도문]경마 승부조작 가담, 기수 허모씨 무관』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0일자)
---------	---

2012경남조정56~57	(정정·손배청구) 허○○對 MBC 경남(진주)
---------------	---------------------------

조 정 대 상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소나무 굴취’ ... 지역정서 해친다』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21일자 21:00)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5년 전에도 반출 시도 무산』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22일자 21:00)
---------	---

신청인주장	조경업자인 신청인의 적법한 소나무 굴취행위를 불법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	---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	---------

2012제주조정18~21	허○○對 KBS-1TV ^{18~19반론·손배청구} , 다음 ^{20~21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KBS-1TV : KBS 뉴스 7 프로그램 『제주 경마 승부조작 의혹 수사확대』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5일자 21:00) •다음 : 『6명 구속! 도대체 제주경마장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경마 승부조작으로 구속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KBS-1TV : 조정불성립결정 •다음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2제주중재1~2 참조)]

2012전북조정29	(정정청구) (주)○○리아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1) 『꿈수 논란 빛은 ○○○○○○ 웨딩홀 오늘 22일 교통영향평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4일자) (2) 『현실과 거리면 교통영향평가... 이번엔 잘될까』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5일자) (3) 『○○○○○○ 웨딩홀 22일 교통영향평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1일자) (4) 『○○○○○○ 웨딩홀 교통영향평가 연기』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5) 『교통영향평가 논란 ○○○○○○ 웨딩홀 ‘노석만 도의원 사과해라’』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웨딩홀이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건축 사용 승인을 컨벤션으로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117	(정정청구) 1. 서울특별시2. 정○○對 한국경제
조 정 대 상	『市 소송 싸움이 ○○, 서울시 와 밀월?』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27면)
신청인주장	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 건설 사업 등 소송 사건을 특정 법무법인에 위임해 특허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환경닷컴에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한국경제에 반론보도문이 게재된 날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환경닷컴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특별대우 안해” 서울시 밝혀』 제하의 보도 (한국경제 2012년 8월 25일자 27면, 환경닷컴 8월 25일자)

2012대구조정15	(정정청구) 광○○對 인터넷 경북매일신문
조 정 대 상	『포항서 사제간 폭행 ‘맞고소’』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0일자)
신청인주장	고등학생인 신청인이 교사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행동했으며, 신청인이 교사에게 맞아 병원에 입원한 후 학교 측에서 학부모와 면담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2서울조정1118~1122	
조 정 대 상	(매체별 정정청구) 전라북도교육청 對 동아일보 ⁽¹¹¹⁸⁾ , 동아닷컴 ^(1119, 1118과 병합) , 네이버 ⁽¹¹²⁰⁾ , 네이트 ⁽¹¹²¹⁾ , 다음 ⁽¹¹²²⁾ • 동아일보 : 『공문까지 변조한 전북교육청』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3일자 A2면) • 동아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교사도 방학때 학생들처럼 학교 안 나와도 된다”... 공문까지 변조한 전북교육청』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전라북도교육청이 교과부의 공문을 변조하여 방학 중 교사들에게 학교에 나오지 말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 32~34 참조)] ※ 이행방법 • 동아닷컴 :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전북교육청 교원복무지침 공문 변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8월 16일자 A2면, 동아닷컴 8월 16일자)
2012서울조정1123~1126	
조 정 대 상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주식회사오이티엔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신청인주장	『과학 다큐멘터리를 위하여』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6월 25일자 A30면, 동아닷컴 6월 25일자)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동아닷컴 홈페이지 오피니언 섹션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대전지역 YTN 사이언스TV 시청 관련』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8월 7일자 2면, 동아닷컴 8월 7일자)
2012서울조정1127~1130	
조 정 대 상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병합) ○○○○○○ · KBS-1TV, KBSi
신청인주장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K리그 첫 승강제 ‘예민해진 서포터즈’』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6일자 21:00) • KBSi : 『K리그 승강제 ‘예민해진 서포터즈’』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처 리 결 과	K리그의 서포터즈인 신청인 단체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패배하자 감독 퇴진 운동을 벌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행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와 신청인 단체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없고, 신청인 단체는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격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2서울조정1131~1132	
조 정 대 상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MBC every1, 인터넷 MBC every1
신청인주장	• MBC every1 : 가족의 비밀 프로그램 『2화』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5일자 23:00) • 인터넷 MBC every1 : 『[VOD] 가족의 비밀 - 2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신청인주장	트랜스젠더를 향한 따가운 시선을 보도하면서 아무 관련 없는 신청인의 초상을 허락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손해배상금 550만 원 지급)

2012경남조정58~59	(정정·손배청구) 구○○對 TYN
조정대상	『김동진 통영시장, 체면 크게 손상 가능성… 구○○ 법정대리인, 김시장 거짓말 감싸다 뒤집어 씌판』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신청인주장	김동진 통영시장의 고소대리인인 신청인을 법정대리인으로 잘못 보도하고, 김시장에 대해 강한 원망을 품고 탓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는 등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133~1141	○ 인터내셔널(주)對 디지털타임스(1133~1134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디지털타임스(1135~1136 정정·손배청구, 1133~1134와 병합), 네이버(1137 정정청구), 네이트(1138 정정청구), 다음(1139 정정청구), 야후(1140 정정청구), 줌닷컴(1141 정정청구)
조정대상	• 디지털타임스 : 『○○○○ 잦은 장애 ○서버 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0일자 1면) • 인터넷 디지털타임스·네이버·네이트·다음·야후·줌닷컴 : 『‘○○’ 종종 끊긴 이유… 원인 이거였어?』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0일자)
신청인주장	4월 발생한 모 모바일메신저 중단 사태의 원인이 신청인 회사의 서버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 디지털타임스·인터넷 디지털타임스 :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 네이버·네이트·다음·야후·줌닷컴 : 각 취하 [사유: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27~31 참조)] ※ 이행방법 •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중단에 48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 디지털타임스·인터넷 디지털타임스 : 『‘○○○○ 장애’ 기사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디지털타임스 2012년 8월 14일자 2면,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8월 13일자)

2012광주조정49~52	(매체별 정정·반론청구)(병합) 영암군對 삼군신문, 인터넷 삼군신문
조정대상	(1) 『‘예술인촌’ 사업 놓고 뒷말 무성』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5월 7일자 4면, 인터넷 삼군신문 5월 7일자) (2) 『영암에는 나무도둑이 산다?』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5월 14일자 4면, 인터넷 삼군신문 5월 14일자) (3) 『우리 문중서 준 나무가 맞나요?』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5월 21일자 1면, 인터넷 삼군신문 5월 21일자) (4) 『영암농특산물판촉단 선거법 위반?』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5월 21일자 5면, 인터넷 삼군신문 5월 21일자) (5) 『영암지역 회전교차로 ‘과유불급’』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6월 4일자 4면, 인터넷 삼군신문 6월 4일자)

조 정 대 상	(6) 『기찬장터, ‘판촉단’ 운영 정체성 논란』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6월 11일자 1면, 인터넷 삼군신문 6월 11일자) (7) 『영암군의 빈 쪽정이 정보공개』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6월 11일자 2면, 인터넷 삼군신문 6월 11일자) (8) 『영암군농특산물판촉단 판촉행사, 예산낭비?』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7월 3일자 11면, 인터넷 삼군신문 7월 3일자) (9) 『사업 시행방식, 입찰 담합 의혹까지...』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5월 14일자 5면, 인터넷 삼군신문 5월 14일자) (10) 『새로 개설한 도로 놓고 특혜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7월 17일자 1면, 인터넷 삼군신문 7월 17일자) (11) 『재판에, 검·경 조사에, 주민소환까지?』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6월 25일자 1면, 인터넷 삼군신문 6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영암군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삼군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위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9월 4일자 6면, 인터넷 삼군신문 8월 30일자)

2012경기조정56~57	(기사별 정정청구)(병합) 전국○○○○○○노동조합對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1) 『인천지하철 노조원 임금착취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8일자 19면) (2) 『권한 없는 해고 남발...노동자 속수무책』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8일자 19면)
신청인주장	(1) 전국○○○○○○노조 인천지하철지부가 노조원의 임금을 착취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 전국○○○○○○노조 인천지하철지부가 부평역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에게 ‘짜리기 싫으면 무릎꿇고 빌라’고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전국○○○○○○노조 인천지하철지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7일자 2면)

2012서울조정1142~114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주)○○○항공對 인터넷 아주경제, 인터넷 이코노미세계
조 정 대 상	• 인터넷 아주경제 : (1) 『○○○항공, 승객 목숨 담보로 돈벌이?』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2) 『○○○항공, 또 이륙중량 조작... 7년전 사고 잇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7일자), (3) 『○○○항공 함○○ 사장 등 경영진, ‘최대이륙중량’ 조작사건 고의적』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8일자) • 인터넷 이코노미세계 : (1) 『○○○항공, 안전운항 우려 제기』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일자), (2) 『초과 중량 항공기 운항, ‘어떻게’ 가능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4일자), (3) 『‘경영진 따로 직원 따로’, 항공사 산으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8일자), (4) 『○

조 정 대 상	○○항공 공매, 毒든 성배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5) 『○○○항공, 2차 매각 실패 이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6일자), (6) 『○○○항공 매각, 각종 낭설 난무』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4일자), (7) 『○○○항공, 주주총회 또 연기 책임경영 무산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3일자), (8) 『○○○항공, 대표, '직무정지' 심리 열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9) 『○○○항공 대표, 직무정지심리 법정 진실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9일자), (10) 『○○○, ○○○항공 인수 계획 없어』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항공사가 최대 이륙중량을 초과해 운항한 뒤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아주경제 : ▷ 정정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손해청구 : 취하 • 인터넷 이코노미세계 : 취하 ※ 이행방법 • 인터넷 아주경제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산업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1)~(3)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아주경제 : 『'○○○항공 이륙중량 초과 및 정기총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3일자)

2012서울조정1146~114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환경운동연합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전력난 키우는 과소비와 대안 없는 原電 거부』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5월 29일자 A31면, 동아닷컴 5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발표한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가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무리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동아닷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오피니언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연합의 원전사고 모의실험 결과'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9월 8일자 2면, 동아닷컴 9월 8일자)

2012서울조정1150	(정정청구) 심○○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MBC노조 "김재철, 복귀한 조합원에 악랄한 보복 인사"』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신청인주장	모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부장인 신청인이, 과거 여성작가들 앞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는 등 평가가 나쁘다는 MBC노조의 허위 성명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6일자)
2012서울조정1151~1153	(매체별 정정청구) 고용노동부 對 노컷뉴스⁽¹¹⁵¹⁾, 네이버⁽¹¹⁵²⁾, 다음⁽¹¹⁵³⁾
조 정 대 상	(1)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2) 『전두환 때보다 더해...노동부 장관 ‘멘붕’』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다음 : 각 취하[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반론보도 (2012서울중재35~36 참조)] ※ 이행방법 • 노컷뉴스 :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1)~(2)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노컷뉴스 :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탈퇴 유도’ 관련 반론보도』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2012서울조정1154~1155	(정정 · 손해청구) (주)○○○ 對 한국경제
조 정 대 상	『○○○ 워크아웃 추진』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1면)
신청인주장	금융감독원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신청인 회사가 곧 워크아웃될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156~1158	(매체별 정정청구) 고용노동부 對 노컷뉴스⁽¹¹⁵⁶⁾, 네이버⁽¹¹⁵⁷⁾, 다음⁽¹¹⁵⁸⁾
조 정 대 상	(1)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2) 『전두환 때보다 더해...노동부 장관 ‘멘붕’』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신청인주장	노조전임시간 상한제도인 타임오프에서는 단체 행동권도 제한될 수 있으며, 노동 3권 행사를 사용자가 모두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신청인 장관의 발언을 인용 보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다음 : 각 취하[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반론보도 (2012서울중재37~38 참조)] ※ 이행방법 • 노컷뉴스 :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1)~(2)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노컷뉴스 :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탈퇴 유도’ 관련 반론보도』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2012경기조정58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성남시장 친형 시의회 · 백화점서 난동』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성남시장의 친형인 신청인이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을 방해하고,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7일자)

2012경남조정60~6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길중 對 한남일보, 인터넷 한남일보
조 정 대 상	『도의원이 숙원사업 예산 집행 막아 물의』 제하의 기사 (한남일보 2012년 7월 25일자 1면, 인터넷 한남일보 7월 24일자)
신청인주장	경남도의원인 신청인이 거제시 동부면 산양우회도로 예산집행을 막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한남일보 : 홈페이지 기사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게재, 반론보도문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 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 전문을 함께 게재토록 하고,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도의원이 숙원사업 예산집행 막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남일보 2012년 8월 13일자 1면, 인터넷 한남일보 8월 13일자)

2012서울조정1159~116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박○○ 對 코리아리포스트, 인터넷 코리아리포스트
조 정 대 상	• 코리아리포스트 : 『한남뉴타운 ○·○구역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완료, 그런데...』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4일자 15면) • 인터넷 코리아리포스트 : (1) 『한남뉴타운 ○·○구역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완료, 그런데...』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4일자), (2) 『5월 12일 한남○구역 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0일자), (3) 『창립총회 앞둔 한남○구역, '창립총회개최금지가처분'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정지가처분' 신청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신청인주장	한남재정비주민협회의 회장인 신청인이 재개발에 반대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코리아리포스트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한남○구역 조합장 선거 및 주민협의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제하의 기사 (코리아리포스트 2012년 8월 28일자 15면, 인터넷 코리아리포스트 8월 28일자)
---------	--

2012서울조정1163 (정정청구) 파주시청 對 주간 파주신문	
조 정 대 상	『파주시, 공장허가 3억 줬더니 OK』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개발제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산지전용 허가를 내줬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파주시, 공장허가 3억줬더니 OK” 관련 정정보도』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9일자 1면)

2012서울조정1164~1167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주)○○○ 對 머니투데이,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 머니투데이 : 『대기업 순환출자 뺄치는 ○○○○ · ○○○ 합병』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3일자 26면) • e머니투데이 : 『○○○○○ · ○○○ 등5개 상장사의 복잡한 ‘순환증자’』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합병과정에서 회사인수대금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대여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168~1170 (기사별 정정청구) (병합) 인천광역시중구청 對 아시아일보	
조 정 대 상	(1) 『인천 중구청, 공무원강 와르르』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9일자 4면) (2) 『구청장 공백 인천 중구 불법 난무』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9일자 4면)
신청인주장	인천 중구청이 주민의 민원을 무시해 건설현장 펜스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인천 중구청 기사 관련 반론보도』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0일자 4면)

2012대전조정32~35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이○○ 對 충남일보, 인터넷 충남일보	
조 정 대 상	『재향군인회 ○○군 회장 공금유용 ‘파문’』제하의 기사 (충남일보 2012년 7월 18일자 8면, 인터넷 충남일보 7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재향군인회 ○○군 회장이 횡령한 공금을 신청인의 사무국장 임명 로비자금조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보도에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고)

2012서울조정1171 (손배청구) 오○○ 對 MBN	
조 정 대 상	현장르포 특종세상 프로그램 『환자를 삽니다. 한 정신병원의 실체!』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7일자 23:00)

2012서울조정1178~1185	(매체별 조정 · 손배청구) ○○○○○○○연대 對 동아일보(1178~1179), 동아닷컴(1180~1181), 주간조선(1182~1183), 인터넷 주간조선(1184~1185)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억지 다문화 정책 폐지하라” 목청 높이는 외국인 혐오단체』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8월 3일자 A14면, 동아닷컴 8월 3일자) • 주간조선 · 인터넷 주간조선 : 『다문화사회가 키우는 외국인혐오증 ‘불편한 진실’의 현장』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2년 7월 23일자 36~39면, 인터넷 주간조선 7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외국인에게 적대감을 표시하는 ‘외국인 혐오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주간조선 · 인터넷 주간조선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주간조선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주간조선 · 인터넷 주간조선 : 『○○○○○○○○연대, ‘외국인 혐오’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2년 8월 27일자 43면, 인터넷 주간조선 8월 27일자)

2012서울조정1186~1187	(매체별 손배청구) 최○○ 對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조 정 대 상	『올레길 살인사건, 13일간의 기록』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2년 7월 27일자 22:00, 인터넷 TV조선 7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제주도 올레길 살인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150만 원 지급)

2012강원조정7	(손배청구) 권○○ 對 강원일보
조 정 대 상	『“개사료로 국물낸다”... 악성 루머에 우는 맛집들』 제하의 기사 (강원일보 2012년 7월 17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비롯한 소문난 맛집들의 악성 루머에 대해 보도하면서 ‘개사료로 국물낸다’는 등의 루머 내용을 부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찬바람 불 때 뜨끈한 웅심이 한 그릇』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5일자 16면)

2012서울조정1188~1191	(매체별 조정 · 손배청구) ○○운수 주식회사 對 서울경제, 인터넷 서울경제
조 정 대 상	『스쿨존, 안전 사각지대 되나』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2년 5월 1일자 16면, 인터넷 서울경제 4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택시주차지가 초등학교로부터 1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서울경제 :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검색 시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〇〇초교 인근 〇〇운수(주) 택시 주차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2년 9월 8일자 16면, 인터넷 서울경제 9월 10일자)
2012서울조정1192~1218, 1259	정〇〇 對 노컷뉴스(1192~1193 기사별 정정청구), 뉴스한국닷컴(1194, 1259 각 정정청구), 마이데일리(1195 정정청구), 매경닷컴(1196 정정청구), 미디어스(1197~1198 기사별 정정청구)(병합), 민중의소리(1199 정정청구), 뉴스앤뉴스(1200~1202 기사별 정정청구)(병합), 세계닷컴(1203 정정청구), 스포츠서울닷컴(1204 정정청구), 아이피디저널(1205~1206 기사별 정정청구)(병합), 오마이뉴스(1207~1208 기사별 정정청구)(병합), e머니투데이(1209 정정청구), 인터넷 미디어오늘(1210~1211 기사별 정정청구)(병합), 인터넷 일요시사(1212~1213 기사별 정정청구)(병합), 인터넷 헤럴드경제(1214~1215 기사별 정정청구)(병합), 쿠키뉴스(1216 정정청구), 티브이데일리(1217~1218 기사별 정정청구)(병합)
조 정 대 상	• 노컷뉴스 : (1) 『한류스타보다 비싼 무용단? MBC 김재철 사장 특혜 의혹 J씨』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0일자), (2) 『MBC노조 “김재철 사장 무용수 J씨와 부동산 투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 뉴스한국닷컴 : 『MBC 노조 ‘김재철-무용가 J씨’ 부동산 투기 의혹 폭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 마이데일리 : 『MBC노조 “김재철 사장·무용가 J씨와 아파트 공동구입”』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 매경닷컴 : 『MBC노조 “특혜의혹 무용가 J씨, 샤이니보다 높은 8000만원 대 출연료”』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 미디어스 : (1) 『MBC노조 ‘무용가 J씨’ 의혹 추가 폭로, “샤이니” 보다 출연료 더 받았 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2) 『“김재철, 무용가 J씨와 총복 오송 아파트 함께 구입한 뒤 관리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 민중의소리 : 『“특혜 의혹” 무용가 J씨, 샤이니보다 높은 출연료 받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 뉴스앤뉴스 : (1) 『MBC노조 “무용가 J씨, 아이돌보다 출연료 더 받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2) 『MBC노조 “김재철, 무용수 J에게 20억 이상 특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3) 『김재철, 무용수 J와 아파트 3채 공동구입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 세계닷컴 : 『MBC 노조,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와 아파트 3채 공동 구입”』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 스포츠서울닷컴 : 『MBC노조 “사장 특혜의혹 무용가 J씨, 샤이니보다 높은 출연료”』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 아이피디저널 : (1) 『“‘J씨 특혜’ 김재철 사장, 부동산 투기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2) 『“김재철 무용가 J씨 위해 기사청탁”』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 오마이뉴스 : (1) 『“김재철, 무용가 J씨에게 20억 이상 특혜성 자금”』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2) 『“김재철과 무용가 J씨, 아파트 3채 함께 구입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 e머니투데이 : 『MBC노조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와 수억원대 아파트 공동관리”』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조 정 대 상	• 인터넷 미디어오늘 : 『“MBC 사장, 7년간 무용가 J씨에게 20억원 몰아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 인터넷 일요시사 : (1) 『내가 하면 로맨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7일자), (2) 『갈수록 구린내 나는 김재철-무용가 J씨 관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1) 『“김재철 사장 특혜” 무용가 J씨, 사이니보다 높은 몸값』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2)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에 20억 줬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 쿠키뉴스 : 『MBC노조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와 수억원대 아파트 공동관리”』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 티브이데일리 : (1) 『MBC노조 “특혜의혹 무용가 J씨, 사이니보다 출연료 더 받았다”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2) 『MBC 노조 측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와 아파트 3채 샀다”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무용가인 신청인과 MBC 사장의 관계에 대한 MBC 노조의 왜곡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 2012서울조정1192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2012서울조정1193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 뉴스한국닷컴 : ▷ 2012서울조정1194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기사수정) ▷ 2012서울조정1259 - 조정불성립결정 • 마이데일리 · 미디어스 · 뉴스앤뉴스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매경닷컴 · 스포츠서울닷컴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민중의소리 · 세계닷컴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아이피디저널 · 어머니투데이 · 인터넷 일요시사 · 티브이데일리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오마이뉴스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쿠키뉴스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미디어오늘 · 뉴스한국닷컴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노컷뉴스 : ▷ 2012서울조정1192 - 홈페이지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24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고,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2012서울조정1193 -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동안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고,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한편, 신청인이 김재철 MBC 사장과는 무관하게 총복 오송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나올 경우 이 내용을 즉시 보도함 • 마이데일리 · 미디어스 · 뉴스앤뉴스 · 아이피디저널 · 어머니투데이 · 인터넷 일요시사 · 티브이데일리 : 홈페이지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24시간 동안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매경닷컴 · 스포츠서울닷컴 : 홈페이지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24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민중의소리 · 세계닷컴 · 오마이뉴스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쿠키뉴스 : 홈페이지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

처 리 결 과	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노컷뉴스 : (1) 『J씨 무용단, 한류스타보다 출연료 높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2년 8월 23일자), (2) 『무용수 J씨 아파트 구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4일자) • 뉴스한국닷컴 : 『MBC 노조 '김재철-무용가J씨' 부동산 투기의혹 폭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1일자) • 마이데일리 : 『무용가 J씨 아파트 구입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3일자) • 매경닷컴 : 『J씨 무용단, 인기 아이돌 그룹보다 출연료 높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1일자) • 미디어스 : 『무용가 J씨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 민중의소리 : 『J씨 무용단 일본 공연 출연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1일자) • 뉴스앤뉴스 : 『무용수 J씨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4일자) • 세계닷컴 : 『무용가 J씨 아파트 구입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1일자) • 스포츠서울닷컴 : 『J씨 무용단, 인기 아이돌 그룹보다 출연료 높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1일자) • 아이피디저널 : 『무용수 J씨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1일자) • 오마이뉴스 : 『무용수 J씨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1일자) • 머니투데이 : 『무용수 J씨 아파트 구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1일자) • 인터넷 일요시사 : 『무용수 J씨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무용수 J씨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 쿠키뉴스 : 『무용수 J씨 아파트 구입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 티브이데일리 : 『무용수 J씨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2012경남조정64~6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 집행위원회 對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	
조 정 대 상	『○○○○○○○○○ ‘동네축제’ 됐다』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2년 8월 7일자 7면, 인터넷 경남신문 8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개최한 축제가 ‘동네축제로’로 전락했고, 정치인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전 문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경남신문 : ▷반론청구 - 조정성립(내용 : 반론보도) ▷손배청구 - 취하 • 인터넷 경남신문 : ▷반론청구 - 조정성립(내용 : 반론보도) ▷손배청구 - 취하 ※ 이행방법 • 인터넷 경남신문 : 조정대상기사 제목이 게재된 같은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 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2년 9월 3일자 7면, 인터넷 경남신문 9월 3일자)
2012서울조정1219~1222	(매체별 반론청구) 문○○ 對 서울신문 ⁽¹²¹⁹⁾ , 인터넷 서울신문 ⁽¹²²⁰⁾ , 한겨레 ⁽¹²²¹⁾ , 인터넷 한겨레 ^(1222, 1221과 병합)
조 정 대 상	• 서울신문 · 인터넷 서울신문 : 『경찰, ○○○○ 실제 운전자 서○○ 등 2명 出禁』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2년 8월 8일자 9면, 인터넷 서울신문 8월 8일자)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 회장은 ‘새누리당 당직자’ … 정치권 비호 노렸나』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8월 2일자 9면, 인터넷 한겨레 8월 2일자)
신청인주장	새누리당 중앙위원 출신인 신청인이 한 경비용역업체의 실제 운영자를 찾아가 채용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서울신문 · 인터넷 서울신문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1223	(정정청구) 서귀포경찰서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웃웃 벗고, 쌍욕하고… 대한민국 경찰 맞나요』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9일자)
신청인주장	서귀포경찰서가 해군기지 앞에서 미사를 진행하던 신부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제주 해군기지 반대 미사 제압’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9일자)
2012광주조정56	(손배청구) 임○○ 對 KBC-TV
조 정 대 상	(1) 8시 뉴스 프로그램 『물관리 시스템 무용지물』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2일자 20:25) (2) 뉴스지금 프로그램 『물관리 시스템 무용지물 전락』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3일자 07:15)
신청인주장	물관리시스템에 대해 보도하면서 관계 공무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 초상과 음성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1224~1227	(매체별 조정·손배청구) (병합) 조○○(○○스님)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천문학적 비용손실-국론 분열 이제 그만”』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5일자 8면) • 동아닷컴 : 『4대강 ... 경부고속철 ... 새만금 간척 ... 특허면 국책사업 발목잡기』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과 환경 단체가 반대했던 천성산 터널공사와 관련,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손실을 과장해 보도하는 등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손배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재위에서 결정한 정정보도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 이행방법 : 동아닷컴 홈페이지 정치섹션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동아일보에 정정·반론보도문이 게재되는 날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정정·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2012경기조정59	(정정청구) 인천광역시 중구청 對 KMB방송
조 정 대 상	(1) 『중구청 500명 용역동원 ○○○교회 통곡』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0일자) (2) 『인천중구청 영종출장소가 교회를 초토화시켰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3) 『용역들 부녀사 성희롱 앞에서 옷 입히고 수명 사상자』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1일자) (4) 『철거현장 용역철거요원들의 심각한 폭력사건 현장』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3일자) (5) 『중구청 ○○○ 부구청장 시민봉사 안중에도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3일자) (6) 『인천중구청 공무원 국가는 이대로 직무유기 방치할 것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0일자) (7) 『전철협 ○○○ 강제철거 인권침해 끝까지 투쟁』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8) 『악랄한 대집행 인천중구청과 송영길 시장』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7일자) (9) 『○○○ 철거민사태 인천시와 무관 그러나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인천 중구청이 실시한 교회불법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폭력 및 성희롱, 공갈 협박 등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1)~(9)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되,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인천중구청 기사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8월 22일자)

2012서울조정1228~1231	(매체별 조정·손배청구) 장○○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성추행·금품수뢰』 의혹 받는데 ... 초등 교감에 대통령 훈장 추천?』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5월 18일자 T16면, 인터넷 한겨레 5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초등학교 교감인 신청인이 뷔페업체 사장을 성추행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232~1235	(매체별 조정·손배청구)(병합)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日유지선 익살연기에 캄보디아 주부 환호』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1일자 16면) • 동아닷컴 : 『[함께해요 나눔예술] 어색한 춤 동작에 중국인 외할머니 손녀와 '까르르'』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극단이 군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공연한 마리나와 비제의 후원사는 신한은행인데, 동아일보사가 후원한 것으로 잘못 보도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동아일보에 반론보도문이 보도된 날 09:00부터 48시간 동안 동아닷컴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중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마리나와 비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동아일보 2012년 9월 18일자 A16면, 동아닷컴 9월 18일자)

2012서울조정1236	(반론청구) 부산일보(주)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부산일보 '편집권 탄압' 거부 간부 중징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9일자)
신청인주장	부산일보가 정수장학회 특별취재팀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인사 조치를 했고, 지시 불이행과 사규위반에 따른 간부기자에 대한 징계를 편집권 탄압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부산일보 '편집권 탄압' 거부 간부 중징계>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3일자)

2012부산조정21	(정정청구) 경상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對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정신 빠진 경남도청 공무원』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8일자 10면)
신청인주장	경상남도 일부 공무원의 개인적 비리를 보도하면서 경남도청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개개 공무원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지 공무원 전체 또는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의 공무원들의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 노동조합이 전체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라고도 볼 수 없어 신청인과 보도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부정된다)

2012부산조정22~25	(매체별 손배청구) 이○○對 국제신문 ⁽²²⁾ , 인터넷 국제신문 ^(23, 22와병합) , 부산일보 ⁽²⁴⁾ , 인터넷 부산일보 ⁽²⁵⁾
조 정 대 상	• 국제신문·인터넷 국제신문 : 『빛나간 효심 아들,父공탁금 마련하려 절도』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2년 7월 13일자 6면, 인터넷국제신문 7월 13일자)

조 정 대 상	• 부산일보 · 인터넷 부산일보 : 『구속 아버지 공탁금 위해 절도 20대 영장』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2년 7월 13일자 10면, 인터넷부산일보 7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병원 수술장비를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 국제신문 · 인터넷국제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50만 원, 부제소) • 부산일보 · 인터넷부산일보 :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237~1238 (매체별 반론청구) 최재천 對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조 정 대 상	• TV조선 :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최재천 의원 “파출소 갯판이 왜 잘못?”』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9일자 20:21) • 인터넷 TV조선 : 『[다시보기]최재천 의원 “파출소 갯판이 왜 잘못?”』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주취 차량감경을 없애기로 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신청인(민주통합당)이 “파출소에 가서 갯판 좀 부린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공권력의 시민보호의무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부산조정26 (정정청구) 서○○ 對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1) 『새누리 지도부 나흘간 알고도 ‘쉬쉬’』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2년 8월 4일자 3면) (2) 『서○○, 현○○ 놓고 엇갈리는 행보』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2년 8월 7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4.11 총선 공천 현금 수수의혹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숨겼으며, 모 의원의 검찰 출두를 직, 간접적으로 도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새누리 지도부 나흘간 알고도 쉬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5일자 4면)

2012서울조정1239 (손배청구) 이○○ 對 어패럴뉴스	
조 정 대 상	『조직 통폐합 ... 인력 감축』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2면)
신청인주장	의류업체에 재직 중인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조직통폐합으로 이미 회사를 떠난 것으로 잘못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경기조정60~63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이○○ 對 부천신문 ^(60~61) , 인터넷 부천신문 ^(62~63)	
조 정 대 상	• 부천신문 : (1) 『‘공단직원 총격고백’ 진실공방 ... 누구 말이 맞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6일자 3면), (2) 『자살기도 공단직원 명예훼손 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4일자 3면) • 인터넷 부천신문 : (1) 『‘공단직원 총격고백’ 진실공방 ... 누구 말이 맞나?』 제하의

조 정 대 상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2) 『자살기도 공단직원 명예훼손 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자살 미수 사건을 합리화시키고 동정을 받기 위해 거짓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료 직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240	(정정청구) 김○○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판·검사 포함 239건 ‘고소 대마왕’』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6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을 ‘묻지마 고소’를 일삼는 상습 고소꾼이라고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결정 (결정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2서울조정1241	(반론청구) 최○○對 구리넷
조 정 대 상	『○○○중, 학교폭력자치회 ‘편파심’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을 같은반 학생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1242	(반론청구) (주)○○교육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싸운 지 1667일... “노조에서 매년 제사 지낸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노조원의 임금을 삭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교육’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2012광주조정57~61	(매체별 정정청구) 이○○對 남도일보⁽⁵⁷⁾, 인터넷 남도일보^(58, 57과 병합), 광남일보⁽⁵⁹⁾, 인터넷 광남일보^(60, 59와 병합), 전남인터넷신문⁽⁶¹⁾
조 정 대 상	• 남도일보 · 인터넷 남도일보 : (1) 『목포 A초등학교교사 학생체벌 ‘논란’』 제하의 기사 (남도일보 2012년 5월 24일자 10면, 인터넷 남도일보 5월 24일자), (2) 『담임교사가 제자 정신감정 강요 ‘말썽’』 제하의 기사 (남도일보 2012년 7월 16일자 11면, 인터넷 남도일보 7월 16일자) • 광남일보 : 『목포서 스승과 제자 ‘쌔쌔한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 일자 13면) • 인터넷 광남일보 : 『목포 모 초등학교 교사, 제자 정신문제로 몰아』 제하의 기사

조 정 대 상	(2012년 7월 14일자) • 전남인터넷신문 : (1) 『[지역]전남목포소재 S초교 교사, 학생폭행에 학부모들 발끈!』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4일자), (2) 『[목포] 목포S초교, 멀쩡한 초등생 정신병 자취 급? 말썽』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제자를 체벌하고, 피해 학생 부모에게 학생의 정신감정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남도일보 · 인터넷 남도일보 · 광남일보 · 인터넷 광남일보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전남인터넷신문 :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인터넷 남도일보 · 인터넷 광남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남도일보 · 인터넷 남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남도일보 2012년 9월 11일자 11면, 인터넷 남도일보 9월 11일자) • 광남일보 · 인터넷 광남일보 : 『[반론보도문] 목포서 스승과 제자 ‘쓸쓸한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광남일보 2012년 9월 12일자 13면, 인터넷 광남일보 9월 11일자)

2012서울조정1243~1247	(매체별 정정청구) 이○○ 對 뉴스1 코리아 ⁽¹²⁴³⁾ , 뉴시스 ⁽¹²⁴⁴⁾ , e머니투데이 ⁽¹²⁴⁵⁾ , 뉴스토마토 ⁽¹²⁴⁶⁾ , 아시아경제닷컴 ⁽¹²⁴⁷⁾
조 정 대 상	• 뉴스1 코리아 : 『○○산업, “온돌·돌침대 ‘○○’는 우리 뿐” 이번엔 손배소송』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4일자) • 뉴시스 : 『○○산업 “○○온돌, 상표 쓰지말라” 손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4일자) • e머니투데이 : 『○○산업 “○○온돌 상표는 우리 것” 손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4일자) • 뉴스토마토 : 『‘별이 다섯 개’ ○○산업 “‘○○’ 상표 쓰지말라” 억대 손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4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산업, “○○온돌, 상표 쓰지말라” 2억 손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온돌침대를 제조·판매하는 신청인이, 상호분쟁 중인 경쟁회사와의 합의각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뉴스1 코리아 · e머니투데이 · 뉴스토마토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뉴시스 : 취하 (사유 : 보도약속) • 아시아경제닷컴 :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뉴스1 코리아 : 『○○온돌, “‘○○’ 상표권침해 손배소송, 반소로 대응』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9일자) • e머니투데이 : 『○○온돌, ‘상표권 소송’ ○○산업 상대 맞소송 대응』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9일자) • 뉴스토마토 : 『○○온돌 “‘상표권 침해소송’ ○○산업에 맞대응”』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4일자)

2012서울조정1248, 1257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조달청 對 주간한국, 인터넷 주간한국	
조 정 대 상	• 주간한국 : 『○○○○-조달청-서울시 커넥션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6일자 12면) • 인터넷 주간한국 : 『○○○○-조달청-서울시, 공사 수주 커넥션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7일자)
신청인주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입찰과 관련, 조달청과 낙찰자인 대기업 건설회사 간에 커넥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주간한국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중단에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조달청 커넥션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주간한국 2012년 9월 10일자 12면, 인터넷 주간한국 9월 10일자)

2012서울조정1249~1251 1. 최○○ 2. 도○○ 對 KBS-1 · 2TV(1249 정정청구, 1250 손해청구), KBS(1251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KBS-1TV : (1) KBS 뉴스9 프로그램 『유치원이 무서워요』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5일자 21:00), (2) KBS 뉴스라인 프로그램 『유치원생 밀치고 때리고...』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5일자 23:00), (3)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못 믿을 유치원』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6일자 06:00) • KBS-2TV : KBS 아침뉴스타임 프로그램 『또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일자 08:00) • KBS : (1) 『‘때리고 밀치고...’ 유치원 교사, 원생 학대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2) 『유치원생 밀고 때리고...또 교사 학대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3) 『‘아이들 때리고 밀치고...’ 못 믿을 유치원』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6일자), (4) 『또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252~1253 (정정 · 손해청구)(병합) 이○○ 對 구리넷	
조 정 대 상	『○○○○○○○○, 스포츠센터 여직원A씨 “2년간.. 지옥 같았다” 눈물로 호소』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시민스포츠센터 관리자인 신청인이 수 년 동안 소속 여직원을 욕설과 부당한 지시로 괴롭혀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254 (반론청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 對 메디파나뉴스	
조 정 대 상	『의협, H복지재단 ‘한마음카드’ 법적공방서 무혐의 공정위 “환자유인 의료법 위반 우려한 보호조치”』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바우처카드를 통한 의료비 지원이 의료법 위반인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한마음사회복지재단 “의료바우처카드, 의료법 저촉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6일자)

2012서울조정1255~125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민주당합당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선관위 ‘여야 공천현금’ 수사 의뢰』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8월 2일자 1면, 동아닷컴 8월 2일자)
신청인주장	지난 총선과정에서 민주당합당 전, 현직 의원이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선관위가 포착,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피신청인에 대하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취하하라는 결정 및 정정보도를 1면이 아닌 2면에 게재하라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48시간 동안 동아닷컴 홈페이지 정치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2012서울조정1258	(반론청구) 배○○對 KBS-2TV
조 정 대 상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 『[사건사고] 무면허 보톡스 부작용』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일자 06: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한의사가 보톡스 주사를 시술했다고 보도됐으나, 이는 양의사인 신청인이 직접 시술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260~1261	(정정 · 반론청구) ○○○○공업주식회사對 디펜스21
조 정 대 상	『주방용 소독제가 병사 생활관 의료용 살균제로?』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육군에 납품하고 있는 의료용 소독제를 바이러스 살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락스물에 가까운 소독제’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이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병사생활관 살균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2일자)

2012서울조정1262~1263	(정정 · 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對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노보
조 정 대 상	『‘네 머리를 열어봐’ …면접은 ‘사상 검증’』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2일자 3면)

신청인주장	한국방송공사가 신입사원 채용면접에서 파업과 관련한 개인 소신을 집중 추궁하는 등 사상검증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264~1265 (매체별 반론청구)(병합) 한국방송공사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박근혜에 곤란한 질문 던지는 언론이 없다』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2년 8월 22일자 3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8월 22일자)
신청인주장	KBS가 뉴스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의 인생역정만을 부각시키고, 검증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미디어오늘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KBS, 박근혜 후보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2년 9월 12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9월 12일자)

2012경기조정64~6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유○○對 강화뉴스, 인터넷 강화뉴스	
조 정 대 상	『정자형 가판대 지원 대상 선정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강화뉴스 2012년 8월 15일자 1면, 인터넷 강화뉴스 9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처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자형 농산물 가판대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출신인 신청인으로 인해 특혜를 받은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기조정68~71 (매체별 정정청구) ○○○○○○○○노동조합對 경기일보 ⁽⁶⁸⁾ , 인터넷 경기일보 ^(69, 68과 병합) , 부평신문 ⁽⁷⁰⁾ , 인터넷 부평신문 ^(71, 70과 병합)	
조 정 대 상	• 경기일보 · 인터넷 경기일보 : 『지하철 미화원 임금서 ‘노조비 착복’ 의혹』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2년 6월 6일자 7면, 인터넷 경기일보 6월 6일자) • 부평신문 · 인터넷 부평신문 : 『지하철 미화원의 14만 6,000원은 어디로?』 제하의 기사 (부평신문 2012년 6월 12일자 10면, 인터넷 부평신문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동조합의 특정지부가 노조원의 임금을 착취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기일보 · 인터넷 경기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부평신문 · 인터넷 부평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기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처 리 결 과	[] 안에 표시하여 2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부평신문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경기일보 · 인터넷 경기일보 : 『지하철 미화원 임금서 ‘노조비 착복’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2년 9월 19일자 7면, 인터넷 경기일보 9월 19일자) • 부평신문 · 인터넷 부평신문 : 『‘지하철 미화원의 14만 6,000원은 어디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부평신문 2012년 9월 25일자 10면, 인터넷 부평신문 9월 25일자)

2012경기조정72~73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중부일보,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주민 민원에 양심..진입 도로폐쇄』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2년 7월 12일자 9면, 인터넷 중부일보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그린벨트지역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신축 건축물 공사를 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266	(정정청구) 경찰청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단독]경찰, 안철수 룸살롱 · 여자관계 뒷조사 했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5일자)
신청인주장	경찰이 안철수 원장의 여자관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그가 자주 드나들었다고 추정되는 룸살롱 주변을 수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267	(정정청구) 정○○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김재철, 휴가때 J씨 가족 왜 만났나?』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4일자)
신청인주장	무용가인 신청인이 김재철 사장과 만나 노조의 주장을 실은 언론보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저널리즘면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무용가 J씨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2012서울조정1268~1273 (매체별 조정 · 반론 · 손해청구) ○○증권 주식회사 對 한국경제,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동업자 신뢰 팽개친 ○○증권』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2년 8월 6일자 31면, 한경닷컴 8월 5일자)
신청인주장	○○증권과 △△△증권 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 ○○증권이 상도의와 거래관행을 외면했다고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274~1277 (매체별 조정 · 손해청구) (병합) 권 ○ 對 SBS-TV, SBS	
조 정 대 상	• SBS-TV : SBS 8시뉴스 프로그램 『‘조세 피난처’ 스위스 비밀 계좌 빚장 열렸다』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5일자 20:00) • SBS : 『‘조세 피난처’ 스위스 비밀 계좌 빚장 열렸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신청인주장	국세청이 선박업에 종사하는 신청인의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를 찾아내 스위스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SBS-TV : 2012년 9월 11일 저녁 8시 뉴스(일기예보 전)에서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통상의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되게 하고, 뉴스 진행자가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함 • SBS : SBS-TV에 반론보도문이 보도된 후 1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 페이지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SBS-TV : SBS 8시뉴스 프로그램 『‘선박왕 권 ○ 스위스 비밀계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11일자 20:00) • SBS : 『‘선박왕 권 ○ 스위스 비밀계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2012서울조정1278 (조정청구) ○○○○○○○○노동조합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 ○○○ 미화원 노조비 14만 6,000원이 사라졌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의 특정 지부가 미화원 임금에서 노조비 수천만 원을 착복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사유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 기사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미화원 노조비’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4일자)

2012부산조정27	(정정청구) 울산지방해양항공청 對 울산제일일보
조 정 대 상	『해운사가 ‘항만청 수장’ 으름장… 오죽 화났으면』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7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항만청이 항운노조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해운사 관리자의 으름장에 서둘러 중재에 나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항만청 수장 으름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4일자 5면)

2012광주조정62	(정정청구) 함평군 對 전남희망신문
조 정 대 상	『동함평산단 조성 총 사업비 711억 원 추정』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3일자 1면)
신청인주장	함평군이 추진중인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예산이 추가 증가돼 군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동함평산업단지조성 총 사업비 711억 원 추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4일자 1면)

2012광주조정63	(정정청구) 화순군 對 파인뉴스
조 정 대 상	『화순시장에 예산 너무 투입하지 말아야!』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일자)
신청인주장	화순군이 화순읍 시장 상인회에 매년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상인회에 특혜를 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64	(정정청구) 화순군 對 파인뉴스
조 정 대 상	『화순5일 시장, 상인 간 내홍,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5일자)
신청인주장	화순군이 화순읍 시장 상인회에 많은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화순 5일 시장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5일자)

2012광주조정65	(정정청구) 화순군 對 파인뉴스
조 정 대 상	『“공무원이 이럴 수는 없어!”』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5일자)
신청인주장	화순군 공무원과 시장 상인회 간부가 유착관계에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전북조정30~31	(매체별 추후청구)(병합)이○○對소통신문,인터넷소통신문
조 정 대 상	『현직경찰, 임차인 조경수 갈아엎어 ‘파장’』 제하의 기사 (소통신문 2012년 6월 25일자 8면, 인터넷소통신문 6월 25일자)
신청인주장	현직 경찰인 신청인이 임차인의 조경수를 갈아엎어 재물을 손괴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터넷소통신문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현직 경찰의 임차인 조경수 손괴 사건, 혐의없음 처분 받아』 제하의 기사(소통신문 2012년 9월 24일자 8면, 인터넷소통신문 9월 18일자)

2012대구조정16~17	(정정·손배청구)신○○對인터넷경북제일신보
조 정 대 상	『포항소방서 “고압적” 비난 쇄도 기계의용 대원 50명 “센터장이 하인 부리듯” 항의집단 사직서』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5일자)
신청인주장	포항소방서 소방경인 신청인이 구태한 권위의식에 젖어 민간 의용소방대를 왜해시켜 말썽이 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소방서 ‘고압적’ 비난 쇄도” 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2012서울조정1279	(반론청구) 1. 사단법인○○○○를 위한한국○○○○연합회 2. 홍○○對세무사신문
조 정 대 상	『○○○○연합회, ‘강제 외부세무조정’ 과 ‘강제 심사·심판청구’ 폐지 건의』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일자 2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연합회가 회장의 독선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한국○○○○연합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6일자 13면)

2012서울조정1280~1281	(정정·손배청구)(주)○○○○투어對여행미디어
조 정 대 상	(1) 『○○·모두 상생은커녕 “나만 살면 돼”』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일자 1면) (2) 『○○투어 전문판매점 “난 봉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1면) (3) 『○○투어 ‘쌍끌이’에 중소여행사 ‘허탈’』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3일자 1면) (4) 『○○투어 유통채널 그 숨겨진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0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에 대한 중소여행사들의 불만을 객관적 자료 없이 과장되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처리결과 미이행

2012서울조정1282~1285 (매체별 조정·손배청구) (병합) 김○○ 對 MBN,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 MBN : 시사기획 맥 프로그램 『굿 한번에 1억! 요지경 무속세상』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25일자 22:00) • 인터넷 MBN : 『굿 한번에 1억! 요지경 무속세상』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5일자)
신청인주장	빙의(귀신들림)치료와 관련, 승려인 신청인이 상담자들에게 치료를 종용하거나 치료비를 미리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MBN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 및 다시보기 VOD 영상에서 신청인 관련 자료화면 삭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사사기획 맥> 프로그램37회~2회에서 신청인 관련 보도내용을 삭제 함

2012대구조정18 (손배청구) 박○○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담배 대놓고 파는 약국... 패스트푸드점 들인 대학병원』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2년 8월 20일자 4면)
신청인주장	담배 파는 약국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약국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286~1289 (매체별 조정·손배청구) 강○○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월 100만 원 쉽게 번다” 입원 코드기는 병원』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8월 18일자 1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290~1291 (반론·손배청구) 1. 주식회사 ○○○○○○○○○○ 2. 문○○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1) 『‘노조’ 무력화 나선 또 다른 ‘○○’, ○○○○○○○○○ 문○○ 사장』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1일자) (2) 『○○○○○○○○○, 이번엔 ‘노조시위 과잉대응’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본사 소속 노조 집행부 4명을 지역으로 발령내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1292~1293 (정정·손배청구)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선교회 2. 최○○ 對 크리스천 포커스	
조 정 대 상	『○○○ 선교대회(2003) 3억여 원 부정지출 의혹 제기돼』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7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선교회가 개최한 선교대회 회계처리에 부정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선교대회(2003) 부정지출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3면)

2012서울조정1294~1297 (매체별 조정 · 손배청구) (주)○○의사對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 문화일보 : 『제약사 ‘변칙 리베이트’ 기승』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7일자 9면) • 인터넷 문화일보 : 『‘의사 노래자랑’ 상금 5,000만 원’ 제약사 후원 왜?’』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법인이 주최한 ‘의사 노래자랑’ 행사에 제약사가 후원을 빙자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문화일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48시간 동안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모바일 문화일보의 사회면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 함
이 행 결 과	• 문화일보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일자 8면) • 인터넷 문화일보 : 『 ‘의사 노래자랑, 제약사 리베이트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일자)

2012서울조정1298~1299 (조정 · 반론청구) (주)○○랜드對 소비자연합Times	
조 정 대 상	『○○랜드, “제품 불량이다” VS “소비자 부주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세탁 후 점퍼가 손상되어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에게 수선도 해주지 않고 소비자의 과실을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전북조정32~33 (조정 · 손배청구) 박○○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전주○피부와 ○원장 ‘향정’ 위반, 검찰 재수사 여부 관심 ‘쏠려’』 제하의 기사(2012년 5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의사인 신청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위반하여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또한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 관련 신청인에 대한 기사들을 모두 삭제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매개되어 있는 해당 기사들도 모두 삭제 함, 향후 검찰 수사 개시 등의 사정변경이 없는 한 후속보도나 재수사촉구 보도 등을 하지 않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전주○피부와 ○원장 항정 위반, 재수사 여부 관심 쏠려’』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30일자)
2012경기조정74~7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주식회사 對 중부일보,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퇴임 앞둔 교장, 학교 농지 빌려주고 다시 얻은 ‘교장직’』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2년 8월 30일자 27면, 인터넷 중부일보 8월 31일자)
신청인주장	학교농장 임차업체로 낙찰된 신청인 회사가 해당 학교장을 신청인 회사가 신설할 예정인 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초빙해 특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중부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2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중부일보: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9일자 23면) • 인터넷 중부일보: 『[반론보도문] 퇴임 앞둔 교장, 학교 농지 빌려주고 다시 얻은 ‘교장직’』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9일자)

2012서울조정1300~1305 (매체별 반론청구) 최○○ 對 한겨레(1300), 인터넷 한겨레(1301, 1300과 병합), KBS-1TV(1302), KBS(1303), YTN(1304), 인터넷 YTN(1305, 1304와 병합)	
조 정 대 상	• 한겨레: 『감전된 아버지도 … 구하려던 아들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0일자 13면) • 인터넷 한겨레: 『감전된 아버지도 … 구하려던 아들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9일자) • KBS-1TV: KBS 뉴스9 프로그램 『에어컨 청소하다 인부 2명 감전』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8일자 22:05) • KBS: 『에어컨 청소하다 인부 2명 감전』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8일자) • YTN: (1) YTN 뉴스 프로그램 『에어컨 수리하다 감전… 2명 중태』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8일자 18:22, 19:43), (2) YTN 뉴스 프로그램 『에어컨 수리 근로자 2명 감전 … 폭염 속 사고 잇따라』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8일자 20:20, 21:43) • 인터넷 YTN: (1) 『에어컨 수리하다 감전… 2명 중태』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8일자), (2) 『에어컨 수리 근로자 2명 감전.. 폭염 속 사고 잇따라』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남편과 아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에어컨 청소 작업을 하다 감전 사고를 당했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한겨레·인터넷 한겨레: 조정성립 (내용: 기사수정, 부제소) • KBS-1TV·KBS: 각 취하 (사유: 기사수정) • YTN·인터넷 YTN: 취하 (사유: 기사수정 약속)

2012서울조정1306~1307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문화방송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MBC 안철수 편파보도 “교묘하고 집요해”』제하의 기사(2012년 8월 26일자)
신청인주장	MBC가 안철수씨의 룰살롱 출입에 대한 해명을 보도하지 않는 등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308~131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주)○○○○○ 2. 남○○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누가 이 책의 발판을 깔았나』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8월 29일자 A13면, 동아닷컴 8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출판한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사재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312~1315	(매체별 정정청구) 대학생 ○○○○○○연구회 ○○○○○○ ○○○○○○ 對 조선일보 ⁽¹³¹²⁾ , 조선닷컴 ⁽¹³¹³⁾ , 네이버 ⁽¹³¹⁴⁾ , 다음 ⁽¹³¹⁵⁾
조 정 대 상	『“민노·민주당 소속 대학생 의식화” 北, 작년 ‘왕재산’ 통해 지령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5월 29일자 1면, 조선닷컴·네이버·다음 5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지하당 ‘왕재산’을 통해 북한대남공작기구로부터 지령을 받은 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1316~131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윤○○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김○○ 말고 또 있다” 소문… 청와대 내부 검찰 돌입』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7월 16일자 A3면, 조선닷컴 7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청인이 해운중개업체로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힘써준 대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조선닷컴 홈페이지 사회섹션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청와대 전 행정관 금품수수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9월 21일자 2면, 조선닷컴 9월 21일자)

2012서울조정1320	(반론청구) 강○○ 對 방송대신문
조 정 대 상	『방송대 왜곡보도, 초기 대응 해결』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방송통신대학교의 기성회비 방만 운용에 대해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된 기사가 오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방송대 왜곡보도, 초기 대응 해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4일자 3면)

2012대전조정36~37	(정정·손배청구) ○○사랑 對 대전투데이
조 정 대 상	(1) 『교수에게 농락당한 태안군 ‘망신살’』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6일자 1면) (2) 『“태안군수도 속고 군민도 속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6일자 1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미국 자원봉사기구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마치 태안군이 자원봉사자 성지임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는 것처럼 속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5일자 1면)

2012대전조정38~4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심○○ 對 세종매일, 인터넷 세종매일
조 정 대 상	『세종시 인사 ‘난맥상’ … 성희룡 공무원 승진대상 포함 논란』 제하의 기사 (세종매일 2012년 8월 27일자 1면, 인터넷 세종매일 8월 27일자)
신청인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의 징계 사유가 성희룡 빌미 제공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세종매일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반론보도문 표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세종시 인사 ‘난맥상’ … 성희룡 공무원 승진대상 포함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세종매일 2012년 10월 5일자 3면, 인터넷 세종매일 10월 5일자)

2012서울조정1321	(정정청구) ○○남부새마을금고 對 아시아투데이
조 정 대 상	(1) 『현금거래, 대체거래로 둔갑 고객 거래내역 허위 작성?』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3일자 1면) (2) 『고객통장, 최대 5개로 복제운용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새마을금고가 현금거래를 대체거래인 것처럼 꾸미고 통장을 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66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시민의 소리
조 정 대 상	『○○○○, 누가姜시장에게 소개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일자)
신청인주장	영상제작 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광주시의 입체영상 변환 사업(사기극)에 가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 표시,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광주시 입체영상 변환 사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1일자)

2012경기조정78~8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여○○ 對 안성신문, 인터넷 안성신문
조 정 대 상	• 안성신문 : 『“공정하고 투명한 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안성신문 2012년 8월 22일자 6면)

조 정 대 상	• 인터넷 안성신문 : 『[미니인터뷰] “공정하고 투명한 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성시지회 전 회장인 신청인이 협회 사무실을 점유,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안성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게재,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안성신문 2012년 10월 10일자 10면, 인터넷 안성신문 10월 10일자)

2012서울조정1322~132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기상청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100km 차이 난 ‘볼라벤’ 진로… 기상청 조작 의혹』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8월 30일 A01면, 조선닷컴 2012년 8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기상청이 태풍 ‘볼라벤’의 진로가 예보와 다르게 나타나자, 실제 진로를 예보에 맞게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324~1325 (정정 · 손해청구) 정○○ 對 인터넷 의정부신문	
조 정 대 상	『(1보)의정부시 여성정치연합 전 회장, ‘불법사채’로 수억 원대 이자 챙겨』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불법사채로 수억 원대 이자를 챙겼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모두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중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2012서울조정1326~1330 (매체별 정정청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對 노컷뉴스⁽¹³²⁶⁾, 네이버⁽¹³²⁷⁾, 네이트⁽¹³²⁸⁾, 다음⁽¹³²⁹⁾, 야후⁽¹³³⁰⁾	
조 정 대 상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상한’ 해고』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직원을 해임하였으나 내부비리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39~42 참조)]

처 리 결 과	※ 이행방법 • 노컷뉴스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노컷뉴스 : 『‘이상한 해고’ 기사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4일자)

2012서울조정1331~133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클럽 외 15인 對 한국경제,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 한국경제 : (1) 『‘○○○클럽’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 논란』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0일자 27면), (2) 『뽀뽀한 ○○○클럽, 브라질 구경 실컷 해봐라』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1일자 39면) • 한경닷컴 : (1) 『기초자치단체장 친목모임 ‘○○○클럽’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 논란』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9일자), (2) 『뽀뽀한 ○○○클럽, 브라질 관광 실컷 해봐라』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지자체장들의 연구모임) 회원들이 브라질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클럽, 브라질 방문 관련 정정보도』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2년 10월 9일자 32면, 한경닷컴 10월 8일자)

2012서울조정1335~133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박○○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학교책임이 아닙니다』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2일자 23:00) • IMBC : 『[다시보기] 학교책임이 아닙니다』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일자)
신청인주장	중학교 교감인 신청인이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 책임이 아니라고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337~1338	(정정·손배청구) 1. 박○○ 2. 김○○ 對 구리넷
조 정 대 상	(1) 『생체협 사태, 구리시 진상조사나서 ... 혹시?가 역시나로 ... “괴롭힘 당한 A씨만 추궁”』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6일자) (2) 『<속보> 구리시, 생체협 방치하면 ... “통제 불능 사태 올 것” 예측하고 경고했다』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8일자)
신청인주장	구리시 내 스포츠센터 종합 안내 여직원인 신청인들이 동료 여직원을 왕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경남조정68~69	(정정·손배청구) 방○○ 對 고성미래신문
조 정 대 상	『고성 중견작가 卮叻, 남의 이름 도용 ‘의혹’』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4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서각·서예전시회를 개최하면서 타인의 작품을 도용하여 전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전북조정34~35	(정정·손배청구) 김○○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1) 『현직경찰 인척 사건 동료경찰에 수사 청탁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8일자) (2) 『현직경찰 청탁수사 의혹… 진상조사 나서』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2일자) (3) 『K원장, 인척 현직경찰에 수사청탁 의혹 되레 악수』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6일자) (4) 『전북도경, 기획수사 청탁경찰 징계 지연』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7일자) (5) 『전주 A피부과, 얽히고 설킨 실타래 풀리긴 할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0일자) (6) 『전북경찰청, 청탁경찰 전보로 수습 어렵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8일자)
신청인주장	경찰인 신청인이 인척관계인 동서의 사건을 동료경찰에게 청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해당기사 삭제, 이행강제금, 부제소)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현직 경찰 인척 사건 동료경찰에 수사 청탁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4일자)

2012서울조정1339~1341	(정정·반론·손배청구) ○○특허법인 對 뉴스토마토
조 정 대 상	『삼성 '결정적 증거' 누락.. 실수? 다른 의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특허법인의 디자인담당 직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마치 변리사와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했고, 발언 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1342~134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사단법인 ○○○○협회 對 KBS-1TV, KBSi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약이 아니라 독』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7일자 21:23) • KBSi : 『[현장추적] 한약국 다이어트한약 '약' 아닌 '독'』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약국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한약에 마황성분이 기준치의 11배나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약속)

2012부산조정28~3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유○○ 對 울산광역시매일, 인터넷 울산광역시매일
조 정 대 상	『마구잡이식 공사 강행 학부모 뿔났다』 제하의 기사 (울산광역시매일 2012년 9월 10일자 5면, 인터넷 울산광역시매일 9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원아의 교육과 안전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공사를 감행해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울산광역매일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인터넷 울산광역매일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울산광역매일 : 『반박문』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5일자 5면)

2012서울조정1344	(손배청구) 황○○ 對 다음
조 정 대 상	『[Topic메모] 현직 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조사』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신청인주장	현직 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보도하면서, 무관한 신청인의 얼굴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결정 (사유 : 블로그의 게시글을 언론중재법상 조정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012서울조정1345~1348	(매체별 반론 · 손배청구) (병합) (주)○○○○시스템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7백만 베이비부머 ... 제2의 삶은?』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12일자 21:00) • iMBC : 『7백만 베이비부머 ... 제2의 삶은?』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2일자)
신청인주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실패 사례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업체의 브랜드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MBC-TV :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서 신청인 업체가 속한 프랜차이즈 관련 긍정적인 보도, 신청인 업체의 브랜드를 15초 전후로 노출시킴 • iMBC : 후속보도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MBC-TV :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자영업자 수 늘어.. 업종 · 업체선정 중요』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16일자 06:00) • iMBC : 『[경제플러스] 4인 가족 김장비 22만 9천 원 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6일자)

2012서울조정1349~1350	(정정 · 손배청구) 왕○○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 프로그램 『수입산의 천국, ○○○마트의 두 얼굴』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16일자 23:1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수입산 식재료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해명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 프로그램 『수입산의 천국, ○○○마트의 두 얼굴』 편의 “○○○식당” 식재료 원산지 관련 해명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6일자 23:00)

2012서울조정1351~1354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황○○ 對 서울구민신문, 인터넷 서울구민신문
조 정 대 상	『구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육두문자쓰며 지역신문 편집권 훼손발언』 제하의 기사 (서울구민신문 2012년 9월 10일자 1면, 인터넷 서울구민신문 9월 6일자)

신청인주장	구의원인 신청인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을 ‘욕두문자를 사용하는 추태’로 왜곡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황○○ 의원 지역신문 편집권 훼손관련 발언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구민신문 2012년 9월 28일자 1면, 인터넷 서울구민신문 9월 25일자)

2012서울조정1355~1356	(정정·손배청구) 송○○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YTN, ‘노조 파업 적극 참가’ 앵커 하차시켜』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2일자)
신청인주장	YTN의 앵커팀장인 신청인이 노조 파업에 참가한 모 앵커에게 앵커 교체를 통보하면서 “윗선의 평가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YTN파업 참가 앵커 하차』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5일자)

2012경기조정82~83	(정정·손배청구) 왕○○ 對 인천신문
조 정 대 상	(1) 『북항, 산업폐기물 창구 전락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0일자 4면) (2) 『일본산 폐기물 수입경로 조사』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1일자 4면) (3) 『폐기물 수출입 신고·허가제 구멍』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0일자 1면) (4) 『구멍 난 수출입 폐기물 관리』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1일자 11면) (5) 『검증기관서 합격, 뒷거래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3일자 1면) (6) 『“특정업체 표적검증·편파판정”』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3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무역회사가 들어온 일본산 화물에 국가간 이동이 금지된 유해폐기물인 변압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357	(정정청구) 박근혜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정수장학회·가족관계·○○○ 미스터리’가 의혹의 쟁점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9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임 당시 연간 장학금의 10% 이상을 받았고, 과거사 진실 규명위원회가 정수장학회를 ‘공권력에 의한 헌납’으로 결론 짓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358	(정정청구) 박근혜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씨 사위, 朴후보 정계 입문 때부터 비서로 지금도 핵심 측근설…차캠프 “본 적도 없어”』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2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정계에 입문할 당시 보좌관으로 활동한 고 ○○○ 목사의 사위가 17대 대선 때 비선 조직을 이끄는 등 신청인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359~1361	(정정·반론·손배청구)이○○對뉴스스
조 정 대 상	『지하철서 여성승객 흥기 위험… 경찰, 보고도 제압 안해』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지하철에서 승객들을 흥기로 위협하는 피의자를 경찰관인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제압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 보도문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을 '지하철 여성승객 흥기 위험범 검거'로 수정하고 소제목으로 '경찰 즉각 제압은 안해'를 추가 함
이 행 결 과	『지하철서 여성승객 흥기 위험… 경찰 보고도 제압 안해』 관련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5일자)

2012서울조정1362~1363	(정정·손배청구)○○○○○(주)對e상조뉴스
조 정 대 상	『○○○○○ '치과상품' 상조영업 도입 영업사원들 혼선』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상조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치과상품'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상조/장례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주), 치과상품 출시 계획'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5일자)

2012부산조정32	(손배청구)이○○對hello tv 금정방송
조 정 대 상	뉴스퍼레이드부산 프로그램 『무책임 행정, 서민 한숨』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11일자 21:30)
신청인주장	부산광역시 동구청이 포장마차 철거를 추진하면서 상인들을 협박했다고 보도하여 담당자인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364~1365	(매체별 반론청구)(병합)○○○○ 회물자동차운송협회對jbc, 인터넷 jbc
조 정 대 상	• jbc : 뉴스10 프로그램 『리터당 300원 할인… 가짜 화물차 수천대 '세금 도둑질'』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15일자 22:00) • 인터넷 jbc : 『리터당 300원 할인… 가짜 화물차 수천대 '세금 도둑질'』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가짜 화물차에 대폐차신고필증을 허위로 발급해 유가보조금을 받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jbc <뉴스10>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진행자가 통상의 속도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되,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낭독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 자료화면으로 함, 인터넷 jbc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jbc : 뉴스10 프로그램 『○○화물협회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12일자 22:00) • 인터넷 jbc : 『○○화물협회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2일자)

2012서울조정1366~1367	(매체별 정정청구) (병입) 경찰청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1) 『2009년 ○○차 노사 타결 임박 알고도... 조○○, 상부지시 무시한채 경찰력 투입』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9월 20일자 1면, 인터넷 한겨레 9월 20일자) (2) 『조○○, 테이저건 자제 지시도 묵살』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9월 20일자 14면, 인터넷 한겨레 9월 20일자)
신청인주장	2009년 7월 ○○차 파업 당시, 경찰이 노사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368~1372	(매체별 반론청구) (주)○○○○ 對 온라인 중앙일보 ⁽¹³⁶⁸⁾ , 인터넷 한국일보 ⁽¹³⁶⁹⁾ , 인터넷 서울경제 ⁽¹³⁷⁰⁾ , e머니위크 ⁽¹³⁷¹⁾ , enews24 ⁽¹³⁷²⁾
조 정 대 상	• 온라인 중앙일보 : 『배우 민○○, 햄버거 업체에 모델료 청구소송』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3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민○○, 무단광고 대응 1억여원 청구 소송』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3일자) • 인터넷 서울경제 : 『민○○, '○○○○'에 “모델료 달라”』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3일자) • e머니위크 :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 광고모델료 소송 휘말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3일자) • enews24 : 『민○○,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울분이 밀려와” 미니홈피 의미심장 글』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전속 모델 계약을 맺은 배우에게 계약금 1억5천만 원 중 일부만 지급했다가 피소됐다고 보도했으나, 계약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각하결정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2서울조정1373, 1391~1393	(매체별 정정청구) (주)○○○○ 對 더벨 ⁽¹³⁷³⁾ , 다음 ⁽¹³⁹¹⁾ , e머니투데이 ⁽¹³⁹²⁾ , 네이버 ⁽¹³⁹³⁾
조 정 대 상	『○○○○, 2013년 목표 IPO 추진』 제하의 기사 (더벨 2012년 7월 31일자, 다음 · e머니투데이 · 네이버 8월 7일자)

신청인주장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2013년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PR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더벨』○○○○,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0일자)

2012서울조정1374~1375, 1414~1415	(매체별 조정 · 손배청구) 정○○ 외 13인 對 중앙일보(1374 정정청구, 1414 손배청구), 온라인 중앙일보(1375 정정청구, 1415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KGIT 30억여치 장비 누가 가져갔나』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9월 5일자 10면, 온라인 중앙일보 9월 5일자)
신청인주장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인 신청인들이 공모해 30억 원여치의 학교 기자재를 빼돌린 의혹이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내용 : 정정보도) ▷ 손배청구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 : 홈페이지 사회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KGIT』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2월 12일자 10면, 온라인 중앙일보 2월 12일자)

2012서울조정1376~1379	(매체별 조정 · 손배청구)(병합) ○○○○오피스텔 관리단 對 KBS-1TV, KBS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오피스텔 비리 더 심각... 세입자만 피해』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6일자 21:00) • KBSi : 『오피스텔 비리 더 심각...세입자만 피해』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6일자)
신청인주장	오피스텔 관리인인 신청인이 주차장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입주자들에게 약 30억 원을 부당 징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KBS-1TV : 뉴스930 프로그램 『○○○○ 오피스텔 측 “주차료 징수 적법”』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12일자 09:30) • KBSi : 『○○○○ 오피스텔 측 “주차료 징수 적법”』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2일자)

2012광주조정67	(정정청구) 신안군 對 인터넷 신안신문
조 정 대 상	『신안군, 향우회 등 지원조례안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안군이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군의회의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신안군 향우회 지원조례안 개정 관련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5일자)

2012서울조정1380~1381 (매체별 반론청구) (주)○○○ 對 KBS drama, 인터넷 KBS drama	
조 정 대 상	• KBS drama : 뷰티의 여왕 시즌2 프로그램 『판도라의 파우치 코너』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3일자 23:39) • 인터넷 KBS drama : 『[다시보기]판도라의 파우치 코너』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일자)
신청인주장	피부건강용 수면팩을 비교하면서, 경쟁사 제품이 신청인 회사가 수입하는 제품에 비해 우수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382~1385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손○○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초등생에게 저기(귀청소방)가 뭐하는 곳이나 물으니 “변태업소요”』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9월 24일자 19면, 온라인 중앙일보 9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귀청소방을 퇴폐업소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386~1387 (매체별 정정청구) ○○○○○의료협회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고령화로 급증한 요양병원의 횡포 … 80%가 간병비 내야 입원시켜』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9월 3일자 A14면, 조선닷컴 9월 3일자)
신청인주장	요양병원 중 상당수가 입원비 외에 간병비를 내야 입원시켜주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전북조정36~37 (정정 · 반론청구) 장학수 對 전주KBS-1, 2TV	
조 정 대 상	(1) KBS 뉴스타임 프로그램 『내장산 리조트…보상 갈등 사업 지연』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7일자 18:00) (2) 930뉴스 프로그램 『내장산 리조트…보상 갈등 사업 지연』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7일자 21:40) (3) KBS 뉴스7 프로그램 『보상갈등 사업지연』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8일자 07:00) (4) KBS 뉴스9 프로그램 『내장산 리조트…보상 갈등 사업 지연』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8일자 09:30)
신청인주장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의 지연사유가 정읍시의원인 신청인의 토지보상문제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KBS-1TV 뉴스9(전북권) 프로그램 및 뉴스광장 7시 30분(전북권)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되,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낭독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함, 또한 KBS에 있는 조정대상보도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1) KBS 뉴스9 프로그램 『내장산 관광사업 지연 시의원과 무관』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24일자 21:00) (2)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내장산 관광사업 지연 시의원과 무관』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24일자 07:30)

2012서울조정1388~1389	(정정·반론청구) 장○○ 對 KBS
조 정 대 상	(1) 『[다시보기]내장산 리조트…보상 갈등 사업 지연』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2) 『[다시보기]보상갈등 사업지연』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8일자) (3) 『[다시보기]내장산 리조트…보상 갈등 사업 지연』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신청인주장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의 지연사유가 정읍시의원인 신청인의 토지보상문제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390	(정정청구) 국토해양부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정부, 외국자본에 ‘한국철도 기간망 장악’ 길터줬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5일자 8면)
신청인주장	정부가 2012년 3월 체결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에 ‘일반철도 시설의 경영권’을 외국자본에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기고문)
이 행 결 과	『WTO 정부조달협정 철도 기간망 개방』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6일자 8면)

2012서울조정1394~1395	(정정·손배청구) 이○○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땅값 내놔” 이웃 흥기로 찢려 숨지게 한 70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부친이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살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68~69	(정정·손배청구) 이○○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땅 문제로 말다툼 벌이다 후배 찢른 70대 검거』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부친이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살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조건부 추후보도 약속)

2012대전조정42~44	(매체별 정정청구) 1. ○○농업협동조합 2. 한○○對 충남일보 ⁽⁴²⁾ , 인터넷 충남일보 ⁽⁴³⁾ , CTN ⁽⁴⁴⁾
조 정 대 상	• 충남일보 · 인터넷 충남일보 : 『농협도 비리로 '얼룩'』 제하의 기사 (충남일보 2012년 8월 6일자 8면, 인터넷 충남일보 8월 6일자) • CTN : 『서산S농협, 쌀 판매대금 횡령 회수...자랑』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농협이 쌀 판매대금을 횡령한 직원을 형사고발하지 않고 횡령대금 회수와 직위 해제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는 이를 숨겼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충남일보 · 인터넷 충남일보 : 『‘농협도 비리로 얼룩’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충남일보 2012년 10월 9일자 8면, 인터넷 충남일보 10월 8일자) • CTN : 『[정정보도] ‘서산S농협, 쌀판매대금 횡령회수...자랑’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8일자)

2012서울조정1396~1399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공업주식회사對 KBS-1TV, KBS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육군 물 탄 락스로 ‘신병 생활관 살균’ 논란』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9일자 21:00) • KBSi : 『육군 물 탄 락스로 ‘신병 생활관 살균’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육군에 납품한 살균소독제가 물탄 락스이며, 허가도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400~1401	(매체별 정정청구) 문○○對 월간조선, 월간조선뉴스서비스
조 정 대 상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2년 9월 1일자 382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9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건설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도됐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2서울중재43~44 참조)]
이 행 결 과	『‘문○○ 전 부산시장의 사전수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2년 11월 1일자 341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11월 1일자)

2012경남조정70~71	(정정 · 손배청구) 채○○對 경남타임즈
조 정 대 상	『“사이비 기자 단속해 달라” 호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언론사 편집국장인 신청인이 모 시의원에게 자정 무렵에 전화해 횡포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손배청구 : 취하

처 리 결 과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5일자)

2012서울조정1402	(정정청구)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환경정책평가연, 4대강 보로 녹조 심화 보고 받고도 총리실 거짓말”』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8일자 12면)
신청인주장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이 4대강 보 설치로 인해 조류 발생이 심화되어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정부에 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2일자 2면)

2012서울조정1403~1406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정○○ 對 민주신문 ^{(1403 정정청구, 민주신문^{(1404 손해청구), 인터넷 민주신문^(1405 정정청구, 1403과 병합)}, 인터넷 민주신문^(1406, 손해청구, 1404와 병합)}
조 정 대 상	『“성추행 인정 … 고의성 없어” 무죄 vs “성폭력 범죄 특성상 납득 안 돼”』 제하의 기사 (민주신문 2012년 8월 19일자 17면, 인터넷 민주신문 8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제빵사인 신청인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민주신문에 정정보도, 인터넷 민주신문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손해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150만 원, 이행강제금, 부제소)
이 행 결 과	• 민주신문 : 『“성추행 인정 … 고의성 없어” 무죄 vs “성폭력 범죄 특성상 납득 안 돼”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17면)

2012서울조정1407	(반론청구) 1. 국군기무사령부 2. 배○○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청와대 ‘기무사 성매수 은폐’ 특별 감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4일자 8면)
신청인주장	국군기무사령부가 소속직원의 성매수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청와대 특별감찰에 대비한 보고서를 준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2일자 2면)

2012서울조정1408~1411, 1420~1427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이○○ 對 한겨레 ^(1408~1409) , 인터넷 한겨레 ^(1410~1411) , 네이버 ^(1420~1421) , 네이트 ^(1422~1423) , 줌닷컴 ^(1424~1425) , 다음 ^(1426~1427)
조 정 대 상	『대구 여성회관, 동우회 활동비로 시골』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7월 5일자 14면, 인터넷 한겨레 · 네이버 · 네이트 · 줌닷컴 · 다음 7월 5일자)

신청인주장	도에 감사인 신청인이 여성회관 동우회 회원들에게 매월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걷어 편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 네이버 · 네이트 · 줌닷컴 · 다음 : 각 취하

2012광주조정70~73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최○○對뉴스웨이 호남본부, 호남매일	
조 정 대 상	• 뉴스웨이 호남본부 : 『자질 논란 축구감독에 어린 선수 둔 ‘학부모 원성’』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1일자) • 호남매일 : 『‘자질 논란’ 초등 축구감독 선임 말썽』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2일자 13면)
신청인주장	초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다른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을 축구부 감독으로 선임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 유혹접대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뉴스웨이 호남본부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호남매일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뉴스웨이 호남본부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뉴스웨이 호남본부 : 『[반론보도문] 자질 논란 축구감독에 어린 선수 둔 ‘학부모 원성’』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5일자) • 호남매일 : 『“자질논란 초등 축구감독 선임 말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13면)

2012서울조정1412~141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대학교對한국경제,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대 장학금 지급을 부풀려』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2년 9월 12일자 32면, 한경닷컴 9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2011년도 장학금을 받은 학생 비율을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한경닷컴 : 한국경제신문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날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홈페이지 사회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대학교 장학금 지급률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2년 10월 31일자 32면, 한경닷컴 10월 31일자)

2012전북조정38	(정정청구) 정읍시對 전북타임스
조 정 대 상	(1) 『정읍시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441억 확정 … 시민혈세 ‘줄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4일자 1면) (2) 『정읍시 화장시설 부지 ‘말뚝’』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4일자 2면)
신청인주장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의 건립부지가 시장의 지인 소유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4일자 1면)

2012광주조정74	(정정·손배청구) 이○○對 인터넷 시민의 소리
조 정 대 상	『브리튼 리, “갬코 이전 또 다른 사업제안 했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광주시 입체영상 변환사업과 관련해 국제 사기극을 벌인 브리튼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브리튼 리, 갬코 이전 또 다른 사업제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9일자)

2012서울조정1416~141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對 수산신문, 인터넷 수산신문
조 정 대 상	• 수산신문 : (1) 『농수산부 이의신청 기각』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7일자 4면), (2) 『습관적 반복적 행태 계속』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0일자 4면), (3) 『태풍 불고 상처 아물지 않았는데…』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7일자 1면), (4) 『수협중앙회 어업인 알권리 심각하게 훼손』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4일자 1면), (5) 『수협중앙회장 동남아 출장 계획은 ‘풍문’ 아닌 사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4일자 3면) • 인터넷수산신문 : (1) 『이○○ 회장 중앙회 경고받는 최초 회장』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6일자), (2) 『수협중앙회장 동남아 출장 계획 없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9일자), (3) 『태풍불고 상처 아물지 않았는데』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7일자), (4) 『이제 사실을 공개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3일자), (5) 『수협중앙회 어업인 알권리 심각하게 훼손』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수협중앙회장이 태풍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가 아물기도 전에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났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수산신문 : 수산신문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날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을 클릭 시 반론

처 리 결 과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이○○ 수협중앙회장 해외출장’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수산신문 2012년 10월 29일자 2면, 인터넷 수산신문 10월 29일자)

2012대전조정45~4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전국○○○충연합 ○○지역연합회 對 충남시사신문, 인터넷 충남시사신문
조 정 대 상	『‘○○○ 노점상’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뻐나?』 제하의 기사 (충남시사신문 2012년 9월 11일자 1면, 인터넷 충남시사신문 9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연합회가 기존 노점 상인들에게 공갈과 협박, 영업방해 등의 탄압을 일삼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428~1429	(매체별 정정청구) ○○○○○코리아(주) 對 SBS-TV, SBS
조 정 대 상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급발진’ 의심 사고, 전문가도 속수무책』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5일자 20:00) • SBS : 『‘급발진’ 의심 사고, 전문가도 속수무책』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차량의 기록데이터 공개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430~1431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코리아(주) 對 YTN,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 YTN : YTN24 프로그램 『차량 블랙박스 소리에 급발진 증거 있다』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0일자 20:58) • 인터넷 YTN : 『차량 블랙박스 소리에 급발진 증거 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급발진 사고가 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 YTN : 『YTN이브닝뉴스 1부』(17:58~18:57)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 조정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하고, 반론보도문의 본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함 • 인터넷 YTN : 반론보도문을 방영한 후 2일 이내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되, 조정대상보도 중 동영상은 삭제 함
이 행 결 과	• YTN : YTN 이브닝뉴스 1부 프로그램 『○○○○○ “급발진 여부 확인 안 돼”』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22일자 18:00) • 인터넷 YTN : 『○○○코리아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2012서울조정1432~1435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한국○○○○○○○○○○○협회 對 KBS-2TV, KBS
조 정 대 상	• KBS-2TV : 추적 60분 프로그램 『한 명당 2500만 원 사고파는 노인복지』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7일자 23:15) • KBSi : 『한 명당 2500만 원 사고파는 노인복지』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7일자)
신청인주장	노인요양시설의 노인들이 1명당 2500만 원에 거래된다고 잘못 보도해, 노인요양사업이 마치 부정한 수익사업인 것으로 오해받는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KBS-2TV : <추적60분>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되,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낭독 중 배경화면은 낭독자의 화면으로 함 • KBSi : 홈페이지 <추적60분>프로그램면의 <방송보기>코너 [“한 명당 2500만 원” 사고파는 노인복지]란 하단에 반론보도문 게재 함
이 행 결 과	• KBS-2TV : 추적60분 프로그램 『6월 27일 <노인 요양 시설>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31일자 23:20) • KBSi : 『6월 27일 <노인 요양 시설>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31일자)
2012서울조정1436~1437, 1448~1450	(매체별 반론청구)(병합) 한국○○총연맹 對 동아일보 ⁽¹⁴³⁶⁾ , 동아닷컴 ^(1437, 1436과 병합) , 네이버 ⁽¹⁴⁴⁸⁾ , 네이트 ⁽¹⁴⁴⁹⁾ , 다음 ⁽¹⁴⁵⁰⁾
조 정 대 상	『○○총연맹 ‘국고 유용’ 정황포착 본격수사’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10월 6일자 A1면, 동아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 10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집행부가 국고를 유용하고, 간부들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동아일보·동아닷컴 : 조정성립 (동아닷컴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네이트·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 45~47 참조)] ※ 이행방법 • 동아닷컴 : 홈페이지 화면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동아닷컴 : 『‘○○총연맹 국고 유용 수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2년 10월 23일자)
2012서울조정1438~1439	(매체별 정정청구) 주식회사○○메디칼 對 MBC-TV, MBC
조 정 대 상	• MBC-TV :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6개 중 1개 불량 독성 물질까지』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21일자 21:00), (2) MBC 뉴스24 프로그램 『6개 중 1개 불량』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21일자 24:00), (3)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색소 범벅’ 컬러 렌즈』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22일자 06:00)

조 정 대 상	• iMBC : (1) 『불량 컬러렌즈 무더기 적발 ... 독성물질 각막에 치명적』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1일자), (2) 『‘색소 범벅’ 컬러 렌즈 ... 불량 렌즈 10개 제품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조한 콘택트렌즈 대부분이 불량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MBC-TV :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메디칼 불량품 개수 오류』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25일자 06:00) • iMBC : 『○○메디칼 불량품 개수 오류 ... 전체 생산 개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5일자)

2012서울조정1440~1443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병합) (사)한국○○협회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 한겨레 : 『경찰간부, 경비업 행사서 “공조” 축하』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13면) • 인터넷 한겨레 : 『경찰, 경비업 행사에 악대 보내 축하공연』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경찰간부가 참석하여 축하한 것을 문제 삼는 등, 경비업체들을 용역폭력집단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444~144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차○ 對 시사저널,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차○ 전 대변인, 불법 자금 수수 의혹』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2년 8월 1일자 26~27면, 인터넷 시사저널 8월 1일자)
신청인주장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인 신청인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피신청인 사과,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시사저널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에 넣어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 대상기사는 삭제하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립니다] 차○ 전 민주당 대변인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2년 11월 13일자 목차, 7면, 인터넷 시사저널 11월 15일자)

2012경남조정72~7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한국전력공사 對 경남도민일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조 정 대 상	• 경남도민일보 : 『밀양 송전탑 분신 낳은 ‘한전 거짓말’ 들통』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7일자 1면)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한전, ‘송전탑 노선 이것 밖에는 없다’ 더니...』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7일자)
신청인주장	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송전선로 건설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5개 마을을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하고도 이 사실을 숨겨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경남도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1면)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밀양 송전탑 분신 낳은 한전 거짓말 들통’ 기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2012서울조정1451~145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천○○ 對 한겨레 ^(1451~1452) , 인터넷 한겨레 ^(1453~1454) , 뉴시스 ^(1455~1456)
조 정 대 상	• 경남도민일보 : 『‘교장 성희롱, 고발 교사들을 되레 징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1일자 14면) • 인터넷 한겨레 : 『‘여교사 성희롱 교장’ 고발했더니 되레…』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1일자) • 뉴시스 : 『“성희롱 교장은 봐주고, 왜 우리만 보복성 징계?” 수원 모 초교 교사들 반발』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초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교사들을 성희롱하거나 폭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457~1458, 1662	조○○ 對 동아일보 ^(1457~1458 정정·손배청구) , 서울신문 ^(1662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권력핵심 때 갈등조정 리더십 부족… ‘아마추어 盧정부’ 비판불러』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5일자 A5면) • 서울신문 : 『“천성산 터널 2년 반 정도 중단 6조원 이상 사회 경제적 손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1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과 환경단체가 반대했던 천성산 터널공사와 관련,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손실을 과장해 보도하는 등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75	(정정청구) ○○○원예농업협동조합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농협, 외상값 재촉하며 보상금 지급 미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외상값을 재촉하고,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459~1460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이○○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사설] 대선 캠프에 물려드는 교수들의 본업과 副業』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9월 29일자 7면, 동아닷컴 9월 29일자)
신청인주장	문재인 캠프에 참여한 신청인이 노무현 정부 경제참모 당시, ‘토지 전면 국유화’를 주장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일자 2면) • 동아닷컴 : 『[바로잡습니다] 본보 9월 29일자 A27면』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일자)
2012서울조정1461~1469, 1472~1473	(매체별 정정청구) 안○○ 對 한국경제 ⁽¹⁴⁶¹⁾ , 한경닷컴 ⁽¹⁴⁶²⁾ , 노컷뉴스 ⁽¹⁴⁶³⁾ , 아시아경제닷컴 ⁽¹⁴⁶⁴⁾ , 아시아투데이닷컴 ⁽¹⁴⁶⁵⁾ , e머니투데이 ⁽¹⁴⁶⁶⁾ , 뉴시스 ⁽¹⁴⁶⁷⁾ , 연합뉴스 ⁽¹⁴⁶⁸⁾ , SBS ⁽¹⁴⁶⁹⁾ , 인터넷 YTN ⁽¹⁴⁷²⁾ , 네이버 ⁽¹⁴⁷³⁾
조 정 대 상	• 한국경제 · 한경닷컴 : 『안○○ 前 국세청 국장 ‘파면 취소’ 소송 패소』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2년 9월 12일자 33면, 한경닷컴 9월 11일자) • 노컷뉴스 : 『‘도곡동 땅은 MB 소유’ 안○○ 전 국세청 국장, 파면취소 소송에서 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안○○ 前 국세청 국장, 파면취소소송 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 아시아투데이닷컴 : 『법원, 안○○ 전 국세청 국장 파면취소소송 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 e머니투데이 : 『안○○ 前 국세청 국장, ‘징계 취소’ 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 뉴시스 · 네이버 : 『법원 “안○○ 前 국세청 국장 파면 정당”』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 연합뉴스 : 『안○○ 전 국세청 국장, 파면취소소송 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 SBS : 『안○○ 전 국세청 국장, 파면취소 소송 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 인터넷 YTN : (1) 『안○○ 전 국세청 국장, 파면취소소송 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2) 『‘세무조사 편의’ 안○○ 전 국세청 국장 파면 정당』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전 국세청 국장인 신청인이 기업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구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한국경제 · 한경닷컴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노컷뉴스 · 아시아경제닷컴 · 아시아투데이닷컴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e머니투데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뉴시스 · SBS · 인터넷 YTN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연합뉴스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네이버 : 취하 ※ 이행방법 • 한경닷컴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e머니투데이 :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국경제 : 『안〇〇 前국장 세무조사 무마 미술품 강매 논란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3일자 19면) • 한경닷컴 : 『안〇〇 전 국세청 국장 형사 처벌』 관련 정정 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 노컷뉴스 : 『 '안〇〇 전 국세청 국장 형사처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정정보도] '안〇〇 전 국세청 국장 형사 처벌'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 아시아투데이닷컴 : 『안〇〇 전 국세청 국장 미술품강매 부당이득 행각 논란』 관련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 머니투데이 : 『 '안〇〇 전 국세청 국장 형사 처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	---

2012대전조정49~50		(정정·손배청구) 박〇〇 對 金강일보
조 정 대 상	『〇〇시의회 의장 선거도 '뒷거래'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1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시의회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부의장 및 총무 위원장직 등 자리를 보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 및 후속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〇〇시의회 의장 선거도 뒷거래 의혹'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16면)	

2012충북조정41~42		(정정·손배청구) 박〇〇 對 충부매일
조 정 대 상	『의장선출 금품·자리보장 꼼수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시의회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부의장 및 총무 위원장직 등 자리를 보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470~1471		(정정·손배청구) (주)〇〇〇스타 對 KBS-1TV
조 정 대 상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프로그램 『똑똑한! 상품을 보는 눈! 가격의 자격』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21일자 19:2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조한 음식물 처리기가 타사 제품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468, 1474		(정정청구) 안〇〇 對 연합뉴스, 네이버
조 정 대 상	『안〇〇 前국세청 국장, 파면취소소 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전 국세청 국장인 신청인이 기업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 구입을 강요했고, 이에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475~1478	(매체별 정정청구) ○○○원예농업협동조합조합對 네이버 ⁽¹⁴⁷⁵⁾ , 네이트 ⁽¹⁴⁷⁶⁾ , 다음 ⁽¹⁴⁷⁷⁾ , 야후 ⁽¹⁴⁷⁸⁾
조 정 대 상	『○○○○, 외상값 재촉하며 보상금 지급 미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외상값을 재촉하고,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479~1484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주식회사 박○○화랑 對 국민일보 ^(1479~1480) , 쿠키뉴스 ^(1481~1482, 1479~1480과 병합) , 네이버 ^(1483~1484)
조 정 대 상	『‘失勢 3인방’ 가족 갤러리 동반위기』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2면, 쿠키뉴스 · 네이버 7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화랑이 과거 정치인 친척의 도움으로 급부상했고, 현재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국민일보 · 쿠키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PR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취하 (사유 : PR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쿠키뉴스 : 홈페이지 문화면 기사목록에 신청인이 주관하는 11월 전시회 관련 홍보성 기사를 전시회 개최 7일 전에 24시간 동안 보도하되, PR보도문에는 전시회와 관련한 사진을 포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국민일보 : 『사진이야? 그림이야? - 강○○ 작가 개인전, 박○○ 화랑서 8~22일』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문화면) • 쿠키뉴스 · 네이버 : 『사진이야? 그림이야? ... 박○○화랑서 11월 8~22일 강○○ 작가 개인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4일자)

2012서울조정1485~1490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주식회사 박○○화랑 對 MBC-TV ^(1485~1486) , iMBC ^(1487~1488, 1485~1486과 병합) , 네이버 ^(1489~1490)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아침신문보기』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2일자 06:00) • iMBC · 네이버 : 『[아침신문보기] 술병 수천 개 널린 경포 백사장 ... 취객들은 밤바다 뛰어들어 외』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화랑이 과거 정치인 친척의 도움으로 급부상했고, 현재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MBC-TV · iMBC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조건부 후속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취하 (사유 : PR보도 게재) ※ 이행방법 • MBC-TV · iMBC : MBC-TV는 국민일보가 신청인 관련 전시회 보도를 하면 그 보도가 있는 당일 아침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아침신문보기' 에서 국민일보의 신청인 관련 전

처 리 결 과	사회 기사를 소개, iMBC의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조정대상기사의 다시보기 동영상 중 신청인과 관련한 내용을 편집·삭제함
이 행 결 과	• MBC-TV :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아침신문보기』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5일자 06:00) • iMBC·네이버 : 『[아침신문보기] 프레너미 G2, 이젠 新패권 시대로 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2012부산조정33	(정정청구) ○○스카이라인○○입주자대표회의 對 KNN
조 정 대 상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원룸범죄 여성취약, 대책절실』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12일자 20:25)
신청인주장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아파트가 찍힌 CCTV 영상을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 아파트의 명칭이나 외관 등이 화면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이를 통해 일반 시청자들이 신청인의 아파트임을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 아파트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2경기조정84~8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주식회사○○기업 對 중부일보,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 중부일보 : 『검단산단 지식산업센터부지 건폐율 '3m' 높이' 불법 매립』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2일자 23면) • 인터넷 중부일보 : 『서구의 한 건설 폐기물 업체, 폐기물 불법 매립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2일자)
신청인주장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보관 중인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중부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2년 11월 1일자 2면, 인터넷 중부일보 11월 1일자)

2012서울조정1491~1496	(매체별 손배청구) 이○○ 외 3인 對 KBS-2TV(1491), KBS^(1492, 1491과 병합), MBC-TV⁽¹⁴⁹³⁾, iMBC^(1494, 1493과 병합), SBS-TV⁽¹⁴⁹⁵⁾, SBS^(1496, 1495와 병합)
조 정 대 상	• KBS-2TV :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최고 무기징역 엄벌』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11일자 08:00) • KBSi : 『미성년자 성폭행범 최고 무기징역 엄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판사들의 반성, "형량 높이겠다"』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2일자 21:00)

조 정 대 상	• iMBC : 『‘술김에 그랬다’ 안 통한다 … “아동 성폭력 강력처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일자) • SBS-TV : 토요특집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부모와도 잘아는 ‘동네 아저씨’』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1일자 06:00) • SBSi : 『부모와 인사하던 ‘동네 아저씨’가 악마로…』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일자)
신청인주장	아동 성폭행 문제를 보도하면서, 과거 신청인이 성폭행 당할 당시의 현장검증 장면과 신청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KBS-2TV · KBSi : 조정불성립결정 • MBC-TV · iMBC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 SBS-TV · SBSi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MBC-TV · iMBC · SBS-TV · SBSi : 조정대상보도에서 사용된 자료화면(범죄 당시 CCTV화면, 현장검증 화면) 중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해당 영상 파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최 대한 노력함

2012서울조정1497~1504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전○○對 신동아 ^(1497~1498) , 인터넷 신동아 ^(1499~1500, 1497~1498과 병합) , 네이버 ^(1501~1502) , 다음 ^(1503~1504)	
조 정 대 상	『“대학원생 연구 빼앗은 악덕 교수” vs “제자 이용해 나를 음해”』 제하의 기사 (신동아 2012년 8월 1일자 160~167면, 인터넷 신동아 8월 1일자, 네이버 · 다음 10월 11일자)
신청인주장	대학원생인 신청인이함께 연구를 진행한 교수를 연구성과를 빼앗아간 교수로 매도하고, 신청인이 연구노트를 허위로 작성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신동아 · 인터넷 신동아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인터넷 신동아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 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신동아 · 인터넷 신동아 : 『‘네이처 표지 저자 등재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신동아 2012년 11월 17일자 567면, 인터넷 신동아 11월 5일자)

2012서울조정1505~1506 (매체별 정정청구) 1. 주식회사○○○, 2. 이○○對 시사저널,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MB 6촌 동생 회사, 관공서에 거액 로비”』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2년 10월 10일자 36~38면, 인터넷 시사저널 10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이명박 대통령의 6촌 동생이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관공서 등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로비를 벌어들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507~1508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신○○對 MBN,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 MBN : 생활의 재발견 프로그램 『알루미늄 포일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2일자)

조 정 대 상	23:00) • 인터넷 MBN : 『2회 - 사골국 그 불편한 진실, 알루미늄 포일의 진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일자)
신청인주장	알루미늄 호일의 문제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알루미늄 호일 생산 업체의 대표인 신청인에게 제작 의도를 숨기고 취재,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00만 원,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MBN : 조정대상보도의 다시보기 영상 중 신청인을 알 수 있는 부분(초상, 회사주소, 성명 등)을 모자이크 처리함

2012서울조정1509~1512 (정정·손배청구) 1. 이○○, 2. 김○○ 對 MBC-TV, MBC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시골 총각 무더기 결혼 사기』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1일자 21:00) • iMBC : 『한마을 시골총각 무더기 결혼사기 '황당'』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일자)
신청인주장	네팔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농촌 총각들에게 신원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네팔 여성을 소개시키는 등 결혼사기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양 당사자 이의신청 (사유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가 공익 목적의 보도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신청인들은 반론보도 이외에 손해배상을 원한다) ※ 이행방법 • MBC-TV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으로 함 • iMBC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 홈페이지 <다시보기/뉴스데스크> 코너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면의 동영상과 본문 사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

2012경기조정88~89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건설(주) 對 경기신문, 인터넷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 경기신문 : 『○○배수지 공사 막무가내 '평'』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7일자 19면) • 인터넷 경기신문 : 『인천시상수도본부, ○○배수지 공사 막무가내 '평'』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법정 기준을 무시한 발파작업을 진행하여 인근 사찰의 문화재 등이 훼손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기신문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처 리 결 과	• 경기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일자 21면) • 인터넷 경기신문 : 『○○배수지 공사 막무가내 '평'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일자)

2012서울조정1513~1516	(매체별 손해청구)임○○ 對 스포츠서울닷컴 ⁽¹⁵¹³⁾ , 네이버 ⁽¹⁵¹⁴⁾ , 네이트 ⁽¹⁵¹⁵⁾ , 다음 ⁽¹⁵¹⁶⁾
조 정 대 상	『[SS포토] 강소라, '확 터진' 드레스... '코디언니 SOS!'』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6일자)
신청인주장	연예인 스태프인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517~1518	(정정·손배청구) 1.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 2. 강○○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소 잃은 대한야구협회 외양간이라도 고쳐라!』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의 회장과 사무국, 그리고 현 집행부가 구성원의 비리 의혹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대한야구협회 비리 보도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0일자)

2012서울조정1519~1520	(추후·손배청구) 이○○ 對 한국관광신문BIMCE
조 정 대 상	『이○○ 여행○○신문 발행인 '근로기준법 위반' 구약식 벌금 부과』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0일자 A2면)
신청인주장	신문사 대표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기조정90	(정정청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對 성남일보
조 정 대 상	『성남시설공단 대리인, 노동위서 허위진술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측 대리인들이 노동위원회 심판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성남시설관리공단 대리인, 노동위서 허위진술 논란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2012광주조정76~8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함평군 對 목포시민신문 ^(76~77) ,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78~79, 76~77과 병합) , 인터넷 브레이크뉴스 전남(서남) ^(80~81) , 폭로닷컴 ^(82~83)
조 정 대 상	• 목포시민신문·인터넷 목포시민신문 :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탈법적 실체를 밝힌다』 제하의 기사 (목포시민신문 2012년 10월 9일자 8면,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10월 8일자) • 인터넷 브레이크뉴스 전남(서남)·폭로닷컴 : 『전남 동함평 산단 조성사업 탈법 만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9일자)
신청인주장	함평군이 추진중인 동함평산업단지 사업비의 이자율이 6.4%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목포시민신문 ·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 강제금) • 인터넷 브레이크뉴스 전남(서남) · 폭로닷컴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 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 인터넷 브레이크뉴스 전남(서남) · 폭로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목포시민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탈법적 실체를 밝힌다’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6일자 11면) •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탈법적 실체를 밝힌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 인터넷 브레이크뉴스 전남(서남) · 폭로닷컴 : 『전남 동함평 산단 조성사업 탈법만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2012서울조정1521~1522 (매체별 조정청구)(재)○○○재단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朴, 인혁당 피해자 · 전태일 동료 등 선대위에 인선 … 安 “정당후보론 어처구니없다” … 文 “그런 험한 말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0월 12일자 A1면, 조선닷컴 10월 12일자)
신청인주장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의 김모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이 전태일 열사와 동료로 활동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박근혜 선대위 김○○, 전태일 동료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2면) • 조선닷컴 : [바로잡습니다] ‘박근혜 선대위 김○○, 전태일 동료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2012서울조정1523~1524 (정정 · 손해청구) 한국철도공사 외 3인 對 매일경제	
조 정 대 상	(1) 『30조 개발사업 ‘백치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9일자 38면) (2) 『파산위기 용산개발에 ‘수백억 성과급’』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0일자 31면)
신청인주장	철도공사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투자사에 파견된 이사들에게 투자유치 성사에 대한 개인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전북조정39 (정정청구) 농업회사법인(주)○○○○○○유통 對 해피데이 고창	
조 정 대 상	(1) 『“○○○○○○유통에선 지금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1면) (2) 『○○○○유통 즉시해고, 이유는 무엇이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직원을 즉시 해고하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사건의 진위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유통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2면)
2012서울조정1525~1526 (정정 손배청구) 주식회사문화방송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1) 『최필립의 비밀회동』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3일자 1면) (2) 『MBC 이○○ “정치적 임팩트 굉장히 큰 사안”, 정수장학회 최필립 “대선앞 잔폐란 말 나올 것”』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5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MBC 지분매각에 대해 정수장학회와 밀실험의를 했고, 매각 대금으로 특정 지역 학생 및 노인층 등에게 선심성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527 (정정청구) 신학용 對 민중의소리	
조 정 대 상	『‘학교비정규직 해결하겠다’던 민주당, 새누리당과 손잡고 입법 미루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7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학교비정규직 공무원 문제 해결은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새누리당과 합의’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학교비정규직입법’ 관련 신학용 교과위원장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0일자)
2012서울조정1528 (반론청구) (주)○○○테크놀로지 對 프린터타임스	
조 정 대 상	『안철수, “손상님 뽑치는 거짓말 대통령”』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회사의 기술만 빼내고 프로그램 인수 논의를 중단한 안철수 연구소를 비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1529 (정정청구) 박○○ 對 일요서울	
조 정 대 상	『지경위 안랩 ‘기술 탈취’ 의혹…증인 채택』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8일자 13면)
신청인주장	안철수연구소의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이 신청인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진 위여부를 추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5일자 3면)
2012서울조정1530~1533 (매체별 반론 · 손배청구) 정○○ 對 아시아경제닷컴, 뉴스1 코리아	
조 정 대 상	• 아시아경제닷컴 : 『“미용실서 ‘성매매’ 한 대” 뺑 친 여자의 최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3일자)

조 정 대 상	• 뉴스1 코리아 : 『아내 미용실 운영 어렵자 이웃 업소 괴롭힌 60대 검거』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3일자)
신청인주장	미용실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경쟁업소를 폐업시키기 위해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허위신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아시아경제닷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뉴스1 코리아 : 조정불성립결정
이 행 결 과	• 아시아경제닷컴 : 『[‘이웃 미용실 수십 차례 허위신고’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2012서울조정1534~1538 (가사별 정정청구) (병합) 신경민 對 MBC-TV	
조 정 대 상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신경민 막말 파문』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16일자 21:00)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명백한 오보 ... 학벌주의 조장』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17일자 21:00) (3)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명백한 오보 ... 학벌주의 조장』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18일자 06:00, 06:30) (4)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신경민 “악마적 편집?”』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22일 21:00)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국정감사에서 MBC 사장에 대해 욕설을 하고, 특정간부들의 출신 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84~85 (매체별 추후청구) 박○○ 對 광주일보, 전광일보	
조 정 대 상	• 광주일보 : 『보상금 챙긴 어촌계원 무더기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7일자 7면) • 전광일보 : 『부당 보상금 탄 어민 무더기 검거』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어촌계장인 신청인이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맨손어업 손실 보상금을 부당하게 받아 입건되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광주일보 : 『허위증거 보상금 의혹 어촌계장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6일자 7면) • 전광일보 :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6일자 4면)

2012서울조정1539~1542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병합) 한국○○연합회 對 KBS-1TV, KBSi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 가입자 피해 급증』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8일자 21:00) • KBSi : 『○○가입자 피해 급증...보호장치 전혀 없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8일자)
신청인주장	최근 ○○가입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고 보도했으나, 영업등록 요건 강화 등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1543~1545 (매체별 손배청구) 한○○ 對 세계닷컴 ⁽¹⁵⁴³⁾ , 조선닷컴 ⁽¹⁵⁴⁴⁾ , 인터넷 헤럴드경제 ⁽¹⁵⁴⁵⁾	
조 정 대 상	• 세계닷컴 : 『“뺨과 머리채를…” 깡패 교장, 말리던 교사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9일자) • 조선닷컴 : 『교감, 교사 - 학생 폭행 혐의에도 경찰 수사 거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9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학생 머리채 잡은 ‘깡패 교장’, 교사까지 폭행』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9일자)
신청인주장	고교 교장인 신청인이 학생을 체벌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의 주된 목적과 내용은 공공성이 인정되며, 신청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2012경기조정91~94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주식회사○○○○○ 對 중부일보,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 중부일보 : 『수원 ○○○○ ○○ ‘분양사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0일자 1면), (2) 『○○○○ ○○ 도면 ‘두 장’ 이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1면), (3) 『○○○○○○, 승인 한달전 모델하우스부터 제작했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2일자 1면), (4) 『공사 계약서엔 ‘○○○○○’ 분양 한달 전 ‘○○○○○’ 변경』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27면), (5) 『○○건설, 경찰 조사 시나리오까지 만들어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7일자 23면) • 인터넷 중부일보 : (1) 『수원 ○○○○ ○○ ‘분양사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0일자), (2) 『○○○○ ○○ 도면 ‘두 장’ 이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3) 『○○○○○○, 승인 한달전 모델하우스부터 제작했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2일자), (4) 『수원 ‘○○○○○’ 당초엔 ‘○○○○○’..분양 한달전 변경』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5) 『수원 ○○○○, 경찰 조사 시나리오까지 만들어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아파트인 것처럼 홍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기조정95~102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주식회사○○○○○ 對 협회 對 경인일보 ^(95~96, 99~100) , 인터넷 경인일보 ^(97~98, 101~102)	
조 정 대 상	• 경인일보 : (1) 『서구, 혐오시설 줄이려다 ‘혹 불인 꼴’』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0일자 23면), (2)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0일자 5면) • 인터넷 경인일보 : (1) 『폐기물집단화단지 이전 예정업체, 지점형태로 신규허가 추진 ‘꿈수’』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0일자), (2) 『건폐율중간처리 신규허가 무더기 특혜 논란…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기조정103~104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협회 對 인터넷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인천 서구 혐오시설 집단화 조장 지적』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546~154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주식회사○○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 세계일보 : (1) 『○○, '甲의 횡포' 양계농 울린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5일자 1면), (2) 『양계농 울리는 ○○』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5일자 2면), (3) 『재해에도 병아리 값·사료값 떼고 일부만 지급... 제배만 불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5일자 6면) • 세계닷컴 : (1) 『○○, 양계농가 보험금 수억 원 빼앗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5일자), (2) 『재해에도 병아리 값·사료값 챙기고... 제 배만 채웠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양계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강제가입시킨 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매년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겨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550~1553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임○ 對 KBS-2TV, KBSi
조 정 대 상	• KBS-2TV :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어머니가 딸을 납치?』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8일자 08:00) • KBSi : 『[뉴스 따라잡기] 여대생 납치사건 “종교에 빠진 딸 구하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신청인주장	특정종교에 빠진 신청인을 어머니가 학교 앞에서 납치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어머니가 아닌 괴한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554		(손배청구) 김○○ 對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김○○ 의원 막말, 캠프 사퇴로 끝낼 일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27면)	
신청인주장	지난 4.11 총선 때 공천을 받았던 신청인이 노인을 비하하는 취지의 막말을 하다 후 보직을 사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부산조정34~37		(매체별 반론·손배청구)(병합) 한○○ 對 국제신문,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학생·교사 안가리고 폭행, 누구도 못 말린 '공포 교감'』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2년 10월 18일자 6면, 인터넷 국제신문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사립고 교감인 신청인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시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교사 및 학생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의 주된 목적과 내용은 공공성이 인정되며, 신청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2012서울조정1555~1557	(정정·반론·손배청구) 한국○○연합회 對 e상조뉴스
조 정 대 상	(1) 『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준비 자금 1500만 원씩 징수』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7일자) (2) 『○○연합회 또 사단법인 허가서류접수 '공정위 짝사랑'』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3일자) (3) 『한국○○연합회, 언론사 등록 잡지 5만부 제작 배포 계획』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7일자) (4) 『○○연합회, 해체 위기 5개 회원사 협동조합 비밀리 가입』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4일자) (5) 『연합회 대망신, 동반상장위 ○○중소업종 회의서 무자격』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8일자) (6) 『○○연합회, ○○꾼들 각 기관 민원제기 상조업 발목잡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사업자들의 대표성을 상실한 식물단체이며, 상조업 전체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10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한국○○연합회 운영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3일자)

2012서울조정1558~1563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1. 전국금속노동조합○○지부, 2. 김○○ 對 조선닷컴,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 조선닷컴 : 『평균연봉 9,000만 원 넘는 ○○ 노조의 이상한 파업』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 한경닷컴 : 『○○ 노조의 '황당한 파업'』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신청인주장	파업 중인 ○○노동조합의 지부 노조원들 평균 연봉이 9,000만 원이 넘는다는 기사가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노동조합 지부장이 노동계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조 1차 파업때 먼저 투쟁을 시작하였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조선닷컴·한경닷컴 :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금속노조 ○○지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9일자)

2012전북조정40~41	(가시별 정정청구)(병합) 1. ○○중학교, 2. 학교법인 ○○학원 對 전북일보
조 정 대 상	(1) 『학교폭력 건디다 못해 목숨 버리려한 중학생』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3일자 1면) (2) 『○○ 학교폭력 은폐 의혹 학교 학부모들, 학교법인 퇴출 촉구』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3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학생의 자살 시도에 대해 축소·은폐하려 했으며, 신청인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의 폭력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의 퇴출을 촉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충북조정43~44	(매체별 정정청구) 윤○○對 충청투데이, 인터넷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군의원 의정활동보다 표심잡기?』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2년 10월 23일자 18A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10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노인체육대회에 참석하면서 의정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2년 11월 7일자 18A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11월 7일자)

2012광주조정86~88	(정정·반론·손배청구) 변○○對 우리군민신문
조 정 대 상	(1) 『[긴급진단(1) - 홍길동문화체육진흥회 운영실태 점검] 보조금 3억2천 목적외로 대부분 탕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1면) (2) 『1면 '홍길동문화체육진흥회 운영실태 점검'에서 이어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2면) (3) 『[데스크칼럼] 언론인이 수천만 원의 향응을 받을 수 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11면) (4) 『[긴급진단(2) - 홍길동문화체육진흥회 운영실태 점검] 관공서 상대로 사기치는 수준으로 운영확인 '충격'』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1면) (5) 『[데스크칼럼] 명예훼손 운운할 것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죄부터 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홍길동문화체육진흥회 이사로 재직할 때 업체 대표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우리군민신문에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홍길동문화체육진흥회 운영실태』 관련 반론보도문 (우리군민신문 2012년 11월 19일자 2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1월 19일자)

2012서울조정1564~1565	(정정·손배청구) 1.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2. 정○○對 한강타임즈
조 정 대 상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정○○ 이사장, 친·인척 채용 논란! '인사비리 백화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단이 이사장과 전 구청장 등의 친인척을 채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채용이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3일자)
2012서울조정1566~1571	(매체별 조정 · 반론 · 손해청구) (병합) (주)○○○○○ 對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 아시아투데이 : (1) 『정부 ‘담배값 인상’ 뒤엔 ○○○○ 로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0일자 1면), (2) 『○○○○, ○○화장품 청산 등 비담배분야 계열사서 제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0일자 2면), (3) 『○○○○ 담배에 암모니아…흡연피해 소송 촉각』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8일자 1면), (4) 『○○○○, 문어발 계열사 재벌흥내 ‘자승자박’』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4일자 1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1) 『정부 · 정치권 담배값 인상계획 배경… ○○○○ 로비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9일자), (2) 『○○○○ 담배에 암모니아 검출… 인체와 도덕성에 치명상』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7일자), (3) 『○○○○ ‘문어발 확장’… 재벌 흥내내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정부의 담배값 인상 추진 이면에 신청인 회사의 로비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아시아투데이에 정정 및 반론보도, 아시아투데이닷컴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담배값 인상 로비 의혹 및 암모니아 성분 첨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아시아투데이 2012년 11월 16일자 1면)

2012부산조정38	(손배청구) 손○○ 對 UBC
조 정 대 상	(1) ubc프라임뉴스 프로그램 『한밤의 아들 납치소동 행방 묘연』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27일자 20:15) (2) ubc굿모닝울산 프로그램 『한밤의 아들 납치소동 행방 묘연』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28일자 07:15)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마약에 취해 흥기를 들고 아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경찰 수배를 받자 홀로 도망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대구조정19~20	(조정 · 손해청구) (주)○○○○○ 對 경북일보
조 정 대 상	(1) 『대구 수성구 ○○○○ 의혹 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9일자 1면) (2) 『○○○○ 임의 설계변경 확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1일자 1면) (3) 『○○건설, 부실시공 의혹 거짓해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1면) (4) 『옹벽타고 물 줄줄…새 아파트 맞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4일자 4면)
신청인주장	아파트 시행사인 신청인회사가 당초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는 등 부실 시공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대구조정21~24	(매체별 조정 · 손해청구) ○○○○○○○○ 입주자대표회 對 인터넷 경북일보, 인터넷 대구신문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북일보 : (1) 『대구 수성구 ○○○○ 의혹 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9

조 정 대 상	일자), (2) 『대구 수성구 ○○○○ 임의 설계변경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1일자), (3) 『○○건설 ‘부실공사 의혹’ 해명도 거짓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4) 『옹벽타고 물 줄줄…대구 ○○○○ 안정성 ‘도마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4일자) • 인터넷 대구신문 : 『대구 수성구 범어 ○○○○○○○○ 부실공사 안정성 문제 심각』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알림기사,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북일보 · 인터넷 대구신문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알림기사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알림기사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경북일보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6일자) • 인터넷 대구신문 : 『<알려드립니다> ‘○○○○ ○ ○○○ 비대위’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2012서울조정1572~1579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對 코메디닷컴 ^(1572~1573) , 네이버 ^(1574~1575) , 네이트 ^(1576~1577) , 다음 ^(1578~1579)
조 정 대 상	『주요 간부 줄사표… 보건연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제2대 원장 취임 이후에는 주요보직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연구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코메디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48~53 참조)] ※ 이행방법 • 코메디닷컴 : 홈페이지 뉴스홈 기사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계약관계를 맺고있는 포털사에도 정정 및 반론함이 검색되도록 전송 조치하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 교수 관련 보도 해명자료를 삭제함
이 행 결 과	• 코메디닷컴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 차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3일자)

2012광주조정89~92	(매체별 정정청구) 1. 김○○, 2. 강○○ 對 노컷뉴스 ⁽⁸⁹⁾ , 호남뉴스24 ⁽⁹⁰⁾ , 네이버 ⁽⁹¹⁾ , 다음 ⁽⁹²⁾
조 정 대 상	• 노컷뉴스 · 네이버 · 다음 :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음식경연대회, 불공정 심사 논란』

조 정 대 상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 호남뉴스24 : 『제19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수상자 선정 “곰품제공 의혹 제기” 파장 일 듯』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전통음식 요리가인 신청인이 작년과 올해 같은 음식을 출품하고, 신청인의 남편이 심사 과정에서 로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 호남뉴스24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호남뉴스24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위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호남뉴스24 : 『제19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수상자 선정..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6일자)

2012서울조정1580 (정정청구) 노○○ 對 파이낸셜뉴스	
조 정 대 상	『檢鏡, 경미한 위법까지 단속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27면)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차에서 취침 중인 사람에게까지 음주단속을 하는 등 실적위주의 단속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581 (정정청구) 경상북도울진군 對 뉴스시스	
조 정 대 상	『울진군 일부 예산관리에 구멍』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울진군이 지역 각종행사에 지급한 격려금을 공무원이 착복하는 등 울진군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2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또한 정정보도문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함
이 행 결 과	『‘울진군 일부 예산 관리에 구멍’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3일자)

2012서울조정1582~1583 (정정·손배청구) 이○○ 외2인 對 포바이포 아웃도어뉴스	
조 정 대 상	(1) 『포바이포 뉴스에서 짝통을 취재하며...』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8일자) (2) 『[동영상]○○○ 불법짝통유통 녹취 동영상』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9일자) (3) 『[보도] “○○○○ 짝통용품에 튜닝시장 발각”』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9일자) (4) 『[컬럼] “짝통 사태”는 이미 예고 되어 있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9일자) (5) 『○○○ 짝통 사건에 관련한 포바이포의 입장』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0일자)

조 정 대 상	(6) 『[보도]○○○-불법짜통업체 공개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8일자) (7) 『[컬럼]○○○○(○○)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8) 『용인 ○○○○○(○○○) 운영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7일자) (9) 『[보도] 크라이슬러 코리아의 침묵 “○○○○ 중국불법짜통용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판매하는 자동차 튜닝용 부품이 '중국불법짜통'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충북조정45~48 (매체별 반론·손배청구)(병합) ○○붕어마을 對 충청투데이, 인터넷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 붕어찜 축제 전시·예산낭비』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2년 10월 18일자 16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단체가 주관하는 순수한 지역축제인 붕어찜축제를 전시성 예산낭비 및 지자체장의 표심모으기 행사라고 폄하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인터넷 충청투데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충청투데이: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16면) • 인터넷 충청투데이: 『[반론보도문]-○○붕어마을 붕어찜 축제』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2012서울조정1584~1585 (매체별 정정청구) 전○○ 對 MBN,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 MBN: 생방송 매일경제 프로그램 『가을 이색 도서관』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25일자 08:00) • 인터넷 MBN: 『가을 이색 도서관을 아세요?』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사회복지공무원인 신청인의 인생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신청인의 본업은 심마니이고, 부업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유감표명 공문발송)

2012경남조정76~77 (반론·손배청구) 권○○ 對 뉴시스(경남)	
조 정 대 상	『밀양시민 “주민 무시한 승마장 허가 백지화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건립하려는 승마장이 환경오염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밀양 승마장 주민반발...사업주 해명 나서』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8일자)

2012서울조정1586~1591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한국철도공사 對 더벨,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 더벨 : (1) 『코레일, 공기업인가 쫓기업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2) 『용산사업 투자한 국민연금, 코레일에 강력 '경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5일자) • e머니투데이 : (1) 『[더벨] 코레일, 공기업인가 쫓기업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4일자), (2) 『[더벨] 용산사업 투자한 국민연금, 코레일에 강력 '경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 한국철도공사가 공익은 외면한 채 사업중단 협박을 통해 다른 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무리하게 인수하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부산조정39~40	(정정·손배청구) (주)부산○○○○ 對 부산MBC-TV
조 정 대 상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부산○○○○ 투자비 어디로...』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5일자 20:30)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부산○○○○, 배관 투자비 소비자에게 전가』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6일자 20:3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배관투자 계획을 부풀려 가스 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하였으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 배관을 회사 자산으로 계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전북조정42~43	(매체별 정정청구) 익산시 對 소통신문, 인터넷 소통신문
조 정 대 상	『익산시 악취, 온통 발암물질』 제하의 기사 (소통신문 2012년 11월 5일자 12면, 인터넷 소통신문 11월 5일자)
신청인주장	익산시의 기업들이 대기 중에 배출한 발암 화학 물질의 총량이 2,879톤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이러한 발암 물질의 악취가 장기간 이어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592~1595	(매체별 정정청구) (주)미디어오늘 對 동아일보 ⁽¹⁵⁹²⁾ , 중앙Sunday ⁽¹⁵⁹³⁾ , 인터넷 중앙Sunday ⁽¹⁵⁹⁴⁾ , 동아닷컴 ⁽¹⁵⁹⁵⁾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동아닷컴 : 『[사설] 여기자 성추행 감춘 민주당과 '미디어오늘'의 유착』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8월 13일자 31면, 동아닷컴 8월 13일자) • 중앙Sunday·인터넷 중앙Sunday : 『[사설] '집안' 따르면 성추행 잦대 달라지나』 제하의 기사 (중앙Sunday 2012년 8월 12일자 2면, 인터넷 중앙Sunday 8월 12일자)
신청인주장	'미디어오늘'이 민주당과 유착해, 소속 여기자를 성추행한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중앙Sunday : 홈페이지 News면의 기사목록 앞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처 리 결 과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동아닷컴 : 홈페이지 오피니언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미디어오늘, 여기서 성추행 은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11월 28일자 2면, 중앙Sunday 11월 25일자 2면, 인터넷 중앙Sunday 11월 25일자, 동아닷컴 11월 28일자)

2012서울조정1596~1599 (매체별 조정 · 손해청구) (병합) 민○○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서규용 장관, 동문 로펌에 부처 소송 ‘몰아주기’』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14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서규용, 동문 로펌에 소송 ‘몰아주기’』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농식품부 관련 소송 사건을 몰아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중재부가 결정 내린 반론보도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일부 받아들여진 정정보도 외에도 손해배상을 원한다)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경향신문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날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인터넷 경향신문 홈페이지 정치면 주요기사 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보관함, 또한 조정대상 기사를 매개한 각 포털사이트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게재되는 즉시 이를 송고해 각 포털사이트에서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하며,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이어서 게재되도록 수정된 조정대상기사 역시 이를 매개한 각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도록 함

2012서울조정1600~1601 (정정 · 손해청구) 1. ○○지방변호사회, 2. 오○○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변회, ‘눈엣가시’ 변호사 입회거부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단체 회장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강모 변호사의 입회신청을 패씸죄를 적용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1602~1603 (정정 · 손해청구) 1. ○○지방변호사회, 2. 오○○對 대한변협신문	
조 정 대 상	『지방회가 등록변경 거부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협 회칙에 명백히 반하는 규정을 들어 강모 변호사의 입회신청을 거부한 것은 단체 회장의 권한 남용으로, 개인변호사의 개업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	----

2012서울조정1604~1605	(매체별 정정청구) 최○○對 KBS-1·2TV, KBS
조 정 대 상	• KBS-1·2TV : (1) KBS 뉴스9 프로그램 『“애완동물 의료 사고, 위자료 지급” 이례적 판결』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5일자 21:00), (2)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반려동물 의료사고에 위자료 지급』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6일자 08:00) • KBSI : (1) 『“애완동물 의료 사고, 위자료 지급” 이례적 판결』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2) 『반려동물 의료사고에 위자료 지급』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6일자)
신청인주장	법원이 이례적으로 수의사인 신청인의 의료과실을 인정해 애완견 주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606~160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업 및 ○○○○업 협회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불법 가르치는 ○○업 등록 교육』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2년 11월 12일자 사회면, 세계닷컴 11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실시하는 업체 등록 교육이 오히려 불법, 탈법 영업을 부추긴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세계닷컴에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세계일보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2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불법 가르치는 ○○업 등록 교육’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세계닷컴 2012년 11월 30일자)

2012서울조정1608	(정정청구) ○○제약주식회사對 푸드투데이
조 정 대 상	『○○제약 ○○차, 0.475%의 현혹』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일반 음료 제품이 기능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 기능성 음료로 인식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홈페이지 뉴스홈 기사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제약 ○○차 기능성음료 광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6일자)

2012서울조정1609~1610	(본문·손배청구)진○○對스타뉴스
조 정 대 상	(1) 『박현빈 ‘사방사방’ 작곡자 “표절? 맞고소 검토”』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4일자) (2) 『 ‘사방사방’ 표절 의혹 제기 가수, 무고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3일자) (3) 『법원, 원고요청속 ‘사방사방’ 표절논란 재감정 의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6일자) (4) 『 ‘사방사방’ 작곡가 “표절누명 씌우려 악보 위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중가요 ‘사방사방’의 작곡가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과 관련, 신청인이 표절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피고 김 모 씨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 이행방법 :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해 신청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기사화 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후속보도(인터뷰 기사)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신청인과의 인터뷰 기사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함, (인터뷰 기사) 제목을 조정대상기사 (1)~(4)의 하단 ‘이 기사의 관련기사’에 게시해 제목 클릭 시 인터뷰 기사가 표시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진○○ “ ‘사방사방’ 유사성, 우연일치라 보기 어려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7일자)

2012서울조정1611~1612	(매체별 정정청구)(병합)(사)2018동계올림픽○○본부對경향신문,인터넷경향신문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평창동계올림픽 빙자한 사기 판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9일자 16면) • 인터넷 경향신문 : 『[경향리크스] 평창올림픽 빙자한 사기 판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빙자해 의류 바자회 등의 행사를 주최하면서 물품을 제공한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613~161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1.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2. 정○○對성동저널, 인터넷성동저널
조 정 대 상	• 성동저널 : 『[취재 X 파일 도시관리공단 시리즈 ②] ○○동 재활용 선별장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4일자 2면) • 인터넷 성동저널 : 『○○구, 도시관리공단 <○○동 재활용 선별장>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단이 지역의 재활용 선별장 점유권을 가지고 있던 민간업체에 규정을 무시하고 장비 가격을 과다하게 지급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617~1618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박○○對TV조선,인터넷TV조선
조 정 대 상	• TV조선 :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 프로그램 『10회 - 한의사들의 ‘교주’』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11일자 23:00)

조 정 대 상	• 인터넷 TV조선 : 『[기자가 간다] 한의사들의 ‘교주’, 앉은뱅이도 일으키는 스승의 비밀』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인체파동원리’라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이용해 환자들에게 거액을 갈취하고 여성 제자들에게 성상납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619~1620 (정정·반론청구) 정○○對채널A	
조 정 대 상	잠금해제 2020 프로그램 『30회 - 당신의 다이아몬드는 안녕하십니까』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16일자 20:4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다이아몬드 감정원이 속칭 ‘선수’와 결탁해 허위감정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잠금해제 2020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자료화면을 배경으로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되,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며,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아래 자막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함, 인터넷 채널A의 조정대상보도와 향후 재방송 및 인터넷 VOD 영상에서 신청인 관련 부분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함
이 행 결 과	잠금해제 2020 프로그램 『잠금해제 2020 30회 ‘당신의 다이아몬드는 안녕하십니까?’ 방송편 관련 안내』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6일자 20:40)

2012서울조정1621~162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이○○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수업 안하고 학점 주고, 개강 3주만에 종강... 해임된 교수가 되레 반발 소송』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1월 7일자 A11면, 조선닷컴 11월 7일자)
신청인주장	지방대 음대 교수인 신청인이 부실한 수업과 동료 교수에 대한 폭언 등으로 해임되었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조선닷컴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함
이 행 결 과	『‘○○ 모 음대 이 모 교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2월 12일자 A2면, 조선닷컴 12월 12일자)

2012경남조정78~79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창원시對 경남연합일보,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조 정 대 상	• 경남연합일보 : 『창원시 국기봉 제작비 ‘의혹 투성’』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6일자 1면) •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 『창원시 국기봉 제작비 ‘의혹 투성’』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창원시가 국기봉 및 시기봉을 설치하면서 설계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 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또한 조정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토록 함
이 행 결 과	『창원시 국기봉 제작비 ‘의혹 투성’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경남연합일보 2012년 11월 30일자 1면,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11월 30일자)
2012서울조정1625 (반론청구)(재)예수그리스도○○○○교회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뉴스특보 프로그램 『2012 美대통령선거(2부)』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7일자 10:30)
신청인주장	미국 대선 개표소식을 전하면서, 롬니 후보의 종교인 ○○○교가 이단으로 평가 받고있다고 보도해 교회의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626~1627 (매체별 정정청구) 한국철도공사 對 주간한국, 인터넷 주간한국	
조 정 대 상	(1) 『특정 민간기업과 커넥션 있었나...』 제하의 기사 (주간한국 2012년 10월 29일자 16면, 인터넷 주간한국 10월 26일자) (2) 『계열사도 아닌데 ‘마진 챙겨주기’ 왜?』 제하의 기사 (주간한국 2012년 11월 12일자 10면, 인터넷 주간한국 11월 9일자)
신청인주장	한국철도공사가 중고 철도차량 해외 판매를 추진하면서, 철도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주간한국 :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홈페이지 시사면 기사목록 앞 부분에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각 조정대상기사 (1)~(2)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주간한국 : 『반론보도 : ‘코레일의 해외사업 파트너 선정’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12면) • 인터넷 주간한국 : 『[반론보도] ‘코레일의 해외사업 파트너 선정’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2012서울조정1628~1633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1.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최○○ 對 경제투데이(1628~1629), 네이트(1630~1631), 야후(1632~1633)	
조 정 대 상	『최○○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종합비리선물세트’ 완결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문화부 지원 사업비를 유용해 원장의 개인비서를 채용하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경제투데이 : 『○○○○○○○○진흥원 국감 지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 네이트·야후 : 『[반론보도] ○○○○○○○○○진흥원 국감 지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2012서울조정1634~1642	1.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최○○ 對 e머니투데이(1634~1635 정정·반론청구), 네이버(1636~1637 정정·반론청구), 야후(1638~1639 정정·반론청구), 서울문화투데이(1640 정정청구),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1641~1642 정정·반론청구, 1640과 병합)
조 정 대 상	• e머니투데이·네이버·야후 : (1) 『폐허된 이순신 장군의 '디자인 DNA'』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2) 『[국감 브리핑] 홍지만 의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운영 부실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 서울문화투데이·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총체적 부실』 제하의 기사 (서울문화투데이 2012년 10월 31일자 1면,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10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문화부 지원 사업비를 유용해 원장의 개인비서를 채용하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e머니투데이·서울문화투데이·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네이버·야후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e머니투데이 : 홈페이지 뉴스-생활문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e머니투데이·네이버·야후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7일자) • 서울문화투데이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2일자 2면) •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 『[반론보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2일자)
2012서울조정1643~1650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1.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최○○ 對 CNBNEWS(1643~1644), 야후(1645~1646), 뉴스1 코리아(1647~1648), 네이버(1649~1650)
조 정 대 상	• CNBNEWS·야후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 원장, 문화부 보조 사업비 유용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 뉴스1 코리아·네이버 : 『[국감 브리핑] 홍지만 의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운영 부실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문화부 지원 사업비를 유용해 원장의 개인비서를 채용하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CNBNEWS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처 리 결 과	• 야후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54~55 참조)] • 뉴스1 코리아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네이버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CNBNEWS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 뉴스1 코리아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CNBNEWS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감 지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4일자) • 뉴스1 코리아·네이버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감 지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5일자)

2012서울조정1651~1653	(매체별 정정청구) 1.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최○○ 對 연합뉴스 ⁽¹⁶⁵¹⁾ , 네이버 ⁽¹⁶⁵²⁾ , 다음 ⁽¹⁶⁵³⁾
조 정 대 상	『홍지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운영 부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문화부 지원 사업비를 유용해 원장의 개인비서를 채용하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연합뉴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 이행방법 • 연합뉴스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감지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2012대구조정25~2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황병직 (병합) 對 경안일보, 인터넷 경안일보
조 정 대 상	(1) 『“의원 차량 파손 기사 유포로 보복성 감사·모욕 받았다”』 제하의 기사 (경안일보 2012년 8월 30일자 4면, 인터넷 경안일보 8월 30일자) (2) 『○○시, 女 공무원 유산 파문 ‘전전궁금’』 제하의 기사 (경안일보 2012년 10월 22일자 4면, 인터넷 경안일보 10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시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SNS에 자신에 관한 글을 올린 시청 공무원에게 질책과 모욕을 주었고,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 등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654~1655		(정정·손배청구)(병합) 송○○對뉴스타운
조 정 대 상	『○○ 초등학교 집단폭행…피해가족 수업시간 침입 ‘진술서’ 강요』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3일자)	
신청인주장	집단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가족이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고, 피해 학생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문, 기사삭제, 손해배상 100만 원,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초등학교 A군과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30일자)	
2012서울조정1656~1657		(매체별 손배청구)(병합) 고○○ 외3인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통진당 부정선거 45명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4일자 A14면, 동아닷컴 11월 14일자)	
신청인주장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대리투표 혐의로 검찰이 당원들을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인 신청인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각 50만 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신청인 각각에게 손해배상하라는 중재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2012부산조정41~46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병합) 송○○對 울산광역매일, 인터넷 울산광역매일
조 정 대 상	『피해자·가해자 폭력사건 두고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울산광역매일 2012년 11월 5일자 1면, 인터넷 울산광역매일 11월 4일자)	
신청인주장	학교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이 도리어 학우들에게 흉기나 하키채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일삼았으며, 신청인의 가족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문, 기사삭제,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사과문 - ○○ 초등학교 A군과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울산광역신문 2012년 12월 6일자 1면, 인터넷 울산광역매일 12월 6일자)	
2012강원조정8~1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박○○對 강원일보, 인터넷 강원일보
조 정 대 상	• 강원일보 : (1) 『또 교사가 자리 비워… 장애 남녀 학생간 폭행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면), (2) 『“장애학생 간 폭행사건 관련 교사가 모욕적 언사”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22면) • 인터넷 강원일보 : (1) 『또 교사가 자리 비워… 장애 남녀 학생간 폭행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강릉] “장애학생간 폭행사건 관련 교사가 모욕적 언사”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신청인주장	특수교사인 신청인이 교내 폭행사건에 연루된 장애학생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장애학생 간 폭행’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강원일보 2012년 12월 10일자 5면, 인터넷 강원일보 12월 10일자)	

2012제주조정22~2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주식회사○○○, 2. 진○○對 KBS-1TV, 제주의 소리	
조 정 대 상	• KBS-1TV : 시사파일 제주 프로그램 『“○동 그린시티 자진철회 그 후”』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27일자 22:00) • 제주의 소리 : (1) 『“지사도 내 청은 거절 못해. 80m도 지을 수 있어!”』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2) 『제주도 도시계획행정 ‘오락가락’ …의혹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임원이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전사업자측에 도지사와 특별한 관계임을 강조하며 사업추진에 자신감을 보였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KBS-1TV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제주의 소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 KBS-1TV : 시사파일 제주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 제주의 소리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KBS-1TV : 시사파일 제주 프로그램 『“○동 그린시티 특혜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4일자 22:00) • 제주의 소리 : 『[반론 및 정정보도] ○동 그린시티 특혜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7일자)

2012전북조정44~45	
(정정·손배청구) (주)○○對 전주일보	
조 정 대 상	『진안, 간판정비 업체선정 잡음』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2일자 10면)
신청인주장	간판제작 업체인 신청인 업체가 부적격업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진안, 간판정비 업체선정 잡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1일자 10면)

2012서울조정1663~166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한국철도공사對 머니투데이,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 머니투데이 : 『[송○○의 히트 & 런] 환불 번복 · 임의 좌석배정 잊지 못할 ‘KTX 여행상품’』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6일자 23면) • e머니투데이 : 『멋대로 좌석배정? 못잊을 “KTX 부산여행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6일자)
신청인주장	한국철도공사가 부산불꽃축제 KTX 패키지 여행상품의 승차권을 환불해주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e머니투데이 홈페이지 사회섹션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에는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머니투데이 : 『‘KTX 여행상품’ 반론보도』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4일자 19면) •e머니투데이 : 『KTX 부산꽃축제 패키지상품 관련 반론보도』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3일자)

2012서울조정1665~1668	(매체별 조정 · 손해청구) 주식회사○○○對 KBS-1TV, KBSi
조 정 대 상	•KBS-1TV :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가격의 자격-포장김치』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3일자 19:30) •KBSi :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다시보기] 가격의자격-포장김치』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만드는 김치에 중국산 고춧가루가 사용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KBS에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KBSi 홈페이지 소비자고발 프로그램면의 ‘다시보기’ 코너의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모 연예인 김치 중국산 고춧가루 사용” 관련 반론보도』제하의 기사 (KBSi 2012년 12월 15일자)

2012서울조정1669~1673, 1678	(매체별 손해청구) 김○○對 뉴스1 코리아 ⁽¹⁶⁶⁹⁾ , 네이버 ⁽¹⁶⁷⁰⁾ , 네이트 ⁽¹⁶⁷¹⁾ , 다음 ⁽¹⁶⁷²⁾ , 야후 ⁽¹⁶⁷³⁾ , e머니투데이 ^(1678, 1669와 병합)
조 정 대 상	(1) 『힘찬 출발』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2) 『젓먹던 힘까지』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뉴스1 코리아 · e머니투데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674~1677	(매체별 손해청구) 김○○對 연합뉴스 ⁽¹⁶⁷⁴⁾ , 네이버 ⁽¹⁶⁷⁵⁾ , 네이트 ⁽¹⁶⁷⁶⁾ , 다음 ⁽¹⁶⁷⁷⁾
조 정 대 상	『환경미화원 실기시험』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연합뉴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679~1680	(매체별 손해청구) 김○○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835회 - ‘빔’ 권한하는 사회』제하의 보도 (2012

조 정 대 상	년 11월 25일자) • iMBC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다시보기] 835회』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원비공개를 전제로 신청인의 주택담보 대출 사례를 인터뷰 했는데, 실명과 초상을 그대로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손해배상 300만 원 (2012서울중재56~57 (병합)참조)]

2012서울조정1681~168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對KBS-1TV, KBSi	
조 정 대 상	• KBS-1TV :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가격의 자격-포장김치』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3일자 19:30) • KBSi :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다시보기] 가격의자격-포장김치』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만든 김치에 중국산 D등급 고춧가루가 사용됐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KBSi 에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 KBS-TV · KBSi : KBSi 홈페이지 소비자고발 프로그램면의 '다시보기' 코너의 조정대상 보도 하단에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모 연예인 김치 중국산 고춧가루 사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KBSi 2012년 12월 15일자)

2012서울조정1685~168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對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 『부모와 경비원까지... 20명 이상 대가족? 이○○ 부부, 셔틀버스까지 운영?』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6일자 09:50) • iMBC :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 다시보기] 1527회』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6일자)
신청인주장	탈런트인 신청인이 호화 전원주택에서 직원들을 포함한 20여 명과 함께 거주하며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셔틀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MBC-TV :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 『1532회』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4일자 09:50) • iMBC :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 다시보기] 1532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4일자)

2012서울조정1689~1691 (정정·반론·손배청구) 윤○○對조선일보	
조 정 대 상	『경찰 먹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6일자 A12면)
신청인주장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적법하게 농성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해, 불법으로 텐트를 세우고 경찰관 먹살을 잡았다는 잘못된 내용을 사진과 함께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692~1693 (매체별 정정청구) 환경부對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불산, 낙동강으로 유입』 제하의 보도 (2012

조 정 대 상	년 10월 28일자 21:00),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낙동강 불산 ‘편차’ 공방』 제하의 보도(2012년 10월 29일자 21:00), (3)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불산 ‘하천 유입’ 은폐 의혹』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일자 07:15) • iMBC : (1) 『불산, 낙동강으로 ‘확산’ … 안전하다더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2) 『낙동강 불산 검출 … 측정 결과 편차 놓고 공방』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3) 『환경당국, 누출된 불산 ‘하천 유입’ 은폐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일자)
신청인주장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낙동강에서 검출된 불산 수치를 환경부가 축소 ·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이미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반론보도가 있었고, 중재부의 결정에 따른 반론보도 내용의 진위가 불분명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MBC-TV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으로 함 • iMBC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iMBC 홈페이지 ‘다시보기/뉴스데스크’ 및 ‘다시보기/뉴스투데이’ 코너에 게재된 각 조정대상기사면의 동영상과 본문 사이에 반론 보도문을 게재함

2012서울조정1694~1695 (매체별 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미디어스, 네이버	
조 정 대 상	『‘KBS 9시 뉴스’, 네티즌 선정 ‘최악의 대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신청인주장	북방한계선에 관련된 ‘비밀대화록’의 존재를 부인한 국정원장의 발언을 KBS가 왜곡하여, 마치 ‘비밀대화록’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네티즌 선정 최악의 대선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6일자)

2012서울조정1696 (정정청구) 은평구 對 은평뉴스비전	
조 정 대 상	『민선 구청장 행정력 ‘결점 투성’』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9일자 1면)
신청인주장	서울 은평구청이 불광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절차 및 내용 등의 흠결로 패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제30호 1면 기사 정정 보도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1일자 1면)

2012충북조정49 (손배청구) 강○○ 외2인 對 CJB-TV	
조 정 대 상	(1) CJB 8 뉴스 프로그램 『수험표는 할인 쿠폰』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8일자 20:00) (2) CJB 7 뉴스 프로그램 『수험표는 할인 쿠폰』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9일자 07:00)
신청인주장	수험생을 위한 수험표 할인행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과 신청인 자녀의 초상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0만 원, 기사삭제, 부제소)
2012서울조정1697	(정정청구) 박○○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금고 부정선거 주장 후 생명 위협 느껴』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소속 회사 이사장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반대파 사람들을 위협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1698~1699	(정정·손배청구) 오○○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박지민 회사 소유 건물에 ‘덴프로 룸살롱’ 성업 중』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9일자)
신청인주장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동생 소유 건물에 입주한 룸살롱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허위 보도해, 룸살롱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1700~170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박영선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박영선·출입국사무소 한밤 대치』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9월 1일자 A10면, 조선닷컴 9월 1일자)
신청인주장	검찰이 국회 법사위원장인 신청인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으로 열람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근거없는 것이라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조선닷컴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박영선·출입국사무소 한밤 대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3년 1월 15일자 A02면, 조선닷컴 1월 15일자)
2012서울조정1704~170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1.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박○○ 對 KBS-1TV, KBSi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아파트 관리 실태] 아파트 회계 시스템 사후 조작 가능』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5일자 21:00) • KBSi : 『아파트 회계 시스템 사후 조작 가능』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회계시스템을 사후조작해 아파트 관리비를 이중부과하고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전북조정46~47	(매체별 손배청구) 이○○ 對 네이버, 뉴스1 코리아전북
조 정 대 상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수능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네이버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뉴스1 코리아전북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1708~1710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류○○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 ‘발각’ “귀하를 찌 지지자 명단에…”』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 생활체육단장을 사칭하며,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제주조정26~29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강○○對 제주MBC-TV, 인터넷 제주MBC-TV
조 정 대 상	• 제주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거꾸로 가는 학교폭력 대책』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30일자 21:00) • 인터넷 제주MBC-TV : 『(리포트) 학교폭력 대책 미흡』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학교에서 발생한 동급생 간 싸움에 대해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제주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가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인터넷 제주MBC-TV 홈페이지 뉴스면의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제주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거꾸로 가는 학교폭력 대책”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9일자 21:00) • 인터넷 제주MBC-TV : 『“거꾸로 가는 학교폭력 대책”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9일자)
2012서울조정1711~1715	(매체별 손해청구) 김○○對 매경ECONOMY ⁽¹⁷¹¹⁾ , 매경닷컴 ⁽¹⁷¹²⁾ , 네이버 ⁽¹⁷¹³⁾ , 네이트 ⁽¹⁷¹⁴⁾ , 다음 ⁽¹⁷¹⁵⁾
조 정 대 상	• 매경ECONOMY : 『이통사 · 제조사 저가 제품 판매 기피』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3일자 33면) • 매경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휴대전화대이동] 궁금증 ⑤ MVNO · 블랙리스트 시행 한 달째...이통사 · 제조사 저가 제품 판매 기피』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8일자)
신청인주장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신청인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단말기 판매업체 직원인 신청인의 이름과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매경ECONOMY :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 매경닷컴 :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기사수정)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1716~1717	(정정 · 반론청구) ○○○○교회 평신도모임對 인터넷 기독교신보
조 정 대 상	『편호하여 불공정하게 판결한 서수원노회 재판국』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신청인주장	서수원노회가 신청인들이 속한 교회 목사의 (교리적)범죄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경미한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와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12경기조정105~10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박○○對 경기신문, 인터넷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 경기신문 : (1) 『박○○ ○○○ 원장 교육비로 관광성 외유』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2일자 1면), (2) 『탄 주머니 찬 용역 응모·수주 ‘들통’』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8일자 1면) • 인터넷 경기신문 : (1) 『박○○ ○○○ 원장 교육비로 해외 여행』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2일자), (2) 『탄 주머니 찬 용역 응모·수주 ‘들통’』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직원교육비로 관광성 외유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718~172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주)○○○○對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조 정 대 상	• TV조선 :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 프로그램 『14회 - 블랙박스의 배신』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8일자 23:00) • 인터넷 TV조선 : 『[강용석이 간다] 블랙박스의 배신』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8일자)
신청인주장	블랙박스 제작 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제품 결함 시 보상정책이 없고 A/S를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TV조선 : 강용석의 불편한 진실 프로그램 말미에 후속보도,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자료 화면을 배경으로 후속보도문을 보도하되,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며,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후속보도문의 제목을 아래 자막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 함 • 인터넷 TV조선 : 홈페이지 시사제작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후속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후속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후속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TV조선 :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 프로그램 『지난 9월 8일 ‘블랙박스의 배신’ 관련 추가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31일자 23:00) • 인터넷 TV조선 : 『‘블랙박스의 배신’ 관련 추가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1일자)

2012서울조정1722	(정정청구)사단법인○○○사랑나눔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1) 『침묵하던 신부님들의 향의 ... “톤즈 아이들 울린 한국 방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1일자) (2) 『‘울지마 톤즈’ 수도회와 KBS 사이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법인이 아프리카 톤즈 브라스밴드 청소년을 초청해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723	
조 정 대 상	(반론청구) 백○○對 KBS-1TV 아침마당 프로그램 『<수요 가족탐구> 정채불명의 남자와 동거를 하는 팔순의 친정어머니』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8일자 09:30)
신청인주장	‘아침마당’ 가족상담 코너에서 신청인에게 애정 결핍 및 정서장애가 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노모의 재혼을 반대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아침마당 프로그램 『<수요 가족탐구> 치매 아내 병수발 6년… 자식들도 등을 돌렸어요』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16일자 09:25)

2012서울조정1724~1727	
	(매체별 정정청구) 문용린對 한겨레 ^(1724 정정청구) , 인터넷 한겨레 ^(1725 정정청구) , 오마이뉴스 ^(1726 ~1727 기사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문용린, 국내최대 사교육업체와 밀착』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12월 7일자 8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7일자) • 오마이뉴스 : (1) 『서울교육감 후보가 사교육업체 연구책임자? 교수출신 문용린 후보, 공무원법 위반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7일자), (2) 『교육감 후보 문용린은 사교육업체 회장이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8일자)
신청인주장	서울시 교육감 후보인 신청인이 모 사교육업체와 연구용역 계약을 통해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오마이뉴스 : ▷ 2012서울조정 1726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2012서울조정 1727 - 조정불성립 결정 ※ 이행방법 • 오마이뉴스 :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1)의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겨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8일자 2면) • 인터넷 한겨레 : 『‘문용린, 국내 최대 사교육업체와 밀착’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7일자) • 오마이뉴스 : 『교수 출신 문용린 후보, “공무원법 위반한 사실 없어”』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8일자)

2012제주조정30~33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제주○○중학교對 제주MBC-TV, 인터넷 제주MBC-TV
조 정 대 상	• 제주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거꾸로 가는 학교폭력 대책』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30일자 21:00) • 인터넷 제주MBC-TV : 『(리포트) 학교폭력 대책 미흡』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의 학교폭력피해 대책이 미흡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728	(반론청구) 1. 김○○, 2. ○○○○○○對 인터넷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장애시설 원장이 상습 성폭행”... 전북판 도가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장애시설 원장인 신청인이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경기조정109~111	(정정·반론·손배청구) 1. 전국○○노동조합, 2. 전국○○노동조합 ○○○○○○판매지원회對 OBS경인TV
조 정 대 상	OBS 뉴스 M 프로그램 『‘가려가며 철거’ 논란』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14일자 19:45)
신청인주장	부천시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신청인 단체가 내건 현수막은 집단 반발로 인해 철거를 포기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OBS 뉴스 M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OBS 뉴스 M 프로그램 『‘전국○○노동조합 불법 현수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2일자 19:45)

2012서울조정1729~1730	(매체별 정정청구) ○○○○파트너스 유한회사對 매일경제, 매경닷컴
조 정 대 상	『‘큰손’ ○○○ 실속은 별로네』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2년 11월 27일자 A23면, 매경닷컴 11월 26일자)
신청인주장	M&A를 전문으로 하는 신청인 회사가 기업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매일경제: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매경닷컴: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매일경제: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7일자 A25면)

2012서울조정1731	(정정청구) (주)○○○플러스對 인터넷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 보안요원에 좀도둑 갈취 부추겨』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대형마트 보안용역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소액상품을 훔친 절도범들을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도록 보안요원들을 부추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일자)

2012부산조정47~48	(정정·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對 울산제일일보
조 정 대 상	(1) 『“불의 덮으려고 정의 잘랐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2일자 1면) (2) 『사사건건 학생번호 학교측엔 미운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이 음악대학 현악과 교수를 해임한 것은 해당 교수의 비위사실들이 적발

신청인주장	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데도, 학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등 각종 부패를 덮기 위해 표적징계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금지,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학교 음악대학 현악과 A교수 해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1일자 3면)

2012서울조정1732	(정정청구) 1. 서울○○○○고등학교, 2. 박○○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뉴스플러스] 걸려도 그만 비리 사학 철용성』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6일자 20:00)
신청인주장	교육청 감사결과, 고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학교 신축 공사비를 자신의 빚을 갚는데 썼고 공사과정에서도 비리가 적발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733~1735, 1737~1755, 1757~1767, 1769~1786, 1822	(매체별 순배청구) 송○○ 對 스타엔(1733), 인터넷 일간스포츠(1734), 인터넷 스포츠조선(1735), 스타뉴스(1737), 마이데일리(1738), 프런티어타임스(1739), 쿠키뉴스(1740), 브레이크뉴스(1741), 뉴데일리(1742), 인터넷 MBN(1743), 와우넷(1744), 이투데이(1745), 이데일리(인터넷)(1746), 이뉴스투데이(1747), 매경닷컴(1748), 경제투데이(1749), 뉴시스(1750), 온라인 중앙일보(1751), 세계닷컴(1752), 인터넷 경향신문(1753), 인터넷 일요서울(1754), enews24(1755), 스포츠서울닷컴(1757), 인터넷 스포츠동아(1758), 아시아투데이닷컴(1759), 노컷뉴스(1760), 문화저널21(1761), 티브이데일리(1762), 인터넷 헤럴드경제(1763), 메디컬투데이(1764), 컨슈머타임즈(1765), 아츠뉴스(1766), 아이(이)-이투데이(1767), 인터넷 서울신문(1769), 인터뉴365(1770), TV리포트(1771), SSTV(1772), 오에스이엔(1773), 이버즈(1774), 뉴스천지(1775), NPS통신(1776), CNBNEWS(1777), 조선닷컴(1778), 소비자가민드는신문(1779), 인터넷 한국일보(1780), 조세일보(1781), 엑스포츠뉴스(1782), 더블유스타뉴스(1783), 뉴스핌(1784), 동아닷컴(1785), DKBnews(도깨비뉴스)(1786), 민중의소리(1822)
조 정 대 상	• 스타엔 : 『송○○ 박○○ 결별 폭로,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나 몰라라 하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일간스포츠 : 『○○○○○○ 박○○ 측 입 열었다 “송○○과 관계는…”』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스포츠조선 : 『박○○ 측 “사권적 없다” vs 송○○ 측 “협박 말도 안돼”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스타뉴스 : 『박○○ 측 “송○○ 교제 사실아냐..오해 비롯된 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 마이데일리 : 『박○○ 측, “송○○과 사적인 관계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프런티어타임스 : 『디자이너 송○○, ○○○○○ 박○○과 결별 “날 찌질이로 만들어줘선 고맙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쿠키뉴스 : 『박○○ “교제 결별 모두 사실 아니다” 공식입장 밝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브레이크뉴스 : 『송○○VS박○○, 엇갈린 주장…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조정 대상

- **뉴데일리** : 『디자이너 송○○, 박○○과는 연인관계 폭로 “날 이용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MBN** : 『박○○ 측, 공식입장 “송○○과는…”』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와우넷** : 『박○○ 측 “송○○과 일적인 관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3일자)
- **이투데이** : (1) 『디자이너 송○○, ○○○○○ 박○○에게 “날 이용한 건가?”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디자이너 송○○ “이용당했다” 주장…박○○ 소속사 정면반박』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이데일리(인터넷)** : 『“추호의 거짓 없다” 송○○, 박○○과 과거 폭로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이뉴스투데이** : 『송○○, 박○○ 측 “연인 아니었다” 반박글에 “내가 정신병자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 **매경닷컴** : 『디자이너 송○○, 박○○과 결별폭로 “나를 존중해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경제투데이** : 『박○○ “100% 사실 아냐” vs 송○○ “추호의 거짓 없다”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뉴스스** : 『가수 박○○, 디자이너 송○○ 옛 애인?…11세 연상』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1) 『송○○ vs 박○○, 엇갈린 진실 공방』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측 “열애설 부인한 박○○ 어이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일자)
- **세계닷컴** : (1) 『송○○, 박○○과 결별 글 … “내가 쉬운 여자였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박○○과 결별 폭로…상대는 “사실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디자이너 송○○과 결별 해프닝 … “100% 업무적 관계일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전 ○○○○○ 멤버 박○○, 11살 연상녀와 염문설 휩싸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박○○ 해명 “송○○과 연인 사이 아니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일요서울** : 『박○○ 공식입장, “100% 업무적인 관계일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enews24** : (1) 『박○○ 측 반박 “송○○과 교제 No! 일방적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박○○ 엇갈린 주장 “100% 아니다 vs 교감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측 “송○○, 심경글 공개 후 연락해왔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송○○, 박○○ 결별 심경글 끝내 삭제 “정신병자 취급 마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스포츠서울닷컴** : (1) 『디자이너 송○○, ○○○○○ 박○○과의 결별 폭로 “날 이용만하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송○○ 결별폭로에 어이상실 “일적인 관계일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연인’ 폭로 vs 박○○ ‘동료’ 반박,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 측 “송○○과 교제? 100% 사실 아니다.” 공식 입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가수 박○○ “사적 친분 없다” vs 디자이너 송○○ “거짓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6) 『송○○, 고무줄 나이 … ‘박○○과 11세 차이? 마흔 훌쩍?’』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7) 『‘박○○ 루머’ 송○○ “37세 맞다! 40대 논란 억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8) 『[위클리 트러블메이커] 패션디자이너 송○○은 왜 박○○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4일자)

조 정 대 상

- **인터넷 스포츠동아** : (1) 『박○○ “송○○, 연인관계로 교제한 적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심경 “정신병자 취급 당했다” vs 박○○측 “교제 100% 아냐”…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 ‘박○○ · 송○○ 결별 파문’ 박○○ “100% 업무적 관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연예 뉴스 스테이션] 송○○ “박○○ 나를 이용”…박○○ “교제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 **아시아투데이닷컴** : (1) 『박○○과의 관계 폭로한 디자이너 송○○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해명 해명글 “막무가내 정신병자 취급” … “난 환상속 사람도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측 “송○○과 친분은 있지만 사귀는 것은 100% 아냐” 공식입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송○○, 박○○과의 관계 폭로 “난 대체 너에게 뭐였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5) 『朴○○ : “我们只是好朋友, 绝对不是恋人关系”』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노컷뉴스** : (1) 『송○○ 한밤의 폭로…박○○ 측 “오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측 “송○○과 업무적 관계일 뿐” 공식입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문화저널21** : (1) 『디자이너 송○○, 박○○과 도대체 무슨일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 ‘박○○과 연인 관계 폭로한’ 송○○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해명 “송○○과 열애? 말도 안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티브이데일리** : (1) 『디자이너 송○○, 박○○과 결별했다? “마음만은 확실한 연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2) 『박○○ 공식입장, “송○○과 교제 절대 아냐” 적극 해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심경 “막무가내로 정신병자 취급, 추호의 거짓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1) 『송○○, 박○○과 교제설 “내가 뭘 바라고 협박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지인, 송○○ 겨냥 “스토커가 사랑은 아냐”…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 박○○관 결별 폭로 “난 이용당했다”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 측 “디자이너 송○○과 친분 있지만 교제는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5) 『송○○, 박○○ 해명에 재반박 “정신병자 취급”』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6) 『박○○ 측 “송○○ 디자이너와 교제? 사적인 교류 없었다” 부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메디컬투데이** : (1) 『송○○, 박○○관 연인관계와 결별 폭로 “이용만 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해명, “송○○과 연인관계 아니었다..오해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공식입장 “송○○과의 친분은 사실.. 교제는 100%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컨슈머타임즈** : (1) 『송○○, 박○○관 연인관계와 결별 폭로 “이용만 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2) 『박○○ 해명, “송○○과 연인관계 아니었다..오해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3) 『송○○ “다 갚은건가 이 정도면?” ‘오썸’… 박○○과 대체 무슨 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송○○ 지인들 “그X 사진위에 살충제” “기자 나부령이들” 댓글 실시간 난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송○○ 폭로에 박○○ 드디어 입 열었다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6) 『송○○ “말할 가치도 없는…” 결별 폭로 이어 격앙된 심경까지 ‘폐북’ 관심 집중』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아츠뉴스** : (1) 『송○○, ○○○○○ 박○○과 연인관계 폭로 “날 이용했다”』 제하의 기사

조정 대상

- (2012년 10월 30자), (2) 『박○○ 공식입장 “송○○과 연인? 업무적 관계일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박○○ 해명에 분노 “날 정신병자 취급하다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송○○ “내가 박○○ 팬이라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박○○과 연인관계 폭로한 ‘송○○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아이(이)-이투뉴스** : 『 ‘사귀었다’ 는 송○○ … ‘아니다.’ 라는 박○○,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서울신문** : (1) 『송○○ 심경, “내가 이용하기 쉬운 여자?” 박○○과 연인관계 폭로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공식 입장,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송○○과 엇갈린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뷰365** : (1) 『디자이너 송○○, 박○○관 결별 폭로 “난 대체 뭐였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디자이너 송○○, 박○○ 측에 “날 정신병자 취급하다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디자이너 송○○과 결별설 공식 입장 “업무 관계였을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TV리포트** : (1) 『송○○, 박○○관 교제? “나 이용한거냐?” 울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vs 박○○, 연인? 동료? 엇갈린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디자이너 송○○, 박○○ 반박에 추가 심경토로 “착각이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 공식입장, “송○○과 교제 절대 아냐…비즈니스 관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SSTV** : (1) 『박○○ 송○○과 연인사이?, SNS 글 파문 … ‘진실공방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심경, 박○○ 연인관계 부인에 다시 글 올려 ;추호의 거짓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오에스이엔** : (1) 『박○○ 측 “교제 100% 사실 아냐” vs 송○○ “착각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측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당당』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측 공식입장 “교제 사실 100%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11세연상 디자이너, 박○○과 결별 폭로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박○○, 예정대로 내일(31일) 일본 출국 … “활동 전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이버즈** : 『송○○ 심경,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거짓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 **뉴스천지** : (1) 『디자이너 송○○, ○○○○○ 박○○과 결별 폭로 “내가 쉬운 사람이었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박○○ 해명에 불쾌 “정신병자 취급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NPS통신** : 『 ‘연인관계’ 송○○ vs ‘일적관계’ 박○○, 진실공방 “주거니 받거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CNBNEWS** : (1) 『송○○, 열애설 부인에 “내가 박○○ 팬? 정신병자 취…”』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송○○과 사귀지 않았다” 열애설 부인…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박○○에게 버림받았다” 연인관계 폭로?』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조선닷컴** : (1) 『가수 박○○ 11살 연상 디자이너와 열애설…소속사 “사실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송○○과 교제 사실무근 … ‘업무적 관계’ 해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심경, “막무가내 정신병자 취급” 논란 증폭』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과의 열애 · 결별설 암시한 디자이너 송○○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조 정 대 상

- **소비자기만드는신문** : (1) 『송○○, 박○○과의 열애와 결별 폭로 “두 사람에게 무슨일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해명글 논란 “협박이라니?... 다 같은건가? 이정도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측 송○○ 교제 해명 “업무적인 교류는 사실이지만...”』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1) 『박○○VS송○○, 연애는 혼자하나...공방전의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측, “송○○과 교제? 사실이나 업무적인 관계일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정신병자 취급하지 마라” 박○○ 측 반박에 “분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 스캔들 진실공방...송○○ 측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박○○ “송○○과 교제? 100% 사실 무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6) 『박○○ 측, “송○○ 교제NO, 핸드폰 꺼놓은 것 오해” 해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7) 『박○○과 연인관계 폭로한 디자이너 송○○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8) 『송○○ 박○○과의 관계는 결국...』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조세일보** : (1) 『박○○ 공식입장, “송○○과 교제설, 사실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해명글,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엑스포츠뉴스** : (1) 『송○○ 디자이너, 박○○과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측, 송○○ 결별 폭로글 해명 “친하게 지내는 사이일 뿐, 오해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공식입장, “송○○과 교제 100% 사실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송○○, 박○○에 분통 “니를 정신병자 취급하다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더블유스타뉴스** : 『박○○ 공식입장 “100% 오해” vs 송○○ 반박 “정신병자 취급에 협박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뉴스핌** : (1) 『박○○, 송○○과 관계 논란 속 일본 출국...“예정된 일정 소화”』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측, 공식집장 “100% 사실무근...송○○과는 업무적 관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내가 쉬운 사람이었나” 비밀관계 폭로, 박○○과 대체 무슨 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 해명 “송○○ 업무상 관계...연인주장은 혼자만의 착각”』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송○○ 박○○에 분노?...“막무가내 정신병자 취급...거짓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6) 『박○○과 비밀열애 폭로한 송○○ 누구?...아이돌 ‘비주얼 디렉터’ 활동』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동아닷컴** : 『아이돌 가수-11세 연상 女 디자이너 ‘열애설’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DKBnews(도깨비뉴스)** : (1) 『송○○, 박○○ 겨냥 “날 찌질이로 만들어줘서 고맙다”...결국 삭제』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측 “송○○과 100% 업무적인 관계... 오해없길” 해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나는 박○○ 팬 아니라... 정신병자 취급하지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민중의소리** : (1) 『박○○ 공식입장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황 살펴보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심경, 완벽하게 상반된 두 주장...배신인가 모함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심경, 모조리 사라진 관련글 또다른 심경 변화?』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송○○ 폭로 ... ‘회색 날개’ 달고 등장했던 그와 무슨 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송○○ 박○○ 논란, 인신공격으로 번져...네티즌 “성숙한 자세” 요청』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6) 『송○○ 반박, “나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7)

조 정 대 상	『송○○ 심경, “비주얼 디렉터 한 적 없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8) 『송○○ 박○○, 연인포스 느껴지는 이별편지…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9) 『송○○ 심경고백 “서운함 넘어 배신감마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10) 『송○○ 박○○, 그녀의 디자인 옷을 즐겨 입어… 한때 패션쇼 모델로 활약』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스타엔 · 인터넷 스포츠조선 · 스타뉴스 · 마이데일리 · 쿠키뉴스 · 브레이크뉴스 · 뉴데일리 · 인터넷 MBN · 와우넷 · 이투데이 · 이데일리(인터넷) · 이뉴스투데이 · 매경닷컴 · 경제투데이 · 뉴시스 · 세계닷컴 · 인터넷 경향신문 · 인터넷 일요서울 · enews24 · 스포츠서울닷컴 · 인터넷 스포츠동아 · 아시아투데이닷컴 · 노컷뉴스 · 문화저널21 · 티브이데일리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메디컬투데이 · 컨슈머타임즈 · 아츠뉴스 · 아이@-이투뉴스 · 인터넷 서울신문 · 인터뷰365 · TV리포트 · SSTV · 오에스이엔 · 이버즈 · 뉴스천지 · NPS통신 · CNBNEWS · 조선닷컴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인터넷 한국일보 · 조세일보 · 엑스포츠뉴스 · 더블유스타뉴스 · 뉴스핌 · 동아닷컴 · DKBnews(도깨비뉴스) · 민중의소리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인터넷 일간스포츠 · 프런티어타임즈 · 온라인 중앙일보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1736, 1818	(매체별 손배청구) 송○○對 인터넷 스포츠경향, 네이버
조 정 대 상	『박○○ “송○○ 연인 아니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756, 1816~1817	(매체별 손배청구) 송○○對 조이뉴스24 ⁽¹⁷⁵⁶⁾ , 네이버 ⁽¹⁸¹⁶⁾ , 다음 ⁽¹⁸¹⁷⁾
조 정 대 상	(1) 『박○○ 측, “송○○과 결별? 사실무근 … 일적인 관계일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측 “송○○은 업무적 관계 … 오해 없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768, 1812~1813	(매체별 손배청구) 송○○對 오마이뉴스 ⁽¹⁷⁶⁸⁾ , 네이버 ⁽¹⁸¹²⁾ , 다음 ⁽¹⁸¹³⁾
조 정 대 상	『박○○ 측 공식입장 “디자이너 송○○과 업무적 관계일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	------------------

2012서울조정1787~1791	(매체별 손해청구) 박○○ 對 조선일보 ⁽¹⁷⁸⁷⁾ , 조선닷컴 ⁽¹⁷⁸⁸⁾ , 네이버 ⁽¹⁷⁸⁹⁾ , 네이트 ⁽¹⁷⁹⁰⁾ , 다음 ⁽¹⁷⁹¹⁾
조 정 대 상	『감옥서 18개월 기른 둘째와 헤어지던 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못난 엄마 되지말자고』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1월 14일자 11면, 조선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 11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여성 재소자인 신청인이 수감 중 출산한 자녀를 친정으로 보낸 사연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혼 사실 등 사생활까지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조선닷컴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손해배상 100만 원 (2013서울중재1~2(병합))] • 네이버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792~1793	(매체별 반론청구) 장○○ 對 SBS-TV, SBS
조 정 대 상	• SBS-TV :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139회 - 황혼이혼을 강요한 법사, 아버지는 왜 그의 말에 인생을 거나?』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12일자 20:50) • SBSi : 『황혼이혼을 강요한 법사, 아버지는 왜 그의 말에 인생을 거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철학원과 사찰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신도에게 황혼 이혼을 강요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SBSi : 홈페이지 내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게시판의 초기화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황혼이혼 강요한 법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SBSi 2013년 1월 4일자)

2012서울조정1794	(정정청구) 최○○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최○○ 잠적, 박근혜 실세참모인 최○○도 잠적』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3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참모인 신청인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잠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795	(정정청구) 영농조합법인 ○○○○○○ 對 jbc
조 정 대 상	미각스캔들 프로그램 『40회-불멸의 청국장』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4일자 23: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하는 청국장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미각스캔들 프로그램 『44회』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22일자 23:00)

2012충북조정50	(본문청구) ○○○○병원 對 충청매일
조 정 대 상	『멸절한 무릎 수술 후 적반하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병원이 멸절한 다리를 수술했고 이 수술의 봉합을 무자격 간호조무사가 시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CCTV 화면 사진 또한 동의 없이 게재되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부산조정49~50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부산일보, 무비조이
조 정 대 상	• 인터넷 부산일보 : 『송○○ “내가 쉬운 사람”에 박○○ “오해! 일적 만남뿐 왜 이런 글?” 해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무비조이 : (1) 『디자이너 송○○, 그룹 ○○○○○ 멤버 박○○ 비밀 연예폭로 파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민 공식입장 보도 자료 발표, 디자이너 송○○과 연인 관계 아닌 업무적 관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박○○ 측에 “막무가내로 정신병자 취급이라니, 거짓말 안한다” 반박』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 측 송○○ 폭로에 연인 관계 같은 사이 아니다.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대구조정29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송○○ 박○○ ‘누구 말이 맞아?’ … 송○○ “비밀 연애” VS 박○○ “교제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경기조정112~113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중부일보,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 인터넷 중부일보 : 『가수 박○○, 디자이너 송○○과 열애설 공식 입장 “단지 업무관계였을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경기일보 : 『박○○ 공식입장 “송○○과 교제? 업무적인 관계일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대전조정51~53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대전일보닷컴 ⁽⁵¹⁾ , 인터넷 중도일보 ⁽⁵²⁾ , 인터넷 충청투데이 ⁽⁵³⁾	
조 정 대 상	• 대전일보닷컴 : (1) 『송○○ 박○○에 “원할 때만 날 찾고 이용했다” 호소하더니 결국...』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공식입장 “송○○과 몇 번 만나긴했지만...”』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중도일보 : (1) 『박○○과 스캔들 폭로한 송○○ ‘추호의 거짓도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송○○과는 업무상 관계일뿐.. 연인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충청투데이 : 『디자이너 송○○ “박○○과 열애” VS 박○○ 교제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충북조정51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충청일보	
조 정 대 상	『디자이너 송○○, 박○○과 결별 폭로 ... ‘도대체 무슨 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경기조정114	
(손배청구) 임○○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시화MTV 광역교통개선...표지판 등 미설치』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시화 MTV 광역교통개선의 일환으로 공사중인 도로의 안전시설 미비에 대한 신청인과의 인터뷰에서 신청인의 직장 및 성명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처리결과 불이행
2012경기조정115	
(정정청구) 성남시 對 성남일보	
조 정 대 상	『성남시, 대선 앞두고 민간단체 동향 파악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간단체의 동향 파악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성남시, 대선 앞두고 민간단체 동향파악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5일자)
2012서울조정1796	
(손배청구) 강○○ 對 프레스비이플	
조 정 대 상	『○○, 박근혜 당선 축하인사는 노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0일자)

신청인주장	특정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신청인의 알몸 사진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797~180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사)한국○○○○○○가구공방협회 對 나무신문, 인터넷 나무신문
조 정 대 상	『‘분별없는 산림청’ 예산지원 논란』 제하의 기사 (나무신문 2012년 11월 12일자 3면, 인터넷 나무신문 11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주최하는 박람회예 산림청의 녹색자금이 지원된 것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나무신문에 정정 및 반론보도, 인터넷 나무신문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분별없는 산림청 예산지원’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나무신문 2013년 1월 14일자 3면)

2012서울조정1801~1802	(매체별 손배청구) 송○○對 네이버, 뉴스1 코리아
조 정 대 상	•네이버 : (1) 『○○○○○○ 박○○ “송○○ 일적으로 만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송○○, 결별설 설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뉴스1 코리아 : 『○○○○○○ 박○○ “송○○ 일적으로 만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1803~1804	(매체별 손배청구) 송○○對 데일리안, 네이버
조 정 대 상	•데일리안 : (1) 『송○○ “내가 정신병자?” vs 박○○ “100% 교제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의 11살 연상녀’ 송○○, 누구길래 이런 폭로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네이버 : (1) 『‘비밀연애 폭로’ 송○○ vs ‘전면부인’ 박○○, 더 최악의 쪽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폭로 논란’ 박○○, 활동 못할 이유가…일본 스케줄 위해 출국』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의 11살 연상녀’ 송○○, 누구길래 이런 폭로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송○○ “내가 정신병자?” vs 박○○ “100% 교제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805~1807	(매체별 손배청구) 송○○對 아시아경제닷컴 ⁽¹⁸⁰⁵⁾ , 네이버 ⁽¹⁸⁰⁶⁾ , 다음 ⁽¹⁸⁰⁷⁾
조 정 대 상	(1) 『‘박○○ 만났단 ‘송○○’ 일 커지더니 결국』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조 정 대 상	(2)『박○○ 공식입장 “송○○과 친분 있지만 교제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송○○ “박○○ 협작? 내가 뭘 바라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 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808~1809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스포츠한국, 네이버	
조 정 대 상	(1)『박○○, 열애설 폭로에 해명... “팬들은 진실 알 것”』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송○○, 박○○ 측 발언에 “날 정신병자 취급 하지 마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송○○, SNS에 박○○과 결별 암시...박○○ 측 ‘사실무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 교제설 논란 딛고 국내 컴백 집중』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 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810~1811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일요신문, 다음	
조 정 대 상	(1)『박○○ 공식입장, “친분과 업무적 관계는 인정, 교제설은 100% 부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비밀관계 폭로’ 송○○ “박○○ 팬들 이해...열심히 공부하시라” 심경 고백』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송○○ vs 박○○ 상반된 주장 입체분석 ... ‘송○○ 치명적 오류는 소송시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 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814~1815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네이버, 다음	
조 정 대 상	『○○○○○○ 박○○, 11살 연상女 결별 폭로 논란 “이용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3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 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819 (손배청구) 송○○ 對 네이버	
조 정 대 상	(1)『 ‘논란’ 박○○, 예정대로 출국...일본 활동 위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박○○, 송○○과 교제 사실무근 ... ‘업무적 관계’ 해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송○○ 심경, “막무가내 정신병자 취급” 논란 증폭』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820	(손배청구) 송○○對 다음
조 정 대 상	『박○○ 측, 송○○ 결별 폭로글 해명 “친하게 지내는 사이일 뿐, 오해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821	(손배청구) 송○○對 다음
조 정 대 상	『박○○ “사실 무근” VS 송○○ “정신 병자 취급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충북조정52~55	(매체별 반론 · 손배청구) 1. (사)○○○○○○부모회 ○○지회, 2. 한○○對 인터넷 충청매일, 인터넷 충청타임즈
조 정 대 상	• 인터넷 충청매일 : 『“부의장님, 행감서 지정한 일 두고봅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9일자) • 인터넷 충청타임즈 : 『공주시의회 이창선 부의장 신변보호 요청』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지회가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회원수를 부풀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충청매일 · 인터넷 충청타임즈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충청매일 : 『“부의장님, 행감서 지정한 일 두고봅시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6일자) • 인터넷 충청타임즈 : 『“공주 시의회 이창선 부의장 신변보호요청”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일자)

2012경남조정80	(손배청구) 박○○對 인터넷 경남신문
조 정 대 상	『여름 피서 ‘거창 달빛고운 마을(월성 · 별곡마을)’ 로 오세요』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여름 피서지로 각광받는 캠핑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촬영한 가족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경기조정116~11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정○○對 여주시민신문, 인터넷 여주시민신문	
조 정 대 상	『공무원 J씨 둘러싼 의혹들』 제하의 기사 (여주신문 2012년 9월 25일자 1면, 인터넷 여주신문 9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연예협회 여주지회의 군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하여 공무원인 신청인이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손배청구 :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인터넷 여주시민신문 홈페이지 사회·정치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공무원 J씨 둘러싼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여주신문 2013년 1월 29일자 2면, 인터넷 여주신문 1월 29일자)

2012서울조정1823~1826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주식회사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엔터리 자궁암 키트... 2007년 이후에는 검사 11만명 다시 받아야』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9월 28일자 A12면, 동아닷컴 9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업이 식약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를 전국 산부인과에 납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동아닷컴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3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이오벤처기업 ○○’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1월 19일자 A12면, 동아닷컴 1월 19일자)

2012서울조정1827~183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전○○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1) 『“풀이 살아나 붙었다” “건너온 다리 불살라” ... 선거의 해 ‘말’이 춤쳤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6일자 A6면), (2) 『‘노인암살단’ 나을 거라는 좌파 역사학자』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6일자 A10면), (3) 『오늘의 100자평』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6일자 A37면), (4) 『萬物相』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6일자 A38면) • 조선닷컴 : (1) 『‘노인암살단’ 나을 거라는 좌파 역사학자』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5일자), (2) 『[만물상] 노인 암살단』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5일자), (3) 『[2012 말말말] “풀이 살아나 붙었다” “건너온 다리 불살라”... 선거의 해 ‘말’이 춤쳤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5일자), (4) 『[오늘의 100자평] ㅅ, 비서실장에 의외의 경제통...친

조 정 대 상	박·영남은 없었다 외』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5일자), (5) 『[팔면봉] 親朴 실세들, 일제히 낙향 또는 칩거 모드 외』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역사학자인 신청인의 트윗글이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831~1832	(정정·반론청구)(주)○○○ 對 매경ECONOMY
조 정 대 상	『LTE 경쟁 밀리고 밖에선 구설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5일자 16~1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민영화 10년간 순이익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와 이○○ ○○ 회장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3일자 17면)

제2장

중재사건 전체 목록

2012서울중재1		(정정청구) ○○건설(주) 對 네이버
중 재 대 상	『연천, 수해복구 특정업체 수의계약 밀어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는 연천군 수해복구사업을 경쟁입찰시스템에 의해 수주했는데, 연천군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몰아준 것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후속보도) ※ 이행방법 : 기사제공언론사(뉴시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 관련 후속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후속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시함, 홈페이지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도 후속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연천, 수해복구 특정업체 수의계약 밀어주기 의혹” 관련 후속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2012서울중재2~5		(매체별 반론청구) 사단법인 ○○○○○협회 對 네이버 ⁽²⁾ , 네이트 ⁽³⁾ , 다음 ⁽⁴⁾ , 야후 ⁽⁵⁾
중 재 대 상	『소화제 먹고 1년2개월 총 한 방 못 쏘는 강○○』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모 사격선수가 도핑 테스트에 걸려 자격정지를 당한 사건은 반하사심탕에 도핑금지약물을 인위적으로 혼합한 약사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처방인 반하사심탕 자체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중앙일보)로부터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시 함,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기사 모음' 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중앙일보)로부터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시함,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중앙일보)로부터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시함, 뉴스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야후 : 기사제공언론사(중앙일보)로부터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시함, 뉴스홈에 마련된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한약 처방 '반하사심탕', 도핑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3일자)	
2012서울중재6~8		(매체별 정정청구) 주식회사 ○○○리얼에스테이트코리아○○ 對 네이버 ⁽⁶⁾ , 네이트 ⁽⁷⁾ , 다음 ⁽⁸⁾
중 재 대 상	『○○○○도 도시개발 가능, 특혜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신청인주장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신청인 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오마이뉴스)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시함,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오마이뉴스)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시함,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오마이뉴스)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시함, 뉴스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 특혜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네이버 · 네이트 2012년 2월 2일자, 다음 2월 3일자)

2012서울중재9~13	(매체별 반론청구) 사단법인 대한배구협회 對 네이버 ⁽⁹⁾ , 네이트 ⁽¹⁰⁾ , 다음 ⁽¹¹⁾ , 드림위즈 ⁽¹²⁾ , 야후 ⁽¹³⁾
중 재 대 상	『무리한 회관 매입, 배구협회 파산 위기』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신청인주장	대한배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의 승인절차도 없이 무리하게 배구회관을 매입,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기사제공언론사(인터넷 경향신문)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 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뉴스홈에 마련된 <고침기사모음> 코너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 함
이 행 결 과	『“무리한 회관, 배구협회 파산 위기” 보도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1일자)

2012서울중재14	(정정청구) 김○○ 對 다음
중 재 대 상	『청와대 근무 공무원 술값 시비 끝에 체포』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7일자)
신청인주장	청와대 파견공무원인 신청인이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기사제공언론사(YTN)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정정보도문을 전송받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정정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고침> ‘청와대 행정관 사칭 소방공무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2012서울중재15~21	(매체별 추후청구) 남○○ 對 연합뉴스 ⁽¹⁵⁾ , 노컷뉴스 ⁽¹⁶⁾ , 네이트 ^(17, 21) , YTN ⁽¹⁸⁾ , 인터넷 YTN ⁽¹⁹⁾ , 네이버 ⁽²⁰⁾
중 재 대 상	•연합뉴스 : 『안티사이트 폐쇄 조건으로 돈 요구』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3일자)

중재대상	• 노컷뉴스·네이트 : 『‘안티사이트 폐쇄’ 기업체에 댓가 요구했다 구속』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4일자) • YTN : YTN24 프로그램 『안티사이트 폐쇄조건으로 돈 요구』 제하의 보도 (2004년 2월 4일자 07:00, 08:00) • 인터넷 YTN·네이버·네이트 : 『안티사이트 폐쇄조건으로 돈 요구』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모 출판사의 안티사이트를 개설해 이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았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 • 연합뉴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에 24시간 이상 추후 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중재대상기사 하단부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를 기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삭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노컷뉴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에 24시간 이상 추후 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중재대상기사 하단부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를 기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삭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추후보도문이 포털 네이트의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전송·조치 함 •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 (노컷뉴스, 인터넷 YTN)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 보도문을 전송받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홈페이지 뉴스홈에 마련된 ‘고침기사모음’ 코너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 함 • YTN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YTN24 프로그램에서 1회 추후보도, 뉴스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본문을 낭독하고, 추후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처리, 인터넷 YTN의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및 검색되도록 추후 보도문 전송 함 • 인터넷 YTN : 결정문을 송달받고, YTN이 추후보도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인터넷 YTN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추후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중재대상기사의 하단부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며, 중재대상기사를 기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삭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추후보도문이 포털 네이버 및 네이트의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전송·조치 함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인터넷 YTN)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보도문을 전송 받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홈페이지 뉴스홈에 마련된 ‘고침기사모음’ 코너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 함
이행결과	• 연합뉴스 : 『안티사이트 운영 남모씨 8년만에 무죄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 노컷뉴스·네이트 : 『‘안티사이트로 금품 요구’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4일자)

이 행 결 과	• YTN : YTN24 프로그램 『안티사이트 운영 혐의 남 모 씨 무죄 확정』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27일자 07:00) • 인터넷 YTN : 『안티사이트 운영 혐의 남 모 씨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7일자) • 네이버 · 네이트 :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7일자)
---------	--

2012서울중재22~23	(매체별 정정청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 對 네이버, 다음
중 재 대 상	『김두관 정부부지사 출신 강○○ 진보당 黨대표 후보로 급부상』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통합진보당 당대표 선거에서 강○○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조선닷컴)로부터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 게시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조선닷컴)로부터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고침기사 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 게시함
이 행 결 과	『민주노동 ○○본부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네이버 2012년 7월 3일자, 다음 7월 2일자)

2012서울중재24~25	(정정 · 손해청구) 주식회사○○시스템 對 CNBNEWS
중 재 대 상	『○○시스템 남○○-○○ 형제 부도덕성 점입가경』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기업사냥 · 횡령 등 부도덕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 부분(전체 목록 중간 이상)에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중재대상기사의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시스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2012서울중재26	(손배청구) 1. 이○○, 2. 김○○ 對 인터넷 서울경제
중 재 대 상	『[대한민국은 지금 세일중] 백화점 역대 최장기 세일...마트도 50% · 최저가 할인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백화점 장기 세일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물건을 구경하는 신청인들(예비 신랑신부)의 모습을 몰래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손해배상 각 100만 원, 이행강제금)

2012제주중재1~2	(정정·손배청구) 허○○對 다음
중재대상	『6명 구속! 도대체 제주경마장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경마 승부조작으로 구속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뉴스 홈페이지 마련된 '고침기사 모음' 난에 보도문을 게시함
이행결과	『[정정보도문]경마 승부조작 가담, 기수 허 모 씨 무관』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6일자)

2012서울중재27~31	(매체별 정정청구) ○인터내셔널(주)對 네이버 ⁽²⁷⁾ , 네이트 ⁽²⁸⁾ , 다음 ⁽²⁹⁾ , 야후 ⁽³⁰⁾ , 줌닷컴 ⁽³¹⁾
중재대상	『'○○' 종종 끊긴 이유... 원인 이거였어?』 제하의 기사(2012년 7월 20일자)
신청인주장	4월모 모바일 메신저 중단 사태의 원인이 신청인 회사의 서버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인터넷 디지털타임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공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동시에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 반론 추후 보도 기사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인터넷 디지털타임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동시에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언론중재법 피해구제보도'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인터넷 디지털타임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동시에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 줌닷컴 : 기사제공언론사(인터넷 디지털타임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동시에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 장애'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3일자)

2012서울중재32~34	(매체별 정정청구) 전라북도교육청對 네이버 ⁽³²⁾ , 네이트 ⁽³³⁾ , 다음 ⁽³⁴⁾
중재대상	『“교사도 방학때 학생들처럼 학교 안 나와도 된다” ... 공문까지 변조한 전북교육청』 제하의 기사(2012년 7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전라북도교육청이 교과부의 공문을 변조하여 방학 중 교사들에게 학교에 나오지 말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처 리 결 과	※ 이행방법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동아닷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동시에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 게시하고,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동아닷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동시에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기사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하고,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동아닷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동시에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하고,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전북교육청 교원복무지침 공문 변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6일자)

2012서울중재35~36 (매체별 정정청구) 고용노동부 對 네이버, 다음	
중 재 대 상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뜸』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노컷뉴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 게시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노컷뉴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탈퇴 유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2012서울중재37~38 (매체별 정정청구) 고용노동부 對 네이버, 다음	
중 재 대 상	『전두환 때보다 더해 ... 노동부 장관 '멘붕'』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노컷뉴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며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 기사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 게시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노컷뉴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여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 함
이 행 결 과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탈퇴 유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2012서울중재39~42	(매체별 정정청구) 한국보건산업연구원 對 네이버 ⁽³⁹⁾ , 네이트 ⁽⁴⁰⁾ , 다음 ⁽⁴¹⁾ , 야후 ⁽⁴²⁾
중 재 대 상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상한' 해고』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직원을 해임하였으나 내부비리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노컷뉴스)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네이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노컷뉴스)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네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난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노컷뉴스)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언론중재법' 난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 야후 : 기사제공언론사(노컷뉴스)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야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난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이상한 해고' 기사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네이버 · 다음 2012년 9월 24일자, 네이트 10월 24일자, 야후 9월 27일자)

2012서울중재43~44	
(매체별 정정청구) 문○○對 월간조선,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중 재 대 상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2년 9월 1일자 제382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9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건설 회장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도됐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내용: 정정보도) ※ 이행방법 •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홈페이지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시함,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문○○ 전 부산시장의 사전수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2년 11월 1일자 341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11월 1일자)

2012서울중재45~47	
(매체별 반론청구) 한국○○총연맹對 네이버 ⁽⁴⁵⁾ , 네이트 ⁽⁴⁶⁾ , 다음 ⁽⁴⁷⁾	
중 재 대 상	『자유총연맹 ‘국고 유용’ 정황포착 본격수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집행부가 국고를 유용하고, 간부들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기사제공언론사(동아닷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또한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기사 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 게시함 • 네이트: 기사제공언론사(동아닷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또한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기사 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 게시함 • 다음: 기사제공언론사(동아닷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또한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기사 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 게시함
이 행 결 과	『○○총연맹 국고 유용 수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일자)

2012서울중재48~53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對 네이버(48~49), 네이트(50~51), 다음(52~53)
중재대상	『주요 간부 줄사표… 보건연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제2대 원장 취임 이후에는 주요보직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연구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기사제공언론사(코메디닷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시 함 • 네이트: 기사제공언론사(코메디닷컴)으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모음' 난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 함 • 다음: 기사제공언론사(코메디닷컴)으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난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행결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 차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3일자)

2012서울중재54~55	(정정·반론청구) 1. (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연구원 2. 최○○ 對 야후
중재대상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 원장, 문화부 보조 사업비 유용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문화부 지원 사업비를 유용해 원장의 개인비서를 채용하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중재결정 (내용: 반론보도) ※ 이행방법: 기사제공언론사(CNB뉴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뉴스 홈에 마련된 '뉴스편집실 공지사항'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행결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감 지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5일자)

2012서울중재56~57	(매체별 손해청구)(병합) 김○○ 對 MBC-TV, MBC
중 재 대 상	•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835회 - ‘빔’ 권하는 사회』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5일자) • iMBC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다시보기] 835회』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원 비공개를 전제로 신청인의 주택담보 대출 사례를 인터뷰 했는데, 실명과 초상을 그대로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